2021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2020.12.

행정안전부

목 차

Ⅰ. 일반회계 ····· 1

1 세 입 ····· 3
2 세 출 ····· 19

<대변인실>

1. 국민안전방송운영 및 재난정책홍보 ····· 23

<의정관실>

1. 국경일등정부행사 ····· 29
2. 정부포상 ····· 31
3. 전직대통령 및 유족연금 ····· 33
4. 국가상징선양 ····· 35
5. 전직대통령 및 유족예우 ····· 37

<운영지원과>

1. 세종청사 이전 지원 ····· 43

<기획조정실>

1. UN거버넌스센터지원(ODA) ····· 47
2. 행정안전부정보화(정보화) ····· 50
3. 정책연구개발(R&D) ····· 56
4. 성과관리 및 행정효율성제고 ····· 58
5. 고객만족관리 및 이미지제고 ····· 61
6. 행정한류네트워크구축운영 ····· 63
7. 정책기획위원회운영 ····· 67

<정부혁신조직실>

1. 생활공감정책추진 ····· 71
2. 정부조직진단관리 ····· 73
3. 책임운영기관제운영 ····· 76
4. 정부기능분류시스템운영(정보화) ····· 79
5. 전자문서소통시스템(정보화) ····· 83
6.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운영(정보화) ····· 89
7. 행정생산성향상지원 ····· 92
8. 정부혁신국제네트워크강화 및 대외신인도제고 ····· 96
9. 민원제도 및 서비스개선 ····· 99
10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 102
11 정보공개활성화(정보화) ····· 106
12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정보화) ····· 109
13.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정보화) ····· 112

<디지털정부국>

1. 전자정부지원(정보화) ····· 117
2. 지능형전자정부재설계 및 정책연구(정보화) ····· 120
3. 국가위임사무종합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 123
4. 행정공간정보시스템유지보수(정보화) ····· 126
5. 정보보호인프라확충(정보화) ····· 128
6. 전자정부 성과평가(정보화) ····· 133
7. 지식기반의행정구축(정보화) ····· 137
8. 첨단정보기술을활용한공공서비스촉진(정보화) ····· 140
9. 행정기관정보통신서비스이용환경고도화(정보화) ····· 143
10. 스마트폰기반의모바일전자정부구축(정보화) ····· 146
11. 정보화마을조성 및 활성화(정보화) ····· 149
12. ODA 중점협력국가 범정부 전자정부 협력지원(ODA) ····· 152
13. 전자정부분야국제교류협력(ODA,정보화) ····· 155
14. 전자정부국가간협력강화(정보화,ODA) ····· 158

15. 전자정부글로벌아카데미운영(정보화) ····· 161
16. 전자정부대외협력활동강화(정보화) ····· 164
17. 정보자원관리지원(정보화) ····· 167
18. 스마트워크센터구축 및 운영(정보화) ····· 175
19. 행정정보화지원 및 관리조정(정보화) ····· 178
20. 공공데이터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정보화) ····· 181
21.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화) ····· 186
22.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정보화) ····· 189
23. 지능형 서비스 확대 및 운영(정보화) ····· 192
24.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정보화) ····· 195
25. 공공서비스 민간개방 추진(정보화) ····· 198

<지방자치분권실>

1. 불우소외계층격려 ····· 203
2. 자치분권위원회 운영 ····· 205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개발연구등지원 ····· 208
4. 지자체 조직 및 인사관리 효율화 ····· 211
5.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 216
6. 주민등록제도개선 및 운영 ····· 219
7. 지방분권·균형발전 홍보지원 ····· 222
8.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지원 ····· 224
9.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역량강화 ····· 228
10. 지자체기능분류모델시스템운영(정보화) ····· 231
11. 자원봉사1365시스템운영(정보화) ····· 233
12.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운영(정보화) ····· 236
13.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 239
14. 지자체경쟁력지원 ····· 242
15. 비영리민간단체지원 ····· 247
16. 자원봉사활성화지원 ····· 250
17. 새마을운동지원 ····· 253

18.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ODA) ····· 255
19. 행복한 선진시민사회 구현 ····· 259
20. 공무원단체건전육성 ····· 262
21.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 265
22.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확산 ····· 270
23.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정보화) ····· 274
24.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 구축 ····· 276

<지방자치분권실-지역발전정책관>

1. 지역발전활성화 ····· 281
2.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원 ····· 284
3.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 286
4.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 289
5.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 292
6.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 296

<지방재정경제실>

1. 지자체재정분석 및 재정제도개선 ····· 301
2. 지방재정 정보화(정보화) ····· 308
3. 지방세정보화추진(정보화) ····· 313
4.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 316
5. 지방회계결산제도연구개선 ····· 319
6. 지방공기업경영평가 ····· 322
7. 과표양성화를위한시가표준액조사 ····· 325
8 지방자주재원확충을위한정책추진 ····· 328
9. 지역금융활성화 ····· 333
10. 지역경제활성화 ····· 336
1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 340
1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343

<지방교부세>

1. 보통교부세 ····· 349
2. 지역현안특별교부세 ····· 351
3.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 353
4. 부동산교부세 ····· 355
5.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 358
6. 소방안전교부세 ····· 361

<중앙재난안전상황실>

1. 중앙안전상황실운영 ····· 365

<안전정책실>

1. 재난안전산업활성화 ····· 371
2. 재난안전사업평가 ····· 375
3. 4.16재단지원 ····· 378
4. 국민안전의식선진화 ····· 381
5. 지역안전개선컨설팅 ····· 384
6. 안전사고대책 및 재난현장종사자 지원 ····· 389
7. 승강기안전관리개선 ····· 392
8.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 395
9. 우수저류시설설치(보조) ····· 400
10. 재난행정정보화(정보화) ····· 403
11. 긴급신고전화통합체계구축·운영(정보화) ····· 407

<재난관리실>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 413
2. 재난관리평가지원 ····· 417
3.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 421
4. 재난관리국제협력 ····· 424
5. 지진대비인프라구축 ····· 430

6.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 432
7.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 442
8. 재난대책비(보조) ····· 446
9. 재난구호지원 ····· 449
10. 풍수해보험 ····· 452
11. 재난심리회복지원 ····· 455
12.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지원 ····· 459
13. 통합지휘무선통신망운영(정보화) ····· 461
14.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 465
15.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정보화) ····· 468
16.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구축 ····· 472
17. 공공시설 옥상녹화 ····· 475
18.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 478
19.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 481

<재난협력실>

1.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 487
2. 여름철물놀이인명피해경감(보조) ····· 496
3. 국가기반체계관리 ····· 499
4. 사회재난교육훈련 및 역량지원강화 ····· 502
5. 재난원인조사 및 미래대형복합재난대비 ····· 505
6. 극한재난대응기반기술개발(R&D) ····· 508
7. 재난안전취약핵심역량도약기술개발 ····· 512
8. 생활안전예방서비스기술개발(R&D) ····· 515
9. 재난안전산업육성지원(R&D) ····· 519
10. 국민수요맞춤형 생활안전연구개발(R&D) ····· 522
11. 지역맞춤형재난안전문제해결기술개발지원(R&D) ····· 526
12. 재난안전부처협력기술개발(R&D) ····· 530
13.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구축(정보화) ····· 536
14. 사회복합재난대응 기술개발(R&D) ····· 539

15. 자연재난 정책 연계형 기술개발(R&D) ····· 544
16. 취약계층·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 기술개발(R&D) ····· 547
17. 지능형 상황관리 기술개발(R&D) ····· 551
18. 재난피해 복구 역량 강화 기술개발(R&D) ····· 554

<비상대비정책국>

1. 비상대비훈련 ····· 559
2. 동원자원관리 ····· 563
3. B-1정부노후시설정비 ····· 568
4.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 ····· 571
5. 비상대비담당자선발 ····· 577
6. 비상대비정보화(정보화) ····· 580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기본경비 ····· 585
2.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환경개선유지 ····· 587
3.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운영 ····· 589
4. 외국지방공무원교육운영(ODA) ····· 592
5. 지방자치인재개발원사이버교육센터운영(정보화) ····· 595
6. 지방자치인재개발원전산운영(정보화) ····· 598
7. 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 600

<국가기록원>

1. 국가기록물정리 ····· 605
2. 기록물보존복원 ····· 608
3. 국가기록서비스정보화추진(정보화) ····· 611
4. 전자기록관리체계구축(정보화) ····· 615
5. 대통령기록관리체계구축(정보화) ····· 618
6. 기록관리정책 및 교육 ····· 621
7. 기록정보서비스 ····· 624

8. 기록관보존시설관리 ····· 627
9. 국가기록관리 활용기술 연구개발(R&D) ····· 630
10. 대통령기록관리 ····· 633

<정부청사관리본부>

1. 청사시설유지보수 ····· 639
2.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 642
3.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 645
4.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재건축 ····· 648
5. 공무원통근버스운행 ····· 651

<이북5도위원회>

1.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 657
2. 이북5도청사 시설 개·보수 ····· 661
3. 이북도민 관련단체 및 행사지원 ····· 664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재난안전교육원운영 ····· 67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과학수사감정지원 ····· 677
2. 과학수사감정장비현대화 ····· 681
3. 과학수사정보화시스템구축(정보화) ····· 684
4. 중장기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사업(R&D) ····· 688

<국가정보자원관리원>

1.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정보화) ····· 693
2.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정보화) ····· 697
3. 국가정보관리원대구센터신축(정보화) ····· 703
4. 국가융합망 구축 및 운영(정보화) ····· 706

<국립재난안전연구원>

1. 재난안전관리업무지원기술개발(R&D) ····· 713
2. 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관리(R&D) ····· 716
3. 재난안전신기술해외보급(ODA) ····· 719
4. 재난안전연구원운영 ····· 722
5. 국립재난안전연구원전산운영 ····· 725

<민주화 지원 및 과거사 정리>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운영〉

1.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 731
2. 과거사관련사업지원 ····· 737
3. 제주4.3평화재단지원 ····· 742
4.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단위위령시설조성 ····· 746

〈강제동원 진상규명〉

5.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 ····· 749
6.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보상금) ····· 752

〈민주화관련자 명예회복〉

7.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지원 ····· 755
8. 인건비(부마민주항쟁위) ····· 75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 760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지원〉

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 763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11.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 770

〈진실화해위원회 지원〉

12. 인건비(진실화해위원회) ····· 773
13. 진실화해위원회 지원 ····· 775

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777
1 세 입 ····· 779
2 세 출 ····· 789

<지방자치분권실>

1.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 793
2. 지방자치단체자율통합지원금 ····· 796
3. 자원봉사활성화지원(제주) ····· 798
4.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제주) ····· 800
5. 지방이양사무 지원 ····· 803

<지방자치분권실-지역발전정책관>

1. 특수상황지역개발 ····· 809
2. 지역균형발전추진지원 ····· 811
3. 접경권발전지원 ····· 813
4.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 816
5. 위험도로구조개선 ····· 819
6.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 822
7. 위험도로구조개선(제주) ····· 824

<지방재정경제실>

1. 지역공동체일자리 ····· 829

<안전정책실>

1.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 835
2.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제주) ····· 840
3. 재해위험지역정비(세종) ····· 845
4.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세종) ····· 848

Ⅰ. 일 반 회 계

1. 세 입

토지대여료
51-51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토지대여료	241	478	478	492	492	492	14	3.0

가.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30.>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3.2.>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3.30.>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3.2.>

나. 세입 개요

○ 정부청사 등 국유재산(토지) 대여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17	180	180	180	432	431	239.4	99.8	1	
'18	451	451	451	413	412	91.5	99.8	1	
'19	464	464	464	264	241	51.9	91.3	23	
'20	478	478	478	336	102	21.3	30.3	234	
'21	492	-	-	-	-	-	-	-	-

건물대여료
51-512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건물대여료	2,685	2,664	2,664	2,744	2,744	2,744	80	3.0

가.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30.>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3.2.>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3.30.>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3.2.>

나. 세입 개요

○ 정부청사 등 국유재산(건물) 대여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17	2,439	2,439	2,439	2,335	2,145	87.9	91.9	190	-
'18	2,512	2,512	2,512	3,078	2,597	103.4	84.4	481	-
'19	2,154	2,154	2,154	3,102	2,685	124.6	86.6	417	-
'20	2,664	2,664	2,664	1,884	1,185	44.4	62.8	699	-
'21	2,744	-	-	-	-	-	-	-	-

기타재산수입
54-545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기타재산수입	3,058	2,508	2,508	2,583	2,583	2,583	75	3.0

가.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20조(정부보관금 국고귀속조서의 송부 등)**

① 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라 국고에 귀속될 보관금이나 이자가 있을 때에는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보관금을 환급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통지해야 한다.

1. 보관금명, 보관금액 등 국고귀속 대상 보관금에 관한 사항
2. 국고귀속 예정일
3. 환급절차 등 환급에 대한 안내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기한이 경과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관금과 그 이자를 국고에 귀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분을 정리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속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28.]

나. 세입 개요

○ 국고보조금 예치 이자수입 등 세입·세출금의 금융기관 예치 이자수입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17	2,312	2,312	2,312	2,883	2,660	115.1	92.3	223	-
'18	2,364	2,364	2,364	2,203	2,009	85.0	91.2	194	-
'19	2,435	2,435	2,435	3,141	3,058	125.6	97.4	83	-
'20	2,508	2,508	2,508	2,577	1,941	77.3	75.3	636	-
'21	2,583	-	-	-	-	-	-	-	-

위약금
57-572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위약금	305	490	490	505	505	505	15	3.1

가.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1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2.18.]

나. 세입 개요

○ 계약불이행에 다른 위약금 등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17	449	449	449	380	380	84.6	100	-	-
'18	462	462	462	1,144	1,142	247.1	99.8	2	-
'19	476	476	476	309	305	64	98.7	4	-
'20	490	490	490	390	322	65.7	82.5	68	-
'21	505	-	-	-	-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	국회확정(B)		
기타경상이전수입	34,983	43,416	43,416	44,718	44,718	44,718	1,302	3.0

가.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 **국고금 관리법 제29조(지출금의 반납)**

① 지출된 금액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지출한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4.]

나. 세입 개요

○ 국고보조 및 위탁사업 집행잔액, 과오지급금 회수, 전세보증금 반납금 등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17	39,994	39,994	39,994	39,702	36,371	90.9	91.6	3,331	-
'18	40,925	40,925	40,925	37,586	32,014	78.2	85.2	5,573	-
'19	40,949	40,949	40,949	39,154	34,983	85.4	89.3	4,171	-
'20	43,416	43,416	43,416	44,831	27,070	62.3	60.3	17,761	-
'21	44,718	-	-	-		-	-	-	-

면허료및수수료
65-65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	국회확정(B)		(B-A)/A
면허료 및 수수료	36	105	105	108	108	108	3	2.9

가. 법적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나. 세입 개요

○ 정보공개 열람 수수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17	105	105	105	39	39	37.1	100	-	-
'18	105	105	105	39	39	37.1	100	-	-
'19	39	39	39	37	36	92.3	97.3	1	-
'20	105	105	105	30	30	28.5	100	-	-
'21	108	-	-	-	-	-	-	-	-

기타잡수입
69-69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	국회확정(B)		
기타잡수입	1,028	851	851	877	877	877	26	3.1

가. 법적 근거

○ **물품관리법 제40조(처분물품의 회계처리)**

① 조달청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각을 요청받은 불용품을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을 불용품의 매각을 요청한 중앙관서의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에게 불용품의 매각을 요청한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불용품이 매각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드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37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뺀 금액은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25.]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 요양기관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는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금액보다 더 많으면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더 많이 낸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심사평가원이 제63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하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요양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다음 각 호의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
2.「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3.「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신고한 지부 및 분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심사·지급 등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세입 개요

○ 불용품 매각수입, 청사 입주업소의 공공요금·관리비, 의무실 내진비·스케일링 대금·요양급여비 등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17	780	780	780	1,280	860	110.3	67.2	420	-
'18	803	803	803	1,419	1,001	124.7	70.5	418	-
'19	860	860	860	1,455	1,028	119.5	70.6	427	-
'20	851	851	851	1,151	742	87.1	64.4	409	-
'21	877	-	-	-	-	-	-	-	-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69-69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	국회확정(B)		(B-A)/A
기타잡수입	9,340	7,099	7,099	7,312	7,312	7,312	213	3.0

가. 법적 근거

○ **국고금 관리법 제8조(수입대체경비)**

①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는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훈련시설 및 교육훈련과정 등을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有償)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53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2.]

나. 세입 개요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지방자치인재개발원) 운영에 따른 수입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17	6,789	6,789	6,789	8,119	8,119	119.6	100	-	-
'18	6,891	6,891	6,891	8,328	8,327	120.8	99.9	1	-
'19	7,632	7,632	7,632	9,340	9,340	122.3	1	-	-
'20	7,099	7,099	7,099	4,667	4,661	65.6	99.8	6	-
'21	7,312	-	-	-	-	-	-	-	-

2. 세　　출

대 변 인 실

2021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1. 국민안전방송운영 및 재난정책홍보 ····· 23

사 업 명
1. 국민안전방송운영 및 재난정책홍보 (7036-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대변인실	-	010	016
명칭					일반회계	일반·지방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00
명칭	행정안전행정지원	국민안전방송운영	국민안전방송운영및재난정책홍보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국민안전방송운영 및 재난정책홍보	587	627	627	652	652	652	25	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민안전방송 '안전韓-TV'를 통해 다양한 재난안전사고 예방 영상물을 제작·송출함으로써 국민안전의식을 개선하고, 재난안전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 전략적·체계적인 주요 재난안전정책 기획보도 및 공익캠페인 제작·확산, 시기별 중점 관리대상 재난안전사고 홍보 등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안전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및 제66조의4(안전의식 개선 캠페인 및 홍보)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국민안전방송 운영)

② 추진경위

- 2006. 4월: 소방방재청 "인터넷 방송 NEMA TV(국민안전방송)" 개국('06.4월)
- 2014.11월: 국민안전처 발족('14.11.19)에 따라 국민안전처 "국민안전방송"으로 변경
- 2015.11월: 국민안전방송 홈페이지 전면 개편, "안전韓-TV"로 명칭 변경(명칭 공모)
- 2017. 7월: 행정안전부 "안전韓-TV"로 변경(www.safetv.go.kr)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6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수혜자 : 국민
- 사업시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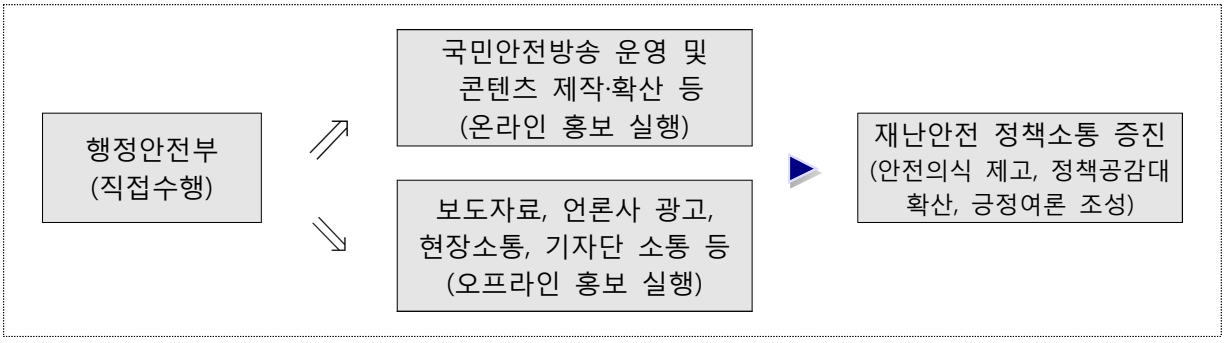

3) 사업 집행절차

① 연간 국민안전방송 운영계획 및 재난안전정책 홍보계획 수립

- 월별 중점 홍보과제 선정 및 홍보전략 수립, 시기별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분석 등

② 국민안전방송 영상물 제작 및 효율적인 홍보매체 선정

- 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시기별 재난안전사고 예방요령, 주요 재난안전정책, 국민 안전문화 캠페인 등 홍보콘텐츠(영상물, 이미지, 광고지 등) 제작
- 추진단계별, 고객대상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홍보방안(매체선정 등) 수립

③ 온·오프라인 전방위 홍보 실행 → 대국민 안전정보 수시 제공, 직접 소통 강화

- 보도자료 언론사 배포, 현장소통, 지면광고 등 오프라인 홍보 실행
- 국민안전방송, 온라인 언론매체, 민간포털, SNS 등 온라인 홍보 실행

③ 지속적인 재난안전 홍보 추진 → 국민안전의식 개선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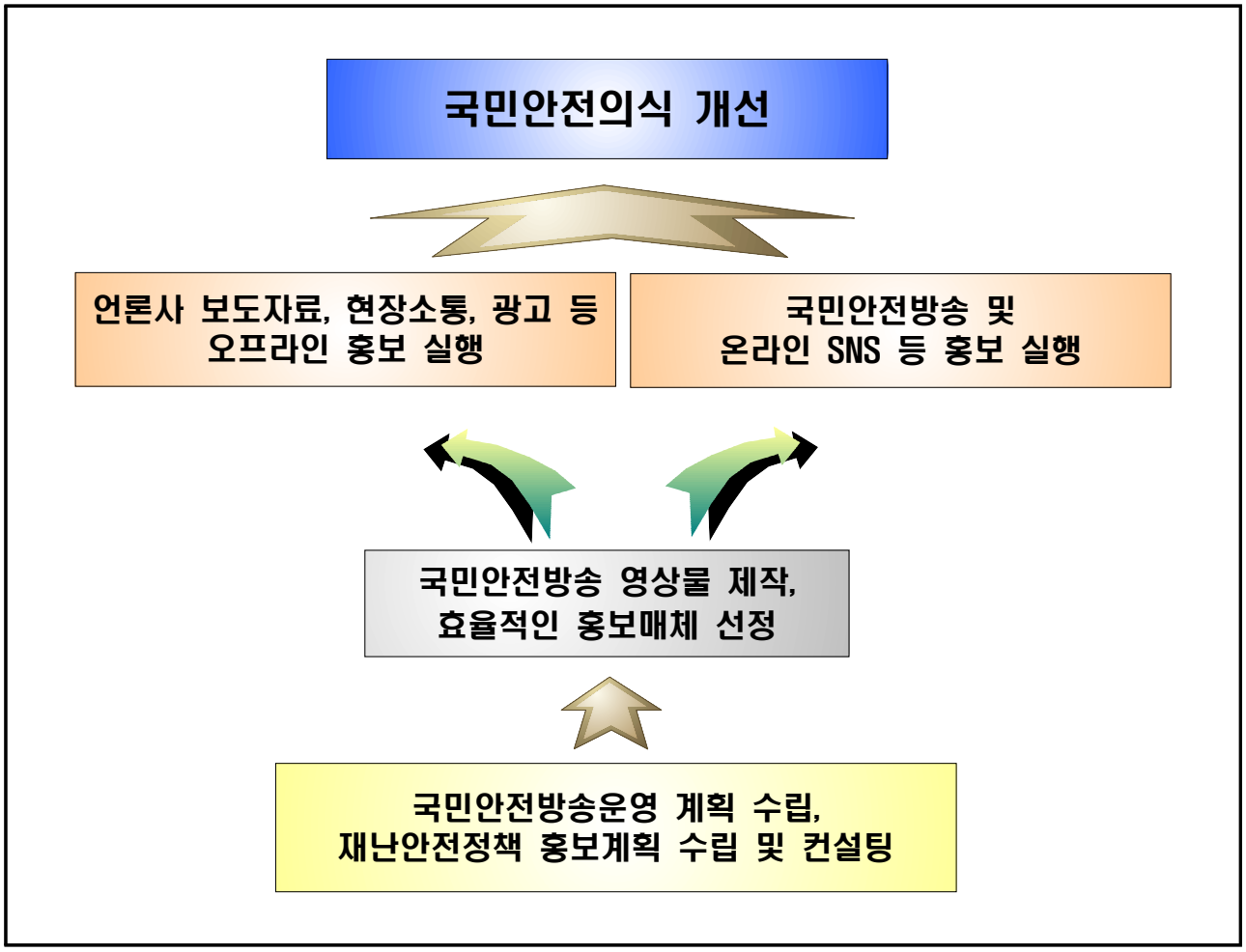

의 정 관 실

2021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1. 국경일등정부행사 ····· 29

2. 정부포상 ····· 31

3. 전직대통령 및 유족연금 ····· 33

4. 국가상징선양 ····· 35

5. 전직대통령 및 유족예우 ····· 37

사 업 명
1. 국경일등정부행사 (21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의정관실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131	300
명칭	정부의전	국가의정관리	국경일 등 정부행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국경일등정부행사	4,215	1,447	1,402	1,447	1,447	1,447	45	3.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4대 국경일 등 품위 있고 격조 높은 정부 의전 행사를 거행하여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경일에 관한 법률, 국가장법

② 추진경위

- ‘49. 10. 1. 국경일에 관한 법률 공포 (*모든 국경일 행사는 정부주관으로 거행)
- ‘81. 광복절을 정부차원의 경축행사로 격상
- ‘83. 모든 국경일 행사를 총무처에서 주관
- ‘88. 제헌절 행사 주관 이관 (총무처→국회사무처)
- ‘05.12.29 한글날을 국경일로 제정
- ‘15.11.22.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국가장 거행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48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행사기본계획수립 → 관계기관 협의 → 세부계획 수립 → 행사 거행

사 업 명
2. 정부포상 (21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의정관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1	301
명칭	정부의전	국가의정관리	정부포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정부포상	8,848	8,377	7,968	8,406	8,377	8,377	409	5.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회 각 분야 및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선행시민 등을 폭넓게 발굴하고, 소관 부처 추천 등 법정절차를 거쳐 포상함으로써 서훈의 영예성과 수훈자의 자긍심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헌법 제80조, 상훈법 및 동법시행령, 정부표창규정, 모범공무원규정
- 헌법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② 추진경위 - '건국공로훈장령'을 제정·공포(1949.4.27.)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훈·포장의 신설 및 제도개선을 거쳐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48 ~ 계속
- 사업규모 : 훈·포장, 수장·수치(표창) 등 46,266조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정부포상 수상자

3)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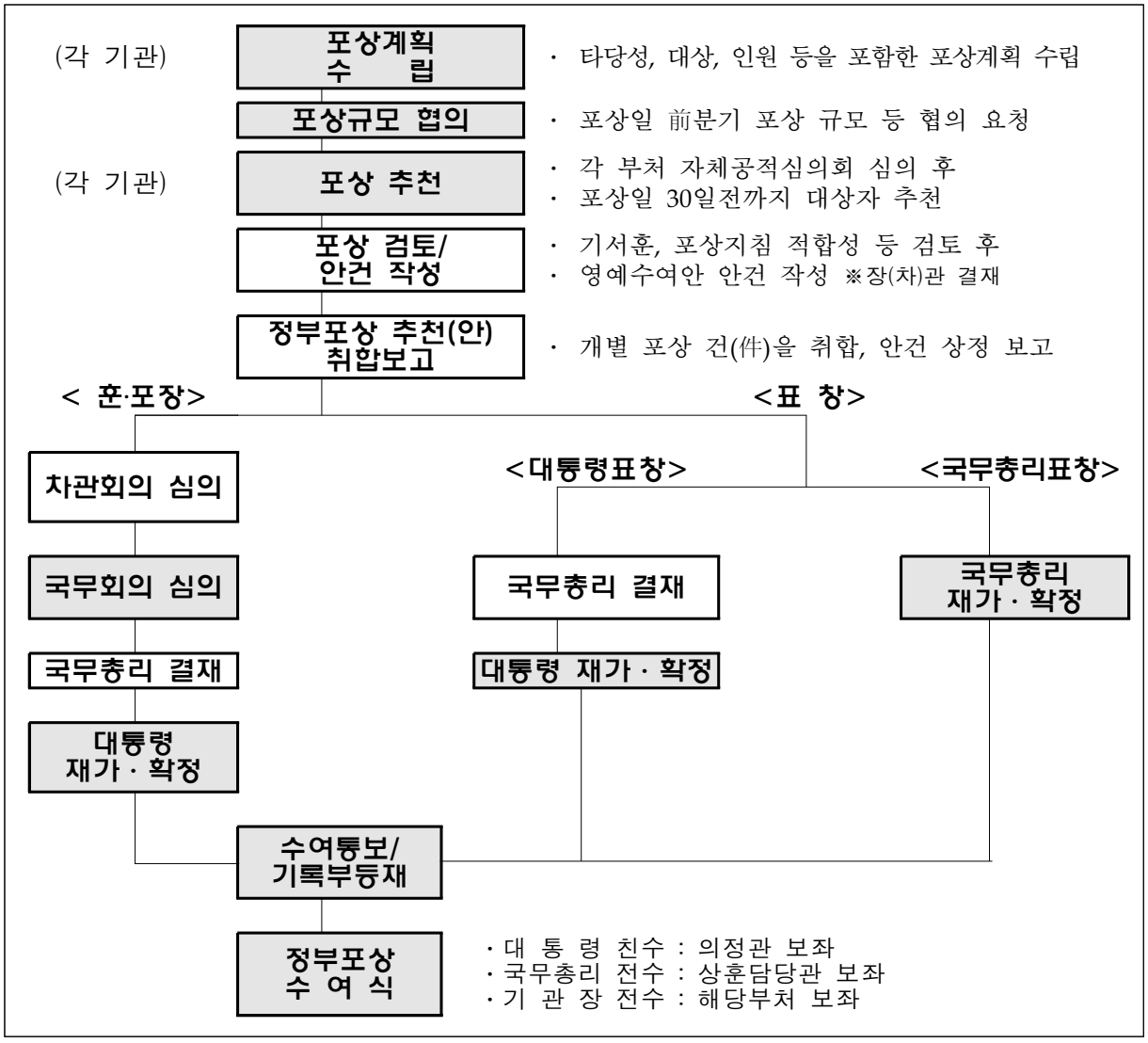

사 업 명
3. 전직대통령 및 유족연금 (21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의정관실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1	302
명칭	정부의전	국가의정관리	전직대통령및유족연금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전직대통령 및 유족연금	451	409	409	430	430	256	△153	△37.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전직대통령(유족 포함)에게 그에 상응한 예우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헌법 제85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② 추진경위

-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예우로서 연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
  · ‘69. 1. 22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정(법률 제2086호)
  · ‘69. 1. 29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3753호)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69년~계속
- 사업규모 : 전직대통령 유족(배우자) 2인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전직대통령 및 유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전직 대통령 및 유족(배우자) 연금 지급 : 매월 20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연금지급일)

사 업 명
4. 국가상징선양(21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의정관실	0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1	303
명칭	정부의전	국가의정관리	국가상징선양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국가상징선양	365	155	155	147	147	147	△8	△5.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상징 선양·교육)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 무궁화, 애국가, 국새 및 나라문장 등의 체계적 관리 및 선양·교육 등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하고 국민통합 및 국가이미지 제고 등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대한민국 국기법 및 동법 시행령, 국새규정, 나라문장규정 등

② 추진경위

-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국민통합 및 자긍심 제고 등을 위하여 태극기, 무궁화, 애국가, 국새, 나라문장 등 국가상징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왔음
- 2007.1.26. 대한민국 국기법 제정을 계기로 국가상징에 대한 선양·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21세기 국민통합을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48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등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국가상징 선양·교육 : 계획 수립 및 직접 시행

사 업 명
5. 전직대통령 및 유족예우 (2131-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의정관실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1	307
명칭	정부의전	국가의정관리	전직대통령및유족예우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전직대통령 및 유족예우	1,548	1,476	1,476	1,465	1,465	865	△611	△41.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전직대통령(유족 포함)에게 그에 상응한 예우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국립묘지 외 안장된 전직대통령 묘지 관리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헌법 제85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② 추진경위

-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예우로서 연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
  - ·'69. 1. 22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정(법률 제2086호)
  - ·'69. 1. 29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3753호)
  - ·'17. 3. 21 국립묘지 외 안장된 전직대통령 묘지 관리 지원을 위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69년~계속
- 사업규모 : 전직대통령 유족(배우자) 2인, 전직대통령 묘지 2기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전직대통령 및 유족, 국립묘지 외 안장된 전직대통령 묘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재)아름다운봉하	10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사)해위윤보선대통령기념사업회	10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3) 사업 집행절차

- 전직 대통령 및 유족(배우자) 예우보조금 지급 : 분기 1회(1,3,6,9월 20일)
- 전직 대통령 및 유족(배우자) 비서실활동비 지급 : 매월 20일
- 전직 대통령 및 유족(배우자) 민간진료비 및 국외여비 지급 : 필요시
- 전직 대통령 묘지관리 지원 : 민간단체의 사업신청 후 보조금 지급절차에 따라 지원

운영지원과

2021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1. 세종청사 이전 지원 ····· 43

사 업 명
1. 세종청사 이전 지원 (7033-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3	302
명칭	행정안전행정지원	부내행정지원	세종청사 이전 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세종청사 이전 지원	8,444	9,135	9,135	8,866	8,562	8,562	△573	△6.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세종시로 이전한 행정안전부 임차청사 유지관리·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및 이주 직원의 정주여건 마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고시(제2018-25호, '18.03.29)
-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고시(제2019-92호, '19.12.19)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18년
- 추진배경 :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18.03.29.)에 따라 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 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8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행정안전부 본부 소속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공공요금, 임차료 등 : 기관운영을 위한 기초 수요조사 → 집행계획수립 → 집행 - 이주지원비 : 지급대상자 지급액 신청(매월) → 지급대상 적정성 등 검토 → 집행

기획조정실

2021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1. UN거버넌스센터지원(ODA) ····· 47

2. 행정안전부정보화(정보화) ····· 50

3. 정책연구개발(R&D) ····· 56

4. 성과관리 및 행정효율성제고 ····· 58

5. 고객만족관리 및 이미지제고 ····· 61

6. 행정한류네트워크구축운영 ····· 63

7. 정책기획위원회운영 ····· 67

사 업 명
1. UN거버넌스센터지원(ODA) (1933-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3	303
명칭	정부혁신조직	행정효율성향상	UN거버넌스센터지원(ODA)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UN거버넌스센터 지원(ODA)	2,147	2,213	2,213	2,517	2,517	2,517	304	13.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을 위한 유엔 회원국의 공공행정 및 거버넌스 역량 강화 기여
- 국제기구와의 공고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전자정부 등 대한민국 공공행정 우수사례 홍보를 통한 행정 한류 확산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간의 기술협력 신탁기금협정」(조약 제1790호) 제1조
- UN의 '공공행정 및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00만달러(신탁기금)를 06년부터 매년 UN에 제공하였으며 '16년 협정 개정 이후 '17년부터 사업비 150만달러(신탁기금) 제공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기술협력 신탁기금 협정 (조약 제1790호, 2006. 6. 27)

제1조

1. (생략)
2. 행정자치부는 사업문서에 기술된 사업을 위한 유엔경세사회국의 지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련 국내 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연간 예산이 책정된 후에 매년 총 미화 1백만 불*을 유엔경제사회국에 기탁한다. 행정자치부는 또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업사무소의 건물·집기·시설 및 비품과 건물의 청소·유지·보수 및 보안에 필요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3. 행정자치부 및/또는 대한민국의 다른 부처가 인력서비스를 사업사무소에 제공할 경우 유엔경제사회국에 비용을 부담시킴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동 인력은 사업사무소를 위한 업무처리에 있어 오직 사업사무소 소장의 지휘만을 받도록 한다. 행정자치부 및/또는 대한민국의 다른 부처가 그들의 정규 직원을 파견 형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러한 파견의 구체적 조건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다.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기술협력 협정 개정(조약 제2298호, 2016. 6. 29)에 따라 150만불로 변경

② 추진경위

- ’05. 5.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 "서울 선언"에서 지원계획 발표
- ’06. 6.「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기술협력 신탁기금 협정」(조약1790호) 체결
- ’06. 9. 유엔거버넌스센터 설립 (제1기, ‘06～’15)
- ’16. 6.「국제연합 사업사무소에 관한 협정」(조약2301호) 체결
- ‘16. 7. 제 2기 센터 (‘16～’30) 출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 사업규모 : 25.17억원(신탁기금 19.6억, 센터운영비 5.57억)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UN거버넌스센터)
- 사업 수혜자 : UN회원국

3)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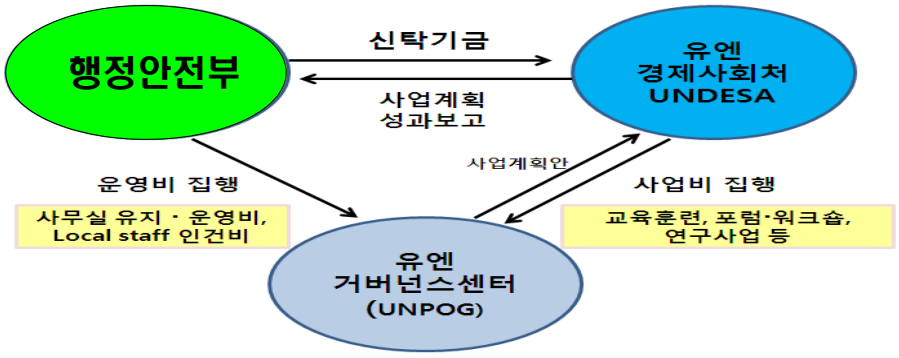

○ 신탁기금
- 한국정부(행정안전부)가 유엔경제사회처(UNDESA)에 기금 공여 → DESA와 유엔 거버넌스센터간 협의된 사업에 대해 UNDESA가 직접 집행

○ 센터운영비
- 시설운영장비, 파견인력 인건비 등은 행정안전부 예산에서 직접 집행 및 지원

사 업 명
2. 행정안전부정보화(정보화) (7031-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500
명칭	행정안전행정지원	행정안전정보화(정보화)	행정안전부정보화(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행정안전부정보화 (정보화)	2,411	5,655	5,655	5,959	3,713	4,513	△1,142	△20.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하모니(업무관리)시스템 운영 · 개선

- 부내 정보시스템 기반 업무처리 지원을 위한 하모니시스템의 안정적 · 효율적 운영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업무효율성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

○ 부내 정보시스템 웹접근성·호환성 진단

- 부내 대국민 웹사이트 정보검색 편의 개선을 위한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진단
- 웹 개방성・무결성(데드링크 오류로 인한 신뢰도 하락 방지) 확보 등 컨설팅

○ 정보기술아키텍처(EA) 운영 및 관리

- 부내 정보자원(정보시스템)의 체계적 관리로 정보자원 운영·관리 최적화 및 효율성 향상
- 정부업무평가(범정부 EA 성숙도 평가) 대응(6~10월)
- 부내 정보화 사업 및 정보자원 등 EA정보 현행화(상시) 수행

○ 부내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효율화 등

- 재난안전데이터 개방시스템의 유지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오픈API 서비스 제공 (개방데이터의 점검 및 연계시스템 관리 등)

○ 부내 사이버보안

- 부내 PC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기술지원
- 부내 정보보호시스템 노후화 장비 교체, 부내 PC 백신 등 SW 라이선스 구입
- 부내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등 정보보안 컨설팅

○ 부내 전산장비·SW 관리

- PC 장애복구 및 이용불편을 지원하기 위한 PC 및 N/W 운영
- 내용연수(5년) 경과에 따른 노후 PC・모니터 교체

○ 부내 개인정보 보호

- 본부·소속·산하기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 이행점검 및 컨설팅
- 구글 등 외부포털 대상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및 조치
- 부내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관리시스템의 노출 상시점검
- 정보화 전문교육 운영, 정보화 발전 유공자 포상, 부내 정부업무평가(정보화분야) 평가 대응 등

○ 업무 기반시스템 운영·관리

- 행안부 대표홈페이지의 상시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웹 서비스 운영·관리
- 부처 생산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제공을 위한 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록물 보존처리, 정책정보 제공을 위한 행정자료실 운영, 본부 및 소속기관 자료실 도서 관리시스템 통합운영·유지보수
- 관보를 PDF로 전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하모니(업무관리)시스템 운영·개선

- 전자정부법 제25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규정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34호)

○ 부내 정보시스템 웹접근성·호환성 진단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동법 시행령 제14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 부내 정보기술아키텍처(EA) 운영 및 관리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제2항
- 전자정부법 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제2항
- 전자정부법 제23조(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및 시행령 제19조(전자정부서비스의 통합에 대한 기준 및 절차)
- 전자정부법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 부내 사이버보안

- 전자정부법 제24조(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동법 시행령 제20조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의 범위)
- 사이버(국가·공공)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 국정원 2017년도 국가기관 정보보안관리 실태 평가
- 행안부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안 수준 진단
- 국가·공공기관 업무망과 인터넷 안전한 자료전송 가이드라인

○ 부내 전산장비·SW 관리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57조(물품수급관리계획), 제65조(물품의 정비)

○ 부내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 부내 정보화교육 및 역량강화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1조(평가총괄관련기관) 및 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동법 시행령 제8조, 전자정부법 제53조(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의 수립 등)

○ 업무 기반시스템 운영·관리

- 전자정부법 제12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도서관법」 제40조 및 제41조(전문도서관 관련)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공포 및 공포의 절차), 관보규정 제14조의2(전자관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하모니시스템 구축 · 운영

- 2005. 10 ~ : 정부업무관리시스템 서비스 실시
- 2008. 7 : 통합 온나라(문서유통기능 포함) 도입
- 2010. 1 : 망분리에 따른 외부포털 구축(망분리사업)
- 2012. 3 : 모바일 업무포털 서비스 구축
- 2012.10 : 하모니 문서보안(DRM) 서비스 구축
- 2014. 12. ~ : 클라우드 저장소 연계, 장관과의 대화방 민원 처리 기능 등 개발
- 2016. 5. ~ : 전자우편 및 메신저 정부표준 시스템 교체 지원
- 2018. 5. ~ : 업무포털 시스템 디자인 및 게시판 개편

○ 부내 정보기술아키텍처(EA) 운영 및 관리

- 2006 : EA 기반의 중장기 정보화계획 수립 및 정보자원관리 기반 구축
- 2007 : 안정적 EA정보관리 및 운영을 위한 장비도입 사업
- 2008～ : EA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 2014 : 정보화지원시스템 구축(EA관리시스템 및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통합)
- 2015 : EA정보 현행화(125개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모바일 대민 서비스 포함) 운영성과 측정
- 2016 : 정보시스템 현황 관리 및 기능활용도(FP산정) 점검

○ 재난안전데이터포털 유지관리

- 2013. : BPR/ISP 추진(舊.소방방재청)
- 2014. : 포털 구축(게시판 형태) 및 오픈API 시범개발(舊.국민안전처)
- 2015. : 포털 고도화 및 오픈API 확대
- 2016. : 오픈API 확대(4종) 유지관리
- 2017. : 오픈API 확대(5종) 유지관리('17.7.26. 행정안전부 이관)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등 정보보안 진단

- 2008.7.～2018.12.12. : 정보보안 지침 및 메뉴얼 정비, 홈페이지 웹 취약점 점검,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점검, 소속・산하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해킹메일 대응 모의훈련 등

○ 부내 개인정보 보호

- 2011. 09.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노출시 징역 등 처벌수위 강화
- 2011 ～ 2016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 사업 추진
- 2012 ～ 2016 : 우리부 개인정보보호 법적의무조치사항 이행점검 및 컨설팅
- 2013. 09. : 부내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2016. 09. :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규칙 개정・시행으로 의무사항 증가
- 2017. 12. : 개인정보보호법령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정
- 2020. 02. : 개인정보보호법령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정

○ 행안부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개선

- 1998.04. : 대표 홈페이지 개설
- 1999.10. : 대표 영문홈페이지 개설
- 2000～2010 : 기능 개선, 운영・서버보강, 웹접근성 개선 등
- 2013.07.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4개 홈페이지 통·폐합
- 2016.11. : 대표 홈페이지 반응형 웹 개편
- 2017.07. : 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처 홈페이지 통합(하부 콘텐츠 등)
- 2018.03. : 대표 홈페이지 안정성 강화 사업(G클라우드 전환사업)

○ 자료관 전산화

- 2000 : 도서관리전산시스템 및 자료실 홈페이지 구축
- 2002 : 자료관 홈페이지 전용 웹서버 구축
- 2003 : 서버통합보안시스템 구축
- 2005 : 자료관시스템(기록물)구축 및 기록물 DB 구축

- 2006 : 기록물 검색활용시스템 구축
- 2013 : 본부 및 소속기관 도서관리시스템 통합
- 2014~ : 부내 도서관리시스템(4개) 통합 유지보수 실시

○ 전자관보시스템 홈페이지

- 1948. 9. : 대한민국 종이관보 제1호 발행
- 1961. 1. ~ 2010. 6. : 외주위탁 발행(삼화인쇄소, 코리아헤럴드)
- 2001. 1. : 전자관보 서비스 개시(부내 대표 홈페이지 게시판)
- 2007. 2. : 전자관보시스템 구축·운영(별도 웹호스팅 개시)
- 2010. 7. ~ : 종이관보 행자부(법무담당관실) 자체발행
- 2015. 1. : 전자관보 서비스 부내 대표 홈페이지 內 통합
- 2017. 11. : 반응형 웹 등 전용 사이트로 전자관보 전면개편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4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국민

3)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	계약요청	→	조달청 입찰	→	
제안서 평가	→	최종 업체계약	→	사 업 추 진	→	
검 사 및 완 료	→	운영 및 유지관리				

사 업 명
3. 정책연구개발(R&D) (70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00
명칭	행정안전행정지원	정책연구개발	정책연구개발(R&D)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 확정(B)		
정책연구개발(R&D)	981	1,100	1,100	1,155	1,155	1,155	55	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정현안을 내실 있게 추진하며, 법령 제도 개선 및 새로운 시책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9조(대통령령)

② 추진경위

- 시작년도 : 1999년도
- 추진배경
  - · 정부출연기관 정비계획(1998.5.13.)에 따라 그간 정부출연기관에 지원하던 출연금을 출연금(70%)과 정책연구비(30%)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운용
  - · 정책연구개발비에 계상된 연구용역을 각 출연연구기관간 경쟁을 통해 수주토록 함으로써 경영효율화 도모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9 ~ 계속
- 사업규모 : 예산 범위 내에서 주요 현안과제 연구 수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정책연구과제 수요 부서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각 부서) ⇒ 사전 검토(정책평가담당관실) ⇒ 정책연구용역과제 심의·선정(정책연구심의위원회) ⇒ 정책연구용역과제 선정결과 각 부서 통보 ⇒ 각 부서 용역 추진 ⇒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 ⇒ 용역결과물 제출 및 공동 활용

사 업 명
4. 성과관리 및 행정효율성제고 (70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3	300
명칭	행정안전행정지원	부내행정지원	성과관리및행정효율성제고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 확정(B)	(B-A)	(B-A)/A
성과관리 및 행정효율성 제고	329	344	344	461	330	330	△14	△4.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통해 정책과제의 효율적 수행 및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 성과 제도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공정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성과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참여식 교육을 통한 직원 업무역량 함양
-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4조(성과관리의 원칙), 제5조(성과관리전략계획),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제23조(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 제24조(평가예산) 등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평가 대상), 제7조의2(평가항목), 제9조(성과계약의 체결), 제12조(근무성적평가의 대상) 등
-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인재개발)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0조(공무원의 자기개발 등), 제13조(위탁교육훈련), 제14조(직장훈련) 등

② 추진경위

○ 성과관리 운영

- 성과관리시스템 구축(‘05.6.) 및 시범운영(‘05.7.～9.)
- 조직 및 개인 성과평가 실시(‘06~)
-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06.12.)
- 역량평가시스템 구축(‘07.12.)
- 성과관리시스템 이전 및 고도화(‘17.10.~’18.6.)

○ 행정효율성 제고

- 2005년도 부처 맞춤형 혁신교육 최초 사업 실시
-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 구성원의 상황적응적 역량 강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참여식 교육과정 운영 필요
-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통한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필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5 ~ 계속
- 사업규모 : 정부업무평가 수행, 부내 성과평가,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부내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부내 성과평가계획 수립 → 성과평가 시행 → 성과평가 결과 인사부서 제출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2조 ○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지침(국무조정실) →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국회 제출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4조, 제5조, 제6조 ○ 역량교육 기본계획 수립 → 교육기관 선정 → 교육 실시 → 교육만족도 조사

사 업 명
5. 고객만족관리 및 이미지제고 (70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3	301
명칭	행정안전행정지원	부내행정지원	고객만족관리및이미지제고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고객만족관리 및 이미지 제고	1,326	1,361	1,327	1,629	1,629	1,629	302	22.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고객중심 행정 및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운영을 통한 대국민 만족도 제고 및 신뢰 학보
- 주요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 형성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행정서비스헌장규정 등
-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7조(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14조(민간홍보전문가의 채용), 제16조(언론에 대한 브리핑 등), 제17조(정책보도 모니터링 등) 등

② 추진경위

- 2005. 7. : 부내 고객관리시스템(CRM) 구축 및 서비스 개시
- 2007.12. : 권익위 연계 행정안전부 민원안내 콜센터 개설(MOU 체결) 및 운영
- 2015. 1. : 고객관리시스템 서비스 전환(행자부 홈페이지 및 하모니시스템에 통합)
- 2007. ~ : 사이버서포터즈 운영을 통한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06 ~ 계속
- 사업규모 : 고객(정책)만족도 조사, 부내 민원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민원 관련 제도개선, 정책홍보 업무추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민원행정 및 정책홍보 업무관련 내부직원과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6. 행정한류네트워크구축운영 (7034-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4	303
명칭	행정안전행정지원	국제행정발전지원	행정한류네트워크구축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행정한류네트워크 구축운영	706	2,536	2,495	795	695	695	△1,800	△72.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행정한류네트워크 고위급 네트워크 구축·운영**) 해외 각국과 공공행정 협력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하여 각국 장차관급 인사 및 외교사절에 우리 공공행정 혁신사례 홍보 및 협력방안 논의

- 행정장관회의 및 고위급 양자회의 개최

· 고위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가별 관심분야별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여 해외 각국의 협력 요청을 분야별로 대응하고 지원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위상 제고 및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로 활용

·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경험 및 노하우전수 요청이 급증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주제로 장관회의 개최 예정

- 주한 외교사절단 기관방문 프로그램 운영
  · 주한 외교단 초청, 우리나라의 공공행정 법·제도·시스템 등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각 기관의 우수행정 콘텐츠 홍보
  · 공공행정 국제협력 네트워크 기반 강화 및 해외 협업 결실 도출
- 주한외교사절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 대형·복합 재난의 발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재난정보 접근성 제고 및 안내 추진을 통해 안전한국 이미지 제고 및 자국민 보호에 대한 안내를 통해 대국가신뢰도 고취

○ **(공공행정협력단 구성·운영)** 각 부처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협력 대상국을 방문하여 공공행정 협력포럼, 분야별 양자협력 등을 추진

- 해외 각국의 공공행정 협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의 우수한 공공행정 제도 및 시스템 해외 확산 기대
  · 이를 통하여 해외 각국의 행정발전에 기여함으로서 국가이미지 제고
  · 우리 우수 인력 및 기업(ICT, 컨설팅 업계)의 해외진출 지원
- 코로나19 대응 경험 및 노하우 공유
  · 재난대응 체계, 선거관리, 공무원 시험 관리, 경제활성화(긴급재난지원금),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 이행
  · 공공행정 발전경험을 신남방 핵심파트너인 아세안 전 지역과 공유, 상생번영의 공동체 구성에 기여
  · 신북방 대상인 우즈벡, 카자흐 등 CIS 국가의 공공행정 발전을 지원하여 해당지역과 경협관계 뒷받침
- 유엔(UN)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16조 '모두가 접근가능한 포괄적 행정제도 확립' 구현에 기여

○ **(행정한류 범정부적 공유 및 확산)** 범정부 행정한류 관련 정보 공유와 협업 촉진

- 범부처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행정한류 협의체를 운영하여 우수 행정한류 확산 사례 공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 **(행정한류 콘텐츠 개발)** 국제협력에 적합한 범부처 공공행정분야 우수사례 발굴 및 다양한 홍보물 제작

- 개도국,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에 공유·확산 가능한 범부처 공공행정분야 우수사례 발굴 및 행정한류 홍보영상, 책자 등 우수콘텐츠 제작을 통해 행정한류 확산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 제25항 내지 제27항 등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 제17조 등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4조

② 추진경위

- ‘14. 6. :「UN공공행정포럼」한국유치 및 개최
  ※ UN 회원국 정부기관 및 공공행정 유관기관 133개국 1,570명 참석
- ’15. 3. : 한-아프리카(1+5) 행정장관 회의 개최, 아프리카 4개국*과 공공행정분야 MOU 체결
  ※ 에티오피아, 우간다, 르완다, 탄자니아
- ‘16. 5. : 한-중남미(멕시코, 콜롬비아) 공공행정 협력단* 파견
  ※ 공공행정 협력단: 여러부처가 협업하여 한국의 우수 공공행정 사례를 포럼 및 전시를 통하여 종합 홍보, 고위급 회담·실무자급 기관방문 워크숍 등 병행
- ‘16. 8. : 한-중앙아(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공공행정 협력단 파견, 한-우즈벡 국가기록 협력 MOU 및 한-아제르 전자정부 협력 MOU 체결
- ‘17. 7. : 한-IDB-중미 행정장관회의 개최 및 한-중미 및 한-칠레 공공행정협력단 파견(코스타리카, 칠레)
- ‘18. 7. : 한-체코 공공행정협력단 파견(5개 부처 1개 지자체 협업)
  ※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통계청, 경찰청, 조달청, 대구시 등
- ‘18. 12. : 한-세르비아, 한-포르투갈 공공행정협력단 파견(5개 부처 협업)
  ※ 행정안전부, 경찰청, 인사처, 통계청, 권익위 등
- ‘19. 3. : IDB와의 공공행정협력 MOU 갱신 서명
  ※ 기존의 전자정부 및 주민등록 등 분야에서 재난관리 분야까지 협력범위 확대
- ‘19. 4. :「UN공공행정포럼」한국 유치
  ※ UNDESA 사무차장, 한국의 ’14년 개최 경험을 높이 평가하여 ’20년 포럼 개최 제의(‘18.10월) 및 우리측 포럼 유치 의향서(장관 명의) 유엔측에 전달(‘19.4월)
- ‘19. 9. : 한-아세안(태국, 미얀마) 공공행정협력단 파견(5개 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협업)
  ※ 행정안전부, UNPOG, 인사처,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 ‘20. 6. : 유엔 공공행정의 날(6.23) 기념 행사 개최(유엔·행안부 온라인 공동 주최)
  ※ 고위급 라이브 패널토의, 공식 웹사이트 운영 등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5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행정한류 네트워크 구축 및 공공행정 협력단 파견 추진 흐름도>

행정한류 수요 파악	▶	분야 및 국가 선정·협의	▶	수요국 현지실사 및 범부처 협력단 구성운영	▶	장관급 회의, 전시회·설명회 등 컨설팅	▶	성과평가, 후속사업 추진, 사후관리 등
행정한류 네트워크 및 국내 협의체		국내 협의체		국내 협의체		행정장관회의 개최, 협력단 파견 및 포럼 진행		부처, 행안부, 전문기관

< 주한외교사절 대상 공공행정 우수사례 설명회 추진 흐름도>

주한외국 공관 등 대상 공공행정 우수사례 수요 파악	▶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대상 국제 교류·협력 수요조사	▶	연중 운영계획 수립	▶	공공행정 우수사례 설명회 개최	▶	추진결과 평가, 후속사업 등 사후관리

사 업 명
7. 정책기획위원회운영 (7035-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00
명칭	행정안전행정지원	위원회운영지원	정책기획위원회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정책기획위원회운영	9,358	9,362	9,146	8,709	8,709	8,391	△755	△8.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의 점검・조정 및 국정과제 보고회 지원 및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정책방향 수립에 관한 자문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아세안 및 인도 등 신남방정책 대상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안보・경제・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소득주도성장 관련 주요 현안과제 연구, 소득주도성장 정책 공감대 확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17.9.5.)

② 추진경위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신설 발표('17.7.19,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회)
  *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해 100대 국정과제 관리 및 일자리 등 국정과제 관리 위원회 총괄"
-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및 시행('17.9.5.)
- 정책기획위원회 내에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설치('18.8.28.)
- 정책기획위원회 내에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설치('18.9.6.)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7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정책기획위원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 사업 수혜자 : 대한민국 국민, 신남방정책 관련국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정부혁신조직실

2021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1. 생활공감정책추진 ····· 71
2. 정부조직진단관리 ····· 73
3. 책임운영기관제운영 ····· 76
4. 정부기능분류시스템운영(정보화) ····· 79
5. 전자문서소통시스템(정보화) ····· 83
6.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운영(정보화) ····· 89
7. 행정생산성향상지원 ····· 92
8. 정부혁신국제네트워크강화 및 대외신인도제고 ····· 96
9. 민원제도 및 서비스개선 ····· 99
10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 102
11 정보공개활성화(정보화) ····· 106
12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정보화) ····· 109
13.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정보화) ····· 112

사 업 명
1. 생활공감정책추진 (1234-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00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 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4	300
명칭	지역발전	생활공감정책추진	생활공감정책추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생활공감정책 추진	267	267	267	266	236	236	△31	△11.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사항을 발굴·제안하여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편익증진 도모
- 시・도정 정책 모니터링, 정책현장 참여활동 및 나눔・봉사활동 활성화
- 생활공감 국민행복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으로 온라인을 통한 정책참여 활성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민 제안 규정’ 제25조 제3항(생활공감정책 과제공모·발굴노력 등)

② 추진경위

- ’08.11. 생활공감정책 중심추진체로 전국 주부모니터단 구성 착수
- ’09. 2. 제1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출범(3,041명)
- ‘10. 2. 제2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출범(10,258명)
- ’11. 3. 제3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출범(10,036명)
- ’13. 5. 제4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출범(5,084명)
- ’15. 3. 제5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출범(4,036명)
- ’17. 3. 제6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출범(3,858명)
- ’19. 3. 제7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출범(2,565명→2,450명(’20.5 정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사업규모 : 17개 시도 2,450명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활동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추진 절차

–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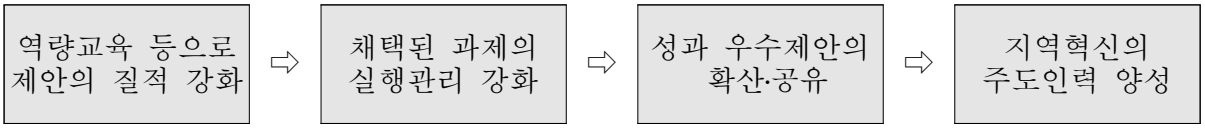

사 업 명
2. 정부조직진단관리(19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010	015
명칭					분야명	부문명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1	300
명칭	정부혁신조직	책임운영기관제운영 및 정부조직진단관리	정부조직진단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정부조직진단관리	756	690	690	1,546	1,356	1,206	516	74.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부조직 진단·컨설팅을 실시하여 기구·인력 운영 효율화 및 기능수행체계 개선, 각 부처 조직관리 역량 강화 지원

○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정부조직 운영방안 설계 및 정책·제도 개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② 추진경위

○ 조직진단 도입 준비(2003년)

- 03. 3. 정부조직 인력의 효율적 운영방향 수립 필요성 제기
- 03. 7. 「행정개혁로드맵」에 상시적 조직진단 실시 반영('04. 이후)
- 03. 12. 「조직진단·변화관리 매뉴얼」 개발

○ 부처별 조직진단 추진(2004.~2006.)

- 04년 재경부, 국조실 등 17개 부처 조직진단 실시
- 05년 과기부, 정통부 등 16개 부처 조직진단 실시
- 06년 인사위 등 8개 부처 조직진단 실시

○ 조직진단 전담조직 설치·운영(2007.~2009.)

- 07년 바람직한 정부조직 재설계를 위한 포럼 등 운영
- 08년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 지원(특별행정기관 이관 등)
- 09년 대국대과제 하부조직 재정비 및 국정과제수행체계 진단 등

○ 현안과제 진단 및 융합행정 추진(2010.~2012.)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다수부처 관련 문제해결형 조직진단 추진(2013.~2014.)

○ 현안과제 및 일선집행기관 등 진단(2015)

○ 대규모 인력충원 분야 효율화 방안 진단, 다문이주민+센터 도입 등(2017)

○ 국민참여형 조직관리 방안 도입, 다수부처 협업모델 신규확산 추진 등(2018)

○ 조직 유연성 제고를 위한 긴급대응반 설치·운영, 벤처형 조직 도입 등(2019)

○ 조직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신규인력 및 협업정원 평가 실시 등(2020)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4년~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3)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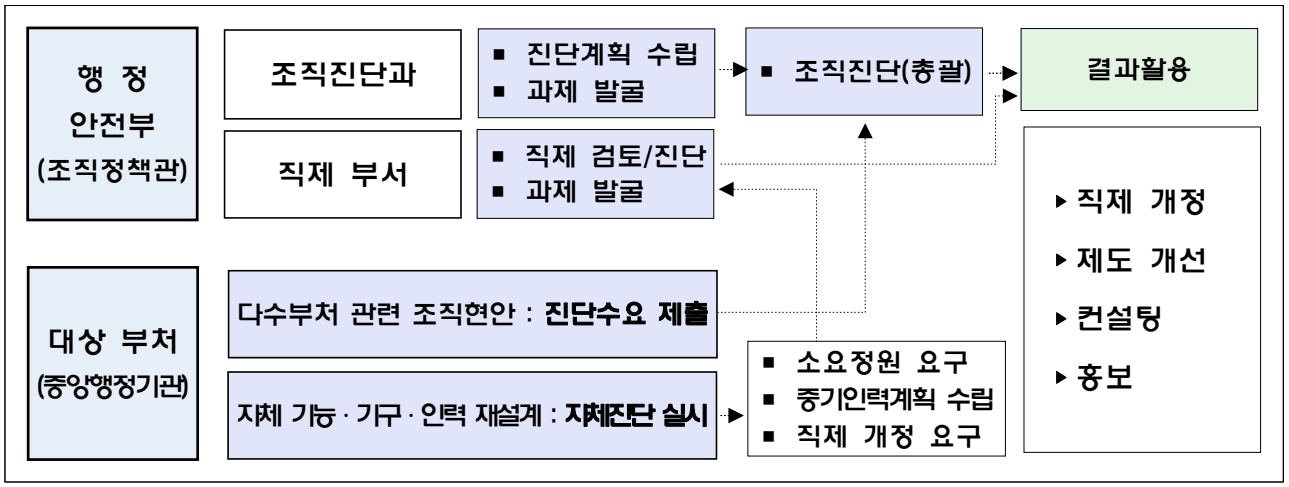
행 정
안전부
(조직정책관)
조직진단과
직제 부서
▪ 진단계획 수립
▪ 과제 발굴
▪ 직제 검토/진단
▪ 과제 발굴
▪ 조직진단(총괄)
결과활용
▸ 직제 개정
▸ 제도 개선
▸ 컨설팅
▸ 홍보
대상 부처
(중앙행정기관)
다수부처 관련 조직현안 : 진단수요 제출
자체 기능 · 기구 · 인력 재설계 : 자체진단 실시
▪ 소요정원 요구
▪ 중기인력계획 수립
▪ 직제 개정 요구

사 업 명
3. 책임운영기관제운영 (19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1	301
명칭	정부혁신조직실	책임운영기관제운영 및 정부조직진단관리	책임운영기관제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책임운영기관제운영	441	461	461	564	447	447	△14	△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책임운영기관에 행·재정상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성과지향적 정부조직모델 정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② 추진경위

- ’99년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1월)·시행령(7월) 제정
- ’02년 : 하부조직 설치·운영 자율화(총리령·부령→기본운영규정), 초과수입금 사용범위 확대 및 사용절차 간소화
- ’06년 : 업무유형 구분(행정형, 기업형), 인사·예산상 자율성 확대
- ’09년 : 기관장 채용시 행안부 협의 절차 폐지, 운영위원회 통합
- ’11년 : 업무유형 세분화(행정·기업형 → 조사연구·교육훈련·문화·의료·시설관리형), 중기관리계획을 통한 체계적 관리, 우수기관 평가유예제 도입 등
- ’12년 : 고객만족도 통합조사 실시(각 기관 개별 실시 → 행안부 통합 실시) 민간 출신 기관장 최초 임용기간 확대 (2년→3년) 등
- ‘13년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추가 지정 등 총 38개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1개 중앙책임운영기관 운영
- ’14년 : 기탁물품 접수특례 대상기관 확대, 임기제공무원 임용비율 확대(30%→50%), 복수직급 허용범위 확대(정원의 15%→1/3) 등 책임운영기관 자율성 증대
- ‘15년 : 기관장 전문임기제 임용, 성과 탁월 기관장 임기 연장(5년→8년), 기본운영규정 개정 시 소속부처 사전승인 원칙을 사후통보로 변경, 종합평가 결과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11개 기관 추가지정 및 1개 기관(울산지방해양수산청) 지정 해제
- ’16년 : 소속책임운영기관 2개 기관 추가 지정(국립수목원, 국립기상과학원), 1개 기관 지정 해제(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총 49개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1개 중앙책임운영기관 운영
- ‘17년 : 의무직렬의 임기제공무원 활용 범위 확대(계급별 정원의 50%→80%)
- ‘18년 : 1개 기관(화학물질안전원) 추가 지정, 총 50개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1개 중앙책임운영기관 운영, 관대화 개선 및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한 평가지표 개선
- ‘19년 : 2개 기관(궁능유적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추가 지정, 총 52개 소속책임운영기관과 1개 중앙책임운영기관 지정·운영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4년~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3) 사업 집행절차

책임운영기관 지정	종합평가	환류 및 보상	제도개선
• 부처 협의 • 심의·의결(운영위) •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개정	• 평가대상 : 소속책운 • 자체평가(1 ~ 2월) • 종합평가(2 ~ 4월)	• 평가결과 공표(5월) • 책임운영기관 워크숍 (우수기관 포상 등) • 우수성과 공유대회 개최(10월)	•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법령 및 지침 개정
연중	1~4월	5~10월	연중

사 업 명
4. 정부기능분류시스템운영(정보화)(1932-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2	500
명칭	정부혁신조직	민원처리개선	정부기능분류시스템운영(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정부기능분류시스템 운영(정보화)	459	1,038	1,038	483	483	483	△555	△53.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부기능분류시스템 유지관리·운영) 정부업무기능의 분류정보 제공 등 전자정부의 원활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서비스 운영

- (정부조직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운영) 국가행정조직의 인력·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지원 및 대내외 조직통계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서비스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과

① 법령상 근거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18.3.30 개정)

제10조의2(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의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정부조직통계, 정부기구도, 정부조직관리지침 및 그 밖에 조직 관련 제도 등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부조직관리정보"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원활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관련 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이나 시스템의 연계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관리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등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과 정부조직관리정보가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

- 정부기능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규정('08.1.28 제정)

제8조(정부기능분류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이 기능분류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계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보화시스템(이하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이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을 이용한 기능분류와 연계정보의 공동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정보시스템과 정부기능분류시스템간 연계)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신·수신 및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처리절차 등을 통합하여 구축한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부기능분류시스템과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기능분류시스템과 다른 행정정보시스템 간의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정부기능분류시스템의 활용)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의 확인, 기능별 업무량 분석, 그 밖의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등 행정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과

○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 ‘00.08 정부조직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05.12 정부조직정보관리시스템 개선(SC→WEB)
- ‘08.01 정부조직시스템 유지관리 통합운영
- ‘12.09 정원감사 등 기능개선
- ‘13.12 노후 운영장비(HW) 교체
- ‘16.08 정부 조직관리 정보시스템 업무처리개선방안 연구(BPR/ISP)
- ‘17.12 정부조직정보관리시스템 재구축
- ‘18.7 정부조직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19.10 데이터기반 서비스 강화를 위한 상용SW 확보

○ 정부기능분류시스템

- ‘04.11 정부기능분류시스템 BPR/ISP 수행
- ‘06.12 정부기능분류시스템 보완 등 고도화
- ‘07.12 전 중앙행정기관 확산 및 이용활성화
- ‘13.12 노후 운영장비(HW) 교체
- ‘18.7 고립망기관 운영지원 강화
- ’20.9 노후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계속
- 사업규모 : 전 국가행정기관, 일반국민, 연구자, 전자정부시스템 등 대상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3) 사업 집행절차

■ 기본계획 및 제안요청서 수립	행정안전부
↓	
■ 조달요청	행정안전부 ↔ 조달청
↓	
■ 사업자 선정	조달청 ↔ 행정안전부
↓	
■ 사업수행(직접수행)	행정안전부
↓	
■ 착수보고 및 완료보고	사업단

사 업 명
5. 전자문서소통시스템(정보화) (1932-5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일반계정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2	501
명칭	정부혁신조직	민원처리개선(정보화)	전자문서소통시스템(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전자문서소통시스템 (정보화)	4,147	6,470	6,470	11,346	11,346	11,346	4,876	75.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온-나라 문서시스템(클라우드 온-나라 포함)의 안정적 관리와 보안성 강화를 통한 정책결정의 신속성 및 투명성 제고
- 정부전자문서유통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보안성 강화를 통한 행정·공공기관 간 신속·정확한 전자문서 유통 제공 및 이용 활성화
- 온-나라 이음(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 민관 전자문서유통 서비스(문서24) 보안강화 및 대국민 이용편의 향상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온-나라(클라우드 포함) 문서시스템 운영≫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9조(업무관리시스템구축·운영 지원), 제20조(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에 의한 기안 및 시행)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정부전자문서유통센터 운영≫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5조(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동 규정 시행규칙 제22조(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등)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문서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를 둔다.

≪문서24 서비스 운영≫

- (2020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20.2월)) '디지털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 관련 디지털 기반 행정업무 효율화 추진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운영≫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6조의2(행정협업시스템의 구축·운영), 제46조의3(행정협업시스템의 활용 촉진)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6조의 2(행정협업시스템의 구축·운영)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협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공동작업 및 실적관리가 필요한 업무를 등록·관리할 수 있는 전자적 협업지원시스템(이하 "행정협업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6조의 3(행정협업시스템의 활용 촉진)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중 행정협업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실적 등 행정협업시스템 활용 실태를 평가·분석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차세대 전자문서유통시스템 구축(1차)≫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5조(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동 규정 시행규칙 제22조(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문서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를 둔다.

- (국정과제 8-4) ICT 첨단기술 활용 행정서비스 고도화 추진(문서24 서비스)
-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 1-1) 'All Digital 제로스탑' 정부서비스 완성
-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 4-3)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행정정보 인프라 구축
- (디지털 정부혁신방안 세부추진계획 2-1) 민원사무에 대한 자기정보 활용(문서24 내 공공웹서식 제공 등)

② 추진경위

≪온-나라시스템 운영≫

- '05. 7. : 행정자치부 업무관리시스템 및 기능분류시스템 구축
- '06. 3. : 시범부처 대상 업무관리시스템 확산(기획예산처 등 5개)
- '06. 7. ~ '07. 5. : 온라인 정부업무관리시스템 확산 추진
- '07. 1. : 전 중앙행정기관 업무관리시스템 서비스 개시
- '07. 5. ~ '07. 9. : 이용활성화를 위한 통합방안 연구
- '07.12. ~ '08. 7. : 온-나라 시스템 고도화 구축
- '08.12. ~ '09. 5. : 온-나라 시스템 고도화 확산
- '11. 9. ~ '11.11. : 온-나라 시군구 확산 1차 사업
- '11.10. ~ '11.12. : 온-나라시스템 모바일 사업
- '12.11. ~ '13. 2. : 온-나라시스템 이용기관 간 자료유통시스템 구축
- '13. 9. ~ '13.12. : 온-나라시스템 보안성 강화 1차 사업
- '14. 8. ~ '14.12. : 온-나라시스템·문서유통 보안성 강화 2차 사업
- '14. 7. ~ '14.12. : 모바일 온-나라 전자문서 결재기능 구축 사업
- '17. 1. : 비공개 5호~8호 문서를 대상으로 5급 이상 처리토록 범위 확대
- '17. 5., '17. 6.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신규 구축

- ‘17. 7. : 정부조직개편 온-나라 신규 구축 및 전환 지원
  * 해양경찰청(신규), 대통령경호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전환)
- ‘18. 1~ : 정부조직개편 온-나라 신규 구축 및 전환 지원
- ‘18. 2~ : 자치단체 온-나라 문서시스템 관리자·사용자 교육 추진(23회)
- ‘18. 1 ~ ‘18. 12. : 서비스 개선 요청 접수, 검토, SW 개발·배포 등 유지관리 프로세스 운영
- ‘19. 1 ~ ‘19. 12. : 정보공개 문서·목록분리 등 서비스 개선, SW 개발·배포 등
- ‘20. 1 ~ ‘20. 12. : 수신문서 자동접수·배정, 행정문안용어 순화 등 서비스 개선

≪클라우드 온-나라 시스템 운영≫

- ‘15. 8. ~ ‘16. 7. :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 1차 사업
- ’16. 8. ~ ’16.12. : 개인정보위원회 등 17개 기관 클라우드 온-나라 전환
- ‘16.11. ~ ‘17. 3. :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 2차 사업
- ‘17.5. : 일자리위원회 온-나라 문서2.0 신규 구축
- ‘17.7. : 소방청 온-나라 문서2.0 신규 구축
- ‘17.9. ~ ‘18. 3. :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 3차 사업(국무조정실 등 23개 기관 클라우드 온-나라 시스템 전환
- ‘18.1.~3. : 공동결재, 정책 실명·이력제 등 클라우드 온-나라 기능개선
- ’18. 2. : 민·관 양방향 온라인 문서소통시스템 고도화계획 국무회의 보고
- ‘18. 2. ~ 9. : 문서24 고도화를 위한 민·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3회)
- ‘18. 6. : 문서24 서비스 1단계 확대(‘18.6, 6종→12종)
- ‘18. 7. : 1단계 확대기념 대국민 이벤트 및 국민과 함께 만드는 BI공모전 추진
- ‘18. 9 : 문서24 서비스 고도화 구축 전면 개통(9.3)
- ‘18. 8. ~ ‘18. 12. :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 4차 사업(기재부 등 16개 기관 클라우드 온-나라 시스템 전환)
- ‘19. 11 : 한-아세안 공공행정 혁신 전시회 홍보
- ‘19. 1 ~ ‘19. 12. : 결재절차 간소화, 기록물이관항목 추가 등 서비스 개선, 클라우드 온-나라 시스템 전환(경남, 인천, 충북, 광주, 울산, 우본 등 6개 기관)
- ‘20. 1 ~ ‘20. 12. : 수신문서 자동접수·배정, 행정문안용어 순화 등 서비스 개선
- ‘20. 1 ~ ‘20. 12. : 클라우드 온-나라 시스템 확산(충남, 제주도, 인천시 서구, 경기도 구리시, 충남 보령시 5개 시도, 공수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개기관)

≪정부전자문서유통센터 운영≫

- '98.10. :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활성화 추진
- '99. 5. ~ '01. 7. : 전자문서시스템 간 전자문서유통 표준화 추진
- '00. 7. ~ '02.10. : 행정기관 간 전자문서유통(E-mail) 단계적 확대
- '01.12. ~ '02. 4. : 전자문서유통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추진
- '02.12. : 전자문서유통 확대를 위한「사무관리규정」개정
- '02. 8. ~ '03.12. : 정부전자문서유통센터 구축
- '03. 9. ~ '04. 3. : 신 전자문서시스템 행정기관 확산
- '04. 6. ~ '04.12. : 정부전자문서유통체계 고도화 ISP 사업
- '05. 6. ~ '05.12. : 정부전자문서유통체계 고도화 1단계 사업
- '06. 6. ~ '06.12. : 정부전자문서유통체계 고도화 2단계 사업
- '07. 7. ~ '06.12. : 정부전자문서유통체계 고도화 3단계 사업
- '09. 3. ~ '09. 8. : 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 확충사업
- '12. 5. ~ '12.11. : 공공・민간 간 유통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 '17. 3. : 정부전자문서유통센터 DB 동기화 솔루션 업그레이드
- '17. 4. : 문서유통 NAS 스토리지(2TB) 증설
- '17. 6. :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전자문서함 등 웹 취약점 조치
- '18. 11. ~ '18.12. :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보안성 강화 사업
- '19. 10. : 차세대 전자문서유통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문서24 서비스 운영≫

- '16. 7. ~ : 문서24 시범 서비스 실시(법인, 용역)
- '16. 10. : 문서24 서비스 확대(영유아 보육)
- '17. 2. : 문서24 서비스 확대(렌터카)
- '17. 2.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
- '18. 2. ~ : 문서24 서비스 고도화 계획, 국무회의 보고
- '18. 9. ~ : 문서24 고도화* 및 행정기관 모든 업무대상 전면 개통

  * 양방향 문서 유통체계(문서 제출 및 처리·결과 통지) 구축, 사용자 편의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 '19. 4. ~ 12. : 문서24 공공 웹서식 시범운영(고용노동부 서식 등 18종)
- '19. 7. : 문서24공공 웹서식 시범운영(6종), 이용활성화 제도마련(업무지침 시행 등)
- '19. 9. : 문서24 체계적인 홍보(이용사례집 발간, 전광판 표출, 홍보동영상 및 카드뉴스 등)
- '20. 12. : 문서24 공공웹서식 확대 및 모바일 문서24서비스 실시

≪온-나라 이음 시스템 운영≫

- '10.11. ~ '11. 2. : 디지털 행정협업체계 수립 BPR/ISP 실시
- '11.10. ~ '11.12. : 디지털행정협업시스템 시범구축

- ‘13. 9. ~ ‘13.12. :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나라e음) 구축
- ’14. 2. : 협업 활성화를 위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 ‘14. 4. :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서비스 개시
- ‘14. 7. ~ ’15. 2. : 범정부 행정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나라e음 2단계 사업 추진
- ‘15. 1. : 지자체로 서비스 확대
- ‘15. 2. : 권익위 민원상담서비스에 PC영상회의 적용
  * 세종청사 권익위 공무원과 서울사무소 방문 민원인 간 연결
- ‘15. 4. : 공공기관으로 PC영상회의 (인터넷망) 확대
- ‘15. 9. ~ ‘15.12. : 정부 의사소통 채널 통합 구축(나라e음 3단계) 사업 추진
- ‘16. 2. : 온-나라 이음으로 명칭 변경, 지방공기업으로 인터넷 PC영상회의 확대
- ‘16. 5. :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 개시
- ’17. 4. : 온-나라 이음 사용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통합 메인페이지 신설
- ’17. 6. ~ ‘17. 11. : 온-나라 이음 인프라 보강 및 보강강화 사업 추진
- ’18. 1 ~ 현재 : 온-나라 이음 안정적 운영 및 기능 개선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4 ~ 계속
- 사업규모 : 국민,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위탁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3) 사업 집행절차

≪행정안전부 직접운영≫

유지보수 계획 수립 - 온-나라 이음 (10~11월) ⇨ 사업발주(조달청) 및 사업자 선정 (12월) ⇨ 유지보수 사업추진 (매월 용역완료 후 집행) (다음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

유지보수 계획 수립 - 정부전자문서유통 - 온-나라시스템 ⇨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탁계약 체결 ⇨ 사업발주(조달청) 및 사업자 선정 ⇨ 유지관리 사업추진

사 업 명
6.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운영(정보화) (1932-5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2	506
명칭	정부혁신조직	민원처리개선(정보화)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운영(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	국회확정(B)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운영(정보화)	-	788	788	1,442	822	822	34	4.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상담(콜)센터 운영,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운영,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16조

○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 3-2-1. 민관협업 공유가능정부 서비스 도입

- 공공부문에서 보유·운영중인 자원을 정부·민간이 활용하여 공유경제 도입 및 확산 촉진

○ 국정과제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8-4. 국민이 공감하는 행정서비스 혁신 중 "민·관 공유서비스 시스템 구축")

○ 국정과제 26. 사회적경제 활성화("유휴 국·공유 시설 등의 사회적경제 기업의 활용을 촉진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공유 플랫폼 개발")

○ 국정과제 26. 사회적경제 활성화("일회성 구매를 최소화하고 공동 구매·활용 지원을 위한 플랫폼 개발")

② 추진경위

○ '17. 9~12 지자체 간담회 실시, 지자체 자원공유 실태조사

○ '18. 3 공공자원 공유 시범실시를 위한 지역협의회 개최

○ '18. 4~5 공공자원 현황 조사

○ '18. 5 공공자원 개방·공유 연계를 위한 간담회 개최(시흥,전주,김해)

○ '18. 4~10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구축 BPR/ISP 사업 수행

○ '18. 7 국무회의 보고

○ '18. 8~'20. 3 '정부24' 내 자원 공유 시범사업 실시

○ '19. 6~'20. 2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구축

○ '19. 12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기관담당자 설명회 개최

○ '20. 3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공유누리') 개통 및 운영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기본계획 및 제안요청서 수립	행정안전부
↓	
■ 조달요청	행정안전부 ↔ 조달청
↓	
■ 사업자 선정	조달청 ↔ 행정안전부
↓	
■ 사업수행(직접수행)	행정안전부
↓	
■ 착수보고 및 완료보고	사업단

사 업 명
7. 행정생산성향상지원(19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010	015
명칭					일반공공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3	300
명칭	정부혁신조직	행정효율성향상	행정생산성향상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	국회확정(B)		
행정생산성향상지원	403	452	452	989	657	657	205	45.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민체감형 행정제도 개선 추진)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행정제도 및 공공서비스 과제 발굴, 개선 추진,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
-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중앙우수제안 포상, 우수기관·유공공무원 포상 및 중앙우수제안 심사운영 등 제안 활성화, 국민참여 활성화

- (청원제도 활성화 추진)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청원참여 활성화
- (국민맞춤서비스 확산) 선제적 맞춤서비스 및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추진
- (공공서비스 품질관리 추진) 공공서비스 품질관리 확산을 위한 연구용역 및 자료 제작 등 추진
-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추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포럼 및 컨설팅, 우수사례집 제작 등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3조(제안제도), 공무원제안규정(대통령령) 및 동 시행규칙,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9조

② 추진경위

○ 국민체감형 행정제도 개선 추진

- 2004~2007년 : 행정개혁을 통한 제도 및 서비스 개선 추진
- 2008년 : 창조적 실용성을 바탕으로 공직사회 변화 추진
- 2009~2010년 : 주요 행정분야의 행정내부규제 개선 추진
- 2011년 : 취약계층지원, 국민편의제공 등을 위한 행정제도 개선 추진

○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

- 1971. 3. : 공무원제안제도 최초 실시(총리 지시)
- 1973. 7. : 공무원제안규정 제정(대통령령)
- 2006. 6. : 공무원제안규정 전면 개정(대통령령)
- 국민제안규정 제정('06.5.30.) 및 공무원제안규정 전부개정('06.7.1.)
- 2007. 5.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시스템' 개통
- 2013. 4. :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시스템을 확대 개편한 '국민행복제안센터' 개통
- 2016. 3. :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개통
- 2017. 1.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전부개정·시행
- 2020. 3. : 2020년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시행
- 2020. 4.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개정·시행

○ 청원제도 활성화 추진

- 1963년 : 「청원법」 제정
- 2007. 1. : 전자문서로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청원법」 개정
- 2019. 5. : 온라인 청원 등 내용을 구체화하여 의원입법 추진(이재정의원 발의)
- 2020. 6. : 21대 국회에서 의원입법 개정 재추진

○ 국민 맞춤형서비스 확산

- 2012. 7. :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정부3.0 구상』발표
- 2013. 6. : 비전 선포식 개최
- 2014. 5. :『2014 정부3.0 맞춤형서비스 추진계획』마련
- 2016. 2.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2016. 3.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전국 실시
- 2016. 8. :「맞춤형 혜택안내 서비스」개통
- 2017. 7.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대상 확대 및 구비서류 감축
- 2017. 8.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온라인 신청 개시
- 2017. 11.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온라인 신청 개시
- 2018. 5. :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개시
- 2018. 9.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재산조회 대상 확대
- 2019. 8. :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맘편한 임신」통합 제공 추진계획 마련
- 2019. 10. : 온라인 출생신고-행복출산 동시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고도화
- 2020. 3. : 대국민 공공개방자원 공유서비스 통합포털 '공유누리' 개통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04~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국민참여제도 확산

제안 신청 ⇒ 채택여부 결정 · 통지 ⇒ 행정제도 개선 ⇒ 자체우수 제안 추천 ⇒ 중앙우수 제안 선정

<각급기관> <각급기관→행안부> <행안부>

○ 행정제도 개선 추진

과제발굴 | 내부검토 | 부처의견 조 회 | 합동회의 | 개선방안 확정·보고

민생현장 방문, 지방공무원 토론회 등 실시 ⇒ 개선 방향의 타당성 검토 ⇒ 제도개선 가능성에 대한 검토 ⇒ 제도소관 부처·전문가 참여 등 조정회의 ⇒ 개선방안 확정 및 합동 홍보

사 업 명
8. 정부혁신국제네트워크강화 및 대외신인도제고 (1933-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3	302
명칭	정부혁신조직	행정효율성향상	정부혁신국제네트워크강화 및대외신인도제고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정부혁신 국제네트워크 강화 및 대외신인도 제고	368	350	350	3,925	2,950	2,950	2,600	742.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OGP 글로벌서밋 개최)** OGP(열린정부파트너십) 의장국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의장국이 주관하는 총회인 글로벌서밋 국제회의 개최 *임기: '20.10월~'21.9월

  ※ '19년 OGP 글로벌서밋 : 캐나다, 78개국 2,600여명 참가

- **(국제회의 참석)** 행정안전부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위원으로 참석하는 국제기구·협의체 정례회의* 참석경비

  * OECD 공공행정위원회, OECD 공공혁신 국가담당자회의, OGP 운영위원회 장관회의 등
- **(국제부담금 납부)** 행정안전부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위원으로 참석하는 국제기구·협의체에 납부하는 부담금(OGP, 국제행정학회)
- **(민관협의체 운영)** 열린정부 구현 및 OGP활동을 추진하기 우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민관협의체인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운영예산(연4회 분기별 개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34조 제1항, 행정안전부가 '정부혁신, 행정능률'에 관한 사무를 관장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제3항 1의2,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을 분장

② 추진경위

- '11. 12.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실무회의 참석(브라질리아)
- '12. 4. 제1차 OGP 글로벌서밋 참석(브라질리아)
- '13. 10. IIAS 아시아그룹 연례회의 참석(싱가포르)
- '14. 6. 제1차 OECD 아시아 공공거버넌스 포럼 참석(자카르타)
- '15. 10. OECD 공공거버넌스 관계장관회의 참석(헬싱키)
- '16. 5. OECD 공공혁신 국가담당자 회의(OPSI) 참석(파리
- '16. 12. 제4차 OGP 글로벌서밋 참석(파리)
- '17. 4. 제55차 OECD 공공행정위원회(PGC) 회의 참석(파리)
- '17. 9. OGP 고위급회의 및 운영위원회 장관회의 참석(뉴욕)
- '17. 10, OGP 최고의사결정기구 운영위원회 진출
- '18. 4. 제57차 OECD 공공행정위원회(PGC) 회의 참석(파리)
- '18. 5. OECD 공공혁신 국가담당자 회의 참석(브뤼셀)
- '18. 6. IIAS 총회 참석(튀니스)
- '18. 7. 제5차 OGP 글로벌서밋 및 운영위원회 장관회의 참석(트빌리시)
- '18. 11. OGP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 개최(서울)
- '18. 12. OGP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워싱턴)
- '19. 4. 제59차 OECD 공공행정위원회(PGC) 회의 참석(파리)
- '19. 5. 제6차 OGP 글로벌서밋 및 운영위원회 장관회의 참석(오타와)
- '19. 5, OECD 열린정부실무단(WPOG) 가입

- ’19. 9. OGP 의장단 회의(부에노스아이레스)
- ‘19. 10. OGP 의장국 선출(임기 ’19.10~‘20.9. 부의장국, ’20.10.~‘21.9. 의장국)
- ’19. 11. 제60차 OECD 공공행정위원회(PGC) 회의 참석(파리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4~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9. 민원제도 및 서비스개선 (1933-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010	015
명칭					일반공공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3	306
명칭	정부혁신조직	행정효율성향상	민원제도및서비스개선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563	530	530	874	790	790	260	47.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추진)

-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행정 추진상황 확인 · 점검 및 평가)

-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확인·점검·평가, 인증제 추진
-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확인 · 점검 및 평가를 통해 도돌이표민원 등과 같은 후진적 민원처리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인허가 등 규제 완화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97.8.22., 민원관련 독립규정)
  ·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민원운영실태 확인 · 점검 · 평가 등 규정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7855호, 전부개정 ‘06.3.3.)
-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차 회의 시 대통령 지시(‘08.3.13.)
  · 산업단지 인 · 허가 처리기간 등을 단축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 제도개선
-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차 회의 시 보고사항(‘08.4.30.)
  · 공무원의 행태 · 의식을 개선하여 인허가 민원처리기간 단축토록 제도개선
- 민원서비스 수준 상향 평준화를 위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12년)
- 장애인 · 임산부 · 노약자 등에 대한 민원편의 제공(‘12.12.20, 시행령 개정)
- 장차관 국정토론회의(‘13.3.16.)
  · 국민 중심의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 제도개선 강구
- 정부혁신 업무보고시 대통령 말씀(‘15.1.14.)
  · 국민의 입장에서 민원이 처리되도록 정책에 반영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15.8.11.)
  · 제명 변경, 민원 종류 및 처리절차 명확화, 헌법기관까지 법적용범위 확대 등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16.2.12.)
  ·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 감사부서 등에서 처리
-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추진
  · ‘16년 정부혁신 업무보고시 대통령 지시*(1.26.)
    * 도돌이표민원과 같은 후진적 관행을 개선하고 취약계층 민원 선제적 관리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전 행정기관(303개)에 대한 행자부 주관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실시 결정*(17.5.20.)
    * ’16년에는 중앙 · 광역 및 일부 기초지자체를 대상 시범평가 실시, ’17년부터 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년~계속
- 사업규모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사업비	140	533	533	563	530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추진≫

민원개선 지침시행 ⇒ 지침 설명회 ⇒ 과제발굴 (현장확인) ⇒ 개선과제 부처협의 ⇒ 개선안 수립을 위한 합동회의 ⇒ 결과보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 제39조(민원제도의 개선)

≪민원제도 운영≫

민원사무 간소화 추진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운영	행정서비스헌장 제도운영	민원공무원 역량강화
연중	연중	연중	수시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확인·점검·컨설팅 계획수립·시행 ⇒ 평가실시 (서면·설문) ⇒ 평가결과 분석 및 보고 ⇒ 우수기관 포상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확인·점검·평가 등), 동법 시행령 제49조(확인·점검 등) 및 제50조(평가)

≪국민행복민원실≫

추진계획 통보	시·도 자체 심사 및 추천	서면심사 및 현지확인	선정·발표
행정안전부→시·도	시·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사 업 명
10.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1933-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3	307
명칭	정부혁신조직	행정효율성향상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13,082	6,779	6,724	10,593	8,216	8,216	1,492	22.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부혁신추진기반구축)
  - ·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운영, 국민참여플랫폼 운영·유지보수 및 보안성 강화
  - · 정부혁신 추진성과 가운데 국민체감도가 높은 정부혁신사례 집대성 및 종합전시를 위한 박람회 개최

- (정부혁신 확산·홍보)
  · 정부혁신 4년차를 맞아 그동안 정부혁신 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 지속추진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접점을 넓힘으로써 전 국민 계층에게 정부혁신의 성과와 지속적인 추진의 필요성을 알리고 추진동력 확보 필요
- (정부혁신 컨설팅·평가단 운영)
  · 정부혁신 추진에 대한 기관별 성과평가와 우수사례 공유 및 기관별 컨설팅 실시
- (범정부 협업활성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 기관 간·기관 내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촉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 중심 서비스 제공 및 문제해결 능력 강화
  ·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디지털 기반의 혁신을 통해 업무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 (정부혁신전략추진단)
  · 정부혁신 3대 목표(삶의질, 신뢰, 부패) 관련 국가전체, 기초자치단체별 현황 조사에 따른 국민 삶의 질 변화 추이 분석 및 연계 정책혁신과제 발굴 추진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성과도출·확산을 위해 정부혁신 분과협의회별 핵심 추진과제 선정·연구용역 추진·확산, 정부혁신 교육 역량 강화 지원
- (국민공모 사회문제해결)
  · 세계 각국에서 운영 중인 시민참여 플랫폼 활용 모델을 우리나라에도 적용 투명하고 공개적인 공모 및 선정 후 정책반영 등을 통해 대국민 참여확대 및 정책효과 극대화
  · 국민중심의 정책, 국민이 공감하는 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해 국민이 직접 공공정책·서비스 설계 및 정책반영 추진
- (지방행정혁신 역량강화)
  · 지역의 제안·우수사례 등 혁신 성과의 발굴단계에서 더 나아가 타 자치단체로 확산을 지원하여 주민의 혁신 체감도 제고
  ·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 위주로 확산하여 성과확산의 마중물 제공 및 주민 삶의 질 개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34조제1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제12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1조~제46조, 제64조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5조의2('17.4월, 공공서비스디자인 개념 정의)
-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3항(지방자치분권실)

② 추진경위

-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수립 및 발표('18.3.19.)
-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수립·발표('18.3.19.) 이후, 지자체별 혁신 실행계획 수립(~5.20.) 추진
- 정부혁신 3대 전략을 지자체에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주민체감형 성과 창출을 위한 지방행정혁신 확산
- 국정과제(8번 :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지정('17. 7.)
- 대통령 신년기자회견('18.1.10.), 국무회의 대통령 모두말씀('18.1.16.)을 통해 정부혁신 필요성 말씀 및 종합 추진계획 수립 지시
-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 수립·발표('18.3.19.),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시행('18.7.19.),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및 정부혁신국민포럼 출범·운영('18.10.11.)
- 다수 국민들의 숨은 요구를 공공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정책· 공공서비스를 설계하는 방식 필요('14년)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4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방자치단체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9조)

3) 사업 집행절차

- 정부혁신전략추진단

< 정부혁신 추진 체계 >

정부혁신국민포럼

일반 행정팀 | 경제팀 | 사회 복지팀 | 교육·문화팀 | 안전·환경팀 | 디지털 팀

◈ 국민제안 발굴 및 숙성
◈ 포럼운영위원(국민)

↓

정부혁신 아젠다 발굴

정부혁신 추진협의회

중앙 부처 분과 | 디지털 혁신 분과 | 지자체 분과 | 공공 기관 분과 | 지방 공기업 분과 | 교육 기관 분과

◈ 국민제안 정책화
◈ 정부부처 + 민간위원 협의

우수 제안 / 이슈 ↑ 분과별 안건상정

정부혁신전략추진단 : 사무기구

- 국민디자인과제 운영

행안부		중앙·지자체
국민디자인과제 운영계획 통보	~2월	
⬇	3월	지원과제 공모 신청
지원과제 선정 및 통보	4월	⬇
⬇	5~8월	워크숍 및 컨설팅 지원 요청
권역별 워크숍 및 컨설팅		⬇
⬇	9~10월	성과보고서 공모 제출 및 발표
우수사례 발표 및 전국 확산	11~12월	

사 업 명
11. 정보공개활성화(정보화) (1935-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5	305
명칭	정부혁신조직	정보공개활성화	정보공개활성화(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정보공개활성화 (정보화)	5,361	4,279	4,279	6,761	4,279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보공개제도 운영활성화) 정보공개위원회 운영, 연차보고서 발간, 정보공개 교육 및 운영실태 평가 등 범국가 차원의 정보공개 운영활성화 지원으로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행정 투명성 확보

- (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한 기능개선, 장애예방, 서비스데스크 운영 등 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향상
- (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 '06년 구축이후 노후화된 시스템을 빅데이터 등 IT 신기술을 활용한 고도화를 통한 지능형 정보공개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98. 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시행
- '04. 1 : 전자적 정보공개, 행정정보의 공표 도입 등 정보공개법 개정
- '05.10 ~ '08. 3 :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 1~3단계 구축 및 개통('06.4)
- '09. 1 ~ '09. 7 :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시스템 웹접근성 개선
- '10. 6 ~ '10.12 : 공개정보목록 자동제공기관 확대, 검색 기능 등 개선
- '11. 6 ~ '11. 9 : 공공기관 이용확대(30개), 국민신문고 연계처리, 정보목록 검색 개선
- '12. 8 ~ '12.12 : 공공기관 이용확대(329개), 노후서버 교체, 모바일 서비스 실시
- '13. 8 : 정보공개법 개정(정보대상기관 확대, 원문정보 사전공개 근거 마련 등)
- '13. 8 ~ '15.12 : 원문정보공개시스템 1~3단계 구축 및 개통('14.3)
- '16. 3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으로 원문정보공개 확대
- '18. 3 ~ '19. 3 : 차세대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BPR/ISP
- '19. 9 ~ '20. 9 : 지능형 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1단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 사업규모 : 범정부적 해당(중앙, 지자체, 교육청, 공사・공단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전 공공기관 담당자,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정보공개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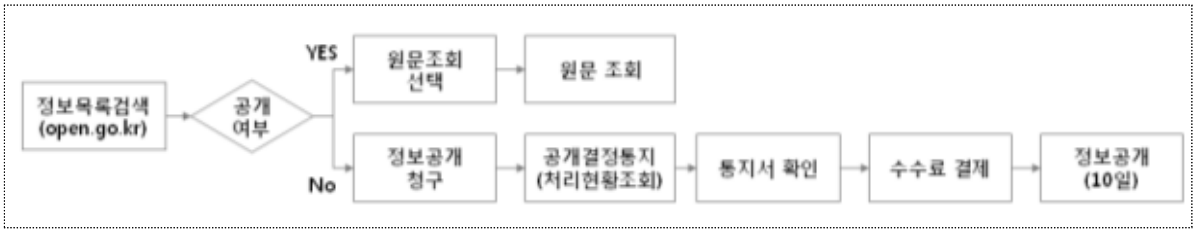

*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판단

○ 정보공개 운영기반 확충

- 정보공개법·제도 총괄/교육지원 등(행정안전부) → 정보공개운영(공공기관) → 운영평가 등(행정안전부)

○ 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 및 개선

- 기능개선요구(일반국민·행정기관) → 예산확보·계획수립·기능개선 사업추진(행정안전부) →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및 관리(일반국민·행정기관)

사 업 명
12.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정보화) (1937-5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0	010	015
명칭					일반공공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7	503
명칭	정부혁신조직	대민서비스기반확충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정보화)	4,960	12,851	12,851	13,692	13,366	13,366	515	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통합포털 유지보수 및 운영·대국민 행정서비스 확산) 국민이 행정서비스·정책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통합포털(정부24)의 안정적 운영 및 확산
  - *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없이 언제나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 정부가 생산하는 주요 정책 및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한곳에서 제공

-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추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중앙부처·지자체의 수혜서비스(현금·현물 등)를 수혜이력과 자격정보를 연계하여 '정부24'에서 모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 764호)
- 전자정부법 제20조(전자정부 포털의 운영)
- 전자정부법 제12조의2~4(공공서비스 지정 및 목록 통보 등, 등록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
- 전자정부법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9년 ~ '11년 : 대한민국정부포털 1~3단계 구축사업
- '12년 ~ '13년 : 대한민국정부포털 운영 및 이용활성화 사업
- '15. 10. : 행정서비스 통합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수립
- '16. 6.~ :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시스템 구축 1단계』사업 추진
- '17. 6 ~ '20. 4. :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시스템 구축 2단계』사업추진
- '17. 7. 26 : 행정서비스통합포털 『정부24』 공식 개통
- '20. 5 ~ :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중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2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기업 및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기본계획 및 제안요청서 수립	행정안전부
↓	
■ 조달요청	행정안전부 ↔ 조달청
↓	
■ 사업자 선정	조달청 ↔ 행정안전부
↓	
■ 사업수행(직접수행)	행정안전부
↓	
■ 착수보고 및 완료보고	사업단

사 업 명
13.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정보화) (1932-5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010	015
명칭					일반공공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2	508
명칭	정부혁신조직	민원처리개선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정보화)	-	-	-	2,698	710	710	710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응용·상용SW유지보수) 2019년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신규 구축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의 응용·상용 S/W 유지보수
- (헬프데스크 운영) 대국민·대기관 이용자 콜센터 운영 관리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7조 (전자적 민원처리) 및 제11조(전자적 고지・통지)

② 추진경위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및 미래형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 구축 ISP ('18.7~'19.1)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 구축 1차 사업 추진('19.6~'20.1.29)
- 정부24 모바일앱을 통한 주민등록등초본 시범발급('19.12.18)
- 운전경력, 병적증명서 등 12종* 전자증명서 추가 발급('20.2.14)
  * 지방세 납세증명,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 운전경력증명 등 12종
- 신분증 미소지 국내선 비행기(연간 1만명) 신분확인용으로 전자증명서 활용
  * 국토부와 협의하여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활용·시행('20.3.20.)
-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 NHN페이코(3.11.), 농어촌공사(5.27.)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행정·공공기관, 민간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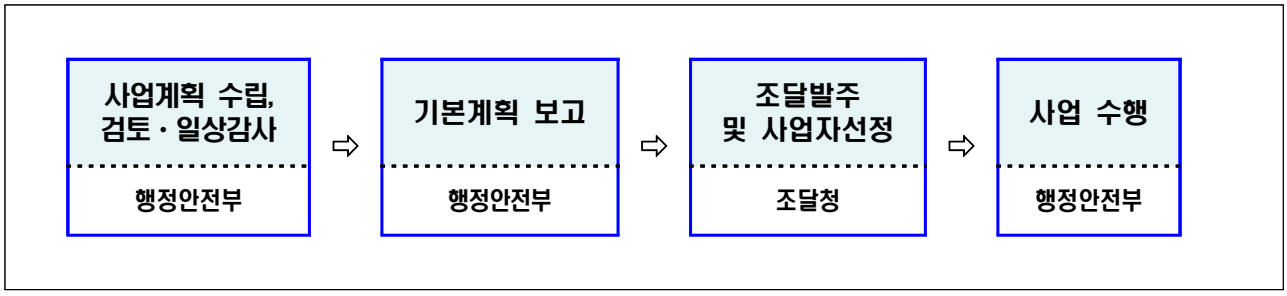

디지털정부국

2021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1. 전자정부지원(정보화) ····· 117

2. 지능형전자정부재설계 및 정책연구(정보화) ····· 120

3. 국가위임사무종합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 123

4. 행정공간정보시스템유지보수(정보화) ····· 126

5. 정보보호인프라확충(정보화) ····· 128

6. 전자정부 성과평가(정보화) ····· 133

7. 지식기반의행정구축(정보화) ····· 137

8. 첨단정보기술을활용한공공서비스촉진(정보화) ····· 140

9. 행정기관정보통신서비스이용환경고도화(정보화) ····· 143

10. 스마트폰기반의모바일전자정부구축(정보화) ····· 146

11. 정보화마을조성 및 활성화(정보화) ····· 149

12. ODA 중점협력국가 범정부 전자정부 협력지원(ODA) ····· 152

13. 전자정부분야국제교류협력(ODA,정보화) ····· 155
14. 전자정부국가간협력강화(정보화,ODA) ····· 158
15. 전자정부글로벌아카데미운영(정보화) ····· 161
16. 전자정부대외협력활동강화(정보화) ····· 164
17. 정보자원관리지원(정보화) ····· 167
18. 스마트워크센터구축 및 운영(정보화) ····· 175
19. 행정정보화지원 및 관리조정(정보화) ····· 178
20. 공공데이터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정보화) ····· 181
21.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화) ····· 186
22.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정보화) ····· 189
23. 지능형 서비스 확대 및 운영(정보화) ····· 192
24.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정보화) ····· 195
25. 공공서비스 민간개방 추진(정보화) ····· 198

사 업 명
1. 전자정부지원(정보화)(2031-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1	500
명칭	전자정부	전자정부실행기반마련(정보화)	전자정부지원(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전자정부지원(정보화)	86,949	107,640	96,726	134,643	64,544	64,544	△32,182	△33.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주요 국정과제 지원과 핵심 디지털 정부혁신 과제의 추진을 통해 부처 간 정보 연계· 공동 활용 등 행정 업무 효율성 및 국민 편의성 제고

○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정부 구현을 뒷받침하고 미래 전자정부의 성장 지원

-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 다수 부처 대상 공통인프라 구축, 다수 시스템 융·복합 등 핵심 전자정부 과제 추진

- (전자정부지원사업 기반조성) 대규모 시스템 구축, 다수 부처 연계 등 고난이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조정,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 사업 전 단계에 걸친 행정적·기술적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 전자정부법 제64조(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관리)

② 추진경위

- '04년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

  * '03년까지 정통부에서 추진하던 정보화촉진지원사업을 종료하고 전자정부 관련 예산·사업 이관

- '04년~'07년 :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추진(130개 과제, 9,079억원)
- '08년~'12년 : 지식정보사회 등 7개 분야 추진(188개 과제, 6,735억원)
- '13년~'16년 : 정부3.0, 국정과제 등 추진(124개 과제, 3,979억원)
- '17년~'20년 : 4차 산업혁명 활용, 국정과제 등 추진(98개 과제, 3,969억원)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4년 ~ 계속
- 사업규모 : 23,762억원('04년 ~ '20년)
- 사업시행방법 : 출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예산확보), 전문기관(사업관리), 주관기관(사업추진)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기업, 각급 행정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00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 전자정부법 제71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3) 사업 집행절차

사업심의	신규 사업은 사업조정위원회 타당성 검토 후 행안부 심의를 거쳐 선정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0조)
⬇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제출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1조)
⬇	
사업계획 조정·확정	행정안전부가 조정된 사업계획을 확정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1조)
⬇	
사업자 선정	전문기관이 조달청에 사업자 선정을 의뢰, 조달청에서 사업자 선정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	
사업추진	주관기관은 사업자와 사업추진, 전문기관은 사업관리 실시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1조～24조)
⬇	
사업비 지급·완료	주관기관은 준공검사결과를 전문기관에 통보하고, 전문기관이 사업자에게 사업비 지급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6조)
⬇	
사업 결과점검	행정안전부와 전문기관은 사업별 운영기반 등 점검 실시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9조～33조)

사 업 명
2. 지능형전자정부재설계 및 정책연구(정보화) (2031-5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1	501
명칭	전자정부	전자정부실행기반마련(정보화)	지능형전자정부재설계및정책연구(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 확정(B)		(B-A)/A
지능형 전자정부 재설계 및 정책연구(정보화)	800	2,168	2,168	4,014	2,393	2,393	225	10.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전자정부 동향분석 및 전망) 디지털 전환 등 대내외 정책 상황에 따라 심층있는 해외사례 및 정책 동향 조사 추진
- (차세대 전자정부 정책기획) 전자정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기관별 계획의 추진현황 및 성과점검, 디지털 정부혁신 과제 발굴 및 추진을 위한 범정부TF·워킹그룹 운영

- (전자정부 법제도 연구)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전자정부법 개정안 및 유관 법령 개선 방안 연구
- (민간주도형 전자정부서비스 기반 조성) 민간의 창의적인 서비스를 공공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모델 발굴, 시범사업 추진
- (전자정부 이용활성화 추진)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추진을 위한 통계조사 연구
- (전자정부의날 운영) 전자정부법 제5조의3에 따라 전자정부의 우수성과 편리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전자정부의 날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2(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
- 전자정부법 제21조(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 전자정부법 제5조의3(전자정부의날)
- 전자정부법 제22조(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분석)

② 추진경위

○ 전자정부 정책기획 및 연구

-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 수립·공표(‘16.4월)
-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신설 및 추진(‘16.4월)
- 전자정부 2020 실행계획 마련 및 추진(‘16.9월)
- (대통령 공약 5-3-5) 정부 업무의 지능화 및 효율화를 통한 국민을 섬기는 스마트한 정부행정 실현(‘17.5월)
- (국정과제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17.7월)
-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전략 VIP 보고(‘19.10.14, BH 대수보회의)
-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19.10.29)
- 14개 부처 범정부 TF 운영

※ 시작회의(’19.12.16.), 1차(1.31.), 2차(2.14.), 3차(3.6.), 4차(5.29), 5차(6.15.), 6차(10.14.)

- 세부 이행계획 수립, 범정부 TF 합동 워크숍 개최 (‘20.1.31.)
- 전문분야별 민간위원이 참여한 민·관 협력 워킹그룹(WG) 구성·운영(‘20.3.30.~)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국무회의 보고(‘20.6.23)

○ 민간주도형 전자정부서비스 기반 조성
- 전자정부추진위원회 '민간주도형 전자정부 추진전략' 보고('18.7.6)
- 민간주도형 전자정부 추진 기업설명회('18.7.20)
- 민간주도형 전자정부 추진 정보화책임관협의회 토론('18.12.18)
- 전자정부추진위원회 '민간주도형 전자정부 추진계획' 의결('19.2.20)
- 민간주도형 전자정부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 및 서비스 구체화('19.4월~'20.2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8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공공기관,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00%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 (한국정보화 진흥원의 설립 등) - 전자정부법 제71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3)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서 작성·확정	사업계획서 작성, 행안부와 전문기관협의, 사업계획서 확정
⇩	
사업자 선정	전문기관이 조달청에 사업자 선정을 의뢰, 조달청에서 사업자 선정
⇩	
사업추진	전문기관은 사업자와 협의하여 사업추진, 전문기관은 전문기술지원 및 사업관리, 용역 품질 관리
⇩	
사업비 지급·완료	전문기관은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사업자에게 사업비 지급
⇩	
사업 성과점검	전문기관은 성과점검을 실시, 결과를 차기 사업에 반영

사 업 명
3. 국가위임사무종합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2032-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500
명칭	전자정부	지역정보화지원	국가위임사무종합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국가위임사무종합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3,198	12,593	12,593	12,847	12,537	12,537	△56	△0.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위임사무종합정보시스템은 환경, 교통, 농촌, 축산 등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업무를 정보화한 것으로 안정적인 유지관리로 선진 지방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 대국민서비스의 최접점인 시도·시군구 공무원이 사용하는 시도·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업무의 연속성 유지
-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량의 각종 인·허가 자료를 통합적·전면적으로 국민들에게 개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데이터 개방 공간 마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6조(지역정보화의 추진)
- 전자정부법 제65조(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 지방재정법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 공동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② 추진경위

-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 시도 행정정보화를 위한 BPR/ISP 추진('02.12 ~ '03.8)
  · 시도 행정정보 1단계 개발('03.12 ~ '05.5)
  · 시도 행정정보 운영을 위한 공통기반시스템 구축('04.7~'05.6)
  · 시도 행정정보 확산・보급('05.5 ~ '05.12)
  · 시도 행정정보 2단계 개발('06.5 ~ '06.12)
-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 시군구 행정정보 발전 및 고도화 BPR/ISP 추진('04.10 ~ '05.6)
  · 시군구 행정정보 1, 2차 개발('05.12 ~ '06.5)
  · 시군구 행정정보 운영을 위한 공통기반시스템 구축('05.9~'06.12)
  ·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3차 개발('07.5 ~ '08.3)
  ·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확산・보급('08.10 ~ '09.6)
-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03)
  ·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기반확충('07.6 ~ '07.12)

·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15.10 ~ '15.12)
· 전자정부지원사업(통합관제체계 강화) 추진('16.8 ~ 16.12)
·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운영('05 ~ 계속)

- 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 공동활용 지원 유지관리
  · 전산자원통합 및 행정기관 간 동일시스템 사용 지시(대통령, '08.3.15)
  · 우수정보시스템 선정, 표준화 및 보급 추진('08~'14)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8 ~ 현재
- 사업규모 :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대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지방자치단체

3)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 사업계획 및 업무위탁 → 사업추진 (유지보수) →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 사업완료 및 평가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6조(지역정보화의 추진)
전자정부법 제7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사 업 명
4. 행정공간정보시스템유지보수(정보화) (2032-5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502
명칭	전자정부	지역정보화지원	행정공간정보시스템유지보수(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정보화)	500	263	263	75	75	75	△188	△71.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시도·시군구 행정업무에 적용된 공간정보 기능 유지보수
- 시군구 행정업무에 모바일 현장행정 적용 업무의 모바일 기능 유지보수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24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2조(공간정보의 활용등)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6조(지역정보화의 추진)
- 전자정부법 제65조(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자치단체 행정업무 공간정보 연계활용 ISP수립('07.5～'08.3)
-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08.10)
  - · (행안부)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 · (국토부) 국가공간정보 기반인프라(H/W, S/W, 통합DB) 구축
- 행정공간정보체계 시범사업 추진('09.2월 ～ 12월)
-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사업 추진('10.6월～'12.11월)
-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추진('12년～현재)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2년 ~ 계속
- 사업규모 : 229개 시군구 대상(세종시 포함)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지방자치단체

3)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 사업계획 및 업무위탁 → 사업추진 (유지보수) →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 사업완료 및 평가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6조(지역정보화의 추진)
전자정부법 제7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사 업 명
5. 정보보호인프라확충(정보화) (2033-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3	500
명칭	전자정부	정보보호체계강화	정보보호인프라확충(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국회확정(B)	(B-A)	(B-A)/A
정보보호인프라확충(정보화)	9,303	15,207	15,207	46,255	20,693	5,486	36.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이버침해대응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이버공격 탐지·대응, 침해사고 분석·조치,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디지털정부 정보보호 체계 강화 실현
  - · 인공지능 기반 지자체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 및 연계 연차별('17~'22년) 추진에 따라, 기초지자체 연계 확대를 위한 인프라 및 기능 고도화
  - · 운영인력 및 유지보수 비용 확보, 지자체 간 연계구간 사이버위협 탐지 강화 등

- **(행정전자서명인증 등 운영)**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의 효율적 운영, 진본성 보장 및 전자문서 보안 강화로 전자유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 **(디지털원패스시스템 운영 및 관리*)** 다양한 인증수단 및 통합로그인 공통기반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대국민 디지털정부서비스 이용환경 제공

  * 20년 전자정부 인증프레임워크 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변경
-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 사이버침해사고 발생 시 경제적 손실, 사회적 혼란 등 국민 생활·안전에 영향력이 큰 행안부 소관 기반시설의 안전한 관리

  · 행안부 소관 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 보안장비 확충 등 현실화를 통한 보안관리 강화

  · 사이버침해(해킹메일 등 대응 훈련 지원, 정보보호 추진과제 이행점검 등 ISAC(정보공유분석센터)을 통한 기반시설 보안관리 체계 지원
- **(정보시스템 등급제 운영)** 운영 정보시스템 등급별 보안관리 기준 및 가이드를 제공하여 한정된 예산·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정보시스템 보안수준 개선

  · 등급제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확대 및 점검항목 정비, 등급제 보안관리 지원대상 증가(기초지자체), 등급제 기술지원 등
-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보안체계 강화)** 정보시스템 개발·구축단계에서부터 보안약점 진단·조치를 강화하여 잠재적 사이버위협 사전예방 및 최소화
-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지자체 망분리 및 취약점 진단 공통기반 구축·활용을 통한 지자체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여 범국가적 보안 수준 제고
- **(전자정부 정보보호 전문교육)** 행정·공공기관 정보보호 담당자 대상 직무 전문교육 강화를 통한 사이버위협 대응능력 역량 강화 및 의식 제고
-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국가신분증의 모바일 발급·활용을 위한 플랫폼(블록체인) 보강 및 기능 강화 및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연계서비스 발굴·기술지원으로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 활용서비스 확산, 이용활성화 추진 등
-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 구축 및 운영)** 전자서명법 개정·시행(12.10.)으로 공공웹사이트에서 민간 전자서명 이용환경 마련이 시급하고, 웹사이트별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24조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제29조 (행정전자서명의 인증)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인증관리센터의 설치) 제34조(행정전자서명의 관리 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고시)** 제6장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제50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제51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동) 제52조(보안약점 진단기준) 제48조의2 (정보시스템 등급제)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제6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 제10조(보호지침)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 16조(인력양성 및 교육 홍보)

② 추진경위

- 국가 정보보호 수준 제고

・'08.7.「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수립·추진 국무회의 보고

・'09.3.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대응계획 보고

・'09.4.「정보보호 추진현황 및 '09년 역점과제」국무회의 보고

・'11.6.「전자정부 정보보호 중기 추진계획」국가정보화전략위 심의·의결

・'12.7.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역량 결집, 국민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위해「정보보호의 날」지정 운영 (매년 7월 둘째 수요일)

・'13.4. 대통령 지시사항('13.4.9.)으로 '지자체 시스템 해킹 방지 대책' 마련·추진

・'15.10. 전자정부사이트 인증서 관련 웹트러스트 국제인증 획득

・'19.4.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강화

・'01.1.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공포

・'07.12. 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 등 기반보호법 일부 개정

・'13.1. 행정분야 정보공유분석센터(ISAC) 구축 운영

・'16.12. 행자부 소관 기반시설 신규지정(1개소) 및 관리기관 상향조정(15개)

・'20.8. 행안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현황(국가 전체 422개 중 102개)

- 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보안체계 강화

・'09.12. 소스코드 취약점 진단도구 개발 및 시범적용

・'11.9.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앱 보안성 검증센터 오픈

· ‘13.1. SW 개발보안 적용 의무화(‘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 개정)

* ('13) 40억원 이상 → ('14) 20억원 이상 → ('15) 5억원 이상 사업 적용

· ‘13.12. SW개발보안 확대 적용(행정기관 161개 운영홈페이지 SW보안약점 진단)

· ‘14.9. 모바일 앱 개발 시 보안기준 제시(모바일서비스 관리지침 개정)

· ‘15.8.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관리지침’ 개정(활용저조·보안취약 공공앱 정비, 성과관리 등)

· ‘15.12. 전자정부서비스 보안진단을 위한 ‘보안약점 진단원’ 양성(90명, 누적 440명)

· ‘16.12. SW개발보안 적용범위 설계단계(기존 구현단계)로 확대

· ‘18.6. SW개발보안 개발비용 산정 항목(시큐어코딩) 신설

- 전자정부 정보보호 전문교육

· ‘16.5. ‘사이버 시큐리티 인력양성 종합계획(정부합동)’ 정보통신전략위 의결

- 전자정부 인증 프레임워크 구축 및 디지털원패스 이용 활성화

· ‘16.12. 차세대 전자정부 인증 추진계획 수립

* 사용자가 선택한 인증방법을 통해 한 번의 인증만으로 여러 개의 정부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하는 새로운 방식의 디지털원패스 제공

· ‘17.12. 디지털원패스 서비스 시범구축

· ‘18.6.~’19.12, 교통민원24 등 14개 웹서비스 대상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정부24·나이스·위택스 등 20개 서비스 추가 연계

· ~‘21년. 디지털 정부혁신 “One Gov” 추진전략 과제로 디지털원패스 확대 추진

-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확충 및 운영

· ‘20.6. 디지털정부혁신 발전계획, ’20.7 한국판뉴딜(모바일신분증 도입 등) 비상경제회의

· ‘20.10. 모바일 신분증 ISP 완료

· ‘20.12 모바일 공무원증 시스템 구축 완료, 시범서비스 운영(21.1월~)

-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 구축 및 운영

· ~’20.8.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 라이브러리 개발

· ’20.12.10.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전자서명(인증서)에 동등한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전자서명법 시행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위탁 등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민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인터넷진흥원(출연)	1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위탁)	100	전자정부법 제7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3) 사업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 ▪ 사업별 예산배정 및 성과관리	행정안전부
↓	
▪ 계약·협약체결(사업수행계획서 등)	행정안전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 세부사업계획 수립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 사업비 지급	행정안전부
↓	
▪ 사업수행(직접수행, 협력기관 위탁수행 등)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 (익년) 추진실적 등 계약·협약 결과보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 (익년) 결산	행정안전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사 업 명
6. 전자정부 성과평가(정보화) (2034-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4	500
명칭	전자정부	전자정부성과평가강화(정보화)	전자정부 성과평가(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전자정부성과평가 (정보화)	2,710	3,221	3,221	3,100	2,537	2,577	△644	△2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적용 확대) EA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여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도모
- (범정부 투자관리체계 효율화)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현황 및 투자성과를 분석하여 최적의 운영효율화 방안 도출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제도 운영) 중앙·지자체 및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계획의 사전검토를 통해 상호연계 및 공동활용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
- (범정부 정보자원관리 및 공동활용) 범정부EA 시스템 등의 운영·유지관리 및 개별 EA시스템의 통합
- (전자정부 성과관리 정책수립 운영) 성과관리 정책수립을 위한 협의회 운영비, 출장여비

※ '전자정부의 날 운영' 내역사업 이동 : ('20)전자정부성과평가 → ('21)지능형전자정부재설계및정책연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 전자정부법 제23조(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전자정부서비스의 통합에 대한 기준 및 절차)
  (① 전자정부서비스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또는 운영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통합 또는 폐기 등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같은법 시행령 제40조(행정정보 목록의 공표 등) 및 제41조(정보파일의 등록 등)
- 전자정부법 제45조(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 같은법 시행령 제53조(기본계획의 내용 등)
- 전자정부법 제46조(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기관의 범위) 및 제55조(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의 제출 등)
- 전자정부법 제47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촉진),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의 지원)
-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정보자원 통합기준 등)
  (①해당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관리)
-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 동법 시행령 제82조(사전협의 대상사업) 및 제83조(사전협의 방법 및 절차 등)
- 전자정부법 제68조(성과 분석 및 진단),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성과 분석 및 진단)
- 전자정부법 제69조(자료제출 등 협조)

② 추진경위

- 공공부문 정보기술아키텍처(EA) 도입 근거법(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마련('05년) ※ '전자정부법'에 통합('10년)
- 정보기술아키텍처(EA) 성숙도 측정 모델 개발 및 개선('06년~)
- 공공부문 EA 성숙도 측정('07년~)
- 공공기관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범정부EA 포털 구축('10년)
- 범정부차원에서 범정부EA 포털(GEAP)을 통해 각 기관 정보자원 현황정보를 통합·관리('10년~)
- 정보자원 유지보수체계 개선방안 마련 및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 제정·고시('12년)
- 범정부GEAP 포털 고도화를 통해 개별기관EAMS를 관리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2019년까지 60여개 기관을 통·폐합추진('16년~)
- 일몰대상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효율화계획 조사·분석 시행,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를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16년)
- 4단계 정보기술아키텍처(EA) 기본계획('17~'19년)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의 디지털 정부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EA 추진
- 전자정부 통합 성과관리체계 구축계획 수립('17.3월)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 성과관리를 점검·분석
- 전자정부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전자정부 성과백서를 발간하여 국회, 감사원, 기재부 및 관계기관에 배부('17.9월)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을 제정('18.2월)하여 전자정부 통합적 성과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 전자정부 성과관리, 사업계획검토, 정보시스템운영성과진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2018 정보화사업 성과보고서를 발간하여 국회, 감사원 등 관계기관에 공유('18.6월)
- 전자정부 성과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범정부EA포털을 개선하여 성과관리 지원기능을 강화('18.12월)
- 전자정부 성과관리, 사업계획검토, 정보시스템운영성과진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2019 정보화사업 성과보고서를 발간하여 국회, 감사원 등 관계기관에 공유('19.8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2~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위탁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1,300여개 기관(중앙/지자체/공공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00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등)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00	전자정부법 제72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3) 사업 집행절차

본계획 수립 및 출연협약(위탁계약)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출연협약 및 위탁계약 추진
⇩	
사업 세부추진 계획 수립	출연·위탁기관에서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검토 승인 후 발주
⇩	
사업시행	출연·위탁기관 주관으로 사업시행 및 산출물 검토
⇩	
사업 추진실적 보고	사업 산출물 보고

사 업 명
7. 지식기반의행정구축(정보화) (2035-5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010	015
명칭					일반공공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5	505
명칭	전자정부	공공서비스신기술적용촉진(정보화)	지식기반의 행정구축(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 (B)		
지식기반의 행정구축(정보화)	448	1,593	1,593	8,573	441	441	△1,152	△72.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온-나라 지식 유지보수) 행정지식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활용으로 공무원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행정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행정망 내 메일 및 지식관리, 기관별 업무포털의 안정적 운영관리

- (지식행정 활성화) 대한민국 지식대상 등을 통한 민간·학계 지식 네트워크 강화, 지식행정 워크숍 및 행사 개최 등으로 범정부 지식행정 활성화를 지원
- (온-나라 정책연구시스템 관리) 정책연구과제 품질 제고를 위해 정책연구성과 점검 및 온-나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체계적·효율적 운영
- (온-나라 지식 기능 및 인프라 강화) 디지털정부혁신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스마트 통합 행정업무환경 구축 필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 증가 및 원격·재택근무 확산으로 시공간에 제약없는 업무환경 구현을 위한 스마트통합행정업무 플랫폼 구축 ISP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30조(행정지식관리)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7조 ~ 제56조, 동 시행규칙 제35조 ~ 제42조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매년 기관별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에 통보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5 :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정 및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 개발
- ’06 : 지식행정지수 개발·진단
- ’08 : 온-나라 정책연구시스템(PRISM) 확대 사업 완료
- ’08 : 정부통합지식관리시스템 개통
- ’10 : 표준KMS(지식관리시스템) 개발·보급
- ’12 : 행안부-매경 ’대한민국 지식대상‘ 공동 제정
- ’13 : 정부지식관리시스템(GKMC) 메인화면 및 지식맵 재정비
- ’14 : 정부지식관리시스템(GKMC) 개인정보필터링 적용
- ‘15 : 범정부 행정협업체계(클라우드 기반 온-나라 지식) 구축(1단계)
- ‘16 : 범정부 행정협업체계(클라우드 기반 온-나라 지식) 구축(2단계)
- ‘17 : 범정부 행정협업체계(클라우드 기반 온-나라 지식) 구축(3단계)
- ‘17 : 온-나라 정책연구시스템(PRISM) PDF 변환서버 OS·SW 업그레이드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2 ~ 계속
- 사업규모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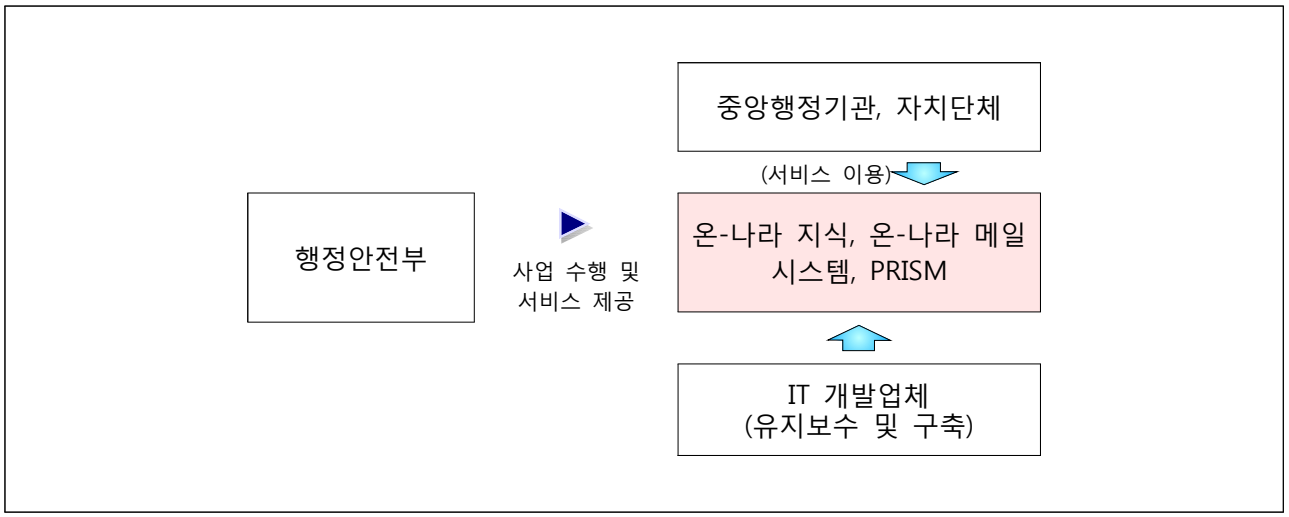

사 업 명
8. 첨단정보기술을활용한공공서비스촉진(정보화) (2035-5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0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5	506
명칭	전자정부	공공서비스신기술적용촉진(정보화)	첨단정보기술을활용한 공공서비스촉진(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촉진(정보화)	3,232	4,600	4,600	9,600	4,600	4,600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기술을 공공서비스에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행정 효율화·대민서비스 혁신은 물론 민간 산업육성의 마중물 역할
- 행정안전부는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표준화하여 확산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전자정부법」 제18조(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활용)

② 추진경위

- 2006~2007 : u-지역정보화 사업을 통해 공공분야 u-서비스 사업 추진
- 2008. 2 : 조직개편으로 (구)정통부 및 (구)지경부로부터 공공분야 u-서비스 사업 이관
- 2009. 12 :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활용' 근거 마련
- 2012. 12 :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정
  ※ 안전행정부고시 제2012-56호, 시행일 13.1.1.
- 2017. 7 : 새정부 국정과제(8.열린 혁신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에 포함
  ※ 8-5 정부업무 지능화로 스마트한 정부행정 구현
- 2020. 1 :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모델 확산 내역 분리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위탁)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범사업 주관기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일선행정담당 공무원 등 시범사업성격에 따라 다양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00	전자정부법 제72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3) 사업 집행절차

지원사업 수요조사 및 과제검토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과제발굴을 위하여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과제에 대한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실시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0조, 제11조)
⇩	
지원사업 선정·확정	전문기관은 후보과제들을 대상으로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에 제출하고 행정안전부는 심의결과를 검토·조정하여 선정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2조)
⇩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제출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3조)
⇩	
사업계획 검토·확정	행정안전부가 사업검토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주관기관, 사업내용 및 지원예산 등을 확정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3조)
⇩	
사업자 선정	전문기관이 조달청에 사업자 선정을 의뢰, 조달청에서 사업자 선정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	
서비스 구축	주관기관은 사업자와 사업추진, 전문기관은 사업관리 실시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1조~ 29조)
⇩	
사업비 지급·완료	주관기관은 준공검사결과를 전문기관에 통보하고, 전문기관이 사업자에게 사업비 지급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0조 ~ 제34조)
⇩	
사업 성과점검	행정안전부와 전문기관은 사업구축 후 2~5개년간 사업별 성과점검을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가 우수한 모델은 차기 확산사업으로 제안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5조 ~ 39조)

사 업 명
9. 행정기관정보통신서비스이용환경고도화(정보화) (2035-5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010	015
명칭					일반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5	509
명칭	전자정부	공공서비스 신기술적용 촉진(정보화)	행정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고도화(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행정기관정보통신서비스이용환경 고도화(정보화)	1,344	1,344	1,344	24,134	24,134	15,134	13,790	1,02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범정부영상회의 연계 및 영상회의 활성화)**영상회의시스템을 상호연계·통합관리 할 수 있는 공통기반 시스템을 운영하고, 연계 확대 및 영상회의 활성화 추진
- **(행정기관 정보통신 이용환경 개선)** 행정기관이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제도 마련과 전문기술 지원
  · 제4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 이용제도 개선 국가통신비의 절감 및 이용지원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32조(전자적 업무수행 등)
-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8조 및 제59조
- 행정·공공기관용 영상회의시스템 상호연계 기술 표준규격(행자부 고시 제2015-22호)
- 전자정부법 제52조(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시행령 제64조(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운영)
- 행정정보통신망운영관리규정(대통령 훈령 제412호)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8. 7.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관 통신망 통합정비방안 마련
- '11. 9. :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 기본계획 수립
- '13.12. : 영상회의 활성화 추진방안 마련 및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 '14.12.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고도화 컨설팅 수행
- '15.07.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영상회의 공통기반 시스템 연계(344개)
- '16.12. : 세종 및 서울청사 모바일행정전화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 '17.12. : 공공기관용 공통기반 연계시스템 구축
- '19.06. : 제4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 개선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출연)	100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등)

3) 사업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 사업별 예산배정 및 성과관리	행정안전부
↓	
■ 협약체결(사업수행계획서, 예산배정계획 등)	행정안전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 세부사업계획 수립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 사업비 지급	행정안전부
↓	
■ 사업수행(직접수행 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 (익년) 추진실적 등 협약결과 보고	행정안전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 업 명
10. 스마트폰기반의모바일전자정부구축(정보화) (2035-5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00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5	511
명칭	전자정부	공공서비스신기술촉진(정보화)	스마트폰기반의모바일 전자정부구축(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정보화)	**1,866**	**1,743**	**1,743**	**3,757**	3,098	3,098	1,355	77.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모바일 행정서비스 확산 및 기능개선) 공무원 모바일 메신저 '바로톡' 서비스 운영 및 기능개선
- (공공모바일 서비스 운영 효율화 및 활성화) 공공앱 운영현황 조사 및 성과 측정
- (모바일 전자정부 보안인프라 구축) 모바일 공통기반 보안강화, 가상화 라이선스 확충, 신규단말 검증·적용

- (모바일 전자정부 유지보수 및 운영) 모바일 공통기반 운영 및 유지보수, 연계지원, 테스트베드 개발·운영
- (대민용 모바일 서비스 보안성 강화) 대민용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운영 및 유지보수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18조(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활용)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② 추진경위

-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11.8.)
- 모바일 전자정부 관련 지침·가이드라인 7종 배포('12.5.)
-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및 지원센터 운영('13.4.)
- 현장행정 모바일 공통기반 구축('14.10.)
- 업무전용 보안 모바일 메신저 바로톡 구축('14.12.)
- 모바일 전자정부 가상화 시범서비스 실시('15.2.)
- 바로톡 시범운영 및 중앙부처·지자체 단계적 확산(~'15.12.)
- 아이폰용 바로톡 서비스 개시('16.8.~)
- 모바일 공통기반 가상화 서비스 개시('17.1.~)
- 바로톡 G-클라우드 전환('18.12.)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19.5.)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3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위탁
- 사업시행주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대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00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등)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00	전자정부법 제7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3) 사업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 사업별 예산배정 및 성과관리	행정안전부
↓	
■ 협약체결(사업수행계획서, 예산배정계획 등)	행정안전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 세부사업계획 수립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 사업비 지급	행정안전부
↓	
■ 사업수행(직접수행 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 (익년) 추진실적 등 협약결과 보고	행정안전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사 업 명
11. 정보화마을조성 및 활성화(정보화) (2037-5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7	507
명칭	전자정부	정보화마을활성화(정보화)	정보화마을조성및활성화(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정보화마을조성및 활성화(정보화)	1,437	1,128	1,128	1,128	903	903	△225	△19.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보화마을의 주민을 교육하여 농·산·어촌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전자상거래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65조(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정보화마을 기반 조성(‘01~’07년)

· 정보화시범마을 조성계획 수립(‘01.3, 1단계 시범마을)

·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03.7, 2단계 사업)

○ 정보화마을 내실화 및 효율화 추진(‘08~)

· 정보화마을 육성 성과 및 개선방안 수립(‘08.4)

· 정보화마을 내실화를 위한 우수마을 발굴・육성 및 관리강화

※ ’20년 11월 기준 전국 292개 마을 조성・운영 중

○ 정보화마을 운영평가(’05년~)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1년 ~ 계속
- 사업규모 : 전국 12개 시도 292개 마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위탁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사업 수혜자 : 농·산·어촌 정보화마을 주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00	전자정부법 제72조

3) 사업 집행절차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사)중앙협회/정보화마을
- 운영활성화 계획 수립 - 사업별 예산배정 및 성과관리 - 국비예산 확보 - 위수탁 계약 체결 - 대외기관 협력 등	⇔	- 지자체별 홍보, 교육 등 운영지원 및 활성화 추진 - 운영, 조성 등 지방비 확보 - 프로그램관리자 채용 및 관리	⇔	- 안건 심의 및 의사결정 - 수익창출 모델 발굴 및 향상 방안 강구 - 마을정보센터 유지관리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운영활성화 지원 - 중앙시스템 유지관리 - 국제교류 및 해외벤치마킹 지원 - 운영평가/연구용역	⇔	

사 업 명
12. ODA 중점협력국가 범정부 전자정부 협력지원(ODA) (2038-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8	300
명칭	전자정부	국제사회 전자정부 선도국가 위상강화	ODA 중점협력국가 범정부 전자정부 협력지원(ODA)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ODA 중점협력국가 범정부 전자정부 협력지원(ODA)	52	57	57	57	46	46	△11	△19.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신남방·신북방 등 ODA 중점협력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범정부 합동 사절단 파견, 협력포럼 개최 등을 통해 국가 간 전자정부 분야 협력체계 구축 및 신규 후속사업 발굴 기반 조성

- 대상 국가와 협력사업을 추진 또는 기획 중인 국내 행정·공공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여 해외 정부의 복합적인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

※ 주요 실적 사례

- ('18) 캄보디아 대상 고용노동부(고용전산망)·국토교통부(토지정보) 융합사업 추진 지원
- ('18) 캄보디아 전자정부법제도 및 주민등록시스템 도입 방안 컨설팅 사업 추진
- ('18) 베트남 수입식품검사시스템 컨설팅 사업 추진
- ('18) 베트남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사업 ODA 사업기획서(PCP) 초안 작성 지원
- ('19) 몽골 연금시스템 구축사업 신규 발굴 및 구축방안 컨설팅 사업 추진
- ('19) 베트남 자격정보시스템 구축 사전타당성 조사 추진
- ('20)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협력센터 사업(3년간 200만불 공동출자) 추진
- ('20) 베트남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컨설팅 사업 추진
- ('20) 캄보디아 디지털정부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70조) 전자정부의 국제협력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디지털정부국 제8항 국제디지털협력과 업무분장

② 추진경위

○ UN·OECD·Digital Nations 등 국제기구협의체를 통한 국제적 전자정부 강국 위상 확립으로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브랜드 가치 상승 및 해외 정부의 관심 증가

- 전자정부 및 공공 ICT 분야 ODA 등 협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 및 정보공유 강화 필요

※ UN 전자정부 평가('08~'20, 격년): 8위→1위→1위→1위→3위→3위→2위

※ 영국·에스토니아 등과 함께 전자정부 선도국 협의체인 Digital Nations 창립

※ 2018년 OECD e-leaders 총회 주최 등

○ 범정부 차원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전자정부 및 공공ICT 분야 ODA 사업 발굴 기반 조성, 부처별로 추진하던 해외진출 활동의 효율적 연계 등을 위해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17)

○ 국정과제98(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중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연계, 신남방정책 '공공행정 역량 강화지원'에 전자정부 협력 과제 포함('17)

○ 국회 행안위 의견에 따라 'ODA 중점협력국가 범정부 협력지원' 으로 사업명 변경('18)
※ 대상지역을 ODA 국가 전반으로 사업명에 명시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8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행정안전부, (참여기관) ODA 중점협력국가에서 전자정부 및 공공ICT 분야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인 행정·공공기관
- 사업 수혜자 : 수원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국내외 현황조사	⇨	수원국 수요확인	⇨	사절단 구성	⇨	사절단 파견 협력포럼 개최	⇨	후속사업 연계
국내 행정·공공기관 소관 분야별 해외진출 동향 및 사업기회 조사·취합		외교부 협조 또는 현지 기관 직접 연락을 통해 관심 분야 수요 확인		참여기관 및 주제를 선정하고 수원국과 일정협의		고위급 회담, 공동협력포럼, 주제별 양자회의 등		초청연수, 컨설팅, 신규ODA사업 등과의 연계

사 업 명
13. 전자정부분야국제교류협력(ODA,정보화) (2038-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8	302
명칭	전자정부	국제사회 전자정부 선도국가 위상강화	전자정부분야국제교류협력 (ODA, 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전자정부분야 국제교류협력 (ODA, 정보화)	512	512	512	1,167	857	857	345	67.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부담금

- 국제기구와 협업하여 국제사회의 전자정부 발전 지원 및 한국의 경험 공유
- 한국형 서비스 모델 공유로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 조성

○ 전자정부 초청연수

- 개도국 전자정부·IT분야 정책결정자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분야 역량 강화 과정을 운영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관계 강화
- 국가별 중요 관계자와 직접 소통하여 ODA등 후속 협력사업 신속 발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70조(국제협력),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7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② 추진경위

○ **UN 무역개발회의(UNCTAD) 분담금**

- ('12) UNCTAD에서 개도국 전자정부 발전 지원을 위한 ICT 정책개발 사업 제안
- ('13~) 매년 한-UNCTAD 협력사업 참여

○ **OECD 전자정부 협력 분담금**

- ('01~) OECD가 전자정부 분야 정책연구 및 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도 참여하기 위해 자발적 기여금(年3만유로) 납부

※ '96년 대한민국 OECD 가입

※ '16년부터 OECD는 전자정부(e-Government)에서 디지털정부(Digital Government)로 분야 명칭 변경

○ 전자정부 초청연수

- ('98) 제21차 APT(Asia Pacific Telecommunity) 관리이사회 제안으로 IT인력양성 지원 시작
- ('98~) '19년까지 148개국 8천7백여명이 전자정부 관련 연수과정 수료
- ('14~) 고위급 대상 전자정부 정책관리자 과정 개설·운영
- ('17~) 월드뱅크, IDB, UNPOG, ITU 등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연수과정 개설·운영
- ('19) UNDP의 제안으로 카자흐·우즈벡 등 신북방 7개국 대상 특화 역량강화 과정 기획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1~계속(OECD), '13~계속(UNCTAD), '98~계속(초청연수)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지원 대상국 정부 및 국민, 우리 정부 및 ICT기업, 공동협력 국제기구 및 국제개발은행
- 출연기관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00%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3)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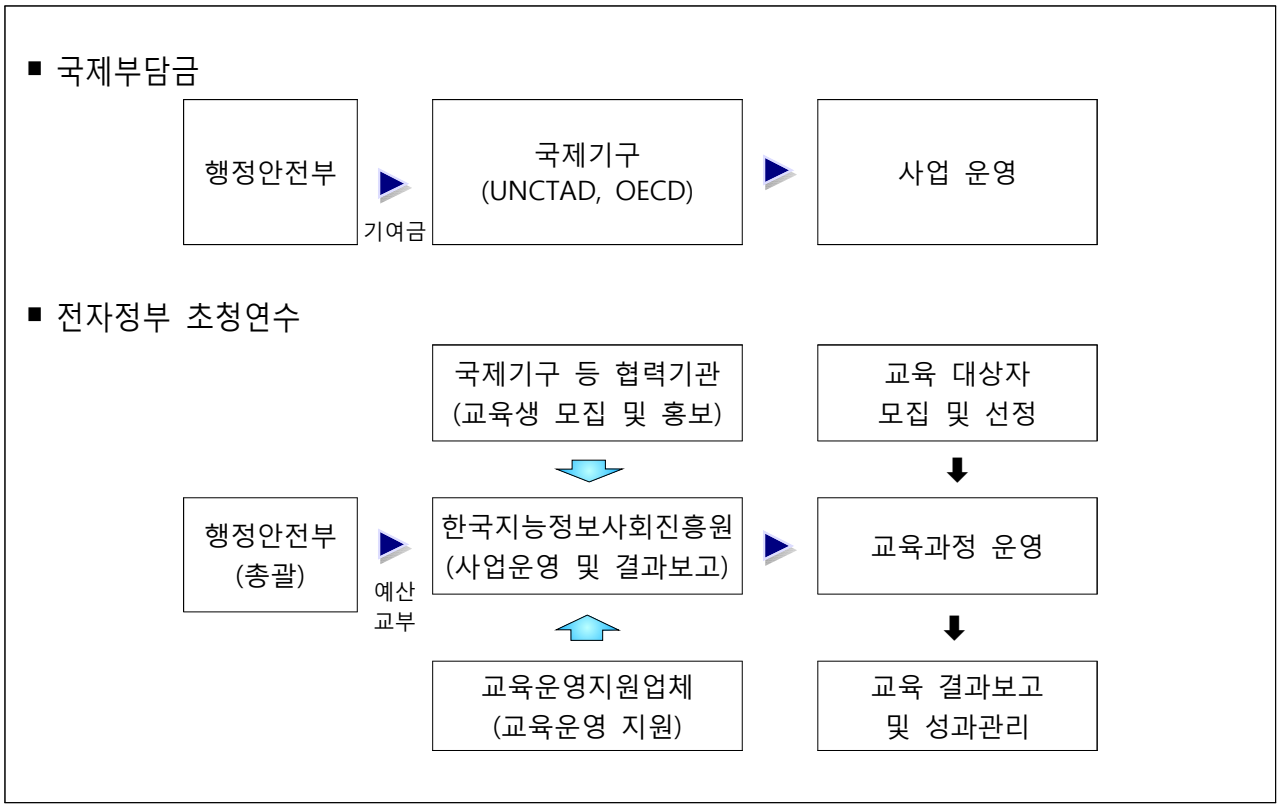

사 업 명
14. 전자정부국가간협력강화(정보화,ODA) (2038-5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8	501
명칭	전자정부	국제사회 전자정부 선도국가 위상강화	전자정부국가간협력강화 (정보화,ODA)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전자정부국가간 협력강화 (정보화,ODA)	2,816	3,076	3,076	7,173	3,764	4,264	1,188	38.6

1) 사업목적·내용

○ 한국 전자정부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국가 간 협력관계 강화

- 중요 협력국가와 공동으로 현지 협력센터 설치·운영
- 국가 간 MOU 체결 및 양자회의 등 후속조치 추진
- 전략수립, 사업기획, 타당성조사 등 협력 초기 준비단계 사업 추진 지원

○ 해외진출 실적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국내 기관간 협력, 민관 협력, 홍보자료 제작 등 기타 해외진출 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70조(전자정부의 국제협력) 및 국가정보화기본법 제24조(국제협력)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디지털정부국)

② 추진경위

○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운영

- ('03~'13) 멕시코('03~'06), 칠레('04~'06), 터키('07~'09), 남아공('08~'10), 불가리아('10~'12), 베트남('11.~'13.) IT협력센터 운영
- ('13~'19) 우즈베키스탄('13~'15), 인도네시아('16~'19.), 페루(17~'19), 케냐('17~'19) 전자정부 협력센터 운영
- ('20~) 우즈베키스탄 세르비아, 파라과이, 튀니지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운영 예정

○ 디지털정부 협력 MOU 체결

- ('06~) 독일 연방내무부와 '06년 최초로 체결한 이래 '20년까지 50여개 MOU 체결
- ('10~'14) UN전자정부 평가 3회 연속('10,'12,'14) 1위 달성으로 국제협력 수요 급증
- ('15~'19) 최근 5년간 28개국과 디지털정부 협력 MOU 체결ㅅ

※ '15년 페루 등 11개국 / '16년 카자흐스탄 등 9개국 / '17년 코스타리카 등 6개국 / '18년 베트남·인도네시아 2개국 / '19년 우즈베키스탄 1개국

○ 디지털정부해외진출기반조성

- ('16~'17) '전자정부지원사업' 내 과제로서 몽골 과학수사정보시스템, 키르기스스탄 헌법재판시스템 등 10개 컨설팅 사업 추진
- ('17) 전자정부 수출실적 국가승인통계 등록 및 공표 시작
- ('18~) 컨설팅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전자정부지원사업'에서 '전자정부국가간협력강화(본 사업)' 사업으로 이동하여 추진

※ '18년 베트남 수입식품시스템 등 3개 사업, '19년 인도네시아 예금보험지급시스템 등 5개 사업 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3.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사업 수혜자 : MOU 체결 국가 및 공적개발원조 수원국, 국내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00%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3) 사업 집행절차

○ (출연사업)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운영,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기반 조성

▪ 기본계획 수립 ▪ 사업별 예산배정 및 성과관리	행정안전부
↓	
▪ 협약체결 (사업수행계획서, 예산배정계획 등)	행정안전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 세부사업계획 수립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 사업비 지급	행정안전부
↓	
▪ 사업수행(직접수행 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 (익년) 추진실적 등 협약결과 보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행정안전부

○ 디지털정부 국가 간 협력

<사업발굴>		<사업구체화>		<재원조달>		<사업수주>
정부간 협력(MOU등), 정책 컨설팅, 홍보, 초청연수 등	⇨	마스터플랜(M/P), 타당성조사(F/S), 기술컨설팅	⇨	유상원조 무상원조 자체자금	⇨	계약체결, 시스템 구축·관리
행안부, 각 부처, 기업, KOICA, KOTRA 등		NIPA, NIA, KOICA		EXIM, KOICA, MDB, 수입국		기업

사 업 명
15. 전자정부글로벌아카데미운영(정보화) (2038-5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8	507
명칭	전자정부	국제사회전자정부 선도국가위상강화	전자정부글로벌아카데미운영 (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전자정부 글로벌아카데미 운영(정보화)	370	370	370	370	370	370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적으로 공인된 한국 전자정부 모델의 구축경험을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전담기관(전자정부글로벌아카데미)을 통해 전자정부 글로벌 컨설팅 인력 양성 및 전자정부 교육 콘텐츠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70조(국제협력)

② 추진경위

- ('13. 1월) 전자정부 글로벌아카데미 신규 설립
- ('14. 6월) 전자정부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과정 개설
- ('16. 4월) 전자정부 영프론티어 과정 개설
- ('18.12월) 전자정부 국제개발협력 업무담당자 과정 개설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전자정부 관련 국내·외 정부 및 산·학·연 관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00%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3) 사업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 ▪ 사업별 예산배정 및 성과관리	행정안전부
↓	
▪ 협약체결 (사업수행계획서, 예산배정계획 등)	행정안전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 세부사업계획 수립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 사업비 지급	행정안전부
↓	
▪ 사업수행(직접수행 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 (익년) 추진실적 등 협약결과 보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행정안전부

사 업 명
16. 전자정부대외협력활동강화(정보화) (2038-5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8	508
명칭	전자정부	국제사회전자정부선도국가 위상강화	전자정부대외협력활동강화 (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전자정부대외협력 활동강화(정보화)	143	296	296	823	296	296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기구전자정부 평가대응)

- 전자정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UN 등 국제기구의 전자정부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자정부 선도국가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

※ UN 전자정부 평가 3회 연속 세계 1위('10~'14) 이후 지속적 최상위권 유지, 최근 발표된 '20년도 평가에서는 온라인 참여부문 세계 1위,전자정부 발전부문에서 세계 2위 달성

- 정부 주요 전자정부 서비스를 국제기준에 맞게 점검하고 개선하여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

○ (전자정부 전시체험관 운영)

-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해외 전자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국형 선진 전자정부를 홍보하고 실제 전자정부를 체험해 볼 수 있는「전자정부 전시체험관」설치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68조 및 제70조

② 추진경위

- ('10~) UN 전자정부 평가 '10년·'12년·'14년 연속 1위(발전지수, 참여지수), '16년 발전 3위, 참여 4위 '18년 발전 3위, 참여 1위, '20년 발전 2위, 참여 1위
- ('18.12월) 전자정부 전시체험관 구축 및 개관

□ 주요내용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2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사업 수혜자 : 행정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00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제4항

3) 사업 집행절차

- (출연사업) 사업확정 → 협약체결 → 세부사업확정 → 출연기관 직접수행, 사업자 선정 → 사업추진 → 결과물 인수 → (익년) 사업비 결산

사 업 명
17. 정보자원관리지원(정보화) (2039-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010	015
명칭					일반공공행정	정부지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9	500
명칭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기반확충	정보자원관리지원(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정보자원관리지원 (정보화)	3,140	6,481	6,481	7,168	3,558	3,558	△2,923	△45.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이용환경 개선)** 전자정부 웹사이트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웹접근성·호환성·개방성·접속성·UI/UX 등 관리수준 제고. 비표준기술 제거 지원,

웹사이트 내 콘텐츠 정보오류 점검·개선, 사용자 중심의 UI·UX 개선 등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강화 추진

- **(전자정부 표준관련 시스템 위탁·운영)** 행정표준코드로 등록·관리하는 행정표준코드관리 시스템과 행정기관·공공기관 및 유관 민간기관의 조직정보와 직원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정부 디렉터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관리·기술지원)** 공공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표준화된 기술기반인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 운영 및 지속적 품질관리, 표준프레임워크 포털 운영관리
- **(전자정부사업 발주지원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 전자정부사업의 난이도 및 복잡도 증가로 품질저하 및 사업관리의 어려움 발생,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관행 지속 등 전자정부사업 수발주자의 애로사항 및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및 제도개선
- **(클라우드 업무환경 구현)** 기관 간 문서 공유 및 정보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클라우드로 전환된 온-나라, 기록관리 등 공통행정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클라우드 공통기반(PaaS/SaaS, 통합계정, 통합검색, SSO 등)과 정부 클라우드 저장소 시스템에 대한 장애대응 및 유지보수
- **(범정부 중요 데이터 보존 방안 마련)** 국가 중요 데이터의 유실방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보존 및 활용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보존대상으로 선정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전자정부 웹사이트 이용환경 개선≫

- 국정과제 8-5(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스마트행정구현) : 불필요한 플러그인 제거
- 「전자정부법」 제16조(전자정부서비스 개발·제공), 제19조(전자정부서비스의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제50조(표준화), 시행령 제59조(표준화)
- 장애인 정보 접근성 보장 의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국가기관등의 웹사이트 장애인·고령자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안부 고시 제2020-38호, ’20.7.30.)

≪전자정부 표준관련 시스템 운영·위탁≫

- 전자정부법 제30조의2(전자적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통합)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관리·기술지원≫

-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조(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
-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5조(전자정부 표준 개발프레임워크의 활용)

≪클라우드 업무환경 구현≫

- (클라우드 발전계획, '14.9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 공무원 개인 PC시대를 마감하고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
- (전자정부법) 제30조의2(전자적시스템의상호연계및통합), 제30조의3(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의구축·활용), 제50조(표준화) 및 제54조(정보자원통합관리)

≪전자정부사업 발주지원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

-「전자정부법」제45조(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제64조의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및 제71조제1항제4~5호(전문기관의 지정 등)

≪범정부 중요 데이터 보존방안 마련≫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및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9조의2(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있는 행정정보의 보존)

② 추진경위

≪전자정부 웹사이트 이용환경 개선≫

- '05.09. : 중앙행정기관 등 대상 웹 접근성 실태조사 실시
- '07.09. : 웹 접근성 실태조사 대상기관 확대(기초자치단체)
- '09.05. : "전자정부 웹 표준화 및 장애인 접근성 강화 종합대책" 수립
- '09.08. :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지침 개정(행정안전부고시)
  ※ 1차개정('10.6), 2차개정('12.10), 3차개정('16.6), 4차개정('17.12)
- '09.12. : 웹접근성수준진단결과 정부업무평가(역량평가,합동평가) 반영
- '11.09.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실태조사 실시
- '15.12.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관리개선 계획" 수립
- '16.07.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장애인 정보접근성 수준진단 개선방안"수립
- '17.09. : 전자정부서비스 모바일 웹호환성 평가지표 개발

- ‘05~’18.12. : 중앙·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 대상 웹 접근성·호환성 수준진단 실시
- ‘19.03.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현황 및 ’19년 관리계획 수립
- ‘19.02.~08.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선도사업 추진
- ‘20.06.~12.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통합사업 추진

≪전자정부 표준관련 시스템 운영·위탁≫

- ‘00.10.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구축
- ‘04.12.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구축·운영
- ‘06.12. 전자정부 표준관리시스템 구축
- ‘06.12. 행정데이터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07.12.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확대 구축
- ‘14.12.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G-cloud 통합 구축
- ‘15.11.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 ‘16.12. 정부디렉터리시스템 전환 구축
- ‘18~ 정부디렉터리시스템 유지보수 추진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관리·기술지원≫

- ‘08.06.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09.05.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1단계 사업 추진
- ’09.11.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2단계 사업 추진
- ’10.11.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3단계 사업 추진
- ’11.11.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4단계(모바일화) 사업 추진
- ’12.11.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5단계(배치) 사업 추진
- ’10.~현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관리 및 기술지원 추진

≪전자정부사업 발주지원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

- ’05.12.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정(12월 공포, ’06.7월 시행, ’10.2월 전자정부법으로 통합)
- ’09. :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개선 종합대책 수립
- ’10.12. :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선진화 방안 수립
- ’10.12. : 감리제도 개선대책 반영을 위한 감리기준 개정
- ’11.11. : 중소기업 공생발전형 공공정보화 선진화 방안 수립
- ’12.3. : 하도급 노임 하한제 도입 등 정보시스템 구축·지침 개정
- ’12.3. : 중소기업의 사업경험 부족 문제 대응을 위한 상주감리 제도 강화(3월, 감리기준 개정)
- ’12.11. : PMO 제도 도입 추진(전자정부법 개정안 마련)
- ’13.4. : PMO도입 관련 「전자정부법」개정

- ‘13.7. :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 및 PMO 규정(고시) 제정
- ‘13.10. : PMO 표준계약조건(예규) 제정
- ‘13.12. : PMO 도입운영 가이드 개발·공지
- ’14.6. : PMO 도입운영 실태조사
- ’14.12. : PMO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 ’14.12. : 수발주 관련 행정규칙 등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 ’14.10~11. : 공공 정보화사업 발주제도 설명회 개최
- ’14.11. : 중소기업 지원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개정
- ’14.12. : 감리 자격체계 개편방안
- ’15.9. : PMO 시행령 개정방안 마련
- ’15.12. : PMO 성과관리참조모형안 수립
- ’15.12. : 공공정보화 수발주 규정 통합정보 제공창구 시범구축
- ’15.12. : 감리체계 개선 및 품질향상 방안 마련
- ’16.12. : PMO제도「전자정부법 시행령」개정
- ’16.12. : 공공부문 PMO 성과관리 모형안 개발
- ’16.12. : PMO 제도적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16.12. : 공공정보화 수발주 관련 행정규칙, 지침 및 가이드 통합정보 제공창구 운영 및 개선
- ’16.12.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개정 지원
- ’16.12. :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개정
- ’16.12. : 클라우드 정보화사업 감리 가이드 제정
- ’16.12. : 정보화사업 규모·유형별 감리 참조 모델(안) 개발
- ’17.3. : 전자정부 발주제도 개선방안 마련
- ‘17.11. : 實 사업수행기간 확보를 위한 발주제도 개선방안 마련
- ‘17.12.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개정안
- ‘17.12. : PMO 고시(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개발
- ‘17.12. : PMO 예규(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개정안 개발
- ‘17.12. : PMO도입·운영가이드 개정
- ‘17.12. : PMO활동점검 가이드 및 도구 제정
- ‘17.12. :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개정
- ‘17.12. :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감리 점검 가이드 개정
- ‘18.2.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자정부 발주제도 개선 의견 제출(BH일자리수석)
- ‘18.3. : SW업계의 노동환경 개선, 수·발주자 부담완화 및 품질향상을 위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정

- ‘18.3. : PMO ‘17년 추진실적 및 ‘18년 수요예보 지원
- ‘18.11. : 「원격지 개발 활성화 방안」정보통신전략위원회 의결
- ‘18.1.~12. : 발주제도 개선사항 교육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관계부처 정책 조정회의 개최 등 수발주 제도 현장 적용 지원
- ‘18.12. : 사업기간 부족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기재부 예산집행지침 개정안 제출
- ‘18.12. : 정보시스템 감리·PMO 제도 발전방안 마련
- ‘18.12. : 정보시스템 과업이행여부 점검 세부절차 수립
- ‘18.12. :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및 수행, 점검 가이드 개정
- ‘19.5. : 공공정보화사업 발주제도 관계기관협의회 구성·운영
- ‘19.8. : 협력업체 대금 적시지급, 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개정
- ‘19.8.~11. : 공공정보화사업 담당자 권역별 교육

≪클라우드 업무환경 구현≫

- ‘11.6. : “클라우드 기반 범정부 IT 거버넌스 추진 계획” (국가정보화전략위)
- ‘12.5. : “행정기관 클라우드 사무환경 도입 가이드라인” 제정·배포
- ‘12.6. : “범정부 클라우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국가정보화전략위)
- ‘13.12. : “정부3.0 클라우드 추진계획“ (국무회의)
- ‘14.2. : “정부3.0 클라우드 추진현황 및 계획” (BH 정무·미래수석 보고)
- ‘14.8.~’15.2. : “개방형 기술 기반 클라우드 업무환경 구현” ISP 사업 추진
- ‘14.9. : 정부3.0 추진위원회 “정부3.0 발전계획” 수립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 과제 포함
- ‘15.4. : “정부3.0 범정부 클라우드 추진계획” (대통령 서면보고)
- ‘15.6. : “정부3.0 범정부 클라우드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 ‘15.7.~’16.3. : “정부지식공유활용기반고도화”(공통기반 구축) 사업추진
- ‘16.11.~’17.3. : “정부지식공유활용기반고도화 2차사업” 추진
- ‘18.12. : “정부 근무혁신을 위한 웹오피스 환경 전환 추진계획” (행안부 장관 보고)
- ‘19.9~12. : “클라우드 기반 웹오피스 구축 사업 추진”

≪범정부 중요 데이터 보존방안 마련≫

- ‘18.8. : 범정부 정보자원 보존 기본계획(행안부 장관 보고)
- ‘18.9. : 위 기본계획에 대하여 전자정부추진위원회에서 심의 확정
  ※ 언론보도(’18.9.18일자 연합·디지털타임즈 등, ‘공공부문 원천데이터, 보존 의무화 된다’)

- ‘19.3. : 정보자원보존전문위원회 구성 및 보존대상 선정지표 확정(제1차 회의)
  ※ 언론보도(’19.3.21일자 연합·파이낸셜 등, ‘행안부, 중요 디지털 행정정보 보존 나선다’)
- ‘19.5. : 중앙행정기관 정보자원 보존대상 선정계획 설명회 개최
  ※ 47개 기관 정보화담당 및 시스템운영자 100여명 참여
- ‘19.6. : 상반기 정보자원 보존대상 선정기관 자체평가 실시 및 보존대상(5개 기관 43개 시스템) 심의 · 확정(제2차 정보자원 보존 전문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문화재청
- ‘19.11. : 하반기 정보자원 보존대상 선정기관 자체평가 실시 및 보존대상(5개 기관 64개 시스템) 심의 · 확정(제3차 정보자원 보존 전문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농촌진흥청, 소방청
- ‘19.12. : 중앙행정기관 정보자원 보존담당자 워크숍 개최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7.~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위탁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출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위탁)
- 사업 수혜자 : 정부, 공공, 민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00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등)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00	전자정부법 제72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3) 사업 집행절차

본계획 수립 및 출연협약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출연협약 추진
⇩	
사업 세부추진 계획 수립	출연기관에서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검토 승인 후 발주
⇩	
사업시행	출연기관 주관으로 사업시행 및 산출물 검토
⇩	
사업 추진실적 보고	사업 산출물 보고

사 업 명
18. 스마트워크센터구축 및 운영(정보화) (2040-5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0	501
명칭	전자정부	미래전자정부추진(정보화)	스마트워크센터구축 및 운영(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운영 (정보화)	**4,140**	**3,919**	**3,919**	4,917	4,917	4,917	998	25.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스마트워크 확산을 통한 공공부문의 일과 삶의 균형 달성, 노동 생산성 향상 및 시간과 거리의 제약 없이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업무환경 마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라 행정비효율을 극복하고 업무 연속성 제공을 통한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 혁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전자적 업무수행 등),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7조(정보통신기술의 보급·활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② 추진경위

- ‘09.12. : 「스마트오피스 추진계획(안)」,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 ’10.7. :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전략」 VIP 보고
- ’10.11. : ‘스마트워크센터’ 2개소 구축(도봉 · 분당) 및 시범운영
- ’11.12. : ‘스마트워크센터’ 7개소(서초 · 부천 · 수원 · 잠실 · 구로 · 인천 · 일산) 구축 · 운영
- ’12.11. : 세종청사 스마트워크센터 개소
- ’12.11. : 스마트워크센터 능률적 이용가이드 및 운영지침 제정
- ’13.10. : 국회, 과천청사, 서울청사,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4개소 구축
- ‘14.4. : 인천센터 통합 및 일산센터 이전
- ‘14.6. : 세종2 스마트워크센터 개소
- ‘14.12. : 대전청사 스마트워크센터 개소
- ‘15.12. : 강남고속터미널 스마트워크센터 개소
- ’16.03. : 공공기관과 협업하는 민간에 센터 영상회의실 개방
- ’16.12. : 제2회 대한민국 스마트워크 대상 개최(미래부·고용부 합동)
- ’17.6. : 도봉 스마트워크센터 폐쇄
- ’17.9. : 수서 스마트워크센터 개소
- ’17.12. : 제3회 대한민국 스마트워크 대상 개최(과기정통부·고용부 합동)
- ’17.12. : 수원, 부천 스마트워크센터 폐쇄
- ’17.12. : 제3회 대한민국 스마트워크 대상 개최(과기정통부·고용부 합동)
- ’18.12. : 스마트워크 우수사례 및 슬로건 공모전 실시
- ’18.12. : 오송역 스마트워크센터 개소
- ’19.12. : 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 확대 구축 개소
- ’20.12. :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이전·확대 구축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스마트워크센터 17개소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00%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2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등)

3) 사업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 사업별 예산배정 및 성과관리	행정안전부
↓	
■ 협약체결(사업수행계획서, 예산배정계획 등)	행정안전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 세부사업계획 수립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 사업비 지급	행정안전부
↓	
■ 사업수행(직접수행 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 (익년) 추진실적 등 협약결과 보고	행정안전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 업 명
19. 행정정보화지원 및 관리조정(정보화) (2041-5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010	015
명칭					일반공공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1	502
명칭	전자정부	행정정보화지원 및 관리조정 (정보화)	행정정보화지원및관리조정 (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행정정보화 지원 및 관리조정(정보화)	4,311	3,952	3,952	6,149	3,958	3,958	6	0.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지원 정보화사업 관리 운영 지원)**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정보화사업 운영·관리 전문기관에 대하여, 관련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대민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공통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시설관리 유지비 등 경상경비 지원
- **(지역정보화 관련 연구수행)**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개발 및 시의성 있는 지역정보화 발전과제 발굴
- **(행정정보화지원을 위한 기본경비)**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 행사 추진 등 지역정보화 지원을 위한 기본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지원 정보화사업 관리 운영 지원)** 전자정부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

법 제7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시행령 제87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정보화 추진 및 지원)**

- **(지역정보화 관련 연구수행)** 전자정부법 제65조

법 제65조(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② 추진경위

- **(국가지원 정보화사업 관리 운영 지원)** ’05년 ~ 계속
- **(지역정보화 관련 연구수행)**
  - ·’14년 : 정보화마을 특성별 활성화 방안 연구 등
  - ·’15년 : 지방자치단체 정책지원을 위한 데이터 분석 운영체계 연구 등
  - ·’16년 : 지역정보화 성숙도 진단모델을 활용한 지자체 정보화 수준측정 방안 연구
  - ·’17년 : 지자체 정보시스템 운영수준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 ·’18년 : 정보화마을의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활성화와 연계방안 연구
  - ·’19년 : 북한의 전자정부 정책동향 파악 및 남북한 전자정부 협력과제 발굴 연구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5년 ~ 계속
- 사업규모 :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보조)
- 사업 수혜자 : 국민, 지자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00	전자정부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

3) 사업 집행절차

□ (출연사업) 사업확정 → 협약체결 → 세부사업확정 → 출연기관 직접수행, 사업자 선정 → 사업추진 → 결과물 인수 → (익년)사업비 정산

□ 민간 보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수행)

▪ 사업계획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행정안전부
↓	
▪ 국고보조금 신청서 심사 및 교부결정	행정안전부
↓	
▪ 국고보조금 지급요청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행정안전부
↓	
▪ 국고보조금 지급	행정안전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 사업수행(직접수행)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 (익년)추진실적 보고 및 사업비 정산	행정안전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사 업 명
20.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정보화) (2046-5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6	502
명칭	전자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정보화)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정보화)	31,939	36,288	152,358	201,335	199,668	186,288	33,930	22.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데이터 제공 기반 조성)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활동 지원 및 공공데이터포털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 국민수요기반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분야 핵심 데이터 발굴 개방 확대 추진
-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 공공데이터법 제22조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 품질관리 수준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수준평가 실시 및 공통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표준화 확대 추진
-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민간 유사중복서비스 실태조사,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조사, 교육·훈련 및 창업경진대회 개최를 통한 공공데이터 활용 모델 발굴 및 활용 확산
  - 공공기관별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화(메타데이터 관리 등)를 통한 효율적 데이터 통합 제공·관리를 위한 범정부데이터플랫폼 운영 유지관리
- (공공데이터 개방 일자리 창출 지원) 공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창업 관련 공공데이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기업투자 유치 컨설팅, 교육 등
- (공공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 국정과제, 사회현안, 다부처 협업과제 등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부의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데이터기반 행정관행 정착
  -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라 기관간 데이터 연계 활성화 및 공동활용 촉진을 위한 데이터 통합관리체계 마련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가속화)
  - 코로나19 이후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사업 추진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속도감 있게 개방하여 데이터 활용기업 성장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2013년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13.7.30), 시행('13.10.31)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구성·출범,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 출범('13.12)
- 제1차('14~'16)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수립(공공데이터전략위, '13.12)

〔 2014년 〕

-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전략' 심의·의결(공공데이터전략위, '14.9.16)
-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개방 계획' 심의·의결(공공데이터전략위, '14.12.30)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정, 고시('14.3.),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제정, 고시('14.10.)

〔 2015년 〕

- 제1차('15~'16)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추진(부동산, 건축, 상권정보 등 11개 분야 개방)
- 대한민국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달성('15.7.6, 'Government at a Glance 2015')
- '민간창업 촉진을 위한 모바일 공공앱 등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 방안' 보고(국무회의, '15.2)

〔 2016년 〕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추진계획 수립(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16.2)
- 공공기관 앱·웹서비스 대상 민간서비스와 중복·유사서비스 정비계획 수립('16.2)
- 제2차('17~'19)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수립(공공데이터전략위, '16.12)
- 제2차('17~'19)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계획 수립(공공데이터전략위, '16.12)

〔 2017년 〕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콜라보(Collabo) 프로젝트 운영계획' 수립('17.5)
- 대한민국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2회 연속 1위 달성('17.7, 'Government at a Glance 2017')
- 민간주도의 '오픈데이터포럼' 출범('17.7)
- 제5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17.10)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관련 사항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 하는 행정 8.5. 정부 업무 지능화로 스마트한 정부 행정 구현 8.5.1.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과학적 정책결정체계 구축 8.5.4. 민간활용도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 및 혁신 창업 지원 8.5.5.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 2018년 〕

- 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 출범 및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수립('18.2)
- 공공기관 보유데이터 전수조사 실시('18.5~8)
- 제6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18.11)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18.12)
- 범정부 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한 범정부 데이터플랫폼 1차 구축('18.7~'19.3)

〔 2019년 〕

- 2019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수립(공공데이터전략위, '19.2)
-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19~'21) 개방계획 마련(공공데이터전략위, '19.2)
- 대한민국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3회 연속 1위 달성('19.11, 'Government at a Glance 2019')
- 제3차('20~'22)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수립(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19.12.)
- 제3차('20~'22)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개방계획 수립(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19.12.)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중장기계획 수립('19.12.)
- 디지털 정부혁신 ('19.11.)

6.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1 범정부 데이터 연계·활용 기반 강화 2 국민에게 가치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기업 및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00%	공공데이터법 제13조, 제14조, 제38조

3) 사업 집행절차

○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 기본계획 수립 ■ 사업별 예산배정 및 성과관리	행정안전부
↓	
■ 계약(협약)체결(사업수행계획서 등)	행정안전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	
■ 세부사업계획 수립	
↓	
■ 사업비 지급	
↓	
■ 사업수행(직접수행, 협력기관 위탁수행 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	
■ (익년) 추진실적 등 계약(협약)결과 보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	
■ (익년) 결산	행정안전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 빅데이터 컨설팅 및 빅데이터 분석과제 구축 지원

기관 수요조사 (전년 11월)	⇒	공공빅데이터 전문위원회 과제 심의 (전년 11월)	⇒	사업계획 작성 (전년 12~2월)	⇒	사업 조달 발주 (3월)	⇒	사업 추진 (4~12월)

사 업 명
21.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화) (2046-5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일반계정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6	504
명칭	전자정부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정보화)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화)	3,512	5,767	5,767	15,365	13,072	13,072	7,305	126.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행정·공공·금융기관 등의 민원업무 처리시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확인·처리하여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편의 및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비임
-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 운영)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이용 정보보유기관 및 이용기관 업무협의, 공동이용 사용기관 교육, 설명회, 현장실사 등을 위한 것임
- (미래 행정정보공동이용 기반구축) 최근 데이터이용 활성화 분위기에 맞춰 정보유통서비스 확대, 정보주체본인의 자기정보활용권 강화 등을 위해 디지털정보전송체계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8조(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제37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② 추진경위

- 행정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05.12～'06.5)
- 행정정보공동이용 기반구축사업('05.12～'08.10, 1～3단계 추진)
-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구축사업('09.8～'11.11, 1～3단계)
-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 기능 고도화 사업('12.6～'13.12, 1～2단계)
- 범정부 정보유통허브(HUB) 구축 사업('14.4～'20.12, 추진중)
- 미래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BPR/ISP사업 추진('18.07～'19.01)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일반국민(민원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활한 유지보수 및 운영 지원 체제 지속 유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와 제도개선,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운영

<유지보수사업 업무 절차도>

① 유지보수 관련 기본계획 수립 (전년도 8월말~9월초까지)	⇨	② 사업계획서 작성 (전년도 9월말까지)
③ 사업계획서 보고 (전년도 9월말까지)	⇨	④ 일상감사 의뢰(감사부서) (전년도 10월초 경)
⑤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확정 (전년도 10월중순까지)	⇨	⑥ 계약의뢰(경리부서, 조달청) (전년도 10월말까지)
⑦ 입찰공고 및 제안평가(조달청) (전년도 11월중순까지)	⇨	⑧ 사업자 선정·계약(조달청) (전년도 11월말까지)
⑨ 사업착수 및 현황업무 분석 (전년도 12월말까지)	⇨	⑩ 유지보수 실시 및 유지보수비 집행 (당해년도 1월부터 매월)

사 업 명
22.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정보화) (2046-5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일반계정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6	507
명칭	전자정부	공공데이터개방및활성화지원(정보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	국회확정(B)		(B-A)/A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정보화)	-	5,300	5,300	5,300	5,268	5,268	△32	△0.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 마이데이터 지원시스템 구축)**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통한 본인정보의 제공·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모든 행정·공공 기관으로 대상 확대와 각 기관별 별도 시스템 연계·개발에 따른 중복투자를 방지함
- **(마이데이터 기반마련 지원)**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보보유 및 정보활용 기관과의 업무협의와 올바른 시스템 운영을 위해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함
- **(마이데이터포털 운영 및 지원)** 신용정보법 개정·시행('20.8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 신설 및 개인신용정보 전송이 의무화되어 공공부문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중계운영,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본인 신용정보관리 사업자 등으로의 API를 통한 전송 필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 전자정부법 제8조(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제12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 신용정보법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② 추진경위

-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18.6,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 및 검토과제('19.10, 관계부처합동)
-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관계부처합동, '19.12) 우선추진과제 2.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 디지털정부혁신 민간 워킹그룹 마이데이터 분과 구성·운영(2020.3~)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 구축(2020.6~)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정부·지자체·공공기관(1,200개) 및 대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14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등), 전자정부법 제71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3) 사업 집행절차

본계획 수립 및 출연협약(위탁계약)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출연협약 추진
⇩	
사업 세부추진 계획 수립	출연기관에서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검토 승인 후 발주
⇩	
사업시행	출연기관 주관으로 사업시행 및 산출물 검토
⇩	
사업 추진실적 보고	사업 산출물 보고

사 업 명
23. 지능형 서비스 확대 및 운영(정보화) (2031-5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1	504
명칭	전자정부	전자정부실행기반마련	지능형 서비스 확대 및 운영(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지능형 서비스 확대 및 운영(정보화)	-	-	-	871	459	459	459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운영)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국민이 익숙한 채널(메신저 등)로 적시에 알려주고 신청·납부·처리까지 가능한 '개인화된 국민비서'를 제공
- (챗봇 공통기반(민원상담 365) 운영) 국민들이 개인 상황에 맞는 챗봇을 찾을 필요없이 하나의 챗봇과의 대화로 개인이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 플랫폼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제20조(전자정부 포털의 운영)
- 동법 시행령 제16조(전자정부 포털의 구축·관리 및 활용 촉진 등)

② 추진경위

- 공공분야 인공지능 정책수립 및 제도운영 업무 신설(직제)
  · 디지털정부국 공공지능정책과 신설('20.4.28.)
-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구현
  ·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서비스 재설계 ISP('18.8.~'19.3.)
  · 국무회의 보고「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19.10.)
  ·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 추진('20.~'22.)
- 챗봇 공통기반(범정부 민원상담 365) 구현
  ·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서비스 재설계 ISP('18.8.~'19.3.)
  · 국무회의 보고「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19.10.)
  · 챗봇 공통기반(범정부 민원상담 365) 구축 추진('20.~'22.)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행정안전부, (출연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행정·공공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00	전자정부법 제71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3)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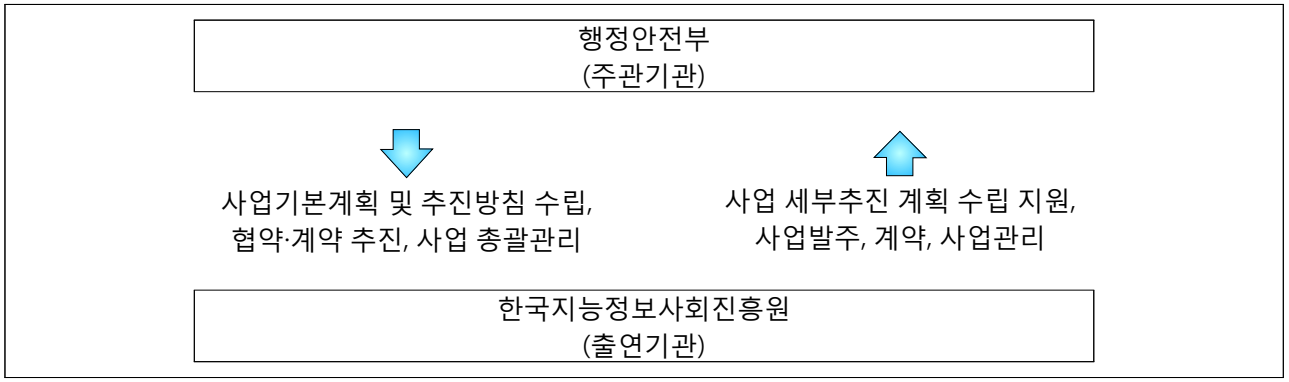

사 업 명
24.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정보화) (2032-5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506
명칭	전자정부	지역정보화지원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정보화)	-	-	-	2,092	1,652	1,652	1,652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은 ‘04년 구축 후 15년 이상이 경과,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기능 개선 한계로 최신기술 적용이 불가하여 공무원 및 대국민 서비스 불편해소 필요

○ 향후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BPR 사업비 편성필수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6조(지역정보화의 추진)
- 전자정부법 제65조(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 지방자치법 제166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② 추진경위

- 시도·새올 행정정보시스템 및 행정공간정보시스템 등 구축·운영
  · (시도) ’02년 BPR/ISP 수행, ‘04년～’06년 1, 2단계 구축사업 추진
  · (새올) ‘04년 고도화 BPR/ISP 수행, ’05년～‘06년 1, 2단계 구축사업 추진
  · (행정공간*) ‘07년 ISP 수립, ’09년 시범사업, ‘10～’12년 구축사업 추진
    * 인허가·지도점검·현장보고 등의 업무에 공간정보 활용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지방자치단체

3)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기본계획 수립	행정안전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른 차세대 지방행정공통 시스템 업무분석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②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업무위탁	행정안전부	연도별 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지역정보개발원 (KLID)에 업무 위탁 수행
⇩		
③ 사업추진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연도별 사업 발주 및 사업관리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		
④ 시스템 분석설계	민간사업자	국가위임사무 업무프로세스 분석설계
⇩		
④ 사업완료 및 평가	행정안전부	사업이 목적에 맞게 구축되었는지 평가, 차년도 사업 계획 수립 시 반영·시행

사 업 명
25. 공공서비스 민간개방 추진(정보화) (2039-5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 개방담당관	0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9	504
명칭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확충(정보화)	공공서비스 민간개방 추진(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공공서비스 민간개방 추진(정보화)	-	-	-	3,362	630	630	630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서비스를 카톡과 같은 민간 웹, 앱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국민 접근성·편의성 제고하고, 민간-공공서비스 융합을 통한 新산업·일자리 창출

○ (공공서비스의 민간 개방을 위한 Open API 플랫폼 구축·운영) 국민이 평소 사용하는 민간서비스(포털, 앱 등)에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플랫폼을 구축·운영*

* '21년 BPR/ISP→ '22년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21조(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② 추진경위

○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19.10.29, 국무회의 보고)

-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21개 우선 추진과제 수립

※ 관련 과제 : 6-2 오픈 API를 통한 공공서비스 개방 추진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20.6.23, 국무회의 보고)

※ 관련 과제 : 3-3 공공서비스 민간개방·협력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사업 수혜자 : 공공, 민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00%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14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등), 전자정부법 제71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3)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서 작성·확정	사업계획서 작성, 행안부와 전문기관협의, 사업계획서 확정
⇩	
사업자 선정	전문기관이 조달청에 사업자 선정을 의뢰, 조달청에서 사업자 선정
⇩	
사업추진	전문기관은 사업자와 협의하여 사업추진, 전문기관은 전문기술지원 및 사업관리, 용역 품질 관리
⇩	
사업비 지급·완료	전문기관은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사업자에게 사업비 지급
⇩	
사업 성과점검	전문기관은 성과점검을 실시, 결과를 차기 사업에 반영

지방자치분권실

2021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1. 불우소외계층격려 ····· 203

2. 자치분권위원회 운영 ····· 205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개발연구등지원 ····· 208

4. 지자체 조직 및 인사관리 효율화 ····· 211

5.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 216

6. 주민등록제도개선 및 운영 ····· 219

7. 지방분권·균형발전 홍보지원 ····· 222

8.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지원 ····· 224

9.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역량강화 ····· 228

10. 지자체기능분류모델시스템운영(정보화) ····· 231

11. 자원봉사1365시스템운영(정보화) ····· 233

12.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운영(정보화) ····· 236
13.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 239
14. 지자체경쟁력지원 ····· 242
15. 비영리민간단체지원 ····· 247
16. 자원봉사활성화지원 ····· 250
17. 새마을운동지원 ····· 253
18.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ODA) ····· 255
19. 행복한 선진시민사회 구현 ····· 259
20. 공무원단체건전육성 ····· 262
21.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 265
22.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확산 ····· 270
23.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정보화) ····· 274
24.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 구축 ····· 276

사 업 명
1. 불우소외계층격려 (7011-29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96
명칭	행정안전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불우소외계층격려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불우소외계층격려	1,887	1,900	1,900	1,957	1,900	1,900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격려로 매년 연말에 대통령 명의의 선물 지급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당없음

② 추진경위 : 정부 차원의 불우계층 격려 사업

- '81년부터 매년 연말에 불우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대통령님 명의의 선물 지급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81년~)
- 사업규모 : 약 82,000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소년소녀가장, 100세 이상 노인, 양로원 노인, 쪽방촌 거주자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환경미화원, 하수종말처리장 종사자, 쓰레기 매립장 종사자, 화장장 종사자, 탄광근로자 등 현장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행정안전부 –	· 불우소외계층 등 정부연말선물 지급 계획수립	· 소외계층 및 현장근로자 10개 계층
⇩		
자치단체 –	· 대상자 수요조사	· 전수조사
⇩		
행정안전부 –	· 생활 필수품 등 지급 물품 선정 협의 · 연말 소외계층 지원계획 확정	
⇩		
시·도, 시·군·구 –	· 대상 계층별 지급 물품 선호도 조사	· 전수조사
⇩		
행정안전부 –	· 물품제작 계약 등 추진	
⇩		
시·도, 시·군·구 –	· 물품 인수 및 배부 결과 보고 (시군구 → 시도 → 행안부)	· 미담사례, 개선사항 등 결과 보고 · 문제점 개선 등 평가·환류

사 업 명
2. 자치분권위원회 운영 (11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1
명칭	지방자치분권	지자체역량강화	자치분권위원회 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자치분권위원회 운영	2,686	3,155	3,105	4,779	3,209	3,209	54	3.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업목적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4조에 따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핵심과제 심의·의결

□ 사업내용

-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시행
-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위원회 차원의 의견제출
- 읍면동 주민자치 기반 강화, 지자체 및 주민의견 수렴 활성화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4조

② 추진경위

- '13. 5. 28.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공포·시행
- '13. 9. 13.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출범
- '13. 10. 23. :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 및 제1차 위원회 회의 개최
- '14. 12. 8. :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확정
- '15. 3. 20. / '16. 2.19. : 지방자치발전 연도별('15, '16) 시행계획 수립
- '18. 1. 23. : 제3기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구성
- '18. 3. 20. : 지방자치발전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 명칭 변경
- '18. 9. 11. : 자치분권 종합계획 국무회의 심의·의결 대국민 발표
- '19. 2. 22. :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확정
- '20. 7. 7. :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3-2023 *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존속기한 5년 연장(18.3.20.)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자치분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전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자치분권 과제 발굴 및 추진방향 설정	-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4대협의체, 정치권, 학계 등 참여
⇩	
관계기관·단체 의견 수렴	- □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 □ 공청회 및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 실시
⇩	
전문위원회 검토·조정	- □ 과제별 실행계획의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	
분과위원회 심의·의결	- □ 자치분권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 심의·의결
⇩	
본 위원회 심의·의결	- □ 자치분권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 심의·의결
⇩	
대통령 보고	- □ (차관·국무회의 필요시 보고) 대통령 최종 보고
⇩	
소관부처 등 통보 및 대국민 공표	-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 □ 언론매체 등 활용해 대국민 공표
⇩	
이행상황 점검·평가·독려	- □ 자치분권과제 추진상황 점검·평가 □ 결과를 국무회의 심의 거쳐 대통령 보고 후 해당기관에 권고·독려 및 다음 년도 시행계획 반영

사 업 명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개발연구등지원 (11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2
명칭	지방자치분권	지자체역량강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개발연구등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개발연구 등 지원	3,054	3,054	3,054	3,440	3,054	3,054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와 지방의 상생·협력 및 지방행정 자치제도 정책연구개발을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운영, 정책연구 및 조사활동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3조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개정, 국가예산 지원근거 마련('06.3)

- 관련법 개정 후 지방자치 발전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지급('07~'11)

- 관련법 개정으로 '12년부터 지원방식 변경(국고보조→출연금)('11.3)

* 수탁용역 중심에서 벗어나 핵심 연구사업 집중 및 정책과제 품질 향상 제고

□ 주요내용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사업기간: '06년 ~ 계속
- 사업규모: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출연
- 사업시행주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사업 수혜자 : 지방자치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5.3%	한국지방행정연수원 육성법 제3조

3) 사업 집행절차

- (사업내용) 국가와 지방의 상생·협력 및 지방행정 자치제도 정책연구개발을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운영, 정책연구 및 조사활동 지원
- (관계법령)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출연금) ①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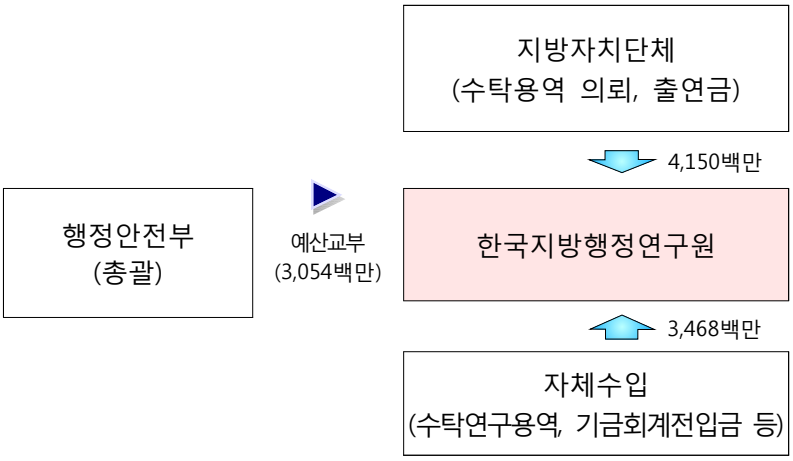

사 업 명
4. 지자체 조직 및 인사관리 효율화 (11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정책관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 ·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4
명칭	지방자치분권	지자체 역량강화	지자체조직 및 인사관리 효율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지자체 조직 및 인사관리 효율화	534	564	564	831	730	730	166	29.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가) 지자체 조직분석 및 진단

○ 지방자치단체 조직 자율권 확대(총액인건비제→기준인건비제로 변경, '14.3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운영 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진단하여 개선함으로써 조직관리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책임성 확보

나) 지자체 균형인사정책 등 인사혁신 지원

○ 여성·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직임용을 확대하고 성과·역량 중심의 지방인사제도 개선을 통한 공직경쟁력 확보

다)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운영

○ 지방 간부공무원 선발의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

라) 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을 통해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처와 그 결과 국민 편익 증진,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성과, 우수사례를 국민에게 홍보하여 정부신뢰 제고

2) 사업개요

가) 지자체 조직분석 및 진단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및 동령 시행규칙 제5조 등

② 추진경위

- '05년 : 지자체 인력에 대한 총액인건비제 도입 결정 시, 자치단체 조직운영 상황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조직평가·진단제도 도입
- '07년 :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 기존의 조직평가·진단제도를 컨설팅 중심의 분석·진단제도로 개선
- '08년 : 조직분석·진단 기본모델 개발
- '09년 : 변화하는 행정여건을 반영하는 총액인건비 모델 재개발
- '10년~: 지자체 조직분석·진단 연구용역 실시(2~3개 지자체 대상)
- '17년 :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진단 개선계획을 마련, 정밀진단 확대(25개 지자체 대상)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사업규모 : 25개 지자체 (광역 3, 기초 22)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지방자치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나) 지자체 균형인사정책 등 인사혁신 지원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및 제16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 제51조의3·제51조의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3조

② 추진경위

- ’10. 1: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으로 육아휴직 사전예고제 시행
- ’11. 5: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대상요건 확대(만6세→만8세)
- ’11. 7: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성화 방안을 균형인사 운영지침 반영
- ’12. 2: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한부모가족‘ 포함
- ’12. 3: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북한이탈주민·귀화자의 경력경쟁임용(일반직) 근거 마련 및 ‘기능인재 추천제’ 도입
- ’12. 9: 제3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12～’16) 수립
- ’13. 1: 양성평등채용목표제 3차 연장시행(’13~’17)
- ‘14. 1: 대체인력 관리제도 개선, 사회복지인력풀 설치단위 확대 등 관련 균형인사 운영지침 개정
- ‘15. 11: 지방공무원 역량평가제 도입·실시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
- ‘16. 2: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관리 문화 확산(대통령 지시)
- ’16. 4: 2016년 지방인사혁신 중점추진과제 보고
- ‘16. 4: 지방인사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4.27. 행자부 훈령)
- ‘17. 3: 제4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17.~’21.) 수립
- ‘17. 3~9: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인사컨설팅 실시(5개 시·도)
- ‘17. 11: 2017 지방인사혁신 컨퍼런스 개최
- ‘17. 11: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국무회의)
- ‘17. 12: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개정
- ‘17. 12: 2017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 및 워크숍 개최
- ‘18. 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신설(균형인사계획의 수립·시행)
- ‘19. 9: 균형인사 정책 확대를 위한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수립
- ‘19. 11: 균형인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균형인사 운영지침 반영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98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자치단체 여성·장애인·시간선택제·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기술계 고졸 등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다)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운영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2015.11.18. 신설)

② 추진경위

- ’14. 10: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평가강화 관련 장관 지시
- ’15. 1: 지방간부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 실시관련 VIP연두업무보고
- ’15. 5~11: 지방간부공무원 역량평가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2SET 개발)
- ’15. 11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신설<‘16.5. 시행>)
- ’16. 7: 지방인사제도 혁신 추진방안 수립
  ※ 평가센터: 지방인사혁신추진단, 교육센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16. 8: 지방인사혁신 추진계획 수립
- ’17. 2: 정원 2명(4.5급 1, 주무관 1)을 역량평가전담인력으로 배정
- ’17. 10: 시도 국장급 후보자 대상의 역량평가 실시
- ’18. 5: 시도 국・과장급 후보자 대상 역량평가 시행(3개 지자체, 54명)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8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지방자치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라) 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 제8조, 제19조

② 추진경위

- ‘19. 3 : 관계기관 합동 적극행정 추진방안 수립(국정현안점검회의)
- ‘19. 8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정·공포
- ‘19. 11 :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인사혁신처 개최)
- ‘19. 9 :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간담회 개최
- ‘19. 10 : 중앙·지방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공유대회 개최
- ‘19. 12 : ’국정과제 30-5. 적극행정 활성화‘ 반영
- ‘20. 6 :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 ‘20. 8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 개정

3) 사업 집행절차

가) 지자체 조직분석 및 진단

진단대상 선정('21년)		정밀진단('21년)		진단결과 반영('22년)
▸진단 대상 지자체 선정	▶	▸착수보고 ▸지자체별 현장방문 협의 및 정밀진단 ▸중간·최종보고 ▸행안부 종합보고	▶	▸진단결과 지자체 통보 ▸지자체별 조직개편 및 기능 인력 재배치 등 추진 ▸진단결과 이행상황을 기준 인건비 등 조직관리에 반영

나) 지자체 균형인사정책 등 인사혁신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 균형인사 정책 추진

- 계획 확정·통보(행안부→지자체) → 시도 의견수렴, 관계공무원 등 간담회 개최 → 제도개선과제 발굴 → 관련법령 개정 및 지침(예규) 반영

②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및 여성공무원 통계 산출

- 통계 담당공무원회의 개최 및 의견수렴 → 계획 확정·통보(행안부 → 지자체) → 공무원 인사(여성공무원)통계 매뉴얼 발간(행안부 → 지자체) → 시·도 합동작업 → 결과 분석·검증 및 확정 → 지자체 배부(행안부 →지자체) → 정책자료 활용

③ 균형인사 관련 정책자료(편람) 발간

- 계획 확정·통보(행안부→지자체) → 시·도 의견수렴 및 자료수집 → 정책자료(편람) 작성 → 지자체 배부(행안부) → 정책집행 시 활용

다)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운영

<위탁평가의 단계별 운영 프로세스>

Step1	→	Step2	→	Step3	→	Step4
사전협의		위탁평가 신청		평가대상자 확정		위탁평가 실시

(1) 사전협의

○ 위탁평가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직급, 평가대상자, 평가방법 등을 정할 수 있음

(2) 위탁평가 신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0월초에 자체수요 조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역량평가를 요청

(3) 평가대상자 확정

○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지방자치 단체로 위탁평가 실시여부를 통보

(4) 위탁평가 실시

○ 매년 상, 하반기로 나누어 수요인원에 따라 실시시기 결정

사 업 명
5.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1131-31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14
명칭	지방자치분권	지자체역량강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운영	415	381	381	**616**	**457**	**457**	86	22.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신체·생명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주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및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주민등록법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제7조의5(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② 추진경위

- ’14. 1. 카드 3사(KB국민, 롯데, 농협) 개인정보유출 사고
- ’15. 7. 「주민등록번호의 제한적 변경 허용방안 마련」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발표(관계부처 합동)
- ’15.12.23. 헌법재판소, “주민등록법이 번호변경 규정하지 않음은 헌법불합치”결정
- ’16. 5.29.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공포(’17.5.30. 제도 시행)
- ’16. 8. 5.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추진단 설립
- ’17. 5.30.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및 사무국 출범
- ’17. 5~11.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홈페이지 및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 ‘19. 5.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제2기 출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7~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 피해(우려)가 있는 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신청자→시장·군수·구청장) ⇨ 변경청구(시장·군수·구청장→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 심사·의결(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 변경통보(시장·군수·구청장→신청자)

◀ 번호변경 신청 처리 절차 ▶

	번호변경 신청 접수	⇨	사건 배정	⇨	검토 및 조사보고서 작성	⇨ 위원회 회의 (사실조사 의결)
⇨	사실조사 실시	⇨	조사보고서 작성 (사실조사 반영)	⇨	위원회 회의 (결정)	⇨ 통지

사 업 명
6. 주민등록제도개선 및 운영 (1131-31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15
명칭	지방자치분권	지자체역량강화	주민등록제도개선및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주민등록제도개선 및 운영	139	151	151	151	151	151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주민등록, 인감·본인서명, 행정사제도 운영·개선을 통한 민원행정 효율성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증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민등록법 제3조(감독 등)
- 인감증명법 제3조(인감신고 등),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지도·감독 등)

② 추진경위

-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구축 및 전국 온라인 개통('97. 2.)
- 인감증명 읍·면·동시스템 구축('02.~ '03.)
-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11.12.30.)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12.12.1.)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개시('13.8.2.)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전체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 시행('15.1.1.~)
-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시에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전국 어디서나 본인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열람 가능하도록 조치('16.1.5.)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공포('16.5.29.)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17.5.30.)
- 외국인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로 다문화가정 차별 해소('18.3.20.)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피해인정 서류 확대('19.11.19.)
- 내구성과 보안요소를 강화한 새로운 주민등록증 도입('20.1.1.)
-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및 부여방식 개선으로 개인정보 강화('20.10. 예정)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7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3) 사업 집행절차

① 주민등록·인감·본인서명제도 운영

② 주민등록·인감·서명확인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제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인감증명·서명확인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 전문가 자문·회의, 지자체 담당자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 - 교육·워크숍·현장점검 등을 통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사항 전파	⇒	▸법령 개정·제도개선 사항을 일선에서 집행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제고

사 업 명
7. 지방분권·균형발전 홍보지원 (1131-31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16
명칭	지방자치분권	지자체역량강화	지방분권·균형발전 홍보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지방분권·균형발전 홍보지원	1,000	1,000	950	1,000	950	950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핵심 국정과제(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필요성 및 그 성과와 유용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당없음

② 추진경위

- ’17.7.~ : 100대 국정과제 선정(국정과제 74~77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국정과제 78 –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 ’17.10.~ : 지방분권 로드맵 마련 등
- ’18.1.~ : 자치분권·균형발전 홍보계획 마련
- ’19.1.~ : 자치분권·균형발전 홍보계획 수립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8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8.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지원 (1131-31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010	013
명칭					일반 · 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17
명칭	지방자치분권	지자체역량강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	-	50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지원	3,569	3,846	3,787	6,046	3,176	3,176	△611	△16.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개선 및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사회적 가치제고 및 행정의 문제해결력 증진
-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주민자치 강화, 지역 특성에 따른 다양한 마을모델 발굴 등 주민의 관점에서 읍면동의 종합적 기능개선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4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7조
-「사회보장기본법」제29조
-「주민복지서비스 개편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13호)
-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17.7월)

> ◇ 국정과제
> ① 국정목표4(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마을자치 활성화)
> ② 국정목표2(더불어 잘사는 경제) -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 ③ 4대 복합·혁신과제 - 4-⑤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및 마을자치 활성화

② 추진경위

▪ 추진배경

- 핵심 국정목표인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양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방분권과 함께 현장에서의 주민자치 확대 필요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구축 사업은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공공서비스의 효과성 및 문제해결력을 제고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증진하는 사업임
-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주민들이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의 가치를 찾는 풀뿌리 자치활동과 이웃에 대한 포용과 배려 등 공동체내 돌봄을 활성화할 필요

> ⇨ 이를 위해 주민과 접촉하는 최일선 행정단위인 읍면동을 주민 생활자치와 공동체 돌봄을 위한 중심으로 혁신

▪ 주요경과

○ 사업도입 및 모델발굴 ('17.8.～'18.12.)

- (사업발표) BH 사회혁신수석,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사업구상 발표('17.8.)
- (훈령제정) 근거훈령(대통령훈령) 제정 및 전담기구* 설치('17.11.)
  * 지방자치분권실장 소속『혁신읍면동추진단』설치(1단 3팀 20명)
- (사업개편) 국회 예산삭감에 따른 사업 전면개편('18.1.)
- 지자체 주도, 행안부 지원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모델 창출·확산
  *『혁신읍면동추진단』→『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으로 개편
- (현장 우수사례 발굴) 자치단체 사업모델 발굴·공유
- (관계부처 연계사업) 관련 부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사업 지원

○ 사업확산 ('19.1.～'19.12.)

- (매뉴얼) 현장 적용을 위한 업무매뉴얼 수립·배포 ('19.4.)
- (모델적용) 읍면동 현장인력 확충, 주민자치회 확산 등 사업모델 적용
- (교육·컨설팅) 자치단체 담당자 교육 및 현장 컨설팅 ('19.4.~12.)
- (지역사업) 주민과 지역사회 관점의 지역사업 지원모델 설계

○ 주민복지 전달체계 사업과제 도출 ('19.3.～'19.12.)

- (사전논의) BH 사회수석 주재 '전달체계 개편 간담회' ('19.3.～4.)
  * BH 사회수석실, 복지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 논의
- (추진방안 도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을 확대 개편해 주민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토록 하는 방안 제기 ('19.5.)
- (추진단 개편) 범정부 추진기구인『주민복지서비스 개편 추진단』조직설계 및 관계부처 협의 ('19.7.~12.)
  * 추진단 설치·운영규정(대통령훈령) 개정·시행('20.1.1.)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행정안전부, (참여기관)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

3) 사업 집행절차

○ (**추진절차**) 계획수립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모델 제시 → 현장 우수사례 발굴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모델 확산

○ (**추진체계**) 행안부(사업총괄) ⇄ 시·도(연계·지원) ⇄ 시·군·구(사업실시)

- 행안부(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 : 사업총괄, 부처 연계, 지자체 지원
- 시·도(총괄부서) : 광역단위 사업추진, 관할 시군구 지원
- 시·군·구(복지/보건/자치/총괄부서 등) : 사업 실시, 현장소통, 읍면동 지원

사 업 명
9.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역량강화 (11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정책관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 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2	300
명칭	지방자치분권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역량강화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역량강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역량강화	506	8,543	8,340	1,041	986	986	△7,354	↓8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지원 및 공무원 선거중립 등 공명선거 구현 지원
- 주민 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소환 사무의 공정한 관리·지원 및 제도개선
-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운영실무 지원 및 교육·연수 제도화, 현안·제도개선 요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 국가와 지방간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통해 권한과 책임이 조화되는 성숙한 지방자치 지원
- 주민조례 제·개폐청구 제도 활성화 기반 조성을 통한 주민참여 실질화 추진
- 자치입법 역량강화 및 자치법규 정비 추진을 통한 법령적합성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직선거법 제5조 및 제277조, 주민투표법 제2조, 주민소환법 제5조
-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제172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11조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22～28조, 제107～108조, 제172조, 같은법 시행령 제11～17조

② 추진경위

-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지방의회의원 및 지자체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 중 통일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공직선거법 제277조)
-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의 공정한 관리 지원(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 지방의회 선진화 및 합리적 사무 배분(지방자치법 제166조)
- 획기적인 자치분권 및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위한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국정과제 74-4) 추진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 추진
- 자치분권 추진 등 국정기조의 흐름,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증가(연5% 증가, 국가법령의 20배) 등에 따라 상위법령 불합치·기능상실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비 및 지자체 자치입법 역량 강화 필요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48년 ~ 계속
- 사업규모
  · 공직선거 지원, 주민(소환)투표 관리 및 지원, 지방의회 역량강화
  · 국가사무 총조사 및 사무배분 타당성 검토
  · 주민조례 제·개폐청구제도 활성화, 자치법규 정비 지원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공직선거업무 추진(공직선거법 제37조, 제277조)
  · 대통령·국회의원선거는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관리, 자치단체 선거 담당공무원 명부작성 교육, 공명선거·투표참여 홍보 등 수행
  ·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선거는 법정선거사무의 통일적 수행을 위한 지원업무, 교육 및 지도·점검, 홍보 등 수행

- 주민(소환)투표 관리 및 지원(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투표 경비는 자치단체가 부담(다만,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국가가 부담)하되, 통일적인 법정투표사무 수행을 위한 교육·지도·점검 등을 수행

- 지방의회 역량강화(지방자치법 제166조 등)
  ·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지방의회의 위법성 조례 제정시 재의요구 및 제소 등 대응 관리
  ·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등 활성화, 지속적 사무조사를 통한 국가와 지방간 합리적인 사무배분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 명확화 추진

-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 활성화 추진(지방자치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7조)
  · 지자체 담당 공무원 의견수렴, 주민조례청구제도 개선사항 홍보 등

- 법령적합성 자치법규 지원(지방자치법 제22조~제28조, 제107조~제108조, 제172조)
  · 상위법령에 부적합한 자치법규 과제 등을 발굴하여 지도·점검 등 정비 및 사례집 발간 등 확산 추진
  · 지자체 자치입법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자치입법 역량강화 교육, 자치법규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등

사 업 명
10. 지자체기능분류모델시스템운영(정보화) (1133-5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정책관	일반행정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504
명칭	지방자치분권	기반정보 관련 전산망 운영(정보화)	지자체기능분류모델시스템 운영(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지자체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운영(정보화)	189	189	189	439	239	239	50	26.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자체 기능분류모델(BRM)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자치단체의 모든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하여 행정기능의 효율성을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5조,「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23조

② 추진경위

- '03년 :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선정(정부혁신위)
- '05년 : 중앙부처 BRM 구축 추진(중앙부처 50개에 대한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구축)
- '06년 : 중앙부처 BRM 고도화 사업 추진(시스템 보완 및 지자체 시스템 설계)
- '07～'08년 : 지자체 BRM 시스템 구축(16개 시·도 및 7개 시범 시·군·구 대상)
- '09～'20년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시스템 위탁 운영 실시

※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29개 지자체 시스템 활용 중('20.7월 기준)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9년 ~ 계속
- 사업규모 : 229개 지방자치단체 대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지방자치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수탁 업무추진>

위·수탁 사업계획 수립 (행정안전부) ⇒ 위·수탁 계약체결 (행정안전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위·수탁 업무 수행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업무수행결과보고 및 정산금 반납처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전자정부법 제7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7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정보화 추진 및 지원)

사 업 명
11. 자원봉사1365시스템운영(정보화) (1135-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5	500
명칭	지방행정	자원봉사1365시스템 운영	자원봉사1365시스템 운영(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 확정(B)		(B-A)/A
자원봉사 1365시스템 운영(정보화)	874	1,695	1,695	1,796	1,699	1,699	4	0.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자원봉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자원봉사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동기관 조회, 봉사실적 등록 및 연계 등 자원봉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2]대국민 사용자에게 원활하고 안정적인 온라인 자원봉사 활동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원 봉사활동 만족도 제고 및 자원봉사활성화에 기여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기부문화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부금품 모집자 등록정보 및 비영리·공익법인 등 기부단체 통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8조(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② 추진경위

- **국정과제**에 자원봉사 인프라 확충 및 기부금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포함

> 국정전략 2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 ▪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 2018년부터 **전국 단위 민간 자원 봉사 인프라 확충**, 기부자 예우 강화 및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국가·지자체 책무 강화, **기부금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대통령 지시사항

> ▪ ('10.12.14 국무회의)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진 이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필요. 돈뿐만 아니라 재능, 노력, 자원봉사 등으로도 나눌 수 있음
> ▪ ('10.12.24 봉사가족 초청 오찬 간담회) '11년 국정기조로 '함께 가는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을 선정

- 국무총리실 주관 봉사활동 활성화 정책협의회('12.3월) 및 봉사 활성화 실무협의회 운영(3회)

※ 1365자원봉사포털을 중심으로 봉사관련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연계 추진

■ 추진경과
- 나눔포털(1365자원봉사시스템) 정보기반 구축을 위한 BPR/ISP 및 나눔포털 구축(2011년)
- 나눔정보 연계확대 및 사용자 맞춤형서비스를 위한 나눔 포털 고도화(2012~2013년)
- 나눔포털(1365자원봉사포털·1365기부포털) 안정적 운영 및 기능·성능개선(2016~2017년)
- 데이터 기반 통합 자원봉사 서비스 구현을 위한 ISP 및 시스템 개선(2018~2019년)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및 시스템 구축(2019년~2020년)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1년~계속
- 사업규모 : 사용자 약 1,300만명, 245개 지역자원봉사센터, 기부단체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全국민, 245개 지역자원봉사센터, 6,700여개의 자원봉사모집기관, 기부를 희망하는 모집단체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서 작성	행정안전부	사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		
② 위·수탁 협약체결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계획 수립, 행안부와 KLID 위탁업무 협의, 위탁협약 체결
⇩		
③ 사업자 선정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조달청에 사업자 선정 의뢰, 조달청에서 사업자 계약 체결
⇩		
④ 사업추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수탁기관은 사업자와 협의하여 사업추진, 전문기술 지원 및 사업관리, 용역 품질 관리
⇩		
⑤ 사업 성과점검 및 사업비 정산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추진사업결과에 따른 성과점검 실시, 위탁사업비 정산 및 반납 처리

사 업 명
12.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운영(정보화) (1137-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 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7	500
명칭	지방자치분권	주민등록 및 인감운영(정보화)	주민등록정보센터및전산망 운영(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 운영(정보화)	1,590	1,617	1,617	7,095	5,003	5,003	3,386	209.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전국 3,500여개 광역·기초 지자체 및 읍면동의 주민등록, 인감, 본인서명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 全 국민의 주민등록, 인감, 본인서명 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의 중단없는 서비스와 안전성 유지

○ (비대면-디지털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스템 구축) 비대면 주민등록사실조사를 통해 국민 편의 및 업무 효율 개선

- (목적)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비대면화·디지털 전환'을 위한 '비대면·디지털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스템' 구축
- (내용) '비대면·디지털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세대방문 QR코드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뒤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사실조사 수행방식 전환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 기술 발전과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하는 사회환경에 맞추어 주민등록증을 별도로 휴대하는데 따른 국민불편 해소 필요

- (내용)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이름·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주민등록 시스템을 통해 모바일로 확인해 주는 서비스
  ·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통한 본인 확인, 타인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 주민등록법 개정이 필요한 모바일주민등록증 대신 '확인서비스'를 시범 제공하고 향후 국민공감대 형성 후 법 개정*을 통해 모바일 주민증 전환
    * 임오경 의원(민주당, 광명시갑)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19.7.)
- (필요) 주민등록증 위변조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4차 산업혁명 환경에 맞추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추진 시급
  · 주민등록증 분실시 중요 개인정보 보호 및 위·변조 방지 필요
    ※ '19년 주민등록증 재발급 216만건 중 분실로 인한 경우가 153만건(71%)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8조(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설치 등)
- 주민등록법 제3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인감증명법 제4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인감사무 처리 및 대장관리)
-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활용)

② 추진경위

-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구축 및 전국 온라인 개통 : '97. 2월
-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센터 구축 및 운영 : 2001년~2002년
- 인감시스템(읍면동시스템) 구축 : 2002년～2003년
- 시군구인감시스템 개발 : '03. 9월(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 2단계)
-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시스템 개발완료 : '04. 12월
- 인감대장DB 통합 구축 : '07. 12월 ~
- 대통령께서 인감폐지 등 제도개선 검토 지시 ('09.1.30, 중공교 장·차관 워크숍)
- 인감제도 개편방안 확정 ('09.7.29, 제15차 국경위 전체회의 대통령보고)
-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11.12.30.)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구축('12.6.1. ~ 12.12.)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12. 12. 1.)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개시('13. 8. 2.)
- 재외국민주민등록시스템 구축 : '14.12월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전체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 시행 : '15.1.1.~
-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및 백업 장비 교체 : '15. 6. 16. ~ 11. 20.
- (사실조사 추진 경과) 1968. 9.16. 개정·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서 사실조사 규정
  ·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97~계속
- 사업규모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시·도 17, 시·군·구 226, 읍·면·동 3,500여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전년말)	⇨	조달청 계약의뢰 (운영지원과)	⇨	조달공고 및 계약 (조달청)	⇨	사업추진 및 관리 (연 중)	⇨	사업완료 및 검수 (연 말)

사 업 명
13.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138-5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8	501
명칭	지방자치분권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823	1,812	1,812	3,054	1,812	1,812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인사 관련 업무 전 분야(인사, 급여, 상시학습, 평정 등)에 정보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방공무원 인사, 복무, 급여, 성과관리 등을 통합한 지자체 차세대 지방인사시스템 성공적 구축으로 지자체 인적역량 강화기반 마련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지방고시 응시자에게 채용정보 검색, 원서접수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전 과정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지방인사통계통합시스템 효율적 운영으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인사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신뢰도 높은 통계 산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지방공무원법」제6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보급 등)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대통령령) 제5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63조(응시원서 등의 제출 및 접수)

② 추진경위

- 시도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한 BPR/ISP 사업에 인사분야 포함 추진('02.12～'03.8)
-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로 선정('03.8)
- 지자체 인사행정정보화 기본계획 수립('04.6)
- 지자체 인사행정정보화 1~3단계 사업 추진('04.8～'06.12.)
-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지자체별 운영지원('07.1～계속)
- 지방인사통계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17.12～계속)
-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MP 추진('18.8.~'19.3.)
-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20년~'22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 사업규모 :
  - · 전 지자체 보급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응용SW의 성공적 개발
  - · 현 운영 지방인사시스템 4개 분야(인사, 급여, 통계, 원서접수), 49개 단위업무, 236개 기능, 1,223개 세부기능(메뉴)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 ·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신규/경력) 및 수렵면허시험 등 연간 31만명 응시생에 대한 인터넷 원서접수 지원
  - · 지방자치단체 인사분야 68개, 166종 통계 자동산출 및 분석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
- 사업 수혜자 :
  - ·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이용자 약44만명(243개 지자체 공무원 및 소속공무직 등)
  - · 지자체인터넷원서접수센터 이용자 약 31만명(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생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서 작성	행정안전부	사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		
② 위·수탁 협약체결	행정안전부 ↔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위탁계획 수립, 행안부와 KLID 위탁업무 협의, 위탁협약 체결
⇩		
③ 사업자 선정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조달청에 사업자 선정 의뢰, 조달청에서 사업자 계약체결
⇩		
④ 사업추진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수탁기관은 사업자와 협의하여 사업추진, 전문 기술지원 및 사업관리, 용역 품질 관리
⇩		
⑤ 사업 성과점검 및 사업비 정산	행정안전부 ↔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추진사업결과에 따른 성과점검 실시, 위탁사업비 정산 및 반납 처리

- 위·수탁 협약근거 : 전자정부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사 업 명
14. 지자체경쟁력지원 (1139-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9	307
명칭	지방자치분권	지방자치단체경쟁력지원	지자체경쟁력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지자체경쟁력지원	1,532	1,707	1,675	1,945	1,820	1,820	145	8.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국정의 통합성 및 책임성 확보
- 달인 공무원 선발로 지방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사례확산·공유로 대국민 공직이미지 개선
- 지자체 성과를 비용-효과 측면에서 측정·진단하여 정책 효율성 제고
- 지자체 간 또는 중앙-지방 간 분쟁 조정, 지자체 국제교류 경쟁력 제고 및 지자체 국제화 업무 총괄 조정·지원
- 국민적 역사의식 고취 및 애국심 함양을 위한 의병의 날 기념식,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전국 희망나눔 행사 개최
- 지방자치의 날을 기해 지방자치박람회 개최를 통한 지방 우수 정책성과 공유 및 토론회 운영
- 전 기초 자치단체 대상으로 주민을 위한 창의적인 시책추진 및 청렴하고 모범적인 정책을 추진한 자치단체 심사·선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합동평가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행안부 훈령)
- 지방행정의 달인 : 지방행정의 달인 운영규정(행안부 훈령)
- 생산성지수 :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 측정 등에 관한 규정(행안부 훈령)
- 성과관리 컨설팅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
- 지자체 분쟁 조정 및 해소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제6항 및 제149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2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지방자치법 제16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4조 내지 제110조
- 국제교류 : 행정안전부 직제 제7조 제3항(지자체의 국제협력업무 연구·지원) 및 제14조 제3항(지방행정 정책에 관한 국제교류협력)
- 지방자치의 날, 의병의 날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다산목민대상 : 다산목민대상 규약

② 추진경위

- ’01년 : 합동평가(행안부), 개별평가(각 부처)로 평가제도 이원화
- ’06년 : 정부업무평기본법 제정
- ’08년 : 중앙부처 개별평가를 행안부 중심의 통합 합동평가로 일원화
  호국 의병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국회 청원, 대정부 건의(경남 의령군)
- ’09년 : ’09년(’08년 실적) 행안부 중심으로 일원화된 합동평가 최초 실시
- ’10년 :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체계」 개발 및 활용 계획 수립(’10.11.)
  국제화재단 해산(’09.12.31.) 후 행안부로 지자체 국제교류 협력지원 업무 이관
  의병의 날 국가기념일(매년 6.1.)로 지정(’10.5월)
- ’11년 : 합동평가 특성지표 개발 및 부진 지자체 행정컨설팅 최초 실시(5개 시도)
  「지자체 생산성대상」 제정 및 제1회 생산성대상 개최(35개 지자체 시상)
  제1회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28명)
- ’13년 : 제1회 지방자치의 날(10.29.) 기념 지방자치정책박람회 개최(서울, aT센터)
- ’14년 :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자체평가) 컨설팅지원 사업 최초 실시
- ’15년 :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VPS) 3단계 고도화 사업 완료
- ’17년 : (가칭)실시간 지자체 합동평가시스템 ISP 수립
- ’18년 :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완료(’18.12.)
  한일 내정관계자 회의 개최(’97년 이후 총 22회)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 개최(’07년 이후 총 9회)
- ’19년 : 제7기 지자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출범(’19.7.29)
  지자체 생산성지수 측정·환류 및 제9회 생산성대상 개최(14개 지자체 시상)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10명)
  제9회 의병의 날 기념식 개최(경북 영덕, 신돌석장군유적지)
  제7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개최(세종, 지방자치회관)
  제10회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 개최(’19.12.3.)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년 ~ 계속
- 사업규모 : ’19년 1,607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지방자치단체,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의병의 날) 50% (전국 희망나눔)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3) 사업 집행절차

<지자체 합동평가 운영>

실적입력	⇒	정량지표 평가	⇒	이의신청 실사	⇒	정성지표평가	⇒	최종검증	⇒	결과보고
시·도에서 정성평가 실적입력		중앙부처가 입력한 실적에 대해 목표 달성여부 평가		정성평가 이의신청 건에 대한 실사		합동평가단·국민평가단 평가		합동평가단 실적 최종 확인		합동평가 결과 합평위·정평위 보고

<합동평가 행정컨설팅>

컨설팅 신청	⇨	사전조사 및 자료 작성	⇨	맞춤형 컨설팅	⇨	환 류
지자체		사무국 + 컨설팅단		현장방문 실시		컨설팅단

<지방행정의 달인>

지자체 추천	⇨	서면심사	⇨	현지실사	⇨	예비심사	⇨	본 심사
시군구→시도를 거쳐 추천		개인실적서 검토를 통하여 선발		지자체 출장을 통한 개인실적 검증·확인		후보자 면접을 통하여 최종 후보자 선발		후보자 전문성 발표, 면접 등을 통하여 달인 선정

<지자체 생산성지수 측정 및 활용>

생산성 대상 공고 및 접수	⇨	생산성 대상 심사 및 시상	⇨	측정결과 환류 및 활용

<성과관리 컨설팅>

사업계획 수립	⇨	위탁기관 선정	⇨	성과관리 진단 컨설팅	⇨	컨설팅 결과 공유·확산
컨설팅 대상 선정기준, 컨설팅 범위·방법, 결과활용 방법 등 포함		일반공개경쟁 방식으로 컨설팅 수행 전문기관 선정		자치단체의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중심의 진단, 컨설팅		지자체 성과관리 컨설팅결과 공유 및 확산 적용

<지자체 합동평가시스템 운영>

위·수탁 사업계획 수립	⇨	위·수탁 계약체결	⇨	사업공고	⇨	계약체결	⇨	유지관리 수행	⇨	사업비정산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조달청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관련업체		관련업체		행정안전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일반분쟁	조정신청 (당사자 또는 직권상정)	⇨	실무조정회의 (주심위원 수시 개최)	⇨	조정·의결 (위원회)	⇨	결정사항 통보 (행안부)	⇗ 이행계획 보고 (해당 자치단체)
신규토지	조정신청 (면허관청 또는 지자체)	⇨	실무조정회의 (자치단체 이견있을 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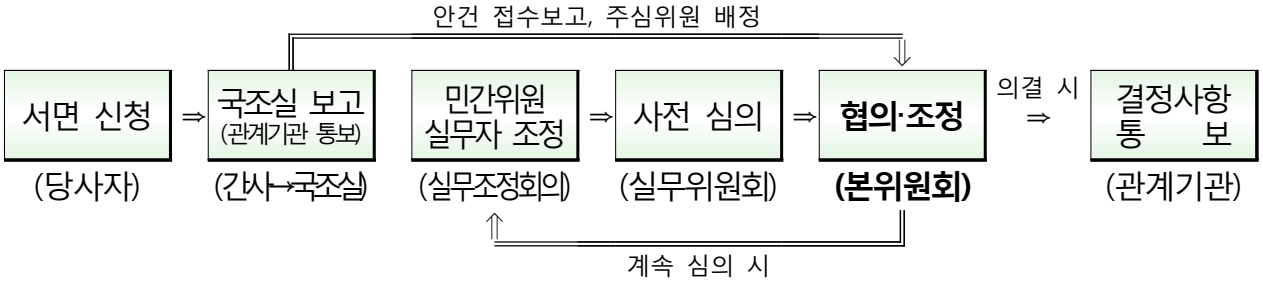

<국제교류 경쟁력 지원>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	국제교류 사전 실무 회의	⇨	국제교류 개최 및 참석	⇨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지자체 국제교류 애로사항 접수, 국제 동향 공유 등		한중, 한일 정부간 회의 주제 및 일자 조정		매년 1개국 초청, 1개국 방문 추진		국제교류 회의 결과 및 지자체 국제교류 성과 공유 등

<의병의 날 기념행사>

행사계획 수립	⇨	국비 지원	⇨	본 행사 실시	⇨	결과보고 및 환류
행사 기본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		자치단체에 국비 지원		각종 공연, 전시회 등 본 행사 실시		행사결과 보고 및 평가. 환류

<전국 희망나눔 행사 추진>

행사계획 수립	⇨	지자체 예선실시 및 행사유치 공모	⇨	본선 경연팀 선정 및 국비교부	⇨	본 행사 실시	⇨	결과보고 및 정산
전국 희망나눔 추진계획 수립 (행사유치 공모)		지자체 예선 실시 (행사주관 지자체 공모)		본선경연팀 선정 통보 및 행사유치 지자체에 국비지원		외국인주민 및 장애인 단체 경연 실시		행사결과 보고 및 정산

<지방자치의 날>

행사계획	⇨	위탁업체 선정	⇨	세부행사계획	⇨	본 행사실시	⇨	결과보고 및 정산
자치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행사계획 수립		행사위탁 가능업체 검토를 통하여 선발		자치단체 및 위탁업체간 행사 세부내용 조정		홍보물 배포, 기념동영상 상영 등 본행사 실시		행사결과 보고 및 위탁업체 정산

<다산목민대상 시상>

자지단체 공모	⇨	심사	⇨	현장확인	⇨	최종심사	⇨	시상식

사 업 명
15. 비영리민간단체지원 (1140-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101	013
명칭					일반 · 지방행정	일반 · 지방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40	300
명칭	지방자치분권	비영리민간단체지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비영리민간단체지원	7,761	8,030	8,030	8,194	7,790	7,790	△240	△2.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 보장과 건전한 단체로의 성장 지원
-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 등)

-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소요사업비 지원
- 지원사업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에 의거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결정

② 추진경위

- '98. 12. : 정기국회(예결위) 의결에 따라 '99년부터 사업시행
- '00.1.12.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매년 보조금지원

(억원)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99	148	145	132	90	90	64	70	71	72

- '12.7.19. : 공익사업선정위원 해촉요건 명시, 위원의 제척·회피제 도입
- '13.12.25.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AS) 구축
- '15.5.18. : 벌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신설(선정의 공정성 제고, 영 제7조)
- '15.8.18. :「비영리민간단체 시행규칙 제정」(평가·투명성 제고)
- '15.12.24.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AS) 고도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9년 ~ 계속
- 사업규모 : 중앙행정기관 등록단체 1,682여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민간보조(교부조건 준수)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 수혜자 : 국민, 비영리민간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비영리민간단체	100%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

3) 사업 집행절차

< 2021년 사업 추진일정 >

사업유형 결정 ('20.12월)	⇨	공익사업 계획 공고 ('20.12.20.)	⇨	사업설명회 ('20.12.28.)	⇨	사업계획서 접수 ('21.1월)	⇨	사업심사·선정 ('21.4월.)
회계교육 및 컨설팅 ('21.5월)	⇨	1차 보조금 교부 ('21.5월~)	⇨	중간평가 (9월)	⇨	2차 보조금 교부 ('21.10월~)	⇨	종합평가 및 정산 (다음년1~2월)

사 업 명
16. 자원봉사활성화지원 (114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41	302
명칭	지방자치분권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자원봉사활성화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50~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자원봉사활성화지원	10,556	11,238	11,223	12,970	11,808	11,808	+585	↑5.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자원봉사활동 참여 촉진·확산)** 지역사회의 문제를 민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자원봉사단체 지원
- **(자원봉사활동 지원 체계의 효율화 증진)** 자원봉사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자원봉사센터 지원을 위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운영
- **(자원봉사 진흥정책 및 기부금품 모집제도 운영)** 자원봉사·기부문화 활성화 및 의식 고취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기부 정책 추진
-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자원봉사들이 봉사활동 중에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해 경제적 담보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자원봉사 인프라 확충 및 자원봉사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자원봉사센터의 전문 인력인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제8~10조, 제12~15조, 제17~19조, 지방분권특별법 제15조

② 추진경위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참여인원 증가 촉진 등 기반 구축
- 자원봉사센터 역량 강화 및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 다변화 등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05.8) 및 '국가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 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사업규모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비(백만원)	8,851	8,613	8,863	9,561	10,559
자원봉사자 실인원(천명)	3,747	4,590	4,877	4,291	4,192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단체 경상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 사업 수혜자 : 전국의 자원봉사자 및 관련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100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민간자원봉사단체	사업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122번

3) 사업 집행절차

○ 민간단체 경상보조

세부추진 방침 수립	⇨	관련 단체 등 교부대상 선정	⇨	선정 단체 보조금 교부	⇨	사업수행	⇨	보조금 정산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및 민간위원**		**행정안전부**		**민간단체**		**행정안전부 및 민간단체**

○ 자원봉사활성화 관련시책 추진 : 직접 수행

○ 자치단체 경상보조

세부추진 방침 수립	⇨	자치단체 보조금 교부	⇨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교부	⇨	사업수행	⇨	보조금 정산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행정안전부 및 자치단체**

-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 코디네이터 시행지침 수립 → 지자체 교부 → 고용계약 및 집행 → 정산

-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국고보조 (50%)	⇨	조달공고 (50% 추가)	⇨	입찰응찰	⇨	낙찰, 계약, 보험료지급	⇨	사고 시 보험보상
행안부		**운영협의체 (全 지자체·센터)**		**보험사**		**지자체 (운영협의체)**		**대표 보험사**

사 업 명
17. 새마을운동지원 (1142 - 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71	지방자치분권실 지역혁신정책관		010	013
명칭					일반공공행정	지방행정·지방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42	304
명칭	지방행정	새마을운동지원	새마을운동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7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새마을운동지원	478	1,632	1,632	5,728	800	2,320	688	42.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국가·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의 날 기념식 등 지원
- 새마을연수원 노후 교육시설 확충.보수 추진업무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8조의2(새마을의날) ①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9년 : DB 구축사업 추진(~'13년까지 기존 새마을기록물 DB화)
- '16~'18년 : 새마을운동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 '17~'18년 : 새마을연수원 노후 교육시설 확충·보수 추진
- '11~'17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17.12월 공사완료)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9 ~ 계속
- 사업규모 :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지원, 새마을연수원 노후 교육시설 확충.보수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단체 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새마을운동중앙회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국내외 새마을지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새마을운동중앙회	100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3) 사업 집행절차

- 사업계획 수립 → 예산 요구 검토 및 편성 → 예산확정 → 교부결정 → 교부 → 사업추진

사 업 명
18.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ODA) (1142-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역혁신정책관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42	305
명칭	지방자치분권	새마을운동지원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ODA)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가. 예산 총괄표(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맞춤형 마을운동 지원사업 (ODA)	3,087	3,614	3,593	4,447	3,230	3,230	△363	△10.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세계 유일 사례인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통한 발전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개도국 빈곤퇴치 및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 선진국의 단순 물적지원 중심 ODA방식에서 탈피, 주민 참여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해 수원국의 자립역량 강화 및 성장기반 마련 등 지속가능한 자립기반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국가등의 책무) ②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③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교부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 · 기준보조율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 경비의 종목 · 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 「새마을금고법」 제3조(국가등의 협력 의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금고나 중앙회가 행하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공유재산을 금고나 중앙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금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회에 보조금을 내줄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7. 1월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아프리카 순방시 말씀(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워볼 것을 권유)
- '08. 6월 : 대통령의 제8차 ASEM 재무장관 회의시 말씀(개발도상국에 새마을운동과 같은 경제개발 경험을 전수)
- '10. 10월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ODA 선진화 방안'에 따라 새마을운동 ODA 사업 모델 발굴
- '11. 5월 : 국무총리 주재 새마을운동 ODA T/F 구성, 중점 협력국 지정 및 기관 간 사업협업
- '14. 3월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추진계획」 마련, 행자부·외교부를 사업 주관부서로 의결
- '15. 9월 : UN개발총회, 대통령 '새마을 고위급 특별행사' 말씀(새마을운동의 성공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겠음)

- ‘15. 11월 : 캄보디아, 우간다 정부와 새마을금고 지역개발협력을 위한 MOU 체결
- ‘16. 5월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방안」의결(제2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새마을운동 ODA 사업수행 기관 간 체계적 역할 분담체계 마련
- ‘16. 5월 :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 시 우간다와 새마을금고 이행협약 체결
- ‘17. 6월 : 행안부는 새마을 ODA를 수원국 맞춤형 사업으로 추진토록 결정(제29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17. 11월 : 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 말씀(미얀마, 라오스 등 정상이 대통령에게 그간 우리정부의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자 “과거 정부의 성공한 업적 계승발전 천명)
- ‘18. 11월 : 대통령 ’한·러 지방협력포럼‘ 경북도지사 면담(새마을사업은 이름도 바꾸지 말고 새마을 해외사업을 지속하라)
- ‘18. 11월 : 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 말씀(국가 간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국제사회에 새마을운동 지속 지원)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9년 ~ 계속
- 사업규모 :
  · (초청연수) ‘20년 기준 45개국 600명 대상 초청연수를 통한 새마을지도자 육성
  · (시범마을) ‘20년 기준 11개국 45개 마을 대상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 사업 추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세계화재단,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 사업 수혜자 : 개도국 주민 등(초청교육생, 시범사업 대상지역 주민 등)이 직접 수혜자이며, 현지사업 파급효과 확산시 인근지역 마을주민 또는 수원국 정부관계자 등 포함 가능. 또한 간접적으로는 새마을운동 확산을 통한 국격향상 및 국가브랜드 제고 측면에서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수혜대상으로 볼 수 있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새마을운동중앙회	100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새마을금고법 제3조
새마을세계화재단	100	
새마을금고중앙회	100	

3) 사업 집행절차

< 새마을 ODA 표준사업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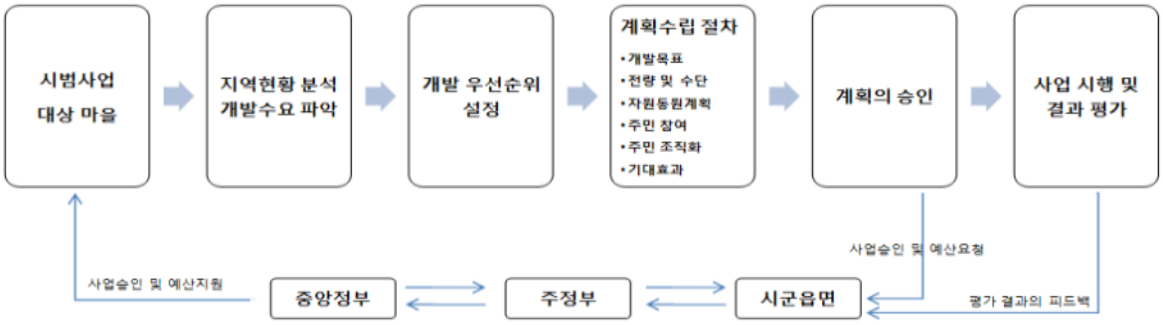

< 새마을 ODA 사업 집행절차 >

사업지침 시달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추진 중간점검	→	사업추진 결과평가 및 정산

※ 무상원조 시행계획 수립 및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승인(N-1년)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N-1년, 5월) → 사업예산 확보(N-1년, 12월) → 기본사업계획 수립(N년, 1월) → 사업착수(N년, 2월~)

사 업 명
19. 행복한 선진시민사회 구현 (1143-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43	305
명칭	지방자치분권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	행복한 선진시민사회 구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	-	100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행복한 선진시민사회구현	-	400	400	1,035	300	300	△100	△2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민 참여를 통한 성숙한 시민의식 형성 및 공동체 활성화로 국민통합을 유도하고 '행복한 선진시민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국민운동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수행(보조율 100%)
  * 자총(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조직 / 회원수 350만여명)

- 함께 나눔! 서로 나눔! 공동체 행복지킴이
  · (사업목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사회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이 봉사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사명감 제고 및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
  · (사업내용) 각 시도별 봉사자-수혜자 매칭으로 소외계층 가정 방문 봉사활동 전개, 봉사자 연수 등 ※ 본부 및 17개 시도지부 월 2회 이상 봉사활동

- 나와 같음! 서로 같음! 사회통합 국리민복 가치확산 운동
  · (사업목적) 자유·민주·평화 등에 대한 국민적 인식공유로 국리민복 가치를 확산하여 세대·계층·지역 간 사회갈등 극복에 기여
  · (사업내용) 대국민 국리민복 가치확산 마중물 활동, 국리민복 평가 및 실천 결의대회, 국리민복 실천활동 홍보물 제작 등
- 한반도 화해·협력 2021 DMZ 평화둘레길 대장정
  · (사업목적) 대학생 및 청년 대상 DMZ평화둘레길 도보 대장정을 통해 전후세대의 올바른 안보의식 확립 및 애국심 고취에 기여
  · (사업내용) 출정식, DMZ평화둘레길(강원 고성군~경기 파주시) 도보 행군, 전적지 참배 및 안보현장 견학 등 ※ 참가인원 100여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출연 · 보조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 조율 등)

② 추진경위
- '89. 2. 14. 한국자유총연맹 설립 :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범국민조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근거법률 마련(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89.3.31. 제정)

- '08. 8. 15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제60주년 대통령 경축사 : 선진일류국가는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성숙이 균형을 이루는 나라, 잘사는 국민 · 따뜻한 사회 · 강한 나라, 인류의 모범이 되고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나라, 앞으로의 60년은 성숙한 자유의 구현

- '19. 6. 21. 한국자유총연맹 청와대 초청 시 대통령 격려말씀 : 한국자유총연맹은 국민 행복과 국가발전을 뜻하는 국민민복을 최고 목표로, 세대·계층·지역 간 갈등을 치유하며 사회 통합을 이루려 힘을 모으고 있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앞길에 정부도 동행하겠음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9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단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자유총연맹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자유총연맹	100%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3) 사업 집행절차

사업지침 시달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추진 중간점검
실적보고서 등 제출	→	사업 최종 평가	→	정산	→	확정 통보

※ 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사업 집행지침 등

사 업 명
20. 공무원단체건전육성 (1831-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54	지방자치분권실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800	1831	306
명칭	인사관리프로그램	공무원단체건전육성	공무원단체건전육성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공무원단체건전육성	223	219	219	239	239	239	20	9.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무원단체 건전육성

○ 공무원단체·노조의 불법행위 대응 및 중앙 및 지방공무원 단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 全 행정기관(중앙·지방) 공무원단체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지원을 위한 관련 정책 수립·시행(국회입법 대응 등)하며
- 동향관리, 대화채널 활성화, 신뢰형성 등을 통해 불법행위 등에 대한 사전적 예방관리 및 사후관리 이행
- 공무원단체 동향의 심층적 관리 및 합법적 노조활동 유도를 위한 정부-노조 간 창구 역할 강화 필요
- 공직사회에 우수한 노사문화를 지닌 행정기관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공유 및 전파함으로써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

※ 불법단체였던 전공노 합법화('18. 3.29.), 공무직 전환 등 공무원단체 활동보장 및 협력 강화 등 새정부 출범 후 노사환경 변화에 따른 공무원 노사관계 재정립 및 협력적 노사문화 창출 필요

2) 사업개요

- 공무원단체 건전육성

○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발굴 확산, 건전한 공무원노사 관계 제도연구 등을 통한 상생협력적 노사관계 기반 조성

○ 공무원단체 심층적 관리 및 합법적 노조활동 유도

○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 공무원노사관계에 대한 인식 제고

○ 공무원 건전 노사문화 구축·운영

○ 공무원 노사 공동연수 및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 ILO 총회 참석 및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홍보 및 시상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98. 2. : 공무원 단결권 단계적 보장합의(노사정위원회)
- ’05. 1. : 공무원노조법 제정
- ’06. 1. : 공무원노조법 시행
- ’09.11. : 공무원단체 협력·지원을 위해 2개과 신설(공무원단체과, 지방공무원단체지원과)
- ’11. 2. : 노사관계 안정화로 ’지방공무원단체지원과‘폐지, 업무를 ‘공무원단체담당관실’로 이관
- ’14.11. : 행자부 지방행정실 공무원단체과로 소속 변경
- ’17. 7. ~ 계속 :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 공무원단체과로 소속 변경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3~계속
- 사업규모 : 239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3) 사업 집행절차

· 예산배정 → 원인행위 → 지출요청 → 지출

사 업 명
21.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1235-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5	300
명칭	지역발전	지역공동체기반조성및역량강화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40～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1,523	1,546	1,546	11,761	3,576	3,576	2,030	131.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지원) 소외된 주민들에게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회복시키고,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지역사회 활력 제고
- (안산시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지원) 세월호 피해지역인 안산시를 대상으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 도모 및 지역의 활력 제고
- (읍면동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풀뿌리 주민참여기구인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의 실효성 제고
- (현장중심 읍면동 기능 개편) 읍면동 현장행정 강화를 통한 주민 밀착형 행정기능 개편으로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소송대응)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주민·기업불편 해소 및 신규 토지(매립지 등)의 행정구역 결정절차 신설('09.4.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증가하는 행정구역 소송(평택 당진항·새만금 등) 적극 대응
-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마을기업에 대한 역량개발, 경영관리, 홍보 등을 지원하여 경쟁력 확보 및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으로 발전 지원
-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시·군·구 단위의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
-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 청년공동체를 발굴·확산하고, 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활동 기반 마련 및 지역활성화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 및 활성화마을 조성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9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설치 및 행·재정적 지원
-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변경, 매립지 등 행정구역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② 추진경위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 강화·구축>

- 지역공동체 포럼 추진('14년~) 및 우수사례 확산·공유('15년~)
- 국정과제 74번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17년)

<안산시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지원>

- (1단계 사업) 2017~2019년 / 50억원(국비 25억, 지방비 25억)
- (2단계 사업*) 2020~22년 / 60억원(국비 25억, 지방비 35억)
  * 국조실 세월호 지원·추모위원회 연장 심의 의결('19.9.30)

<읍면동 주민참여 활성화>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본방향' 의결(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12.12.14.)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계획수립('13.3.28.) 및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13.7월~/31개소)
-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추가 확대('19.4월~/167개소), ('19.11월/194개소),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626개소, 110개 시·군·구('20.上 기준)

<현장중심 읍면동 기능 개편>

- 국정과제 "주민센터를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한 허브기관으로 개편" 선정('13년)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16.2월~)
- 국정과제 74번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17년)
  ※ 주민중심 행정복지서비스 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구축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읍면동의 기능·인력·공간 등 종합적 개편)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소송대응>

-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09.4.1)
- 행정구역 경계변경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16.10.20)
- 「지자체간 경계조정 자문단」 구성·운영 중('19.3월~)
- 평택당진항('15년)·새만금('15년)·송도('16년) 매립지 관할결정 관련 대법원 취소소송(5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3건) 소송 계속 중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시범 추진('10년)
- '마을기업'으로 명칭 변경('11년)
- 국정과제 26번 '사회적경제 활성화'('17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방안」 마련('19.11월)
- 사회적경제 '중앙-지방 협의체' 운영('20.3월~, 분기별)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

- 청년희망뿌리단 사업 추진('17.4월)
-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변경 추진('18.9월)
- 청년공동체 17개 팀 발굴·지원('19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4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일부사업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경기도 안산시)	40~50%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3) 사업 집행절차

<안산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지원>

행정안전부(총괄) ▶ 예산 교부 → 경기도 ▶ 예산 교부 → 안산시(공동체 회복프로그램 운영)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 경계조정 절차(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제2항)

대상지 선정 → **의회의견 청취**(또는 주민투표) → **경계조정 건의** → **대통령령 제정**

·지자체간 협의 ·지자체→행안부

- 매립지등 행정구역 결정 절차(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제9항)

관할결정 신청 → **중분위 심의·의결** → **결정 사항 통보·공고** → **지적등록**

· 면허관청/ 관련 지자체 · 면허관청 · 지적소관청

* 이의가 있는 지자체장은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 제기 가능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보조)>

사업계획 수립 (행안부) → 사업계획서 제출 (지자체 → 행안부) → 사업 추진 (지자체) → 결과보고 및 정산 (지자체→ 행안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보조)>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 제출	⇒	청년공동체 모집·확정	⇒	자금교부 및 사업추진	⇒	결과보고 및 정산
행안부		시·도		시·도		행안부, 시·도		시·도, 행안부

사 업 명
22.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확산 (1938-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8	300
명칭	정부혁신조직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확산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확산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45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조정안(B)		(B-A)/A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확산	8,632	18,632	18,632	28,960	25,762	25,762	7,130	38.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실패박람회)** 실패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공공·민간 분야 인식개선확산 지원(10회) 및 지역박람회 개최 지원(4회)과 종합행사(1회) 등 추진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주민이 정책 공동생산자로 참여·협력하는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혁신 거점공간 조성 및 문제해결 협업활동, 사례연구, 저변확대 등 지원
- **(주민참여 기반 지역사회문제 해결)**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지역 문제를 주민 주도로 적극 발굴·해결하고 타 지역 확산을 위한 지원
- **(청년자립 및 활력 지원)** 지역문제와 인구소멸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과 유출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프로그램 지원과 성장할 수 있는 청년친화 공간 조성 사업을 지원
-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과 함께 주민·지자체 등이 협업 체계를 구성하여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및 확산
- **(과학기술 기반 현안 해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술개발(R&D, 과기정통부)과 기술적용·확산(非R&D, 행안부)의 전주기 협력을 통해 주민 체감의 지역맞춤 문제해결과 역량강화 지원
- **(지방소멸대응 연구용역)**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역 주도의 자립기반 강화와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종합적 지원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등 협업적 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34조 제1항(행정안전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3항(지방자치분권실)
- 국정과제 8 「열린 혁신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3. 사회혁신 기반 강화 및 생태계 조성

〈 국정과제 8-3 사업명 명시 〉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 7. 19.)
◦ (대한민국 정부) 100대 국정과제('17. 8월)

② 추진경위

- 2017. 08. 19. 국정과제 5개년 계획 발표
  국정과제 8번: 열린 혁신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8-3번: “사회혁신 기반강화 및 생태계 조성”

- 2017. 09. 07. 사회혁신추진단 및 사회혁신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시행

- 2017. 12. 06. 2018 회계연도 신규사업 추진,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 2019. 01. 01. 조직 개편(사회혁신추진단→지방자치분권실 지역혁신정책관)

- 2019. 06. 01. 세부사업명 변경 (('19)‘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 ('20)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확산')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8~계속
- 사업규모 : 실패박람회(5회),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5개소), 주민참여 기반 지역사회문제해결(2개 프로젝트), 청년자립 및 활력지원(3개소), 지역문제해결 플랫폼(8개), 과학기술 기반 현안 해결(10개 과제), 지방소멸대응 연구용역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민간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50, 4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9조)
지자체 보조 (과학기술 기반 현안 해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9조)

3) 사업 집행절차

○ 실패박람회

수요조사	⇨	개최지 선정 및 프로그램 개발	⇨	실패박람회 개최	⇨	성과공유회
실패박람회 지역확산 참여희망 수요조사		지역확산 참여자 선정 및 실패박람회 참여 프로그램 구성		특색있는 박람회를 통한 인식개선 확산 및 재도전 지원 강화		실패박람회 성과공유, 피드백 및 후속 모니터링 추진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공모 사전준비	⇨	사업 공모	⇨	심사 및 선정 절차		⇨	지자체 행정절차 이행	⇨	사업 추진
지자체 수요조사		사업 공모 공고		서면심사, 현장실사	사업자 선정 및 킥오프 워크숍		지방비 매칭(50%)		지역밀착형 사업 추진
사업설명회 개최		제안서 접수 마감		대면심사	계획 승인 및 국비교부(50%)		조례제정 등		설계·리모델링 착수 등

○ 주민참여 기반 지역사회문제해결

기본계획	⇨	전문기관 선정 및 사업설명회 개최	⇨	공모절차진행	⇨	사업추진	⇨	성과공유
-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 사업수행 전문기관 위탁 및 계약 - 권역별 사업 설명회, 의견 수렴		- 공모 및 접수 - 과제 제안서 평가 - 과제 선정		- 과제 수행비 지급 - 현장 점검, 전문가 컨설팅, 워크숍 지원		- 사업평가 및 관계부처·기관 성과공유 확산

○ 청년자립 및 활력지원

공모계획 수립	⇨	수행사 선정	⇨	사업추진	⇨	성과공유회
사업별 기본계획 수립		사업별 민·관 거버넌스 구축 유도 및 수행사 선정		현장 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 사업수행 지원		사업평가 및 성과공유

○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신규 지역 선정	⇨	추진체계 구성	⇨	제안과제 검토 및 의제선정	⇨	의제실행	⇨	성과공유회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추진계획 수립 및 신규 지자체 공모 선정		용역기관 공고 및 선정 및 지역별 추진위 구성		제안과제 발굴과 집행위원회 검토 및 공공성, 체감성, 시의성 등을 고려 선정		출범식 및 의제실행 선언식 개최 주민, 전문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협업실행팀 구성 문제해결 실행		지역별 우수 의제 성과공유 우수 의제 지자체 확산

○ 과학기술 기반 현안 해결

'20.9.~'21.2.	→	'21.2월 중	→	'21.3월 중	→	'21.3.~'22.2.	→	'21.7월	→	'21.7.~'22.6.	→	'22.12월
기획 리빙랩 운영		최종 본과제 선정		착수보고회 (Kick Off)		R&D 수행		R&D 중간 점검		기술적용/ 후속조치		성과 공유
• 기획(안) 마련		• 기획(안) 발표 심사		• 리빙랩별 추진사항 공유		• 과기부 (연구자 수행)		• 진행사항 점검		• 행안부 (지자체 수행)		• 행안부 과기부

○ 지방소멸대응 연구용역

'21.1.	⇨	'21.1.~'21.2	⇨	'21.1~'21.8.	⇨	'21.9.
사업계획서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		용역 착수·중간보고		용역 최종보고

사 업 명
23.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정보화) (1131-31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19
명칭	지방자치분권	지자체역량강화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정보화)	-	-	-	610	506	506	506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주민참여 시스템 연동 API)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국정운영 방향이 비대면 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민참여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용 공통 연동 프로그램 개발
- (주민참여 지원 SW) 모바일 지원 등을 위해 현재 PC용 공인인증서 ⇨ 모바일·PC 공용인증서(지문인식 등 민간인증 포함) 기반으로 개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의2 (전자서명 요청 절차)
- 주민조례발안법,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제개정 추진중

② 추진경위

- 주민조례청구 전자서명 시스템(www.ejorye.go.kr) 구축·오픈 운영('18.1.15)
- '18년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BPR/ISP 완료('18.12.22, 예산 536백)
- 17개 시도 법무담당관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추진 협의('19.3월, '20.7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1.1월 ~ 12월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주민조례 등 주민청구 관련 국민 및 관련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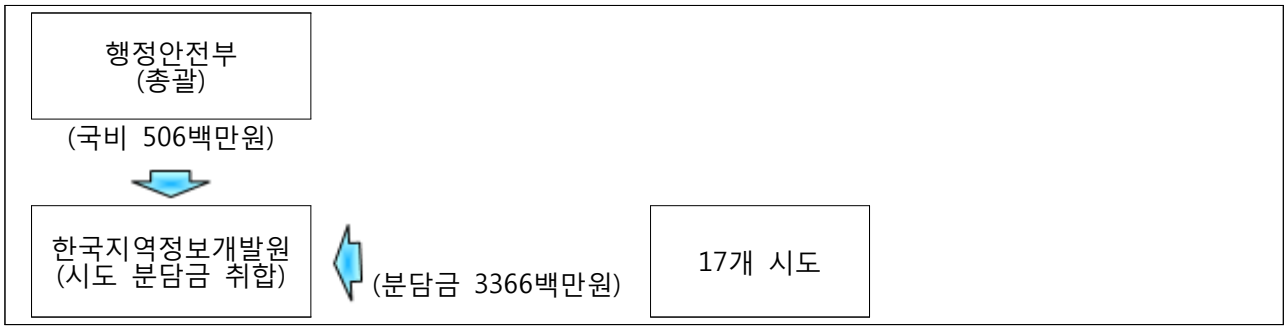

사 업 명
24.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 구축 (1143-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43	307
명칭	지방자치분권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 구축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 구축사업	-	-	-	2,170	2,170	2,170	2,170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증가하고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등의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해 집중거주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인프라* 조성·확충 등을 지원

  * 지원센터 조성·시설 개선, 커뮤니티센터·카페 등 지역주민과의 교류·소통 공간 및 체육시설·쉼터 등 문화·편의시설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국가의 책무)
- 추진경위

< 외국인주민 >

· ’06.02. : 행정자치부 업무계획
· ’08.10. : 국정과제(5-20-99-2,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축)
· ’10. ~ ’14. :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환경개선사업 추진
· ’13. ~ ’22 : 제2·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행안부 과제
· ’20. 2. : 행안부 업무계획에 반영

< 북한이탈주민 >

· ’17.05. : 국정과제(92.탈북민의 자립과 자활능력을 제고해 사회통합을 강화)
· ’19.09. : 관계부처 합동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에 따라 행안부 과제
· ’20.02. :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4,000백만원(국비 2,000백만원, 지방비 2,000백만원)
- 사업기간 : ’21년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외국인주민, 북한이탈주민 집중거주 시군구 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3) 사업 집행절차

구 분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추진계획 시달	행안부	추진계획 수립 및 지자체 공모
⇩		
② 사업신청	시·군·구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청
⇩		
③ 1차 검토·추천	사·도	시·도에서 사전 검토를 거쳐 행안부로 추천
⇩		
④ 대상사업 선정	행안부	선정위원회 구성, 사업 심사 및 확정
⇩		
⑤ 사업확정·통보	행안부	시·도로 사업확정 통보 및 보조금 교부
⇩		
⑥ 사업추진	시·군·구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		
⑦ 사업평가	행안부	추진경과 확인 및 우수사례 확산

지방자치분권실-
지역발전정책관

2021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1. 지역발전활성화 ····· 281

2.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원 ····· 284

3.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 286

4.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 289

5.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 292

6.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 296

사 업 명
1. 지역발전활성화 (12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역발전정책관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303
명칭	지역발전	지역발전지원	지역발전활성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지역발전활성화	3,208	1,362	1,362	10,807	1,680	1,880	518	38.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국민의 이용편의 및 복지증진과 안전한 화장실 문화 정착을 위해 쾌적하고 편리한 화장실 조성과 시설개선을 추진하여 삶의 질 향상 및 국가이미지 제고
- **(간판문화 선진화)** 옥외광고산업 진흥 기반 마련 및 불법광고물 정비 강화
- **(자전거 인프라 구축)**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교통체증 등의 문제에 대응,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기반 구축 및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추진
- **(온천산업 활성화)** 온천발전종합정책 추진을 통해 온천산업 경쟁력 강화, 공공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역발전 활성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공중화장실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간판문화 선진화)** 옥외광고물법 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 **(자전거 인프라 구축)** 자전거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온천산업 활성화)** 온천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추진경위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 ’04.1.29.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포
- ’04~’10 :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추진
- ’05. 1.~ : 아름다운화장실 조성사업 추진
- ’08~’10 : 저개발국 화장실 개선 보급 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지원(세화협)
- ’19년 : 화장실 남녀분리 시범사업 추진

<간판문화 선진화>

- ’07년 : 아름다운 간판 원년 선포(’07.1.5.)
- ’10년 : 지역 공공디자인 선진화 추진 기본계획 마련
- ’11년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10개소)
- 간판개선 시범사업 선정 : ’12년 16개소, ’13년 26개소, ’14년 22개소, ’15년 24개소, ’16년 20개소, ’17년 18개소, ’18년 20개소, ’19년 23개소, ’20년 29개소
-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16.7.7.시행) 및 자유표시구역 지정(’16.12.1.)

<자전거 인프라 구축>

- ’95.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
- ’10. 6.~ :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수립 · 추진
- ’16년~ : 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 개최 및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안전개선사업 추진
- ’19년~ :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 추진

<온천산업 활성화>

- ’81. 6. : 온천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81.6.1.시행)
- ’07.～ :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개최(’07년～계속, ’21년 개최지 : 강원 고성)
- ’10. 8. : 온천도시 지정 근거 마련 및 온천발전종합계획 수립(’10.8.5.시행)
- ’11.～ : 온천자원관측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4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50%)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사 업 명
2.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원 (12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역발전정책관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0
명칭	지역발전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 평택지원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 평택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24,142	14,556	12,963	19,930	13,778	13,778	815	6.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 촉진 및 이전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② 추진경위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04.12.31)
- 같은법 시행령 제정('05.4.1)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개발계획 확정('05.12.8)

※ 평택지역개발계획 변경 총3회(1차 '15.1월, 2차 '18.1월, 3차 '19.1월)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 2022년
- 사업규모 : 11건 7,012억원(국비 5,658, 지방비 1,167, 공공 187)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보조율 100%)
- 사업시행주체 : 경기도 및 평택시
- 사업 수혜자 : 평택시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10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3) 사업 집행절차

- 지역개발계획(안) 수립(평택시) ⇒ 개발계획(안) 협의(평택시↔경기도) ⇒ 개발계획(안) 승인신청(평택시→행안부) ⇒ 관계부처 협의(행안부) ⇒ 개발계획 승인(행안부)
- 연차별 개발계획(안) 수립(평택시) ⇒ 연차별 개발계획(안) 협의(평택시↔경기도) ⇒ 연차별 개발계획(안) 승인신청(평택시→행안부) ⇒ 관계부처 협의(행안부) ⇒ 연차별 개발계획 승인(행안부) ⇒ 사업추진(평택시)

사 업 명
3.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12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역발전정책관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3	300
명칭	지역발전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토지) 평균 68% (도로) 평균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98,856	88,872	79,992	237,366	95,856	105,402	25,410	31.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 정체를 감내해 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을 지원
- 낙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주민 등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촉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적근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② 추진경위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06.3.3)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06.9.4)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확정(‘08.1.15)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1차 수정(‘09.2.2)

  * 행안부 지원규모 확정 : 주변지역 도로사업 9,007억,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1조 3,442억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차 수정(‘17.10.25)

  * 주한미군 평택이전사업이 마무리되는 ’22년까지 사업기간 연장(~2017년→ ~2022년, 5년간)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8년～2022년
- 사업규모 : 토지매입비 지원(18개 기지, 국비 1조3,492억), 주변지역 지원(219개소, 국비 1조 3,692억)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시·도 및 시·군·구
- 사업 수혜자 : (반환)공여구역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시·도 및 시·군·구	50%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4조
	평균 68% (반환기지 부지매입비 지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4조

3) 사업 집행절차

- 발전종합계획(안) 수립(시·도지사) ⇒ 발전종합계획(안) 제출(시·도지사→행안부) ⇒ 관계부처 협의(행안부) ⇒ 발전종합계획 확정(행안부)
- 연도별 사업계획(안) 수립(시·도지사) ⇒ 연도별 사업계획(안) 제출(시·도지사→행안부) ⇒ 관계부처 협의(행안부) ⇒ 연도별 사업계획 확정(행안부) ⇒ 사업추진(지자체)

사 업 명
4.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1236-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역발전정책관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6	300
명칭	지역발전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	7,618	7,163	7,163	8,208	7,127	7,127	△36	△0.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북한의 군사도발에 노출되어 있는 서해5도에 대한 지원으로 주민생활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8조

- 국가는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가능

② 추진경위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정 ('10.12.27.)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정 ('11.1.28.)
-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심의·확정 ('11.6.22.)
-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계획 심의·확정 ('20.7.20.)**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1~'25년
- 사업규모 :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4개 사업 1,536.3억원 (국비 1,087.38, 지방비 319.39, 공공 129.53)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보조율 80%)
- 사업시행주체 : 인천광역시 옹진군
- 사업 수혜자 :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인천광역시 옹진군)	80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8조

3) 사업 집행절차

- 지자체(인천시, 옹진군) 의견수렴 후 종합발전계획 수립(행안부) → 관계 부·처 협의(행안부) → 서해 5도 심의위원회 심의·확정

- 지자체(인천시, 옹진군) 의견수렴 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행안부) → 관계 부·처 협의(행안부) → 서해 5도 심의위원회 심의·확정

사 업 명
5.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1237-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역발전정책관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7	300
명칭	지역발전	도로명주소사업추진	도로명및건물번호활용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5,126	4,853	4,853	5,606	5,606	5,606	753	15.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도로명주소 활용·활성화)** 도로명주소에 대한 국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홍보·교육 등을 추진하여 도로명주소 국민생활 속 안착 도모
-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도로명주소·기초구역·지점번호·상세주소 등을 관리하는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해 공공기관·민간기업 등에 최신화된 주소정보 제공
- **(주소정보기본도 현행화 유지관리 및 안내도 보급)** 주소정보를 정밀하게 관리하여 위치기반서비스 등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리한 길 찾기 지원
- **(주소의 국제표준화)** 우리나라 주소체계를 국제표준에 반영하여 국가 간 주소유통을 용이하게 하고 주소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에 기여
- **(주소체계 고도화 및 혁신성장산업 지원)** 고밀도·입체도시 등 미래 도시구조에 대응하는 주소체계를 구축하고 주소기반 드론 배송, 자율주행차 주차 등 주소기반 산업 창출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도로명주소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도로명주소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22조(도로명주소 사용자에 대한 지원)

② 추진경위

- 도로명주소 사업 도입 결정 ('96. 7.,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 도로명주소법 제정 ('06.10.), 시행 ('07. 4.)
- 도로명주소 시설사업 추진 ('97년~'10년)
  - 전국 도로명판 300천개, 건물번호판 5,623천개, 지역안내판 1.8천개
- 공적장부 및 민간 고객정보 도로명주소 전환 추진
  - (공공) 주민등록 등 주요 공적장부(1,093종) 주소전환 완료
  - (민간) 분야별 간담회, 현장방문, MOU체결 등을 통한 주소전환 추진
- 2018년 정부경제정책 방향 '공공서비스 혁신과제'에 포함(기재부, '17.12)
- 2020년 정부경제정책 방향 '행안부 10대 핵심과제'에 포함(기재부, '19.12)
-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추진('20.6.26.국회제출)

○ **(김영삼정부)** 도로명주소 도입 결정(‘96.7월,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 **(김대중정부)** 자치단체별 시범추진으로 생활주소로 활용
○ **(노무현정부)** 도로명주소법 제정·시행(‘07.4월)
○ **(이명박정부)** 전국 일제고시를 통해 법정주소로 사용(‘11.7.29~)
※ 지번주소와 병행사용(～‘13.12.31.)
○ **(박근혜정부)** ‘14년부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의무사용
※ 민간부문은 자율 시행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97년 ~ 계속
- 사업규모 : 전국 추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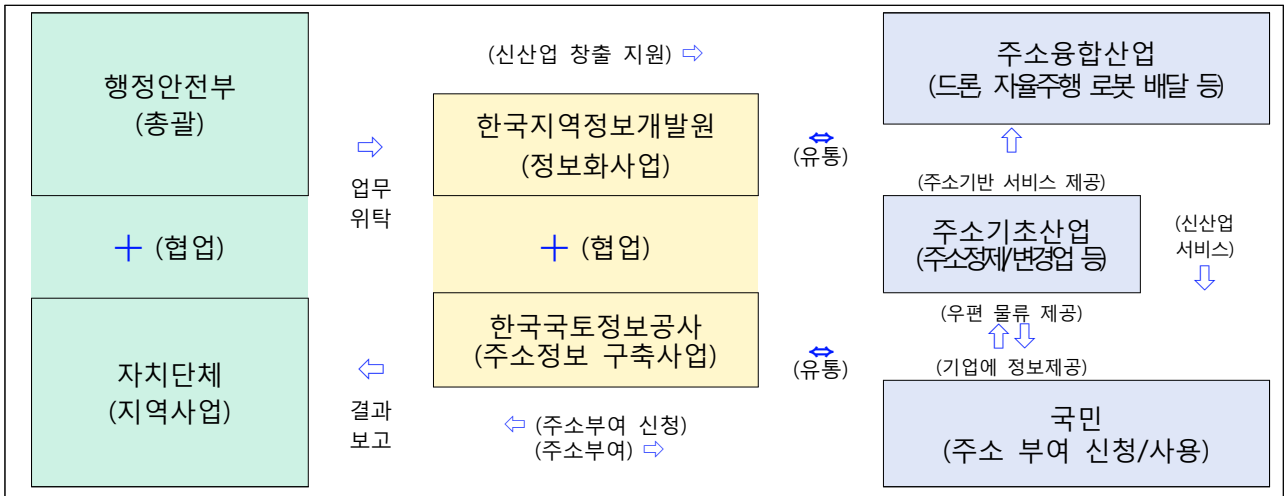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주소정보기본도 현행화 유지관리)

사 업 명
6.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1247-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역발전정책관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47	301
명칭	지역발전	제주민군복합항주변지역발전지원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7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사업	-	-	-	4,900	4,900	4,900	4,900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제주 민군복합항 지역발전계획)

1) 사업목적·내용

-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지원을 통한 주민간·민군간 화합과 상생 및 지역발전을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② 추진경위

-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확정('12.2., 국가정책조정회의)
- 주민 요구사항 반영,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변경('19.1., 행안부)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2년 ~ 2025년(14년)
- 사업규모 : 10개 부처 39건, 9,625억원(국비 5,787, 지방비 1,813, 민자 2,025)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보조율 15~100%)
- 사업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 수혜자 : 제주특별자치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지자체 보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제주특별자치도	15~100%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7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국고보조금의 보조율) • 기타 관계부처 지원사업관련 개별 법령에 따른 보조율

3) 사업 집행절차

- 지역발전계획(안) 수립(제주특별자치도) ⇒ 지역발전계획(안) 제출(제주특별자치도→행안부) ⇒ 관계부처 협의(행안부) ⇒ 지역발전계획 확정(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

2021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1. 지자체재정분석 및 재정제도개선 ····· 301

2. 지방재정 정보화(정보화) ····· 308

3. 지방세정보화추진(정보화) ····· 313

4.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 316

5. 지방회계결산제도연구개선 ····· 319

6. 지방공기업경영평가 ····· 322

7. 과표양성화를위한시가표준액조사 ····· 325

8 지방자주재원확충을위한정책추진 ····· 328

9. 지역금융활성화 ····· 333

10. 지역경제활성화 ····· 336

1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 340

1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343

사 업 명
1. 지자체재정분석 및 재정제도개선 (13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18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0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1	300
명칭	지방재정경제	지자체 재정분석 및 재정제도개선	지자체재정분석및재정제도개선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 확정(B)		(B-A)/A
지자체 재정분석 및 재정제도개선	683	755	755	2,734	755	755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자체 재정분석 및 지방재정 위기관리) 자치단체별 재정상태와 재정운용노력을 분석·평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 및 재정운용 역량 향상 지원
-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사전 예측·관리, 재정위기 발생을 적극 예방
- (지방공공기관 체계적 관리) 지방공기업의 재정집행 현장점검, 지방공사채 승인 후 재무관리,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전 타당성 검토를 통한 남설방지 등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추진)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컨설팅, 우수사례 분석·공유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지방재정의 책임성 및 건전성 제고
-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운영)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국민감시단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에 의한 지방재정의 책임성 제고
- (지방보조금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자치단체 담당자 대상 보조금 운영·관리 방법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주민 등 대상 부정수급 신고방법 등 집중 홍보 실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자체 재정분석 및 지방재정 위기관리)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제54조~제57조
- (지방공공기관 체계적 관리)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추진)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주민참여예산제도)
-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운영)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지자체 재정분석 및 지방재정 위기관리) 지방재정분석·지방재정 위기관리·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 ’03. 7. 재정분석제도 혁신계획 재정세제로드맵에 포함(정부혁신위)

· ’04. 5. 지방재정분석제도 혁신계획 도입방침 결정
· ’04. 7. 지방재정분석 평가단 구성 및 ’04년 시범평가 실시
· ’04.12. ’05 지방재정분석 전면실시계획 수립·확정
※ 지방재정분석은 ’98년부터 실시되었으나, 사업예산 배정은 ’05년부터임
· ’10. 7. 자치단체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구축·운영계획 확정
※ ’10. 7.20 국무회의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 보고
· ‘11. 9. 재정위기단체 지정 관련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
· ‘12. 2.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관련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
· ’16. 6.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관련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
· ’18. 2. 지방재정위기관리 법적 근거 강화 관련 지방재정법 개정
· ’19. 1. 재정분석 및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계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 (지방공공기관 체계적 관리)
· ’69.01. 「지방공기업법」 제정
· ’14.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14. 7. 조직・인사, 예산・회계 등 운영 공통 지침 마련
· ’15. 2. 공통지침 및 표준모델(안) 지자체 통보
· ’16.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제정·통보
· ’16. 5. 무분별한 추가 출자 및 출연 방지 방안 마련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16.1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17.12.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운영 기준 개정
· ’18. 9.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운영 기준 개정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추진)
· ’05.8. 법적 근거 마련(지방재정법)
· ’10.10. 표준조례안 지자체 통보
· ’11.9.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의무화
· ’13.8. 운영상황 공개(매년 8월 재정공시)
· ’14.11. 의견수렴 결과 지방의회 제출 의무화
· ‘15.5. 지자체별 제도운영에 대해 평가하도록 규정(행정안전부)
· ‘17.12. 지자체별 유형별 주민참여예산 운영 모델 연구용역 완료
· ‘18.3.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확대 등 지방재정법 개정(전 예산 과정)

· ‘18.11. 지자체별 유형별 주민참여예산 운영 모델 및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 (국정과제 75-5)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 지자체 핵심정책·사업까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해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 강화

-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운영)

· ‘15. 9월,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 ‘15.10.14, 제1기 내 세금 국민감시단 구성

· ‘17.12.13, 제2기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구성

· ‘18.3.23.~24.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워크숍 개최(‘18년도 상반기)

· ‘18.10.30.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워크숍 개최(‘18년도 하반기)

· ’19.12.19. 제3기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구성

- (지방보조금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 ‘14.5. 지방재정법 제2장의2 ’지방보조금의 관리‘ 신설

· ’15.1.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정

· ‘18.2.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마련 및 발표

· ’19.1. BH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TF’ 구성

· ’19.10.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 마련·시행

· (대통령 지시) ‘18.11.20,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 보조사업의 증가에도 고의적 부정수급 적발 미비, 제대로 점검·단속되고 있는지 의문, 전문가들을 통해 부정수급 유형 등을 파악 근원적인 차단방안 강구 필요‘

→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관계부처 합동, 19.10월)‘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지방재정분석 : 연 1회 추진 >

재정분석 지표 개선	행안부(2~3월)
재정분석 추진계획 수립	행안부(4월)
자치단체 결산 확정	자치단체(6월)
재정운영상황 실사 및 분석	행안부(7~8월)
재정분석 결과 확정 및 보고	행안부(9월)
우수단체 표창 / 미흡단체 재정진단	행안부(10월~12월)
재정분석 결과 국회 보고	행안부(12월)

<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 연중 상시적 추진 >

재정상황 모니터링	· 전년도 결산 + 당해연도 실적, 7개 재정지표
심층진단	· 재정위험 판단지표가 "주의 · 심각" 수준에 해당하는 자치단체
위기경보 (위기관리위원회)	· 재정위험 수준에 따라 "주의 · 심각" 등급부여 * 재정지표 모니터링과 심층진단 결과 함께 고려
①「주의」단체 위기관리대책	· 자율적 · 자체적인 재정건전화 권고
②「위기」단체 위기관리대책	·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의무 · 지방채발행 및 신규사업 제한 · 건전화계획에 기초하여 예산편성

< 주민참여예산제도 >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연 중
평가설명회개최, 지표 개발 및 검증	행안부(6월~9월)
권역별 현장방문	행안부(8월~10월)
우수사례 제출	지방자치단체(11월)
평가 및 우수사례 선정	행안부(12월)
우수사례 공유 연찬회 개최 (전문가 발제)	행안부(2월)

< 예산낭비 신고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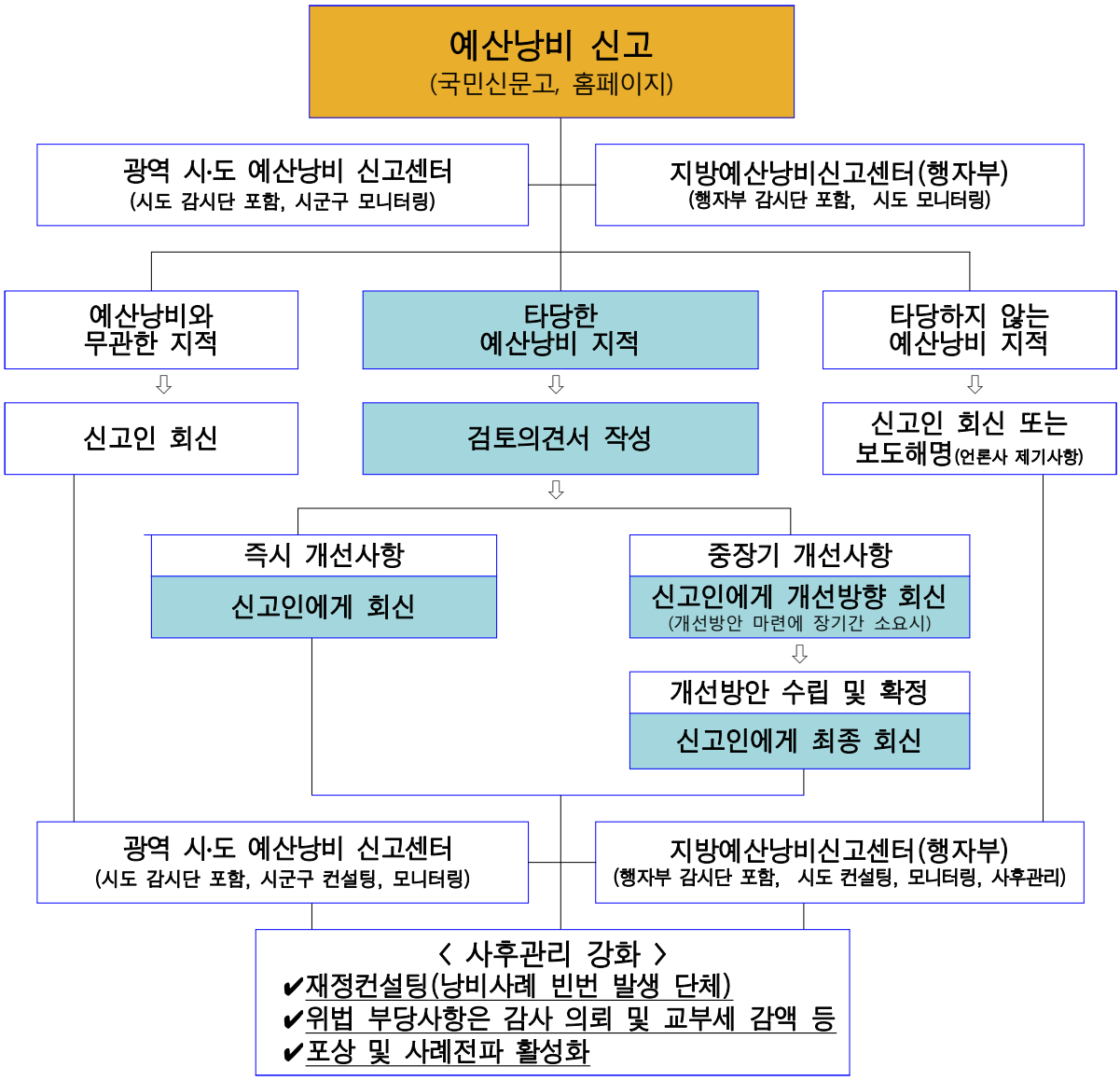
예산낭비 신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광역 시·도 예산낭비 신고센터
(시도 감시단 포함, 시군구 모니터링)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행자부)
(행자부 감시단 포함, 시도 모니터링)
예산낭비와 무관한 지적
타당한 예산낭비 지적
타당하지 않는 예산낭비 지적
신고인 회신
검토의견서 작성
신고인 회신 또는 보도해명(언론사 제기사항)
즉시 개선사항
신고인에게 회신
중장기 개선사항
신고인에게 개선방향 회신
(개선방안 마련에 장기간 소요시)
개선방안 수립 및 확정
신고인에게 최종 회신
광역 시·도 예산낭비 신고센터
(시도 감시단 포함, 시군구 컨설팅, 모니터링)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행자부)
(행자부 감시단 포함, 시도 컨설팅, 모니터링, 사후관리)
< 사후관리 강화 >
✔재정컨설팅(낭비사례 빈번 발생 단체)
✔위법 부당사항은 감사 의뢰 및 교부세 감액 등
✔포상 및 사례전파 활성화

사 업 명
2. 지방재정 정보화(정보화) (1332-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실		010	013
명칭					일반공공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2	500
명칭	지방재정경제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지방재정 정보화(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지방재정 정보화 (정보화)	2,899	12,503	9,986	31,276	23,506	23,506	13,250	135.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예산, 계약, 지출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활동 업무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운영 및 유지보수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유지관리)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등 지방재정정보를 국민에게 공개·개방하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의 운영 및 유지보수
- (지방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유지관리) 지방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주요통계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지방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 운영 및 유지보수
- (차세대 표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지방재정 업무기반 혁신을 위해 지방재정업무 고도화, 지방보조금관리 전자화 등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적근거

-「지방재정법」제96조의2(지방재정정보화), 제60조의2(통합공시)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지방재정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개와 제60조의2에 따른 통합공시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상황을 포함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0조의2(통합공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

- 「지방출자출연법」 제33조(경영실적 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지방출자출연법>>
제33조(경영실적 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출자·출연 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 공시의 기준,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46조(업무 상황의 공표 등), 제75조의2,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통합공시), 제64조, 제66조

<<지방공기업법>>
제46조(업무 상황의 공표 등) ① 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두 번 이상 지방직영기업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각 지방직영기업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를 하기 위하여 지방직영기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지방직영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5조의2(업무 상황의 공표 등) 공사의 업무 상황의 공표 등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사장"으로 본다.

② 추진경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03. 8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자정부로드맵』의 중점관리과제
- '03.12~'04. 9 지방재정정보화를 위한 BPR/ISP 수립
- '05.5~'06.12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발
- '06.7~'07. 7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확산·보급사업
- '07.7~'08. 1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기능추가
- '07.5~'11.10 지방재정통합DB구축 1～4단계사업
- '08.1~현재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
- '18.1~12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ISMP
- '19.5~'20.2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예비타당성조사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 ’14.11~’15.3 지방재정정보 공개를 위한 BPR/ISP
- ’15.7~’15.12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구축

<지방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 ’06. 9월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기본계획 수립
- ’06.11~’07.10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개발
- ‘07.12월~ 시스템 대국민 공개
- ‘08. 3~5월 시스템 고도화 추진
- ’08. 1~현재 시스템 유지관리 위탁
- ’17. 2~ 현재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1,491억원(구축비 1,017억, 운영비 474억)

※ 4개 내역사업 중 ‘차세대 표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이 총사업비 사업에 해당

- 사업기간 : 2008년 ~ 계속
-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비	2,132	2,030	2,725	3,470	2,899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
- 사업 수혜자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행정안전부

3) 사업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 ▪ 사업별 예산배정 및 성과관리	행정안전부
↓	
▪ 협약체결(사업수행계획서, 예산배정계획 등) - 전자정부법 제72조	행정안전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 세부사업계획 수립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 위탁사업비 지급	행안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 ('21년 예산 23,506백 중 일반수용비(5백)·국내여비(2백)을 제외한 23,499백 지급)
↓	
▪ 사업수행(사업관리, 사업비 집행 등)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 (익년) 추진실적 등 협약결과 보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 (익년) 결산	행정안전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지방재정정보화」 세부사업 내 4개 내역사업*은 동일한 절차로 집행됨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지방재정정보통합공개시스템 유지관리, 지방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유지관리, 차세대 표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사 업 명
3. 지방세정보화추진(정보화) (1333-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	010	013
명칭					일반공공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500
명칭	지방재정세제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지방세정보화추진(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지방세정보화추진(정보화)	12,824	25,184	25,184	20,063	20,063	20,063	△5,121	△20.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 · 지방세 신고·납부 등 납세자 중심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서비스 전면 개편
  - · 지방세 부과·징수 등 납세자 통합, 물건중심의 업무처리 등 세무행정 전 프로세스 재구축
  - · 전국 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 지방세 데이터 이관 및 통합구축
  - · 지방세 클라우드 인프라 및 통합운영 관리체계 구축, 신기술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구축
- **(지방세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제도 변경·자치단체 요구 등 프로그램 유지관리와 지방세 부과·징수, 사용자 교육 등 자치단체 세정업무 운영지원
  - · (위택스 유지보수) 안정적인 대국민 전자신고·납부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 추진
  - · (지방세정보시스템 장비 유지보수) 개발·배포 관련 H/W 및 상용S/W 유지보수, 위택스 H/W 및 상용S/W 유지보수
- **(종합부동산세 운영지원)**
  - · 종합부동산세 관련 과세 자료 취합 및 세액계산 등 부과지원
-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 과세자료 연계 및 체납 분석 업무지원과 프로그램 유지관리
  - · 과세자료 이용활성화 및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자치단체 운영(교육)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 ▪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 지방세법 제123조(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의 설치 등)
- ▪ 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 ‘05. 1~ ’07. 12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개발 및 보급
- ▪ ’14. 1 ~ ‘16. 12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1·2·3차 구축
- ▪ ’17. 3 ~ ‘17. 11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BPR/ISP 수립

- ‘18. 2 ~ ’18. 11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B/C=1.06, AHP=0.63)
- ‘19. 7. 차세대 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 한시직제 신설
- ’19. 8 ~ ‘20. 4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 사업 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3,148억원*

  * 4개 내역사업 중 ④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중 ’시스템 구축’ 부분이 총사업비 사업에 해당

- 사업기간 : ’05 ~ 계속
- 사업규모 :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 16개 시·도 및 201개 시군구(서울시 별도 운영)
  위택스시스템 운영 - 929만명(‘20. 6.기준 회원수)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지방자치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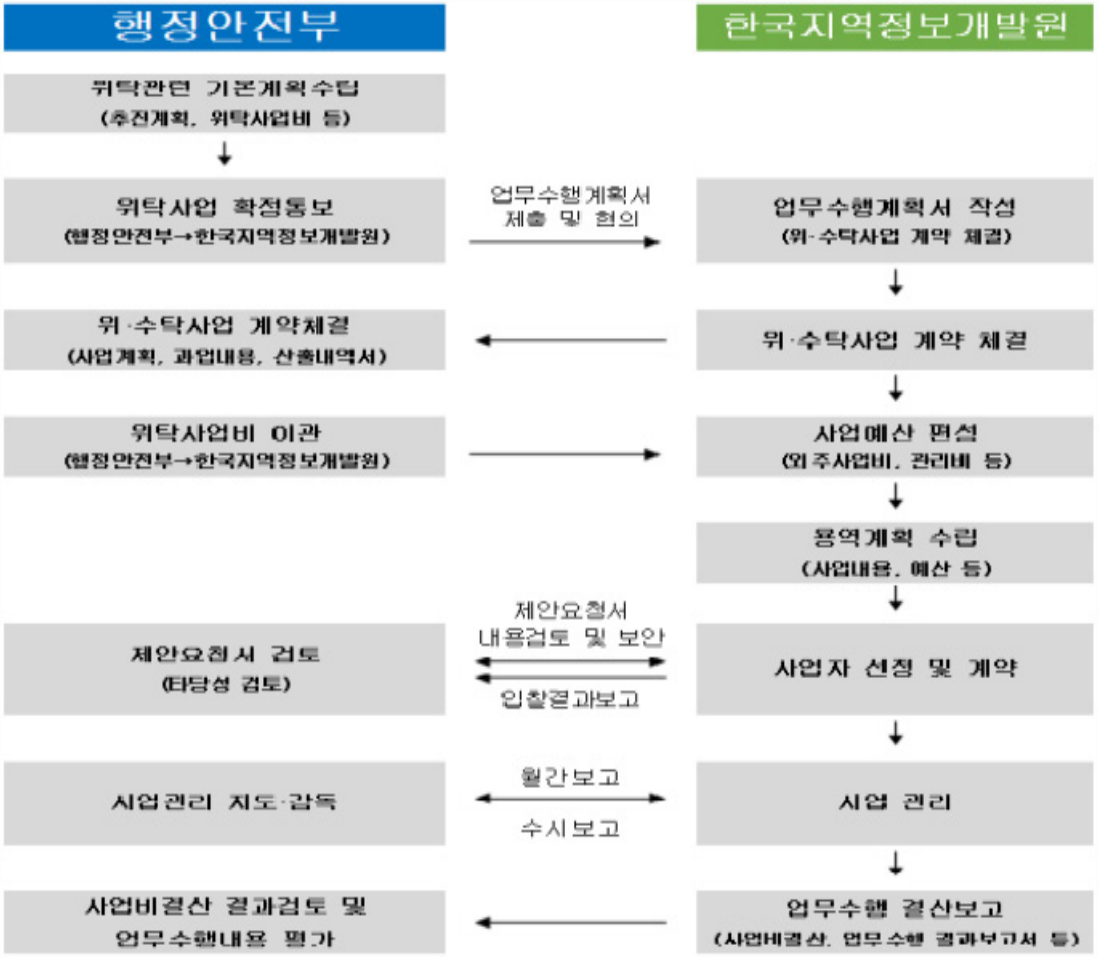

사 업 명
4.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1333-5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57)	지방재정경제실	-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 ·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503
명칭	지방재정경제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운영 (정보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대변인실(총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응용SW개발비

- 표준·새올·자치단체 개별시스템 등으로 분산되어있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통합·연계하여 자치단체 담당자 업무 효율성 및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 노후화된 시스템을 첨단화하면서 4차 산업혁명 기술(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을 적용한 운영환경으로 개선하여 대민서비스 수준 향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20조(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정보화)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외수입 정보통신망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국정과제 75-3)'의 세부과제

> (국정기조) 1.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추진전략) 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 (국정과제번호)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 75-3.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 -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 통합**

- '16. 4 ~ '16. 10 :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BPR/ISP 수립
- '18. 4 ~ '18. 12 :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의 발전적 구축 방안 연구 컨설팅
- '19. 9 ~ '20. 4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 사업 추진
- '20. 5 ~ 현재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 사업 발주 추진 중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년 ~ 계속
- 사업규모 : 전 자치단체(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및 전 국민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
- 사업 수혜자 : 전 자치단체의 10만여명 세외수입담당자 및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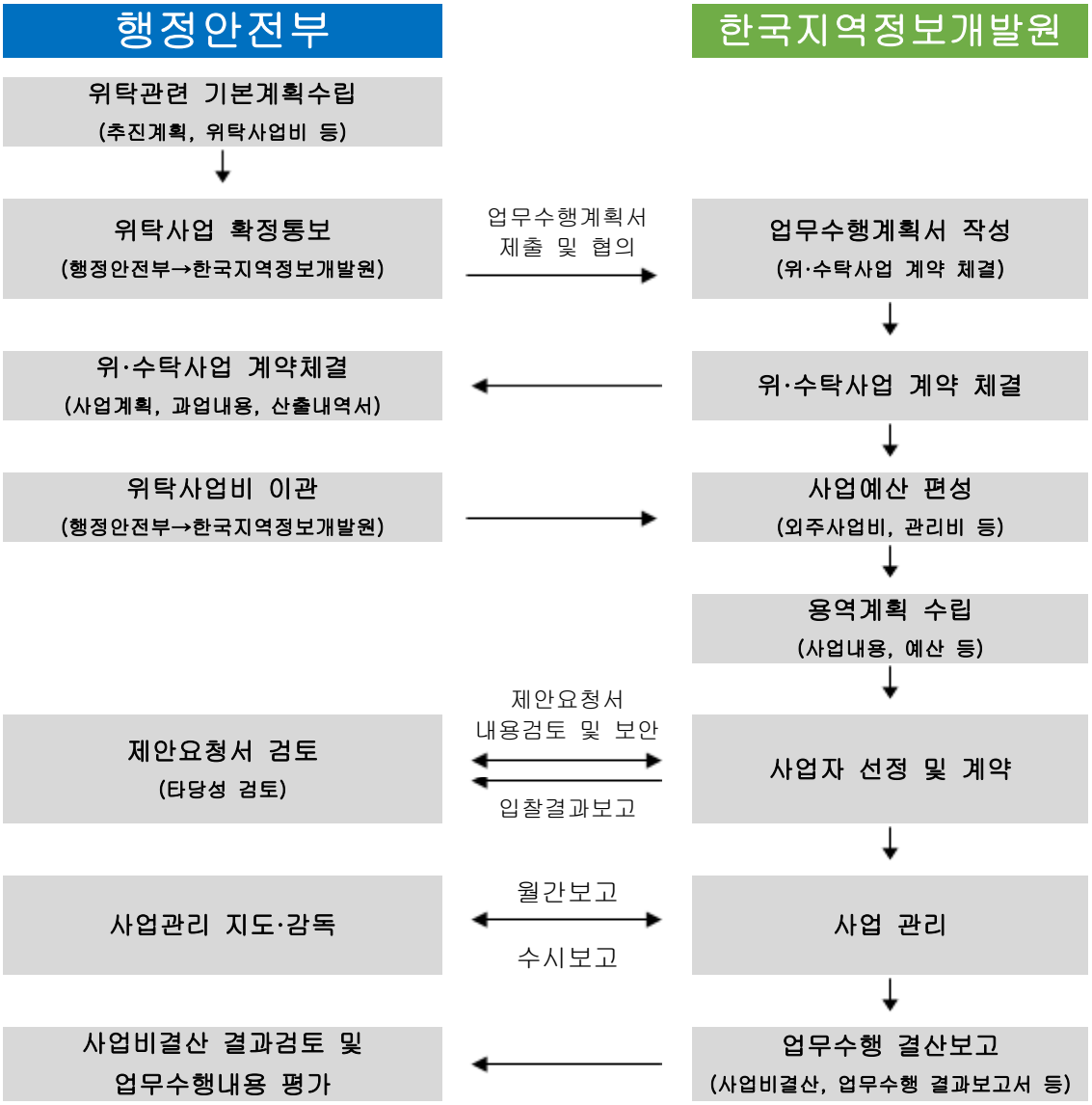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 가능 근거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20조 제4항

>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등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과 관련된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관련 정보화 사업을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사 업 명
5. 지방회계결산제도연구개선 (1335-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5	300
명칭	지방재정경제	지방회계결산제도연구개선	지방회계결산제도연구개선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지방회계결산제도 연구개선	374	377	377	149	137	137	△240	△63.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방회계 및 계약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관련 기관과 협업·교육·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방회계 및 계약제도의 투명성 제고 및 지속적 발전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방회계법 제11조(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지방계약법 제31조의3(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지방계약법 제35조(계약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② 추진경위

<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 운영 >

-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3 신설('14.11.29.)
- 제1기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 구성('16.4.28.)
-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근거가 지방회계법 제11조로 이관('16.11.30.)
- 제2기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 구성('18.5.1.)
- 제3기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 구성('19.5.1.)
-

< 지방계약제도 운영 및 제도개선 >

-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근거가 되는 지방계약법 제35조 신설(2005.8.4.)
-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근거가 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3 시행('14.2.7.)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6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 사업 수혜자 : 지방자치단체,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위원 구성, 심의안건·검토자료 준비, 지방회계제도에 대한 연구·분석 - 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에 대한 자문·심의 실시 - 심의 결과를 지방회계제도 개선 반영·검토 ○ 지방계약제도 운영 및 제도개선 - 정부위원회(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개최 - 계약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TF 회의시 법률자문 -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 연구

사 업 명
6. 지방공기업경영평가 (1336-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 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6	301
명칭	지방재정경제	지방공기업경영평가추진	지방공기업경영평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지방공기업경영평가	3,170	3,340	3,340	3,340	3,340	3,340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통한 건전한 지방공기업 육성 및 주민서비스 제고
- 지방공기업 경영진단을 통한 부실공기업 경영개선 등 경영합리화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및 제78조의2(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명령)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02년 :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체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
- 2005년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
- 2009년 : 행정안전부는 시·도 공기업, 시·도는 시·군·구 공기업을 평가하도록 변경 (행정안전부 평가비용만 국가 부담)
- 2016년 : 모든 공사, 공단의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로 일원화 (기초 상·하수도는 제외)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 ~ 계속
- 사업규모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지방공기업평가원 위탁)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지방공기업 및 지역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편람 통보	행정안전부	경영평가를 위해 피평가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경영평가편람 마련·통보
⇩		
②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계획 수립·통보	행정안전부	원활한 경영평가를 위한 계획 수립·기관 통보
⇩		
③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지방공기업	원활한 평가진행을 위해 기관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		
④ 경영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지방공기업 평가원	경영평가 진행 및 이에 따른 결과 보고서 작성
⇩		
⑤ 이의신청 검토, 평가보고서 제출	지방공기업 평가원	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별 이의신청 접수 및 검토, 최종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⑥ 경영평가결과 확정 및 평가등급 심의·의결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한 경영평가결과 및 등급 확정
⇩		
⑦ 경영진단대상기관 선정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부진기관 선정
⇩		
⑧ 경영진단반 구성 및 경영진단 실시	지방공기업 평가원	부진기관 경영진단 실시
⇩		
⑨ 경영개선방안 심의 및 경영개선명령 시달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한 경영개선명령 확정·통보

사 업 명
7. 과표양성화를위한시가표준액조사 (1337-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7	300
명칭	지방재정경제	과표양성화를위한 시가표준액조사	과표양성화를위한 시가표준액조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과표양성화를 위한 시가표준액 조사	1,079	1,096	1,096	1,500	1,296	1,296	200	18.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전국 통일된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마련(법정사무)

- 지방세('18년 결산 약38.7조원) 부과 및 복지급여 등 17개 법령상 국가사무의 기준으로 전 지자체가 지역·과세물건 간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

* 시가표준액 :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

- 늘어나는 재정수요(코로나 19, 자연재해 등) 대응 및 지방재정의 부흥과 건전성 담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지방세법」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② 추진경위 : 건축물과 기타물건의 다종다양한 현황 및 특성을 감안한 전문 가격조사·산정 필요성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해 왔던 시가조사를 '11년부터 가격조사·산정 전문기관과 계약을 통한 용역사업*으로 추진

* 한국감정원·한국물가협회('11년~'13년, '15년), 지방세연구원·삼창평가법인('14년, '16년)
한국감정원·지방세연구원('17년~'19년), 지방세연구원·정안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법인태백('20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1년 ~ 계속
- 사업규모 : 건축물 및 기타물건(10만2천여종)에 대한 시가조사 및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마련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중앙부처, 지자체,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업 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	➔	• 시가조사 실시 · 조사결과 검증 · 지자체 의견수렴 · 전문가 적정성 검토	➔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마련 및 지자체 통보	➔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자체)	➔	수시조정*
1월		3월		3월말~10월말(7개월간)		11월		매년 1.1		필요시

* 수시조정 :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 고시(「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사 업 명
8. 지방자주재원확충을위한정책추진 (1338-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8	300
명칭	지방재정경제	지방자주재원확충을위한정책추진	지방자주재원확충을위한정책추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지방자주재원확충을위한정책추진	965	970	970	1,445	970	970	0	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방세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
  - ▫ 지자체, 민간전문가, 납세자 의견수렴을 통해 장기・단기 목표 설정
  - ▫ 지방재정확충, 납세자권익보호 등 지방세발전방안 모색 및 제도개선과제 도출
    - ※ 장기 : 지방세발전포럼, 단기 : 제도개선토론회 및 지방세발전위원회 개최
-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사업추진)
  - ▫ 국정과제(15: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납세자 보호관 담당자 교육과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권리 보호 사업 추진
-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전환 개선)
  - ▫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전환에 따른 사전홍보 및 담당자 교육 실시
    - ※ 현재 납세자가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하나, '20년부터 자치단체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체계로 변경
- (지방세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후심층평가)
  - ▫ 지방세 감면의 합리적 정비를 위한 사전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후심층평가 체계 구축
  - ▫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 신설 방지를 위한 사전 예비타당성조사('17년 도입) 및 사후심층평가('18년 도입) 실시
    - ※ (필요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세 감면효과 분석 및 지방세 감면효과, 감면존치 여부 등에 대한 '지방세감면평가서'를 작성·제출하고 있으나, 소관 부처의 감면연장을 위한 주관이 개입되어 객관성 결여
    - ※ (국세) '15년부터 신규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후 심층평가 도입('19년 기준 18건 실시, 예산 12억1600만원)
-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 ▫ 지방자주재원의 한 축인 지방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하여 자체세입 증대 방안 지원
    - * 우수자치단체의 포상 및 사례공유, 미흡자치단체 맞춤형 징수율 제고방안 컨설팅 실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전환 추진>

- 지방세법 부칙 제13조(법률 제12153호, '14.1.1.)

<지방세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후심층평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1조 제6항·제7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4조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진단>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지방세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

○ (추진배경) '15년~, 개별 자치단체의 지방세 제도 개선 건의와 행안부의 검토를 통한 기존의 제도개선 프로세스로는 심도있는 논의와 적시성 있는 제도개선 곤란

○ (역할) 학계-관련 전문가-현장 공무원간 주기적인 네트워크 개최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현실적 개선방안 모색 등을 통해 법령·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 국정과제 75 :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 (추진배경) 납세자보호관 제도('18.1.1.시행),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20.3.1.시행) 등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제도 실시(지방세기본법§77②, §93)

※ 국정과제 사항 15 :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 (역할)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체납 등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세무조사·체납 처분 실시 전 적법성 검토, 지방세 불복시 영세납세자를 위한 무료 세무대리 지원 등 납세자 권익보호 향상을 위한 노력 지속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 (추진배경)「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부처 합동 발표('13.9.26.)

- 국가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지방세입 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의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소득세제 운영 가능

○ (시행시기) 신고현황 및 특성을 고려, 법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는 즉시 시행('15년), 개인지방소득세는 당초 '17년에서 '20년 지자체신고 시행으로 유예(지방세법 부칙 제13조)

○ (중점과제) 지방 과세 자주권과 납세편의가 조화될 수 있는 개인지방 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 및 간편신고방안* 마련

* 납세자가 지자체·세무서 중 선택 방문, 한번에(One-Stop) 신고처리

<지방세외수입 분석 진단 운영>

○ (추진배경) 「(舊)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14.5.21.제정)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법률로 상향('15.5.18.)하여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를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지원

※ 국정과제 사항: 75-3 지방재정건전성 강화(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 2020. 3. 2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 (역할) 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현황 분석, 징수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및 부진 항목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납세자, 지자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지방세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

○ 지방세 관련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과제연구와 현실적 개선방안 모색

- (구성) 학계(교수), 전문가(연구원 등), 전·현직 공무원 등
- (운영) 지방세 관련 주요 분야별 전문가 Pool을 구성, 현장 공무원 등과의 토론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제도개선 프로세스》

제도개선 건의과제 접수	➡	토론회 개최(2회) 과제선정	➡	세부 개선안 및 법령 개정안 마련	➡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	➡	국회 입법대응
1～2월		3～4월		5～6월		～ 8월		～ 12월

□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전환 추진

○ (준비) 신고방안 마련 등(~'18.10.), 인력충원방안 및 법령개정안 등 마련(~'18.12.)
○ (개선) 시범운영, 교육·홍보, 국세자료공유, 법령개정 및 시스템 개선(~'19.12.)
○ (실시) 지자체신고 전면 시행 및 신고지원센터 운영(~'20.1.)
○ (정착) '21년 지방소득세 신고 개선방안 마련 및 지자체신고 제도 정착(~'21.4.)

'19년
(홍보 및 시범운영단계)

❖ ('19.1.~)지자체 담당자 **교육(수시)** 및 신규 신고체계 홍보
❖ ('19.5.)17개 시도별 **시범운영** 및 문제점 개선안 마련
❖ ('19.7.)「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마련
❖ ('19.12.)지자체 **기준인건비** 미확보분 **추가 확보**

⬇

'20년
(실시단계)

❖ ('20.1.~)양도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지자체**신고 실시**
❖ ('20.4.~)지자체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지원센터 운영**
❖ ('20.5.~)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지자체신고 실시

⬇

'21년
(안정화단계)

❖ ('20.6.~)신고불편 사항 개선 및 법령·시스템 보완
❖ ('21.1.~)'21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준비
- 담당자 실무교육, 합동신고센터 설치, 시스템 연계, 홍보추진

□ 지방세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후심층평가

○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및 지특법 개정일정과 연계하여 추진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후심층평가	1~3월		4~8월		8월		9~12월
	수요조사 대상선정 계약체결	⇨	연구용역 실시	⇨	법 개정안 입법예고	⇨	법 개정시 반영

□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진단 제도

○ (운영절차) 각 지표에 대한 기초자료 통계분석 및 우수/미흡 자치단체 대상 현지실사 실시, 세외수입 종합보고서 및 미흡 자치단체 대상 컨설팅 보고서 작성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제도 운영절차>

지표논의 및 개선	→	자료조사	→	자료 분석·검증	→	결과보고
4~5월		5~8월		9~11월		12월

○ (결과활용)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징수율 제고방안 지원

사 업 명
9. 지역금융활성화 (1349-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49	300
명칭	지방재정경제	지역경제지원	지역금융활성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지역금융활성화	90	90	90	120	90	90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새마을금고 및 행정공제회 제도 개선)** 동 내역사업은 새마을금고 및 행정공제회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 및 세미나 개최, 단위금고 의견 수렴 등 추진
- **(새마을금고 및 행정공제회 현장점검 강화)** 동 내역사업은 새마을금고 및 행정공제회 건전성 제고를 위해 중앙회, 지역금고, 행정공제회를 대상으로 중앙회 정기종합감사(격년, '17년·'19년), 새마을금고 지역금고 합동감사(매년), 긴급금융지원·사회공헌사업 현장점검, 행정공제회 대의원회 참석을 위한 여비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새마을금고법」 제3조(국가등의 협력 의무), 제74조(감독 등)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5조(정관), 제19조(예산 및 결산)

② 추진경위

-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리부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요구에 따라 새마을금고지원단에서 지역금융지원과('15.10.15)로 직제개편 및 인력확충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관리・감독 업무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지역금융지원과로 이관('15.10.15)됨에 따라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해 우리부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5～
- 사업규모 :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지역금고 1,300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새마을금고 및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용 고객

3) 사업 집행절차

○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중앙회 정기 종합감사(격년, '17년·'19년)

- (감사반) 행안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감정원, FIU 등 25명
- (주요 감사사항) 조직·인사·예산 등 일반분야, 경영실태평가, 예금자보호 준비금 운용적정성, 대출 담보평가·관리, 공제회계 적정성 및 건전성 비율, 사모펀드(PEF) 투자 등 여유자금 운용 적정성 평가 등

○ 금감원과 합동으로 경영악화 우려가 있는 30개 지역금고 선정, 감사 실시

- 국내 가계부채 우려, 美·中간 무역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금고의 건전성·수익성 악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

○ 행정공제회 관리·감독을 통해 건전성 제고

- 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대를 확립·운영함으로써 회원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리후생을 증진하는 행정공제회를 관리
-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분과위원회를 통해 적립한도 및 공제율 관리 등 건전성 감독, 임원 선임 등 공제회 운영 관리

사 업 명
10. 지역경제활성화 (1349-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49	301
명칭	지방재정경제	지역경제 지원	지역경제활성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지역경제활성화	800	687	687	6,387	691	4	0.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정책 발굴 및 확산 추진, 지방자치경연대전 개최를 통한 지자체 경제정책 우수사례 발굴 등
- (지방물가안정관리와 골목상권활성화 등 추진) 지역 물가안정을 위한 중앙-지방 협조체계 구축 및 우수업소 지원
- (지방규제혁신 추진) 지자체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을 통해 지역현장의 규제애로 해소 및 우수사례 확산, 규제담당자 역량강화 등 지원
- (지방규제혁신 공론화과정 지원) 규제혁신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등 공론화 과정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지역경제정책 활성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역발전과 지역간의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

〈지방물가 안정관리와 골목상권 활성화 등 추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조(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지방규제혁신 추진, 공론화과정 지원〉

- 행정규제기본법
- (국정과제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재설계

② 추진경위

〈지역경제정책 활성화〉

- ’08.02. : 국정과제(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 ’10.12. : 지역 우수자원의 권리화 지원
- ’17.1. : 지역경제 거버넌스 구축 및 지역통계 산출 지원
- ’18.3. : 제14회 지방자치경영대전 개최로 지자체 우수 사례 발굴·공유(7개분야, 34개)
- ’19.1. : 제15회 지방자치경영대전 개최로 지자체 우수 사례 발굴·공유(7개분야, 34개)

〈지방물가안정관리와 골목상권 활성화 등 추진〉

- ’11. 11월 : 착한가격업소 선정(2,497개)
- ’12. 06월 : ‘12년도 착한가격업소 확대 지정(7,123개)
- ’17. 12월 :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제정 및 지자체 통보
  ※ 지원조례 : 30개 지자체(‘18.1월) → 74개 (’18.12월) → 93개 (’19.7월)
- ’18. 11월 : 착한가격업소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회(우수사례 15건 선정)
- ’19. 05월 : 지역골목 융·복합 상권 활성화 추진관련 자치단체 합동 컨설팅 실시

〈지방규제혁신 추진〉

- ’15년 : 시·도 순회 규제혁신토론회 개최(강원, 전남, 서울, 전북, 새만금)
- ’16년 :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개최(지방공기업, 충북지역, 중소기업중앙회, 장관회의 대통령 보고,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 등)
- ’17년 : 걷어내는 규제, 지역 생생 프로젝트 추진 및 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4회 개최(경남지역, 대구지역, 강원지역, 광주지역)
- ’18년 : 네거티브 과제 도입, 민생규제 발굴을 위한 대국민공모, 경기지역 현장토론회 개최, 국민과 기업이 함께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토크콘서트 개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16개 시·도)
- ’19년 : 2019년 테마규제(지역 혁신성장, 공공기관 혁신, 포용사회 구현) 발굴·해소,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실시
- ’20년 : 지자체 건의규제 수시발굴·개선, 자치법규 상 규제 자율정비 지원,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준비 등

〈지방규제혁신 공론화과정 지원〉

- ’19년 : 민생규제 개선과제 발굴·해소, 중소기업 및 중앙부처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규제혁신 연구용역 등 추진
- ’20년 : 규제혁신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대국민 공모를 통한 민생규제 발굴·해소, 「2020년 지방규제혁신 토론회」개최 예정

※ 규제애로 해소 과정에 주민 및 지역기업, 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전문가, 지역주민, 관계공무원(부처·자치단체) 등이 함께 규제를 해소해가는 토론회·포럼 등 개최 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8 ~ 계속
- 사업규모 : 전국지방자치단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지역경제정책활성화 – 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사례 발굴 제출	⇨	우수사례 심사	⇨	지방자치경영대전 개최	⇨	후속 관리
지자체의 우수시책 발굴		부문별 평가지표에 따른 심사 및 현지실사를 통한 엄정한 심사		지자체별로 우수시책을 발표하고 관계자들이 모여 우수시책 확산을 위한 방안 논의		결정된 우수시책을 확산하고 피드백

<지방규제혁신 추진>

< 지자체 건의과제 개선 추진 절차 >

수시과제 발굴(지자체)	➜	상시개선(행안부)	➜	피드백(행안부)
주민·기업 의견수렴 → 지자체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		부처협의 → 토론회, 조정회의 등		진행상황 지자체 안내

< 민생규제 혁신 추진 절차 >

과제 발굴	➜	1차 검토	➜	안건 심사	➜	온라인 투표	➜	주민 사전학습	➜	토론회 개최
대국민 공모 전문가 공모		공모안건 검토 후 부처협의		토론회 안건 후보 선정		토론회 안건 최종 선정		토론 안건 사전학습 및 의견 정리		안건 논의· 이후 이행관리

사 업 명
1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349-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49	306
명칭	지방재정경제	지역경제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80%, 60%, 40%, 3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53,335	72,149	629,821	216,149	1,052,244	1,052,244	422,423	0.6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반 조성)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비용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한 워크숍 개최, 현장점검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①항

② 추진경위 : 지역 내 소비진작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19.9.10)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년 발행 지원규모 확대('19.2.3조원→'20.3조원)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20년 1차 추경('20.3.)을 통해 발행규모를 3→6조원으로 확대하고 10% 할인판매 지원
- 지역소비 진작여력을 연말까지 이어가기 위해 '20년 3차 추경('20.7.)을 통해 발행규모를 6→9조원으로 확대하고 본예산 잔여분 1.9조원에 대해 4% 추가지원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1.1.~12.
- 사업규모 : 15조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경상보조(80%, 60%, 40%, 30%)
- 사업시행주체 :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20.230개)
- 사업 수혜자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자체 내 자영업자·소상공인(가맹점)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지자체 보조(9조원)	80%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122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지자체 보조(5조원)	60%	
지자체 보조(1조원)	3~40%	

3)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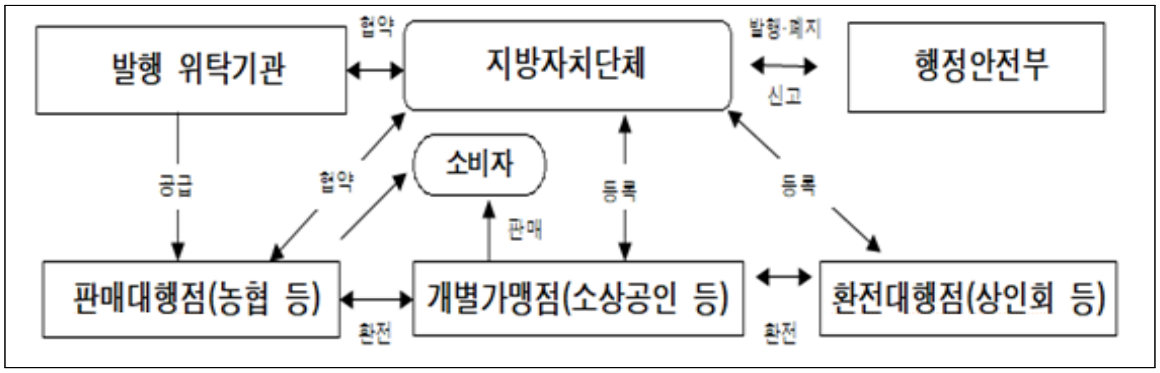
발행 위탁기관
협약
지방자치단체
발행·폐지
신고
행정안전부
공급
협약
소비자
판매
등록
등록
판매대행점(농협 등)
환전
개별가맹점(소상공인 등)
환전
환전대행점(상인회 등)

사 업 명
1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31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080	082
명칭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1	301
명칭	일자리지원	지역일자리창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20,837	235,003	235,003	235,003	235,003	235,003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청년 고용 창출 및 지역 정착 유도를 통한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인건비, 창업지원, 일 경험 등을 지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운영)
  지자체 중심의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운영비(홍보, 현장점검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률) 지방재정법 제23조1항*, 지방자치법 제166조2항**에 근거하여 국비 지원

*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국가나 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 지원과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조례) 다수 지자체는 청년일자리 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

② 추진경위

- 지자체 우수 일자리사업 발굴* 및 유형화**를 통해 국가시책 사업화 준비('17~)

*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17.12.),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18.3.) 등

** 전문가 자문, 청년 간담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 성공요인 분석, 유형별 모델화 → 3대 기본유형 설계

- 청년실업의 급격한 악화에 따라 특단의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발표('18.3.15.) → '18년 추경을 통해 조속히 추진
- '18년 추경 의결('18.5.21.) 이후, 공모·심사, 추진체계 구축, 시행지침 수립 등을 거쳐 지자체 사업시행('18.7.~)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8.7.~'21.**
- 사업규모 : '21년 2.62만명(기존 1.68만명, 신규 0.94만명)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국고보조
- 사업시행주체 : 광역·기초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만 39세 이하 청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전국)	40～50	지방재정법 23조1항, 지방자치법 166조2항
지자체 보조(서울)	30～40	상동

3) 사업 집행절차

○ **(기본계획)**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역 선도사례 발전·보완* ⇒ **3대 기본유형**** 예시

* 현장토론회, 청년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핵심 성공요인 분석
** 청년일자리 기본유형 :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 **(사업설계)** 청년·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자율적·탄력적 사업설계**

○ **(사업심사)** 지자체 **사업계획(안) 심의*** 및 선정, **국비지원**

* 사업타당성, 집행가능성, 유사중복 여부 등

○ **(사업시행)** 지자체 **사업시행, 현장점검** 및 **성과중심** 사후관리

< 사업추진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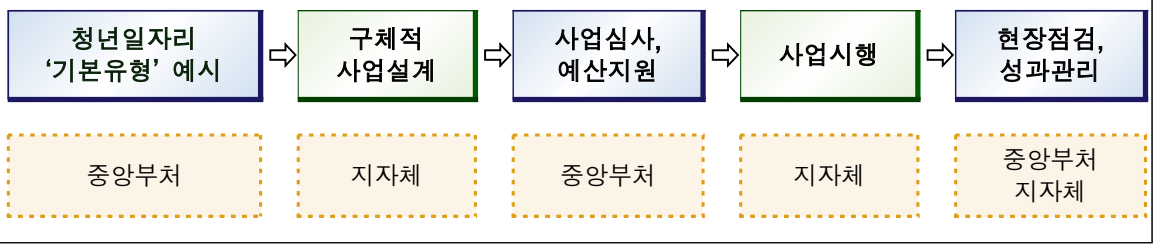

지방교부세

2021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1. 보통교부세 ····· 349

2. 지역현안특별교부세 ····· 351

3.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 353

4. 부동산교부세 ····· 355

5.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 358

6. 소방안전교부세 ····· 361

사 업 명
1. 보통교부세 (16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1	300
명칭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보통교부세	47,602,635	46,726,414	44,896,524	44,585,590	44,545,160	44,537,686	△358,838	△0.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자치단체 상호 간 재정력 격차 완화 및 세원배분 불균형 보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제1호, 제2항

② 추진경위

-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법률 제192호에 의거 "임시지방분여세법"의 제정으로 시행(1951.4.1.)
- 국정과제 75번「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관련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내국세 총액 -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45%) × 19.24% × 97%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지방자치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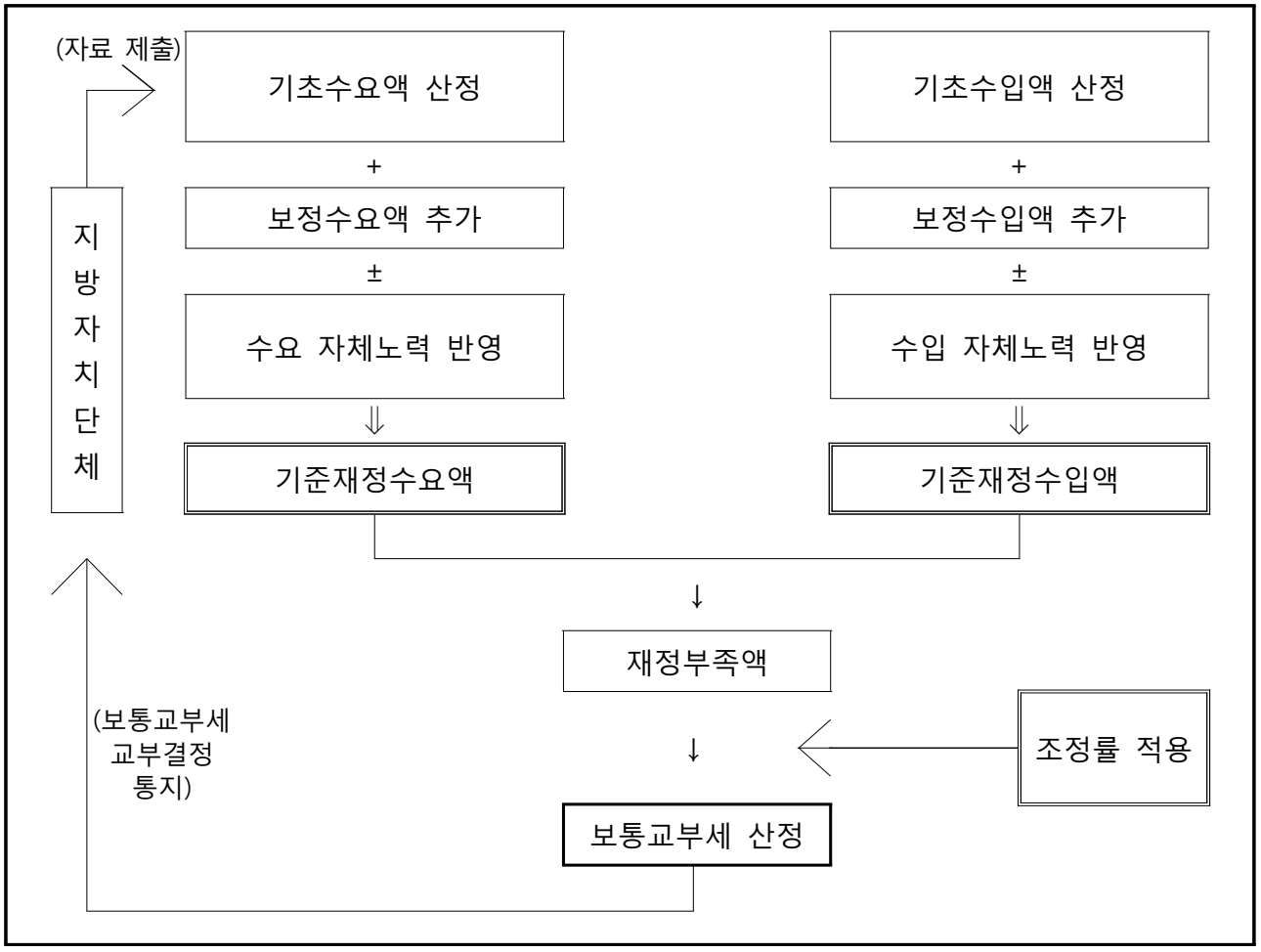

사 업 명
2. 지역현안특별교부세 (16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2	300
명칭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지역현안특별교부세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지역현안특별교부세	588,899	578,059	555,792	551,574	551,074	550,982	△4,810	△0.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해 교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제1호, 제2항, 제9조제1항제1호

② 추진경위

-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법률 제192호에 의거 "임시지방분여세법"의 제정으로 시행(1951.4.1.)
- 국정과제 75번「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관련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내국세 총액 -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45%*) × 19.24% × 3% × 40%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지방자치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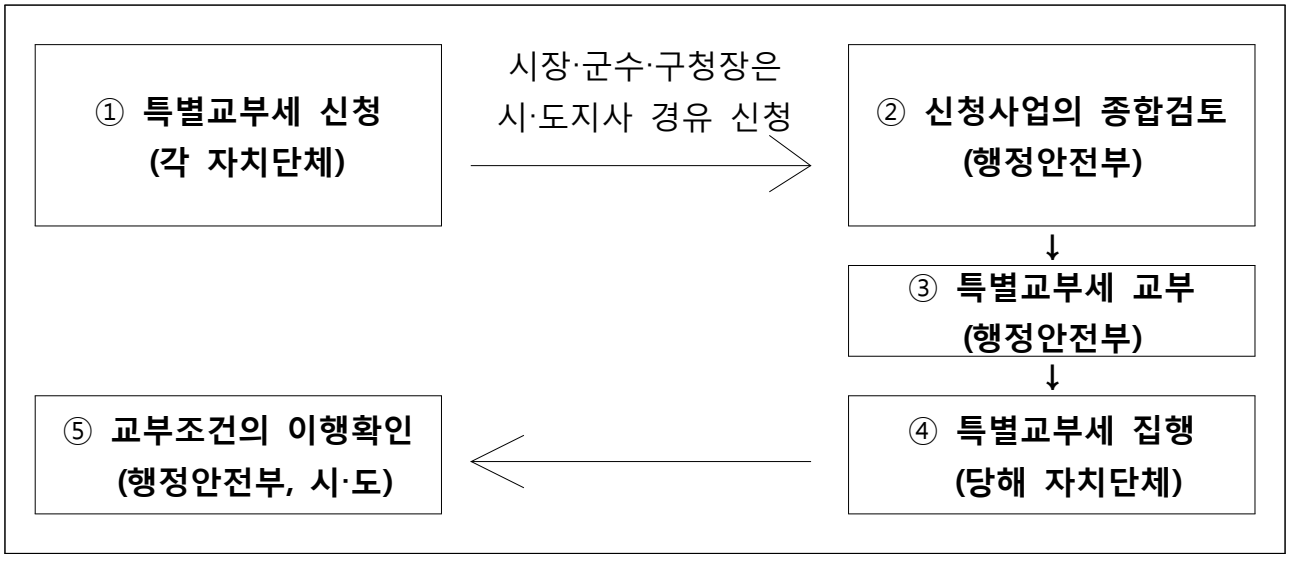

사 업 명
3.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16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2	301
명칭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147,225	144,515	138,947	137,894	137,769	137,746	△1,201	△0.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자치단체에 교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제1호, 제2항, 제9조제1항제3호

② 추진경위

-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법률 제192호에 의거 "임시지방분여세법" 의 제정으로 시행(1951.4.1.)
- 국정과제 75번「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관련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내국세 총액 -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45%*) × 19.24% × 3% × 10%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지방자치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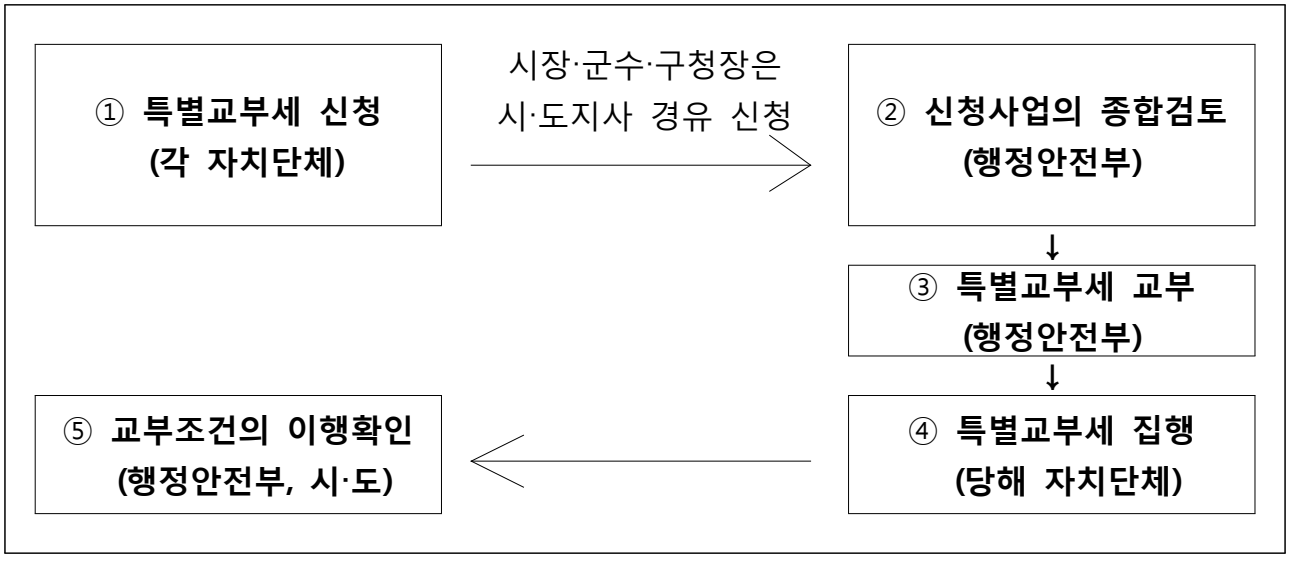

사 업 명
4. 부동산교부세 (16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3	300
명칭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부동산교부세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	국회 확정(b)		
부동산교부세	2,849,400	3,320,970	3,320,970	4,935,665	4,935,665	4,935,665	1,614,695	48.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시·군·구(제주, 세종 포함)에 교부하여 지역균형발전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방교부세법」제4조제1항제1호, 제2항

② 추진경위

-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 재원 감소분을 보전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부동산교부세 도입(’ 05.12월)
- 재산세 및 거래세 감소분 보전 및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목적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종합부동산세 전액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지방자치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전년도 정산분 **(2~3월)**	⇐	· 전년도 교부기준에 따라 산정 · 정산액 범위 내 산정(행안부)
↓		
1차 교부결정 통지 **(3~7월)**	⇐	· 종부세 징수액 파악(행안부→기재부) - 현년도 1~6월 징수액(분납분) · 징수액 범위 내 산정(행안부)
↓		
2차 교부결정 통지 **(12월)**	⇐	· 종부세 징수액 파악(행안부→기재부) - 현년도 12월 징수액(분납분) · 징수액 범위 내 산정(행안부)

사 업 명
5.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644-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관리정책관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44	300
명칭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36,123	722,333	694,739	689,468	688,843	688,727	△6,012	△0.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보통교부세 산정 이후 예기치 못한 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특별 재정 수요에 교부하여 지자체 재난 및 안전관리 강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 제2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3(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② 추진경위

- 최초 시작년도 : 1962년도
- 지방재정의 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일정수준의 기준재정 수요액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그 재정부족액을 특정 국세에 결부시켜 재원의 안정화·법정화 도모 필요
- 특히 '재난안전수요'는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교부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688,727백만원(특별교부세 재원*의 50%)
  * 정률교부세(내국세의 19.24%)의 3%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지방자치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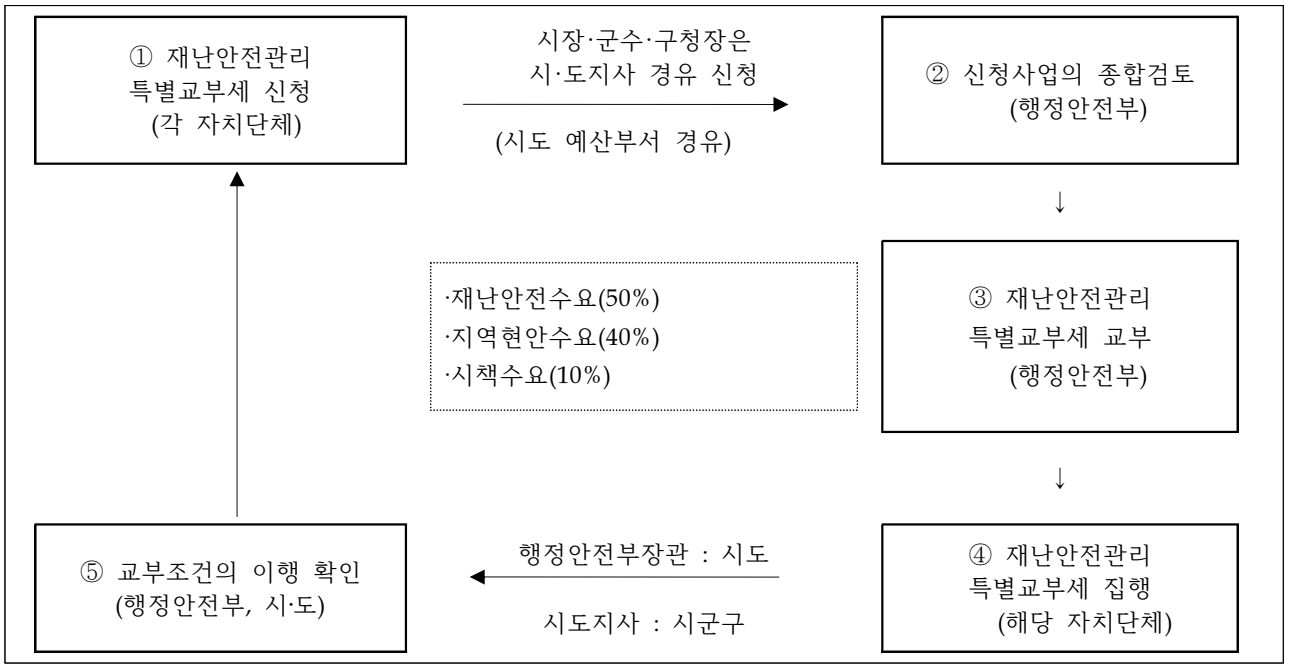
①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신청
(각 자치단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 경유 신청
(시도 예산부서 경유)
② 신청사업의 종합검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수요(50%)
·지역현안수요(40%)
·시책수요(10%)
③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
(행정안전부)
⑤ 교부조건의 이행 확인
(행정안전부, 시·도)
행정안전부장관 : 시도
시도지사 : 시군구
④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집행
(해당 자치단체)

사 업 명
6. 소방안전교부세 (1645-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부문명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45	300
명칭	지방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소방안전교부세	537,502	714,294	685,134	906,115	906,115	903,865	218,731	31.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소방안전교부세)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지자체 교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방교부세법 제4조 2항 5호 및 제9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4,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② 추진경위

- 지방교부세법을 개정('15.1.1시행)에 따라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 소방국가직 지원을 위한 소방공무원 인건비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20.4.1시행)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 ~ 계속
- 사업규모 :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및 정산액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에 따라 시도별 교부)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17개 광역자치단체에 교부)
- 사업 수혜자 :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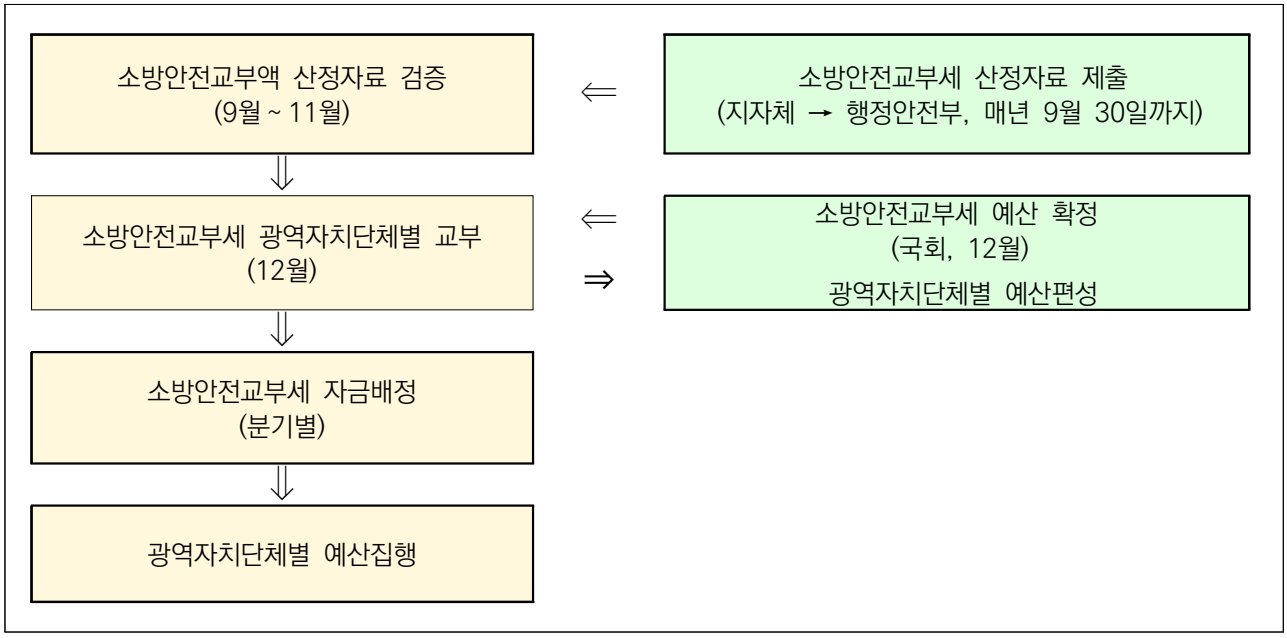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021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1. 중앙안전상황실운영 ····· 365

사 업 명
1. 중앙안전상황실운영 (7037-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61
명칭	행정안전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중앙안전상황실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중앙안전상황실운영	2,307	3,391	3,391	2,988	2,245	2,245	△1,146	△33.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목적) 재난발생시 신속한 재난상황 접수·전파 및 초등대처를 위한 효율적인 상황관리 정보스시템 구축 및 상황실 운영

○ (내용)

-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판단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황관리 시스템* 운영·유지보수비

  * GIS상황판, 소방영상, 산불상황 등 72종의 상황관리시스템, 상황판, 통합제어, IP WALL, 백본스위치 등 22종 347대 장비 운영

(세종) 총 22종 : 상황판, 통합제어, IP WALL, 매트릭스 스위치, 오디오믹서, 다자간 접속장치, 백본스위치,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 등
(서울) 총 13종 : 상황판, 통합제어, 매트릭스 스위치, 오디오믹서, 다자간 접속장치, 백본스위치,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 등

- 재난 및 안전 상황관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망·영상회의·상황전파 등에 사용한 전용회선 사용료

- 상황관리에 필요한 각 재난관리책임기관 정보망들의 추가연계* 및 24시간 운영 중인 상황관제용 일반PC**를 워크스테이션 서버PC로 교체

  * 공통기반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한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연계(야간 및 휴일 영상회의를 위한 공통기반망 영상회의 운영권한 확보, 한국전력공사, 민자고속도로 및 지하철·경전철 운영사 등 영상회의 시스템 연계 확대)

  ** 각 기관이 연계한 정보망시스템을 현재 일반PC로 사용하고 있으나 상시 운영이 가능한 서버급(워크스테이션)으로 교체하여 안정적으로(24시간 365일) 운영

- 범정부 상황실로서의 위상에 맞는 노후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등 지원 필요

  *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재난대응 기조로 총리, 각 부처 장관들의 서울상황센터 방문과 언론 홍보가 증가하고 있어 노후시설 개선 필요, 바닥재·V테이블 파손 등으로 인한 안전 문제 및 언론에 공식적으로 노출되는 VIP, 총리 주재 영상회의 등 운영 애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제6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4.3.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

  * 국가기반 재난상황 관리를 위한 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 설치·운영

- ‘08.2월 (구)행자부 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과 (구)비기위 정부종합상황실 통합
- ‘10.3월 행안부·방재청 통합상황실(중앙재난위기상황실) 구축·운영
- ‘13.3월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중앙안전상황실 설치
- ‘14.11.19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 (구)안행부 및 (구)방재청 상황기능 통합,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 ‘16.9월 세종청사(국민안전처)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이전 설치
- ‘17.7.26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 상황실 2개소 운영 : (세종)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서울상황센터
- ‘19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 회견문
  *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습니다.”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4~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행정안전

3) 사업 집행절차

○ 중앙안전상황실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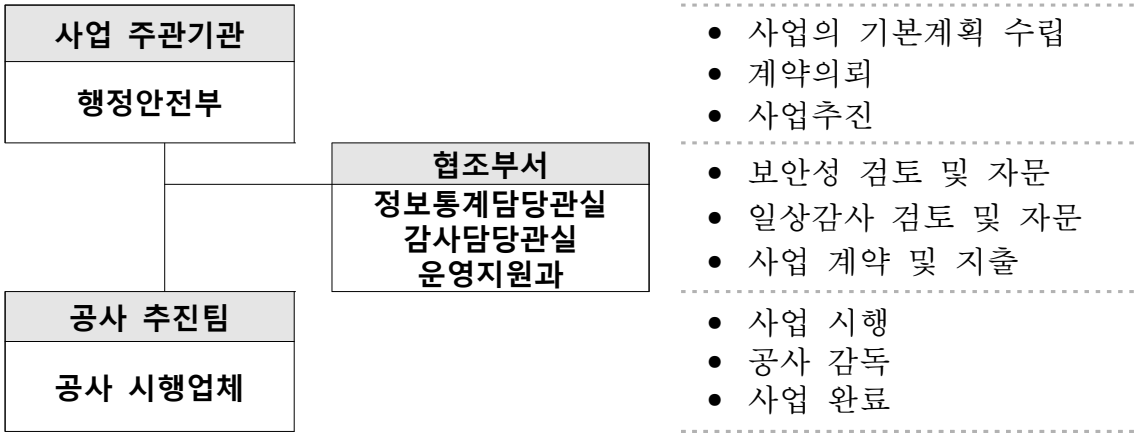

안전정책실

2021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1. 재난안전산업활성화 ····· 371

2. 재난안전사업평가 ····· 375

3. 4.16재단지원 ····· 378

4. 국민안전의식선진화 ····· 381

5. 지역안전개선컨설팅 ····· 384

6. 안전사고대책 및 재난현장종사자 지원 ····· 389

7. 승강기안전관리개선 ····· 392

8.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 395

9. 우수저류시설설치(보조) ····· 400

10. 재난행정정보화(정보화) ····· 403

11. 긴급신고전화통합체계구축·운영(정보화) ····· 407

사 업 명
1. 재난안전산업활성화 (26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31	303
명칭	안전관리	안전점검 및 재난안전산업활성화	재난안전산업활성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1,166	1,690	1,690	5,190	1,876	1,876	186	1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안전을 산업으로 발전시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혁신성장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한 기반 구축
- 안전산업 생태계 조성 및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확산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개최
- 중소기업 등에서 개발한 우수한 방재기술의 신뢰성, 공신력, 권위 확보 등을 위하여 방재기술 평가·지정제도 운영, 판로확대 지원 등을 통한 안전산업 육성
- 체계적인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지원정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저성장 시대 새로운 혁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견인

2) 사업개요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2(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재난안전제품의 인증)
-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방재기술평가의 지원)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의3(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분류)
-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② 추진경위

- 신 국가방재시스템 구축방안 보고('07. 5. 15 국무회의시)
- 국가안전 대진단 및 안전산업 발전방안 보고('14.8.26. 국민경제자문회의)
- 안전대진단과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안전산업 육성의 계기로 적극활용
- 안전대진단 연계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15.3.19. 무역투자진흥회의)
  - · 제도개선 및 정책 지원을 통한 민간의 안전투자 유인
  - · 재난보험, 컨설팅 등 민간의 안전 서비스산업 활성화 유도
  - · 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 위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16. 12. 29. 본회의 통과, '17. 1. 17.공포, '18. 1. 18.시행)
- 국정과제 Ⅲ-56-1.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 방재・안전산업육성기반 마련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년 ~ 계속
- 사업규모 : 방재신기술 평가·지정제도 운영,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개최, 기업의 안전기술개발 발굴·보급,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재난안전제품인증제도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주관사 선정	⇒	기본계획 수립	⇒	실행계획 수립 및 조직위원회 구성운영	⇒	전시회 개최	⇒	전시회 성과 분석	⇒	사업결산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주관사 및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방재신기술 지정>

신기술 신청	⇒	접수	⇒	신기술 평가	⇒	평가결과 보고	⇒	방재신기술 지정서 발급
신청자		행정안전부 또는 위탁기관		위탁기관 ※ 1차 서류, 2차 현장		위탁기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 방재신기술 위탁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

<재난안전인증제품>

신 청 (기업)	⇒	검토·접수 (행안부)	⇒	1차심사 (위원회)	⇒	현장심사 (위원회)	⇒	2차심사 (위원회)	⇒	의견수렴 (행안부)	⇒	인증서 발급 (행안부)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	용역업체선정	⇒	스크리조사 및 표본조사(대면)	⇒	결과분석 및 공표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용역업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

위탁기관 선정 공고·접수	⇒	위탁기관 선정	⇒	컨설팅 지원 사업 공고·접수	⇒	대상기업 선정 (서면검토, 현장조사, 선정평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위탁기관		위탁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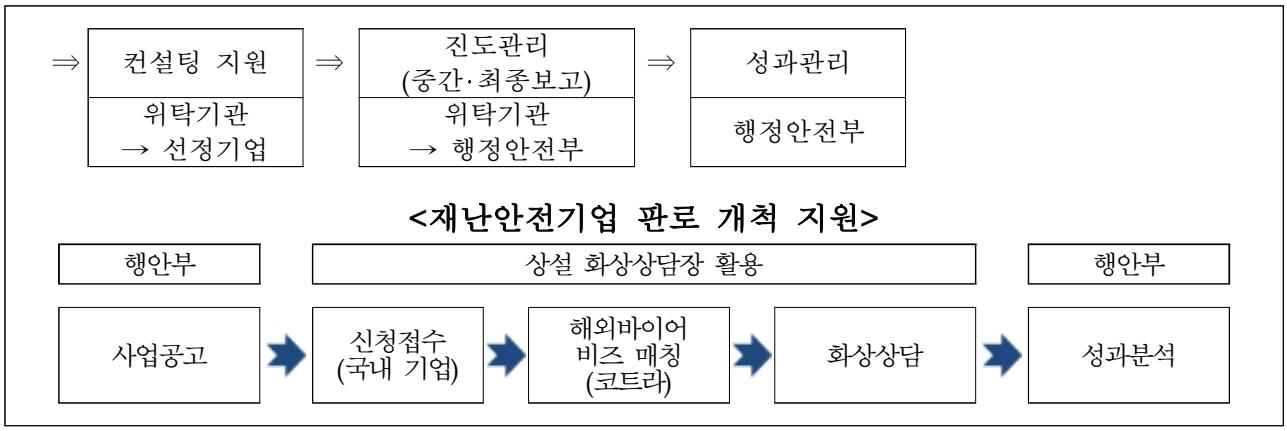
⇒
컨설팅 지원
위탁기관
→ 선정기업
⇒
진도관리
(중간·최종보고)
위탁기관
→ 행정안전부
⇒
성과관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기업 판로 개척 지원>
행안부
상설 화상상담장 활용
행안부
사업공고
신청접수
(국내 기업)
해외바이어
비즈 매칭
(코트라)
화상상담
성과분석

사 업 명
2. 재난안전사업평가 (26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31	304
명칭	안전관리	안전점검 및 재난안전산업활성화	재난안전사업평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재난안전사업평가	235	250	250	250	250	250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총괄 관리하여 재난안전 분야 국가재정 투자의 효율성 제고
- '재난안전사업 평가' 및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사업평가 수행, 사전협의 및 평가 관련 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② 추진경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에 따른 제10조의2 신설('14.12.30.) 및 시행('14.12.30.)으로 사전협의 업무 법제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에 따른 제10조의3 신설('14.12.30.) 및 시행('15.6.30.)으로 사업평가 업무 법제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신설 및 시행('15.6.30.)으로 사업평가 절차 등 법제화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사전협의 및 사업평가 법제화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14.12.30.) 사항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15.11.23.) 및 일부개정('16.10.28.)으로 사전협의 및 사업평가 제도에 대한 전문가 자문으로 운영 내실화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평가 수행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사전협의 및 사업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편성(2019, 250백만원)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9년~계속
- 사업규모 : 관련 중앙행정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및 사업평가
  *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포함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관련 중앙행정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1월	▶ 성과목표·지표 확정 및 통보 ▶ 평가 시행계획·평가지침 확정 및 통보	행안부
↓		
2월	▶ 부처별 성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부처 자체평가 실시 ▶ 중기사업계획 투자 우선순위 검토	행안부 각 부처
↓		
3월	▶ 부처 자체평가 결과 제출 ▶ 중기사업계획 투자 우선순위 검토	행안부 각 부처
↓		
4월	▶ 행안부 유형별 평가 실시 ▶ 평가 결과 종합 및 확정, 결과 통보 ▶ 투자 우선순위 민간전문가 자문·검토(4~5월)	행안부 (평가전문기관, 평가자문위원회)
↓		
5월	▶ 평가 결과 사전협의 부서 송부 ▶ 평가 결과 기재부 송부 ▶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 수립(5~6월)	행안부
↓		
6~8월	▶ 평가 개선방안 마련 ▶ 평가 결과와 예산편성 연계 ▶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 심의(6월)	행안부 (평가전문기관)
↓		
9월	▶ 차년도 성과목표·지표 수립 및 제출	각 부처
↓		
10~11월	▶ 차년도 성과목표·지표 검토(서면, 대면)	행안부 (평가자문위원회)
↓		
12월	▶ 차년도 성과목표·지표 확정(안) 마련 ▶ 차년도 평가 계획 및 지침 마련	행안부 (평가자문위원회)

사 업 명
3. 4.16재단지원 (263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32	302
명칭	안전관리	생활안전개선 추진	4.16재단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4.16재단 지원	563	530	530	530	530	530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 및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 의식개선을 위한 실천과 참여를 장려
- 청소년, 청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에 대한 공감대 형성, 안전에 대한 책임의 사회적 의미를 시민들과 공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4.16재단에의 출연 등)

> 제40조(4·16재단에의 출연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 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원·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하며, 이하 "4·16재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5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1.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 2.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 3.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추진경위

- '15. 3. 29.「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공포(법률 제13115호)
- '19. 2. 27.「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의한 4.16재단으로 선정
- '19. 8월 '19년 4.16재단 안전문화사업 예산 보조(563백만원)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9 ~ 2023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4.16재단
- 사업 수혜자 : 재난 피해자 및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4.16재단	100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3) 사업 집행절차

국고보조금 예산확정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등 첨부)	⇨	보조금 교부 심사 및 결정	⇨	보조금 교부	⇨	사업 중간 평가 및 점검	⇨	사업보고서 제 출	⇨	사업 평가 및 정산

사 업 명
4. 국민안전의식선진화 (26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32	301
명칭	안전정책	국민생활안전체계구축	국민안전의식선진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국민안전의식선진화	3,958	2,838	2,794	5,707	5,538	5,538	2,744	98.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범국민 안전교육 활성화, 안전문화 행사 및 안전정책 홍보 등 추진으로 국민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

2) 사업개요

① 법령상 근거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9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4조(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7조(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0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재난 신고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4조의2(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연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추진경위

- '09. 11월, 부산 실내사격장 사고 이후, 국민 안전의식 제고 추진 (대통령 지시사항)
- '10. 12월, 국민의 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근본적인 안전교육 대책 마련
- '13. 5월, 「국민안전 종합대책」 보고대회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출범
- '14. 2월, 사례와 현장중심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제고 (대통령 지시사항)
- '14. 12월,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추진 (대통령 업무보고)
- '16. 5월, 국민 요구 증가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정(시행 : '17.5.30)
- '17. 12월,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18~'22년) 수립·시행
- '18~'20년, '18~'20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시행(25개 중앙부처, 243개 지자체)
- '20. 11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1월)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의 명시적인 주관부처로서의 역할 수행 필요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0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경상보조(국비, 지방비 5:5)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3) 사업 집행절차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홍보>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위탁용역 실시	행정안전부	사업 계획 수립 및 위탁용역 실시
⇩		
② 교육 및 홍보사업 실시	위탁사업자	교육 의무화 홍보 등 교육사업 준비
		대상자 선정 및 교육 실시(월별)
		교육결과 집계 및 보고
⇩		
③ 사업결과 분석	각부처, 지자체	교육결과 공유 및 교육확대 및 발전방안 마련 - 부처별 역할분담, 차년도 계획 수립 및 추진

사 업 명
5. 지역안전개선컨설팅 (26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예방안전정책관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32	303
명칭	안전관리	생활안전개선 추진	지역안전개선컨설팅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지역안전개선컨설팅	628	759	759	922	759	759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역안전개선컨설팅)** 자치단체의 지역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통해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및 지역안전지수 향상
- **(지역안전도 진단)** 시군구별 자연재해 위험에 대한 취약요인을 진단·도출하여 지자체의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방재역량 제고
- **(도로교통예방여건조성)** 도로교통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도로 교통사고 예방문화 여건조성
- **(취약계층생활안전전문가자문)** 전문가 자문을 통해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생활 안전 위해요인 발굴・개선안 마련
- **(어린이놀이시설안전)** 어린이 놀이시설 담당자 교육, 안전관리시스템 기능 강화 등을 통한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역안전개선컨설팅)**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지역안전도 진단)**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정책 전반의 환류(還流) 체계를 구축하고, 자주적인 방재역량의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로 지역안전도 진단을 할 수 있다

- **(도로교통예방여건조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제66조의5(대국민안전교육)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호의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취약계층생활안전전문가자문)** 「안전혁신마스터플랜」 3-12-1 안전취약계층 생활안전 위해요소 진단·개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2조 제8항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어린이・노인・장애인・외국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에 대한 대책을 포함”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강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9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② 추진경위

- **(지역안전개선컨설팅)**

◦ 지역안전지수 진단 · 분석 및 개발, 시범운영(‘14년)

◦ 지역안전지수 공개 및 지역안전개선 컨설팅(‘15년~)

◦ 지역안전개선사업 가이드라인 배포(’16.12월)

◦ 지역안전지수 활용 가이드라인 배포(’17.1월)

◦ 지역안전지수 지표 개선(’18.10.15.)

◦ 지역안전개선 유공자 표창(장관표창 81점) 및 지역안전개선 워크숍 개최(’18.12.12.)

◦ 2019년 지역안전지수 공개 및 지역 안전수준 진단기법 고도화 용역(’19년~)

- **(지역안전도 진단)**

◦ 중앙진단반 76명 구성하여 232개 시·군·구 진단(’07.10~12월)

◦ 진단체계 개편 및 전산시스템구축 연구용역 (’10년)

◦ 지역안전도 진단 추진(’11.~‘18년)

◦ 지역안전도 진단 지침 개선(‘18.9.11.)

◦ 지역안전도 진단 정책 방향 및 지표 개선 추진(‘19년)

- **(도로교통예방여건조성)**

◦ 국정과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선정(’08.7월)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대책 국무회의 보고(’10.5월)

◦ 국정과제 55-2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선정(’17.7월)

* 세부 이행과제 : ’17년까지 OECD 선진국 수준의 도로교통 안전 확보

◦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관계부처 합동 「교통안전 종합대책」추진(’18. 1월)

◦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마련 및 추진(’20.1월)

- (취약계층생활안전 자문)

◦ ’15년 정부업무보고(취약계층 위해요소 선제적 점검)

◦ ’16년 정부업무보고(어린이 생활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 관계부처 합동「어린이 안전 종합대책」국무회의 보고(’16.4월)

◦ 관계부처 합동「노인 안전 종합대책」차관회의 보고(’16.8월)

◦ ’17년 정부업무보고(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범정부 대책 마련)

◦ 관계부처 합동「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차관회의 보고(’17.9월)

◦ 관계부처 합동「외국인 안전 종합대책」차관회의 보고(’17.12월)

◦ ‘18년 관계부처 합동 노인·장애인·외국인 안전대책 이행계획 수립 시행(’18.1~3월)

◦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 지원 방안 검토 및 전문가 의견수렴(‘18.4~11월)

◦ 노인·장애인·외국인 안전대책 관련, 부처별 ‘18년 상반기 이행실태 점검(’18.6~7월)

◦ 안전취약계층 생활환경 진단 및 추진방안 보고(’18.12월)

◦ 안전취약계층 생활안전 개선 관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 의원발의(’18.12월)

◦ ’19년 관계부처 합동 노인·장애인·외국인 안전대책 이행계획 수립 시행(’19.2월)

◦ 노인·장애인·외국인 안전대책 관련, 부처별 ‘19년 상반기 이행실태 점검(’19.7~8월)

◦ 안전취약계층 생활안전 개선 관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공포(’19.12월)

- (어린이놀이시설안전)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정・공포(’07.1월)

◦ 지식경제부에서 재난안전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로 업무이관(’08.1월)

◦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운영(’11.2월)

◦ 관계부처 협업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율 제고(’13.10월/안전정책조정회의)

◦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 안전대책 확정(’13.11월/안전정책조정회의)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전국 놀이시설 검사 완료(’15.1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배치 시 시스템을 통한 신고 의무화(’15.7월)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마련(’15.12월)

◦ 공공도서관 놀이시설 등 7개소 법 적용대상 시설 확대(’16.7월)

◦ 2017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9개소 선정(’17.12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18.1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배포('18.12월)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년~계속
- 사업규모 : 17개 지자체(시 · 군 · 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지역안전개선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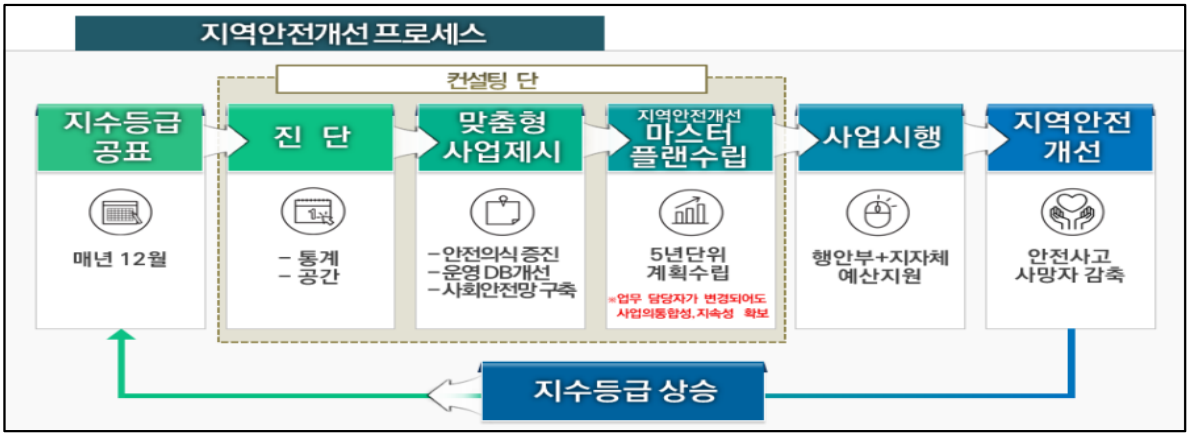

<지역안전개선 진단 프로세스(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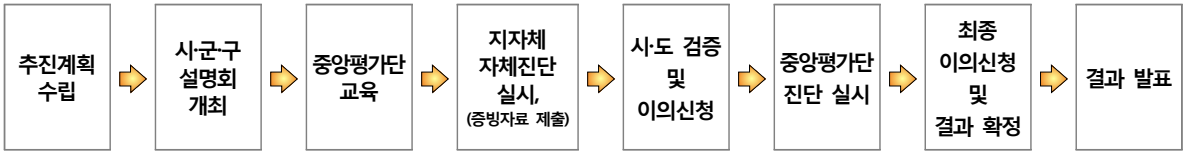

사 업 명
6. 안전사고대책 및 재난현장종사자 지원 (3652-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3652	305
명칭	안전관리	생활안전개선 추진	안전사고대책 및 재난현장종사자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안전사고대책 및 재난현장 종사자 지원	816	684	684	784	684	684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① **(범정부차원의 재난 안전활동 강화 및 지원)**
- 재난안전 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무자 및 민간자원봉사자 등을 격려하고 필요물품 지원을 통해 재난안전 현장활동 강화·지원
- 민·관을 아우르는 현장 및 민생업무 종사자에 대한 의견수렴 및 지원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행정업무 추진

② **(안전사고대책 추진)**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안전정책을 범정부차원에서 통합·조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15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제17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 정부조직법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② 추진경위
- 시작연도 : 2009년도
- 추진배경 : '08년 이후 어린이 유괴·실종, 식품안전 및 노인·장애인 복지 안전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생활안전대책 마련지시(VIP)

* ('08년) 안전사고예방 종합대책 작성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7대분야 100개 과제 선정),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9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재난 및 행정 현장 종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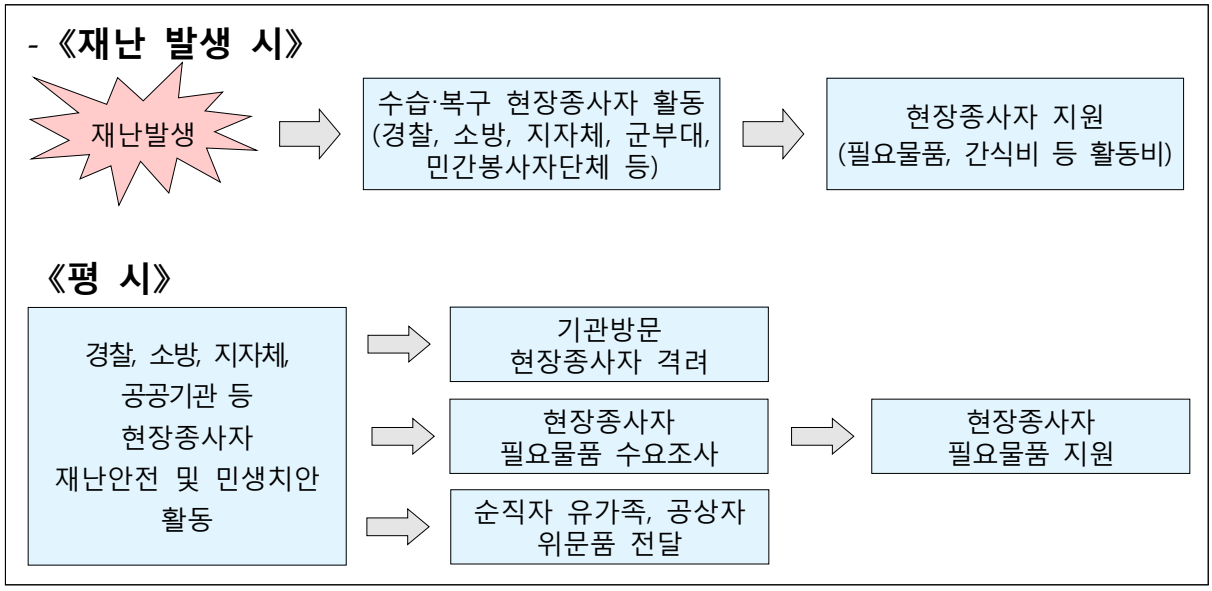
- 《재난 발생 시》
재난발생
수습·복구 현장종사자 활동
(경찰, 소방, 지자체, 군부대,
민간봉사자단체 등)
현장종사자 지원
(필요물품, 간식비 등 활동비)
《평 시》
경찰, 소방, 지자체,
공공기관 등
현장종사자
재난안전 및 민생치안
활동
기관방문
현장종사자 격려
현장종사자
필요물품 수요조사
순직자 유가족, 공상자
위문품 전달
현장종사자
필요물품 지원

사 업 명
7. 승강기안전관리개선 (2632-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32	306
명칭	안전관리	생활안전개선 추진	승강기안전관리개선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승강기안전관리 개선	5,027	4,049	4,049	5,845	4,418	4,418	369	9.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승강기 사고대응 구출훈련
  · 승강기에 이용자가 갇힘 사고 발생 시 2차 사고예방을 위한 승강기 사고대응 구출훈련을 통해 초기대응능력 제고 및 긴급대응체계 구축
- 승강기 사고 조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승강기 사고 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으로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 합동조사
  ·「승강기 안전관리법」제74조제1항에 따라 불합격·미수검·휴지 승강기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불법운행 승강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승강기 안전관리법」제74조제2항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불시점검을 통해 유지관리업자의 허위 또는 형식적인 점검 및 기술인력의 편법 운영 등을 방지
- 승강기 안전교육
  · 승강기 이용 취약계층인 전국 초등학교 1학년 대상 승강기 안전교육 추진
- 승강기 안전이용 홍보
  · 이용자 과실 사고 증가 추세로 올바른 승강기 안전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승강기 안전이용 방법 홍보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구축·운영
  ·「승강기 안전관리법」제73조에 따라 구축된 승강기 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 및 관련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함
- 승강기 안전산업 진흥
  · 국제엑스포 한국관 운영 및 국제박람회 참가를 통해 승강기 안전산업 진흥 추진
- 승강기 안전주간 행사
  · 승강기 관련 공모전 및 기념식·포상 등 승강기안전의 날 행사를 통해 승강기 안전이용 문화 정착
- 승강기 안전 국제회의 참석
  · 국제표준화회의(ISO) 참석을 통해 국가별 안전기준 등 안전관리제도 동향 파악
- 기타운영비
  ·「승강기 안전관리법」제도 개선, 실태조사 등 운영비

2) 사업개요

□ 추진경위

- 舊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 행정안전부 이관('09.3.)
  *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변경(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등의 업무는 舊지식경제부 소관으로 존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립('16.7.1.)
  * 舊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舊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통합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등의 업무' 행정안전부 이관('19.3.28.)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부품 등 안전인증제도 이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18.3.27. 공포, '19.3.28 시행, 법률명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변경)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9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승강기안전공단	50, 100	승강기안전관리법 제60조(보조금 등), 승강기안전관리법 제7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지자체 보조	50	

3)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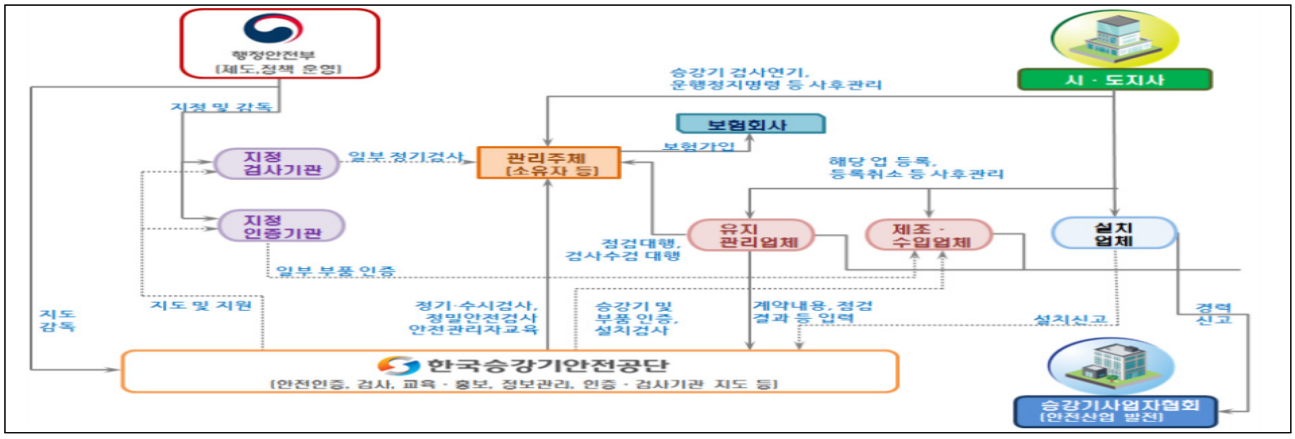

사 업 명
8.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2635-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35	300
명칭	안전관리	재난예방지원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461,554	436,503	438,027	615,843	511,883	520,523	82,496	18.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각종 재해취약 요인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재해위험지구>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국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등)
  - ·국가는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기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제70조(국고보조)
  - ·태풍·홍수·호우·해일 등 자연재해 발생우려가 있는 재해취약 지역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 ·국가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의 자연재해예방대책, 자연재해복구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에 따라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음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제70조(국고보조)
  - ·기획재정부, 2018년 제도개선협의회 과제로 채택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제70조(국고보조)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재해위험저수지·댐의 지정 및 관리)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붕괴위험지역의 계측관리 등)

<재해예방사업 효율적 관리>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제70조,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지침」(고시)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 「재해위험저수지 관리지침」
- 「소하천정비법」 제6조 내지 제8조
- 「'15년 소하천정비 사업계획 확정 및 추진지침」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

② 추진경위

<재해위험지구>

- 사업시작년도 : '98년
- 추진배경
  ·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적시에 정비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98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 사업시작년도 : '12년
- 추진배경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08.7.28)에 따라 '12년 부터 인명피해 우려 급경사지 위험 해소를 위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신규 반영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

-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타당성 연구(정책연구, '14. 11월)
  * 하천, 배수로 등 단위시설물에 대한 단편적인 계획이 아닌 지역단위 생활권 중심의 종합정비사업 추진
- 기획재정부, 2018년 제도개선협의회 과제로 채택
  ▸ '19년 : 행안부 주관, 국토부, 환경부 등 소관 시설이 있는 위험지역을 통합설계(5개소, 27억)
  ▸ '20년~'22년 : 단계별 보상 및 공사 추진 및 단계적 확대 추진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사업시작년도 : '20년
- 추진배경
  · 한국판 뉴딜 정책(국민안전 SOC 디지털화)에 따른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역 스마트 계측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재해예방사업 효율적 관리>

-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사업계획 및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 담당공무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교육 등을 위해 운영비 필요

※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10개 T/F(재해예방사업 발전방안, 재해예방사업 및 제도 발전방안 기초연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유시설 지원방안, 급경사지 보수·보강 설계 가이드라인, 사전설계검토 유의사항 마련 등)를 운영하여 재해예방사업 발전 및 각종 성과물을 지자체에 배포 업무에 적극 활용 중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8 ~ 계속
- 사업규모 : 재해위험지역 5,188개소('19년까지 2,660개소 해소)

· 재해위험개선지구 2,268개소('19년까지 1,551개소 해소)

· 재해위험저수지 594개소('19년까지 351개소 해소)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706개소('19년까지 758개소 해소)

·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 110개소('19년부터 추진)

·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510개소('20년부터 추진)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50%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지역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3) 사업 집행절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일제조사 및 전문가 참여	⇒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	정비계획(5년마다) 및 사업계획(매년) 수립	⇒	국고보조금 지자체 보조	⇒	정비사업 시행
	법 제12조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12조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13조, 제14조 (시장·군수·구청장)		(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 안전점검 (전문가참여)	⇒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	중기계획(5년마다) 및 사업계획(매년) 수립	⇒	국고보조금 지자체 보조	⇒	정비사업 시행
	법 제5조 (관리기관)		법 제6조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12조 (관리기관)		(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

사 업 명
9. 우수저류시설설치(보조) (2635-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8	안전정책실	-	020	025
명칭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35	301
명칭	안전관리	재난예방지원	우수저류시설설치(보조)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우수저류시설설치(보조)	55,318	69,543	57,543	69,543	69,543	69,543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우수저류시설 설치(보조))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통한 첨두홍수량을 일시 저류하여 기존 도심지 내 저지대 상습 침수피해지역을 홍수로부터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우수저류시설 설계검토회의 운영) 기본·실시 설계 전문가 사전검토 및 현장확인 등 각종 점검 시 전문가 활용으로 효율적 운영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2(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70조(국고보조 등)

>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2]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9조의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
>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6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9. 1. 6 『녹색 뉴딜 사업』추진방안, 국무회의 시 대통령 보고 및 확정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활성화 사업」핵심사업으로 확정
- '09. 2. 4 『녹색 뉴딜 사업』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사업명 변경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명 변경
- '09. 4. 29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추경예산 확정(국비 14,800백만원)
- '17.7월 국정과제 선정,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국정과제 56번)를 위하여 재해예방사업 및 재난안전 특교세 지원을 통해 투자 역량 강화
- '19.3월 생활SOC사업으로 선정, 사업 확대 추진
- '09~'20년까지 99개소, 13,137백만원(국비 6,954백만원) 투자 완료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9년 ~ 계속

- 사업규모 : 우수저류시설 192개소, 20,233억원(국비 10,502, 지방비 9,731)
- 사업시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보조,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장, 행정안전부
- 사업수혜자 : 저지대 침수피해지역 등 모든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방자치단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114호)

3) 사업 집행절차

사업대상지 제출 (시·군·구) ⇒ 사업대상지 검토 및 제출 (시도) ⇒ 사업대상지 선정 민간전문가 등 심의 (행정안전부)

⇒ 사업대상지 확정 (행정안전부) ⇒ 국고 보조금 지자체 보조 (행정안전부) ⇒ 설치사업 시행 (시·군·구)

사 업 명
10. 재난행정정보화(정보화) (3032-5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2	501
명칭	재난안전정보화	재난행정정보화(정보화)	재난행정정보화(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재난행정정보화	307	2,287	2,287	3,820	2,855	2,855	568	24.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안전기준 등록·관리 시스템 운영) 안전기준 등록·관리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 (유·도선 정보시스템 운영) 유·도선 정보의 효율적 관리·제공을 위한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 (재난안전산업 정보 공유 통합포털 구축)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술·제품현황 등 정보를 수요자와 공급자간 공유할 수 있는 통합포털 구축
- (안전신문고 분석기능 강화) 국정과제(55-1)로 추진 중인 안전신문고 시스템에 지능형 서비스를 강화하여 신고 활성화를 통한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 폴더블 스마트폰 지원으로 앱 선탑재 확대 및 인공지능 연동 서비스 보강 등
-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ISP)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안전정책 수립을 위해 재난안전 관련 정보시스템에 산재된 데이터를 하나에 플랫폼에 모아 기관 간 공유 및 대국민 공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안전기준 등록·관리 시스템 운영>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7(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0(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등)

② 추진경위

- 시스템 구축 관련 BPR/ISP 추진
  · (기간) ’15.9.21.~’16.3.31. (예산) 행자부 전자정부지원사업 11,608백만원 내 사용
- 시스템 신규 구축
  · ’18년 예산 6.62억원(SW개발 3.31억원, 상용SW구매 3.31억원)
    * HW 구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업에서 추진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19.1.~)
  · ’19년 무상 유지관리, ’20년 예산 33백만원

<유·도선 정보시스템 운영>

① 법령상 근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5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② 추진경위

- ‘14년도 감사원 지적사항「유선사업 면허업무 처리 불철저」,「선박 선령제한 등 규제관리 부적정」등

⇒ 문서로 관리되는 면허업무처리와 선박관리를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도선의 출항 등의 기록, 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 제출 등 도모 필요

- 시스템 구축 관련 ISP 추진
  · (기간) ’18.5.23.~’18.9.20. (예산) 행안부 재난행정정보화 ISP용역 200백만원
- 시스템 신규 구축
  · (기간) ’20.7.13.~’20.12.31. (예산) 14.18억원(민간위탁비-한국지역정보개발원)
    * HW 구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업에서 추진

<재난안전산업 정보 공유 통합포털 구축>

① 법령상 근거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정부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추진과제

② 추진경위

- 재난안전산업 정보공유 통합포털 구축을 위한 ISP 수립(‘19.10월)

<안전신문고 분석기능 강화>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재난 신고 등),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전자정부법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 안전신고관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96호)
-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86호)
- 국정과제 55-1(예방 및 재난안전 관리의 국가 책임체계 구축-안전약자 맞춤형 안전복지 실현)

② 추진경위

- ICT 기반 안전신고시스템 구축, 신고내용의 빅데이터 구축·공유·분석(DB화)를 통한 보수·보강 등 실제조치, 제도개선 및 안전산업 육성(‘14.8월, 대통령)
- 안전신문고 기능 및 정책(신고·분석)을 (구)국민안전처의 대표 명품 과제로 선정·추진(‘16.4월, 장관 지시)
- 행정안전부 4차 산업혁명 재난안전분야 중점 지능형 정부과제 및 빅데이터로 분석과제로 선정·추진(‘17.7월)
-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및 안전보안관 운영(행안부 ‘18년 업무보고 과제2)
- 화재안전 TF 국민참여분과 이행과제-안전신문고 기능 보강 추진(‘18.2월, BH지시)
- 안전신문고에 4대 불법 주정차 신고기능 개통(장관 지시, ‘19.4.17.)
- 생활불편신고를 안전신문고로 통합 추진(’20.1월, 장관결재)
- 안전신문고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기능 개통
  · (‘20.1월 국무회의 대통령 보고 / ’20.6.29. 시행)
-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생활방역 신고기능 개통(국무총리 지시, ‘20.7.6. 시행)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ISP>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9(안전정보의 구축·활용)
-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7(안전정보의 수집·공개·관리)

② 추진경위

- 코로나19·집중호우 등 전개 양상을 예측하기 어렵고 사회전반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 빈번함에 따라 재난안전데이터 종합적 수집·분석 필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6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3) 사업 집행절차

①사업계획 수립 → ②보안성 검토 → ③일상감사 → ④조달계약 의뢰 → ⑤조달청 사전규격공개 및 조달공고 → ⑥기술협상 및 계약 → ⑦사업수행 → ⑧준공검사

사 업 명
11. 긴급신고전화통합체계구축 · 운영(정보화) (3032-5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2	503
명칭	재난안전정보화	재난행정정보화(정보화)	긴급신고전화통합체계구축·운영(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긴급신고전화 통합체계구축·운영 (정보화)	2,145	4,431	4,431	8,801	3,673	△758	△17.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민안전과 관련된 신고전화를 긴급신고(112, 119), 민원상담(110) 3개 번호로 통합·단순화하고, 긴급기관(경찰·소방·해경·권익위)간 협업을 통해 신속한 국가대응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
- 긴급기관간 신고시스템 연계·구축을 통해 신고전화 통합에 대한 혼란 최소화
- 신고내용의 긴급기관 간 실시간 공유를 통해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긴급신고 대응역량 강화
- 긴급신고시스템 통합에 따른 긴급신고공동관리센터 안정적 유지관리(전산장비 유지보수, 시설장비 관리, 기타 운영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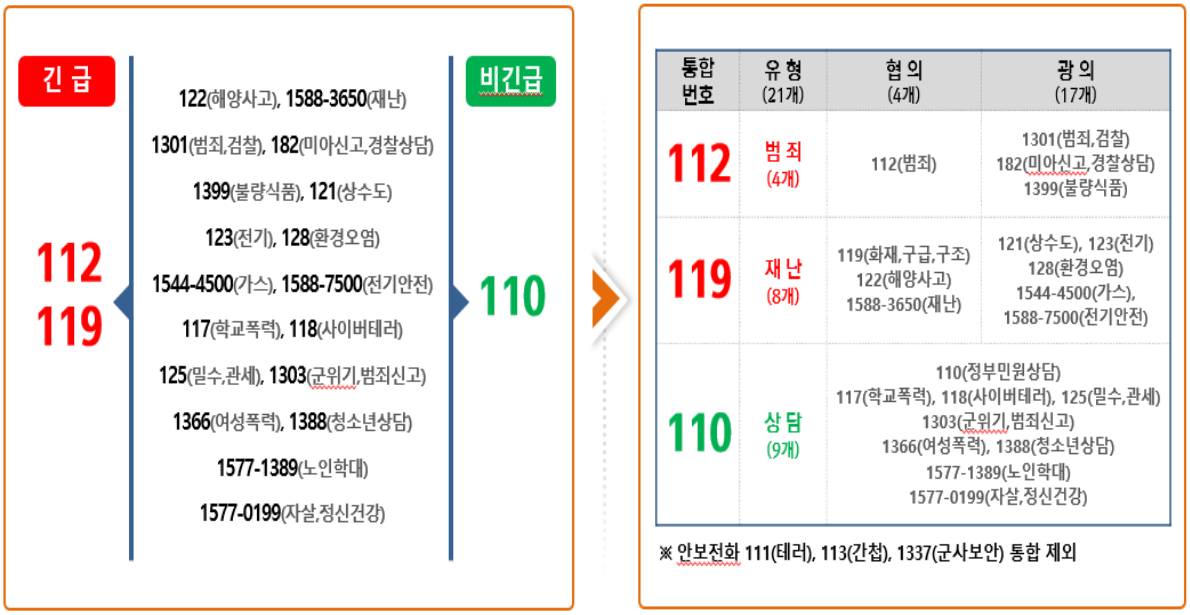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4조의2, 동법 시행령 제64조의2,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연계)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14. 8 : 긴급신고번호 합리적 통합방안 보고
- 2014. 8~12 : 긴급신고 통합방안 연구용역
- 2014. 12 : 긴급신고 통합방안 대국민 공청회 실시
- 2015. 1 : 긴급신고 통합방안 확정(안전정책회의) 및 언론보도

- 2015. 4~9 : 긴급 신고전화 통합 BPR/ISP
  * 국정과제 : 86. 국민안전 중심의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 2015. 7 : 긴급신고 통합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
- 2015. 8 : 긴급신고 통합사업 예산 확보(예비비)
- 2016. 1~10 : 긴급신고 통합체계 구축 사업
- 2016. 5 : 긴급신고 통합체계 구축 시범서비스 개시(광주)
- 2016. 10. 28. : 긴급신고 통합체계 구축 서비스 개시
- 2017. 9.~2018. 3. : 긴급신고 통합체계 구축 2단계 구축 완료
- 2018. 9.~2018. 12. : 긴급신고 통합체계 구축 3단계 구축 완료
- 2020. 5.~2020. 12. :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고도화 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7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긴급신고 전화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예산편성 흐름

각국별예산요청 → 예산편성 실무위원회 → 정보화예산편성 →
자체 심의 → 기획재정부 심의 → 국 회 심 사

- 사업추진 흐름

기본계획 수립 → 계약요청 →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결과통보(조달) →
조달청 입찰 → 조달청 계약요청 → 최종 업체계약 →
사 업 추 진 → 검 사 및 완 료

재난관리실

2021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 413
2. 재난관리평가지원 ····· 417
3.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 421
4. 재난관리국제협력 ····· 424
5. 지진대비인프라구축 ····· 430
6.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 432
7.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 442
8. 재난대책비(보조) ····· 446
9. 재난구호지원 ····· 449
10. 풍수해보험 ····· 452
11. 재난심리회복지원 ····· 455
12.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지원 ····· 459
13. 통합지휘무선통신망운영(정보화) ····· 461
14.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 465
15.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정보화) ····· 468
16.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구축 ····· 472
17. 공공시설 옥상녹화 ····· 475
18.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 478
19.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 481

사 업 명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27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1	300
명칭	재난관리	재난관리인프라구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93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412	523	523	523	492	492	△31	△5.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중대본 운영) 중대본 운영·관리에 따른 경비, 재난관리분야 협력체계 구축 등
  - · 재난의 사전대비, 대응, 복구를 위한 중대본 운영·관리에 따른 운영경비(비상근무자 특근매식비 지급, 중대본 상황실 운영경비), 중대본 근무자 역량강화 워크숍 비용 등
  - · 재난관리 담당자(민·관) 소통·화합의 장을 위한 방재의 날(5.25.) 행사 비용 등
- (지역자율방재단)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을 통해 자율적 방재역량 강화
  - ·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이 가져야할 단원들의 협동, 신속한 대처 등 응급상황에 대한 협업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재난대응 경연대회 개최
  -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정보 교류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시·도, 시·군·구간 재난 협력체계를 구축
- (재해예방 홍보) 여름(호우, 폭염)·겨울(한파, 대설)철 자연재난에 피해 예방 및 국민적 경각심 제고를 위한 언론매체 활용 홍보, 재해예방 재난 사진 및 포스터 공모전
- (재난관리 유공자 표창) 재해대책 유공자에 대한 표창 제작 및 부상품 구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근거)** 재난안전법 제14조, 제25조의2 및 제66조의7,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제66조의2

- (중대본 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 ② 중앙대책본부에 본부장과 차장을 둔다.
> ③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이하생략)

- (방재의 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7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 (지역자율방재단)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제66조의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자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이하생략)

제66조의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홍보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 제6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 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이하생략)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제66조의3(국민안전의 날 등) ① 국가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한다.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3조의4(안전점검의 날 등) ① 법 제66조의3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안전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방재의 날에는 자연재난에 대한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교육·홍보 등의 관련 행사를 실시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날 및 방재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정한다.

○ **(추진경위)** 지역자율 방재단에 경우 '03년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을 근거로 '07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활동 중

【제26회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사항(2003.6.11)】

- "지역에 오래 살아 지형과 수리에 밝고, 적극적인 활동의지를 가진 사람을 재난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9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2항

3) 사업 집행절차

○ 자연재해 국민행동 요령 등 대국민 홍보

여름철 홍보계획 수립 → 여름철 대책기간 중 (5.15~10.15) 홍보 추진 → 겨울철 홍보계획 수립 → 겨울철 대책기간 중 (11.15~3.15) 홍보 추진

○ 방재관련 사진 및 표어·포스터 공모전

계획 수립 → 공모전 실시 → 공모전 심사 → 공모전 우수작 포상 → 우수작 전시회

○ 지역자율방재단 전문교육비 지원

교육계획 수립 → 지자체 통보 → 지자체별 교육실시 → 교육비 지급 → 환류

○ 지역자율방재단 직무능력 강화교육 추진

교육계획 수립 → 지자체 통보 → 참석인원 및 장소 확정 → 담당공무원 자율방재단 합동교육 → 환류

○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한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지원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검토 → 교부결정 검토·승인 → 보조금 교부 (3회 분할) → 종합평가 및 사업비 정산

사 업 명
2. 재난관리평가지원 (27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1	301
명칭	재난관리	재난관리인프라구축	재난관리평가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재난관리평가지원	646	673	673	653	639	639	△34	△5.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에 따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총괄 조정기능의 핵심수단으로서 「동법」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역량 진단을 통해 재난관리역량 강화를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
2.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
3.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4.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현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를 하고, 시·군·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평가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평가를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 단서에 따른 평가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종합 보고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구분	재난관리평가 연혁	대상기관
2005년	· 재난관리 실태점검(지방자치단체) 도입	지자체(일부*)
2006년	· 중앙행정기관 6개 기관 평가 실시 * 산자부, 건교부,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해수부	지자체(일부) 중앙(6)
2008년	· 중앙행정기관 10개, 공공기관 10개 기관 평가 *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지자체(일부) 중앙(10), 공공(10)

구분	재난관리평가 연혁	대상기관
2010년	· 중앙행정기관 14개, 공공기관 15개 기관 평가 * 한국시설안전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지자체(일부), 중앙(14), 공공(15)
2012년	· 중앙행정기관 13개, 공공기관 22개 기관 평가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코레일공할철도(주) 등	지자체(일부), 중앙(13), 공공(22)
2015년	· 사회· 안전분야 등 포함 평가지표 개발	지자체(전체), 중앙(13), 공공(23)
2016년	· 중앙행정기관 13개, 공공기관 23개 기관 평가 · 재난관리평가체계개선 T/F 추진 * 평가대상 확대, 지표 보완, 타 부처 평가 연계 등	지자체(전체), 중앙(13), 공공(23)
2017년	· 중앙행정기관 19개, 공공기관 55개 기관 평가 * 철도, 도로·항공·항만, 에너지, 안전관리 4개 그룹 평가 · 재난관리평가 웹기반 시스템 도입('18년 평가적용)	지자체(전체), 중앙(19), 공공(55)
2018년	· 중앙행정기관 28개, 공공기관 55개 기관 평가 · 재난관리평가시스템(DMES)을 통한 평가 전과정 효율적 운영	지자체(전체), 중앙(28), 공공(55)
2019년	· 중앙행정기관 평가단위 구분 * A그룹 23개(평가 등급 공개), B그룹 5개(평가 등급 미배분) · 공공기관 평가 대상 조정(55개 → 54개) *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폐지	지자체(전체), 중앙(28), 공공(54)
2020년	· 국민체감도를 시·도 평가에 도입	지자체(전체), 중앙(28), 공공(54)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사업규모 : 325개 기관(중앙 28, 공공 54, 지자체 243)에 대한 재난관리평가 실시
  * (기대효과) 매년 평가를 통해 기관별 평가등급을 대국민 공개하며, 우수기관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사기 진작하고 미흡기관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재난관리 책임성 및 역량 제고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평가절차	주요 내용
재난관리평가 대 상	· **중앙(28), 공공기관(54)** · **全지자체(243)** *** 공공기관(일부) 및 전 시군구에 대한 상위평가 실시**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지침 작성	· 재난안전 주요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지표** 추가 등 **평가 계획 수립** * `20년 지표 구성 : 재난관리 단계별 16개 주요 역량에 대한 46개 지표
재난관리평가 실시	·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단(60명) 및 자체평가위원(155명)** 교육 실시 · 시도 및 중앙부처 자체평가결과 토대로 행정안전부 확인평가 실시 · 재난관리평가시스템(DMES)을 통한 평가 전과정 효율적 운영
재난관리평가 결과 공개	· **평가결과 全기관 등급 언론공개** -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상정, 보고
평가결과 환류	· 우수사례 전파 및 미흡기관의 재난관리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실시로 환류기능 강화 - (우수기관) **정부·장관표창, 포상금** 등 인센티브 부여 - (미흡기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재난관리 책임성 및 역량 제고 - **주요 국정평가와 연계** ***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결과 반영**

사 업 명
3.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27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1	304
명칭	재난관리	재난관리인프라구축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7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3,100	3,100	1,600	3,100	3,100	3,100	1,500	93.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전문인력 양성) 재난관리 분야 이론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종합적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內 석·박사 학위과정 개설 및 운영 지원

- 분야 : 재난관리분야(기업재난 포함), 지진방재분야
- 방법 : 사업참여 공고를 통해 모집, 심사를 거쳐 대학원 선정

▪ (기업재난관리사 시험 위탁) 기업재해경감활동분야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재난·기업재해경감활동분야의 전문성 및 지식수준을 측정, 전문인력으로써 활동하는데 충분한 기술수준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자연재해대책법」제65조의2(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재정책의 고도화·전문화에 따른 방재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1.7월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 이후 대통령 지시('11.8.2.)

- 정부 내 방재안전직렬 신설 및 재난관리전문가 확충
-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에도 충분한 투자 필요 강조

▪ 재난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고시)」제정('14.5.16)
-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제정('14.10.30)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14년)

▪ 舊국민안전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이행

- 기업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등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중소기업의 재해경감활동 계획수립·이행 참여증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 기존 방재안전 교육과정 운영 대학 등과 연계, 방재교육 체계화로 예비 방재인력 육성(전략 : 국민안전 역량강화 및 지원, 중과제: 생애주기별 국민안전교육 강화, 세부과제 : 방재전문인력 양성 및 확충)

▪ 재난의 다양화 및 대형화 등으로 국민요구 수준 증가
- 사회구조의 복잡·다변화에 따른 국민 안전요구 수준 상승
- 복합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재난관리 수요확대
- 재난전문가 부족에 따른 '세월호'와 같은 사고 지속 반복
▪ 잠재적 위험으로 여겨졌던 지진이 실제적 위협으로 대두('16.9.12)
-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 발생, 부상자·재산피해 발생(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 '78년 관측 이후 최대규모, 체계적 지진 대처를 위한 기관별 전문인력 필요성 절감
▪ 국정과제(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에 포함('17.8월)
- 재난관리 인재양성 생태계 조성 추진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4년~계속
- 사업규모 : 15개 교육기관(대학), 1개 민간단체
- 사업시행방법
  · 전문인력 양성사업(대학원 학위 과정 운영 지원) : 민간보조(정부 70%, 민간 30%)
  · 인증시험 위탁지원 : 민간위탁(정부 100%)
- 사업시행주체 : 민간
- 사업 수혜자 : 재난관리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으로 대학원에 진학한 사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교육기관(대학)	70	
기업재해경감협회	100	

3) 사업 집행절차

《 신규 사업 》

① 사업계획 공고 (매년 6월) ⇨ ② 신청 · 접수/실사 (매년 7월) ⇨ ③ 평가/선정 (매년 8월) ⇨ ④ 협약체결 (매년 8월) ⇩ ⑤ 학생 모집 공고 및 선발 (매년 6~8월) ⇨ ⑥ 교육과정 등 준비 (매년 4~8월) ⇨ ⑦ 개강(교육운영) (매년 9월~익년 8월)

《 계속 사업 》

① 연차보고서 제출 (매년 7월) ⇨ ② 연차평가 (매년 8월) ⇨ ③ 협약연장 (매년 9월) ⇨ ④ 개강(교육운영) (매년 9월~익년 8월)

사 업 명
4. 재난관리국제협력 (2731-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1	305
명칭	재난관리	재난관리인프라구축	재난관리국제협력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0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재난관리국제협력	1,874	1,880	1,880	21	1,991	1,991	111	5.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기구 부담금 지급
- UNDRR 동북아사무소, 국제교육훈련연수원 부담금(조약) 및 지역사무소 파견 비용(UN규정)
- ADRC(아시아방재센터) 부담금(회원국)

▪ MOU 후속조치 추진 등 재난안전분야 양자협력체계 구축
- 한·일 방재회의, 한·중 정례회의, 미국 재난관리기관(국토안보부, FEMA 등) 협력회의, 러 비상사태부와 정례회의

▪ 재난안전 분야 다자협력체계 구축
- 한중일 재난관리 기관장회의, 글로벌 플랫폼 각료회의 등 국제회의 개최 및 참석
- 아시아·태평양 지역 재난안전 네트워크 구축
- UN 센다이 프레임워크 이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UNDRR 동북아사무소 및 국제교육훈련연수원 부담금
- 대한민국 정부와 UN간의 양자협정(조약 제2029호) : ’10.11.
  ※ 제1조 : UNDRR 동북아사무소 및 국제교육훈련연수원 대한민국 설치
- 대한민국 정부와 UN간의 양자협정(조약 제2257호) 개정: ‘15.11.
- 대한민국 정부와 UN ISDR 간 직원파견에 관한 MOA 체결 : ’20.1.
  ※ UN 규정의 행정비용(연봉의 14%, 2만 USD)을 UN측에 납부, 파견 기간 1년 연장
- 대한민국 정부와 UN 간 협정 연장을 위한 공동 평가 추진 : ‘19.10~’20.2.
  ※ 협정 제20조 3항 : 협정 만료일 1년 전부터 6개월 이전에 협정 이행 공동 검토 수행
- 대한민국 정부와 UN간의 양자협정(조약 제2464호) 개정: ‘20.11.

▪ ADRC(아시아방재센터) 부담금
- ADRC 설립(’98. 7.30.) 시 회원국으로 참여
  ※ 정관 제3조(경비) : 부담금 = 기본경비 $5,000 + GDP 기준 추가경비* $11,900
  * 5년마다 재산정, ’18년~’22년 적용

▪ 한·일 방재회의(1999~)
- ’98.10. : 한·일 정상회담에서 재난위험경감방안 협력 합의
- ‘99.7. : 한·일 자연재해관련 방재회의 신설 합의

▪ 한중일 재난관리 기관장회의
- ’08.12.12. : 한·중·일 정상회담 시 「재난관리 협력 공동발표문」채택
- 한·중·일 협력증진을 위해 재난관리에 관한 3국 정부 기관장 및 전문가 회의를 순번으로 개최하기로 합의

▪ 한·중 재난관리기관 정례회의
- ‘15.11. : 중국 민정부와 재난안전 관련 업무협의 및 MOU 체결
- MOU 체결에 따른 세부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정례회의 개최

▪ 러시아 비상사태부 정례회의
- ‘16.5. : 러시아 비상사태부와 재난안전 관련 업무협의 및 MOU 체결
- MOU 체결에 따른 세부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정례회의 개최

▪ 미국 재난관리기관 협력회의 및 인적교류
- ‘00.05. :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재난관리청과 MOU 체결
- MOU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인력교류 추진

▪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 제2항

제62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 교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제7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②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2.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9조

제4조 ⑨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재난안전 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조정 및 종합계획 수립·시행 2. **재난안전 관련 국제기구·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 분야 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총괄 4. 재난안전 분야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 및 주재관 지원·관리 제19조 ③ 재난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자연재해분야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 센다이 프레임워크 이행
- UN 회원국은 제3차 세계재난경감회의(‘15.3월)시 세계재난경감전략인 ‘센다이 프레임워크’ 채택, 7개 목표 38개 지표 개발·관리하기로 의결

- UNDRR 주관 국제회의 참석을 통해 센다이 프레임워크 이행 관련 분석 보고서 발표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UNDRR 동북아사무소 및 국제교육훈련연수원 부담금 >

◇ 유치배경 : UN 기구 유치를 통한 재해경감 분야 주도권 확보 대한민국을 동북아 재해경감 활동의 거점 및 방재교육의 메카로 육성 한국의 선진 IT 기술을 활용한 방재시스템을 전 세계에 수출 ※ 대한민국이 전 세계 재해경감분야 선도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일본, 중국 등과 치열한 경쟁 끝에 유치 성공

- ‘08.3. : 소방방재청, 인천시 및 UNDRR 간 기구 설립을 위한 MOU 체결
- ‘09.8. : 국제교육훈련연수원 및 UNDRR 동북아사무소 개소
- ’10.11. : 대한민국 정부와 UNDRR 간의 협정 체결
- ‘14.3. : 한·중·일 방재전문가 회의 개최
- ‘15.3. : 제3차 재난경감 UN 세계회의 참석(장관)
- ’15.11. : 대한민국 정부와 UN 간의 협정 개정
- ‘20.1. : 행정안전부·UN ISDR 간 직원파견에 관한 MOA 체결
- ‘19.9~’20.2 : 협정 연장(만료 ‘20.11.18.) 검토를 위한 UN-한국정부 공동 평가 실시
- ’20.2. ~ : 유치기간 연장을 위한 협정 및 약정의 연장 및 개정 추진

< 아시아방재센터(ADRC) 부담금 >

- ‘98.7. : ’95년 일본 고베 대지진 등을 계기로 아시아 국가간 재난협력을 위해 아시아방재센터(ADRC) 설립
- ‘98년 이후 매년 아시아재난경감회의(ACDR) 회의 참여

< 한·일 방재회의(1999~) >

- ’98.10. : 한·일 정상회담에서 재난위험경감방안 협력 합의
- ‘99.7. : 한·일 자연재해관련 방재회의 신설 합의
- ‘16.12. : 일본 내각부와 재난관련 MOU 체결 및 한·일 방재회의 강화 협의
- 한·일 양국, 1년마다 교차 개최(‘20년도 한국, ‘21년도 일본 개최 순번), 총 15회 개최

<한중일 재난관리 기관장회의 >

◇ ’08.12.12. : 한·중·일 정상회담 시 「재난관리 협력 공동발표문」 채택 ◇ 한·중·일 협력증진을 위해 재난관리에 관한 3국 정부 기관장 및 전문가회의를 순번으로 개최키로 합의

- 제1차(’09년, 일본), 제2차(’11년, 중국), 제3차(’13년, 일본), 제4차(’15년, 일본), 제5차(’17년, 중국), 제6차(’19년, 한국), 제7차(’21년, 일본 예정)

< 한·중 재난관리기관 정례회의>

- ‘15.11. : 중국 민정부와 재난안전 관련 업무협의 및 MOU 체결
- MOU 체결에 따른 세부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정례회의 개최
- 제1회(‘16년 한국), 제2회(‘19년 중국), 제3회(‘20년 한국), 제4회(‘21년 중국)

< 러시아 비상사태부 정례회의 >

- ‘16.5. : 러시아 비상사태부와 재난안전 관련 업무협의 및 MOU 체결
- MOU 체결에 따른 세부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정례회의 개최
- 제1회 러시아 비상사태부와 정례회의 예정(‘20년 한국)
- 제2회 러시아 비상사태부와 정례회의 예정(‘21년 러시아)

< 미국 재난관리기관 국제교류 협력회의 >

- ‘00.05. : 미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재난관리청과 MOU 체결
- 미 국토안보부 실무자간 협력(정례회의 추진)
- 미 국토안보부 테러 대응 및 지원관련 업무 협력 관계 구축
- 주한미국대사관 미 국토안보부 주재관과의 실무회의(‘16.6.)
  - ‘17년 실무회의 추진 의사 전달 및 의견 수렴 등 협의
- 미 국토안보부 장관과의 재난관리 분야 양자면담(’18.03.)
- 연방관리청 주관 국제워크숍 참석(’18.06.)
- 재난관리평가 국외정책연수 미 연방재난관리청 방문(‘18.11.)

< 그간 국제기구와의 협력현황(’18년 이후) >

- ’18.01. : UNDRR DRI(재난에 강한 인프라 구축) 국제워크숍 참석
- ’18.02. : 2018년 APEC 제13차 긴급사태대응실무그룹회의(EPWG) 참석
- ’18.05. : 2018년 제7차 OECD 전략적 위기관리 워크숍 참석
- ’18.04. : 2018년 상반기 UN IAP 회의 참석
- ’18.07. : 2018년 제8차 아시아재난경감각료회의(AMCDRR) 참석
- ’18.08. : 2018년 APEC 제14차 긴급사태대응실무그룹회의(EPWG) 참석
- ’18.09. : 2018년 지진 국제세미나(한국)에 FEMA 발표
- ‘18.10. : 아시아방재센터 연례회의 참석
- ’18.11. : 한중일 재난관리 기관 실무회의 참석(한국,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 개최)
- ’18.12. : 2018년 하반기 UN IAP 회의 참석
- ‘19.2. : 행안부-UN ESCAP 재난안전분야 MOA 체결
- ’19.3. : UNDRR DRI(재난에 강한 인프라 구축) 국제워크숍 참석
- ’19.5. : 글로벌 플랫폼 각료회의 참석
- ’19.8. : UN ESCAP 재난위험완화 위원회 참석
- ’19.11. : 아시아방재센터 연례회의 참석
- ’19.11. : UNDRR 테크니컬 포럼 참석
- ‘19.11 : 2019년 하반기 UNDRR APP 회의(舊 UN IAP 회의) 참석
- ‘20.1 : 아시아재난예방센터(ADPC) 주관 아태지역 재난관리 자문위원회 참석

< 센다이 프레임워크 이행 대응 >

- UN 회원국은 제3차 세계재난경감회의('15.3월)시 세계재난경감전략인 '센다이 프레임워크' 채택, 7개 목표 38개 지표 개발·관리하기로 의결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8년 ~ 계속
- 사업규모 : 1,991백만원(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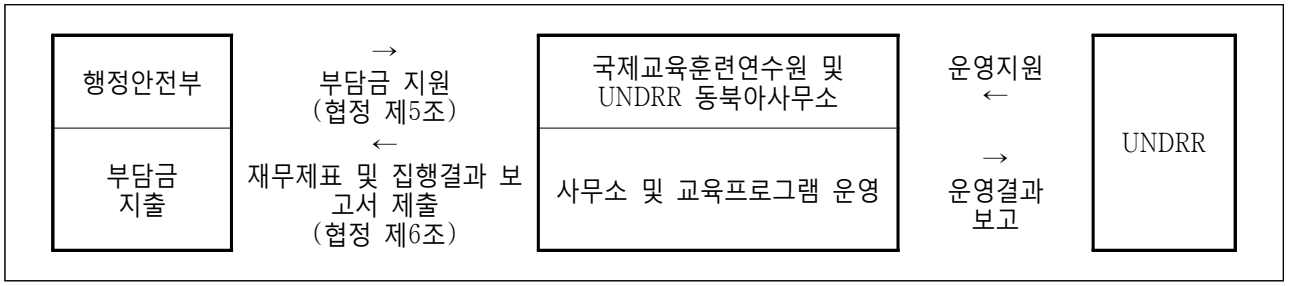

사 업 명
5. 지진대비인프라구축 (2731-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1	307
명칭	재난관리	재난관리인프라구축	지진대비인프라구축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60(내진성능평가비) 30(인증수수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지진대비인프라구축	8,790	3,844	3,802	14,287	3,111	3,111	△691	△18.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진재난 정책 수립, 교육·홍보 확산, 전문성 확보, 제도 마련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9조의3(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제11조(지진·화산방재 교육·훈련 및 홍보),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제22조(지진・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제26조(국고보조 등)

② 추진경위

- 최근 국내 지진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지난 9.12지진(규모 5.8) 및 포항지진(규모 5.4)을 계기로 국민들의 지진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 대피요령 및 지진방재 국가 정책에 대한 교육·홍보, 전문성 확보, 내진성능 확보 및 내진보강사업 제도화를 통한 시설물 지진 안전성 확보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7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자치단체 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직접수행, 지자체, 민간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60(내진성능평가비) 30(인증수수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3) 사업 집행절차

○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계획요청	➠	계획제출	➠	사업확정	➠	사업추진	➠	사업완료
행안부		지자체		행안부		지자체 (민간)		비용지원

사 업 명
6.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27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18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대응정책관 안전정책실 예방안전정책관	-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3	300
명칭	재난관리	재해경감활성화	재해경감대책협의회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259	261	261	277	259	259	△2	△0.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

- 재해원인조사·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협조,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와 심층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지자체·관련분야 전문단체가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운영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각종 개발로 인한 재해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확립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검토 승인 >

-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해예방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지자체 방재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의 검토 승인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

- 자연재해대책법

제10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재해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해당 개발계획등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
2. 해당 개발계획등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
3. 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계획등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 재해의 예방·복구 등 재해 경감 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의 예방,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등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검토 승인 >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 같다)·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는 각각 시·군 종합계획 및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가 각각 시·군 종합계획 및 시·도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긴급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 시·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의 범위 및 그 수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

- ’05. 1. 27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근거 마련)
- ’06. 3. 8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 ’06. 7~8월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등)
- ’07. 2. 27 ’06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결과 세미나 개최
- ’07. 7~11월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태풍 “나리” 및 집중호우 등)
- ’07. 12. 20 ’07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결과 세미나 개최
- ’08. 2~7월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해일 강풍 및 낙뢰피해 등)
- ’08. 12.1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세미나 개최
- ’09. 7~8월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7월 장마기간 집중호우 등)
- ’09. 12.1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토론회 개최
- ‘10. 4~10월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9.21 집중호우 피해 등)
- ‘10. 10, 12월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세미나, 워크숍 개최
- ‘11. 4~12월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급경사지, 우수유출 분야 등)
- ‘12. 5.30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세미나 개최
- ‘12. 3~10월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재해위험개선, 급경사지, 우수유출 분야 등)
- ’13. 4~11월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댐·저수지, 기후변화 대응, 댐·저수지 분야 등)
- ‘13.11.11~12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워크숍 개최
- ‘14.2~9월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댐·저수지, 급경사지분야, 내풍분야 등)
- ‘14.12.2~3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워크숍 개최
- ‘15.2~12월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급경사지분야, 재난상황관리, 폭풍해일분야 등)
- ‘15.12.3~4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워크숍 개최
- ‘16.2~12월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급경사지분야, 재난상황관리, 저수지·댐 등)

- ‘16.11.9~10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워크숍 개최
- ‘17.3~12월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가뭄, 7월 충북 호우피해, 저수지·댐 등)
- ‘17.12.7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워크숍 개최
- ‘18.1~12월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가뭄, 경기 북부 호우피해, 태풍 등)
- ‘18.7.24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 개정
- ‘18.12.4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워크숍 개최
- ‘19.1~12월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태풍 ’링링‘, ‘미탁‘ 중앙합동조사, 가뭄분야 등)
- ‘19.12.3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워크숍 개최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 ‘05. 1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공포
- ‘05. 8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도입시행
- ‘05.9~12월 지자체 실무공무원 교육 및 검토위원회 구성 및 위촉, 중점검토항목·방법 고시 등
- ‘06.1월~’10.12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 건 협의(500건)
- ‘10. 12월 중점검토항목·방법 개정 고시
- ‘11. 1월~12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 건 협의(59건)
- ‘11. 12월 제4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위원회 위촉
- ‘12. 2. 20.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예규 제80호)
- ‘12. 3.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협의대상 확대 91개→111개)
- ‘12. 10. 12.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개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12-47)
- ‘13년 실행력 확보를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개선(입법예고 8.17~9.26)
- ‘13. 5월29일 지자체 공무원 및 대행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실무교육 실시(267명)
- ‘13. 상반기(35개, 5.20~5.24) 하반기(45개, 10.28~11.1) 협의사업장 이행실태점검(80건)
- ‘13.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 건 협의(90건)
- ‘13.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개최(21회)
- ‘14.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 건 협의(102건)
- ‘14.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개최(22회)
- ‘15 자연재해대책법 개정(‘16.1.27)
- ‘15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개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15.11.30)
- ‘15 협의내용 이행실태점검(94건)
- ‘15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 건 협의(137건)
- ‘15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개최(21회)
- ‘16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개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17.1.27)
- ‘16 협의내용 이행실태점검(79건)
- ‘16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 건 협의(181건)
- ‘16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개최(32회)
- ‘17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개선 자연재해대책법 개정(‘17.10.24)
- ‘17 협의내용 이행실태점검(70건)
- ‘17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 건 협의(225건)

- ‘17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개최(27회)
- ‘18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도 시행 및 제도개선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18.10.23)
  * 사전검토제도 도입,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확대(70명→100명), 사업단계별 규모별 협의절차 및 방법 세분화
- ‘18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도 대상확대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18.12.31)
  * 재협의 대상 확대(토지이용계획 10% 이상 변경, 불투수면적 10% 이상 변경),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 확대(산지일시사용허가),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18 협의내용 이행실태점검(86건)
- ‘18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건 협의(172건)
- ‘18 재해영향평가위원회 개최(20회)
- ‘19 협의내용 이행실태점검(113건)
- ‘19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건 협의(117건)
- ‘19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소집심의 개최(17회)
- ‘20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건 협의(125건)
- ‘20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소집심의 개최(25회)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검토 협의 >
- ‘05. 8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제도 도입시행
- ‘05. 3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지침 시달
- ‘09. 3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제정・고시
- ‘09. 7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승인지침 제정・고시
- ‘09. 8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검토위원 위촉
- ‘10.12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개정
- ‘11. 2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개정
- ‘12. 8월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제정,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개정
- ‘12.12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개정
- ’12년 검토회의 33건 검토
- ‘13. 1~12월 현지 검토회의 개최(5회) 및 전문가 현지확인 실시(14건)
- ‘13. 5월 재심의 절차 간소화 운영(승인처리기한 5~6개월 단축)
- ‘13. 6월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방재분야 표준품셈 개정
- ‘13년 상·하반기 총 36회 검토회의 개최를 통해 30건 승인, 6건 재심의 조치
- ‘14년 8~11월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개정 추진(‘15.1.7 고시)
- ‘14년 상·하반기 총 35회 검토회의 개최를 통해 32건 승인, 3건 재심의 조치
- ‘15년 상·하반기 총 19회 검토회의 개최를 통해 36건 승인, 2건 재심의 조치
- ‘15.12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제도 개선 T/F 구성·운영
- ‘16. 1. 27.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이행관리 강화 등을 위한「자연재해대책법」개정
- ‘16년 상·하반기 검토회의 개최를 통해 21건 승인
- ‘17년 상·하반기 검토회의 개최를 통해 15건 승인 ※ 157개 시·군 종합계획 완료

- ’18년 가뭄·대설을 포함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명칭 변경 등「자연재해대책법」개정(‘18.10.25.)
- ‘18년 상·하반기 전문가 사전검토 및 검토회의 개최 23건 실시, 8건 승인 조치
- ‘18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을 전문가 T/F 2회 운영(‘18.5, ’18.12)
- ‘18년 제7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전문가 검토위원(100명) 위촉(‘18.12~’19.1월)
- ’19년 상·하반기 전문가 사전검토 및 검토회의 개최 14회(승인 조치 7건)
- ’19년 시기 도래(5년경과)로 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지자체 재수립(121개 중 9개 완료)
  * (‘18) 55개 → (’19) 31개 → (‘20) 36개 → (’21) 19개 → (‘22) 17개
- ’19년 시·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1차 수립 추진 중(13개 완료 4개 수립중, ’19. 12월말)
- ’20년 상·하반기 전문가 사전검토 및 검토회의 개최 14회(승인 조치 5건)
- ’20년 시기 도래(5년 경과)로 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지자체 재수립(124개 중 13개 완료)
  * (‘18) 55개 → (’19) 31개 → (‘20) 38개 → (’21) 19개 → (‘22) 17개
- ’20년 시·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1차 수립 추진 중(15개 완료 3개 수립중, ’20. 12월말)
- 제8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전문가 검토위원(100명) 위촉(’20.12월말)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7~계속
- 사업규모 :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제도 운영, 자연재해 종합저감계획 협의회 운영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3) 사업 집행절차

①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재해발생	
↓	
재해 분야·규모 등 파악·분석	○ 행정안전부 소관부서
↓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조사 여부 판단	○ 행정안전부 소관부서
↓ 조사필요시	
분야별 조사계획 수립·통보	○ 해당 협의회 관련자 신속 통보 조치 ○ 협의회 파견규모 등 결정 ○ 지자체에 조사계획 공문 시달 ○ 계획 확정시 재난대응정책과에 통보
↓	
현지조사 수행계획서 접수 (조사단 구성 현황 등)	○ 등록기관에서 작성, 제출
↓	
현지 조사단 파견	○ 출장조치(소관부서) ○ 상해보험가입 조치(소관부서) ○ 출장여비, 수당 지급(소관부서) ○ 현장집결(소관부서)
↓	
현지 조사 전 사전미팅 및 교육실시	○ 주관 : 소관부서 - 협의회 등록기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현지 조사 실시	○ 현장안내(지자체 담당자)
↓	
초동 보고서 작성(7일 이내)	○ 현지 조사단 작성, 소관부서 검토
↓	
최종 보고서 작성·제출(30일 이내)	○ 현지 조사단 작성, 소관부서 검토
↓ 보고서 제출 전, 조사단은 필요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사전 협의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종료	○ 소관부서 - 최종보고서, 자체 보고회 및 재난대응정책과에 제출

② 재해영향평가 등 검토 협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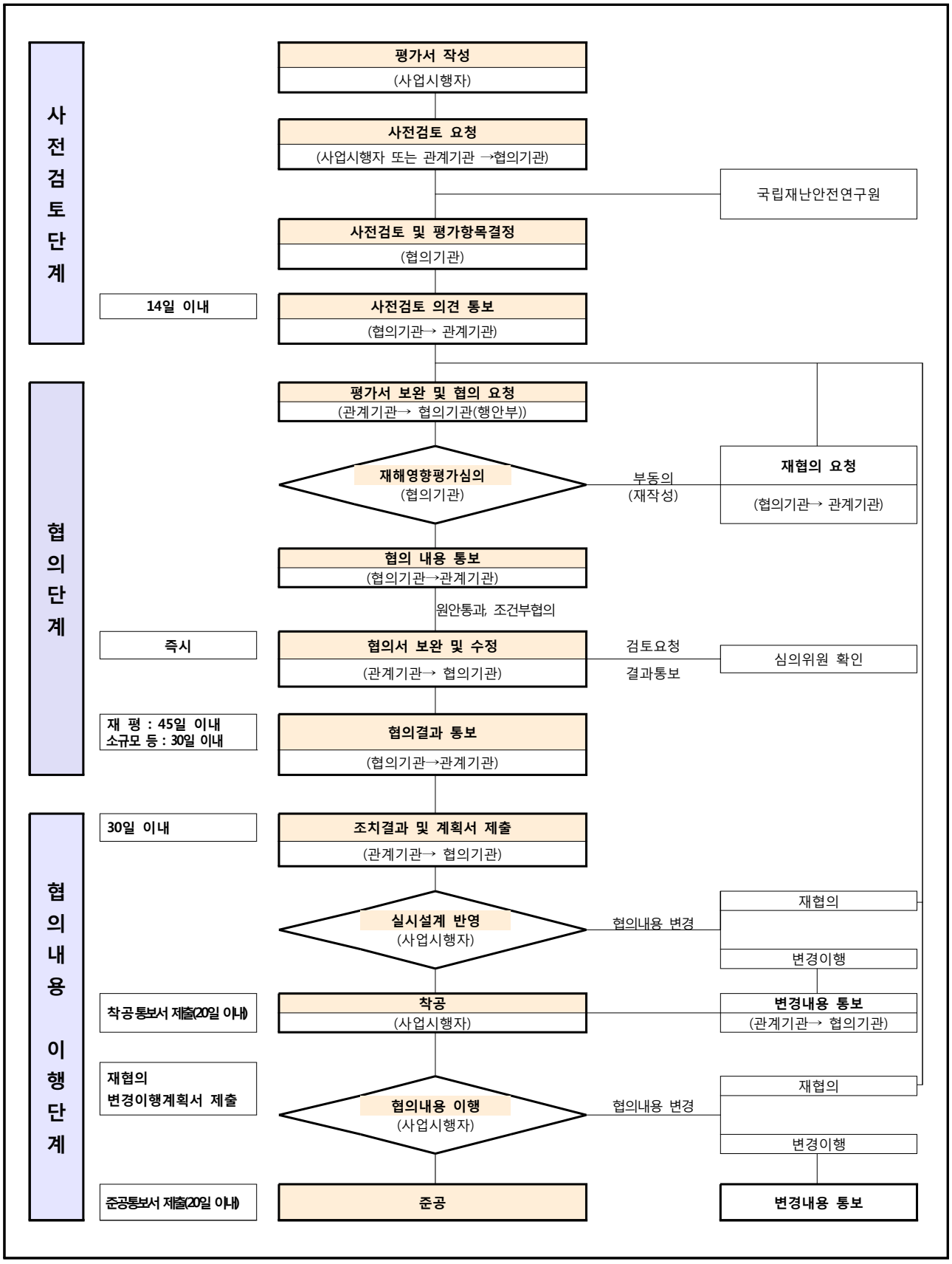

③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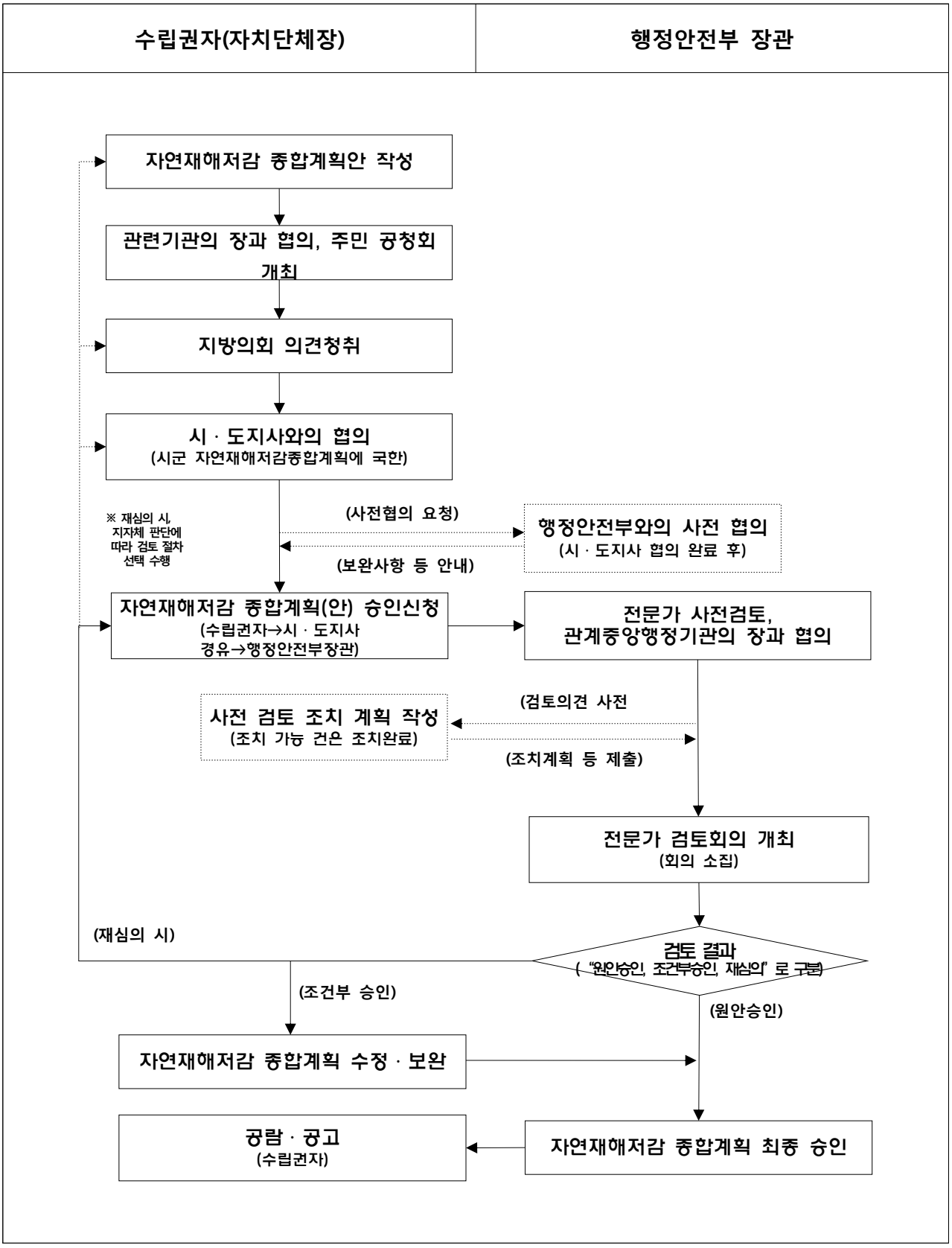

사 업 명
7.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2733-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3	303
명칭	재난관리	재해경감활성화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2,041	2,412	2,369	2,629	2,426	2,426	57	2.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훈련기관 컨설팅 강화, 현장훈련 확대, 재난대비 연중 상시훈련,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등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
- 각 부처·기관의 재난대응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위기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위기관리 활동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훈련 기능강화 및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여 자연·사회재난 등 모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능력 강화
-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각 시도별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참여 학교를 거점으로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을 실시하여 사회저변에 재난안전문화를 조기에 확산
- (상시훈련) 연 1회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보완하여 연중 수시 실시하는 재난대비훈련을 '12년도 최초 도입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등이 주관하여 각 소관 분야별 매뉴얼 숙달훈련 등 기능 중심의 훈련 실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의무화 신설('14.2.7시행)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공동 활용하기 위한 교육인프라 확보·보급
- 재난, 국가핵심기반분야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실무/행동)은 행정안전부가 조정·승인·협의를 총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훈련주관기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매뉴얼의 숙달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2014.12.30., 2016.1.7.>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기본계획 대통령 재가 및 국무회의 보고('04. 9.)

○ 2005년부터 매년 1회(4～5월) 3일간 실시 (※ 2015년부터 5일간 실시)

○ 2007년부터 재난대비 민방위훈련을 병행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의식 및 참여 제고

○「201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기간 중 제46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무총리 강조 말씀(2013. 5. 6)

· '평상시에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재난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지 항상 확인·점검'

○ 세월호 사고 이후, 국정목표와 국정과제 실천사항으로 안전한국훈련 강화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국정목표와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 대응 역량 강화'의 국정과제*(56-1,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실천을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대비훈련 강화 및 확대를 위한 지원 필요

  * 세부과제 : 재난대비훈련 강화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사업규모 :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안전한국훈련, 상시훈련,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자자체 경상보조(국비 50%)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국민,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17개 시도)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별표

3)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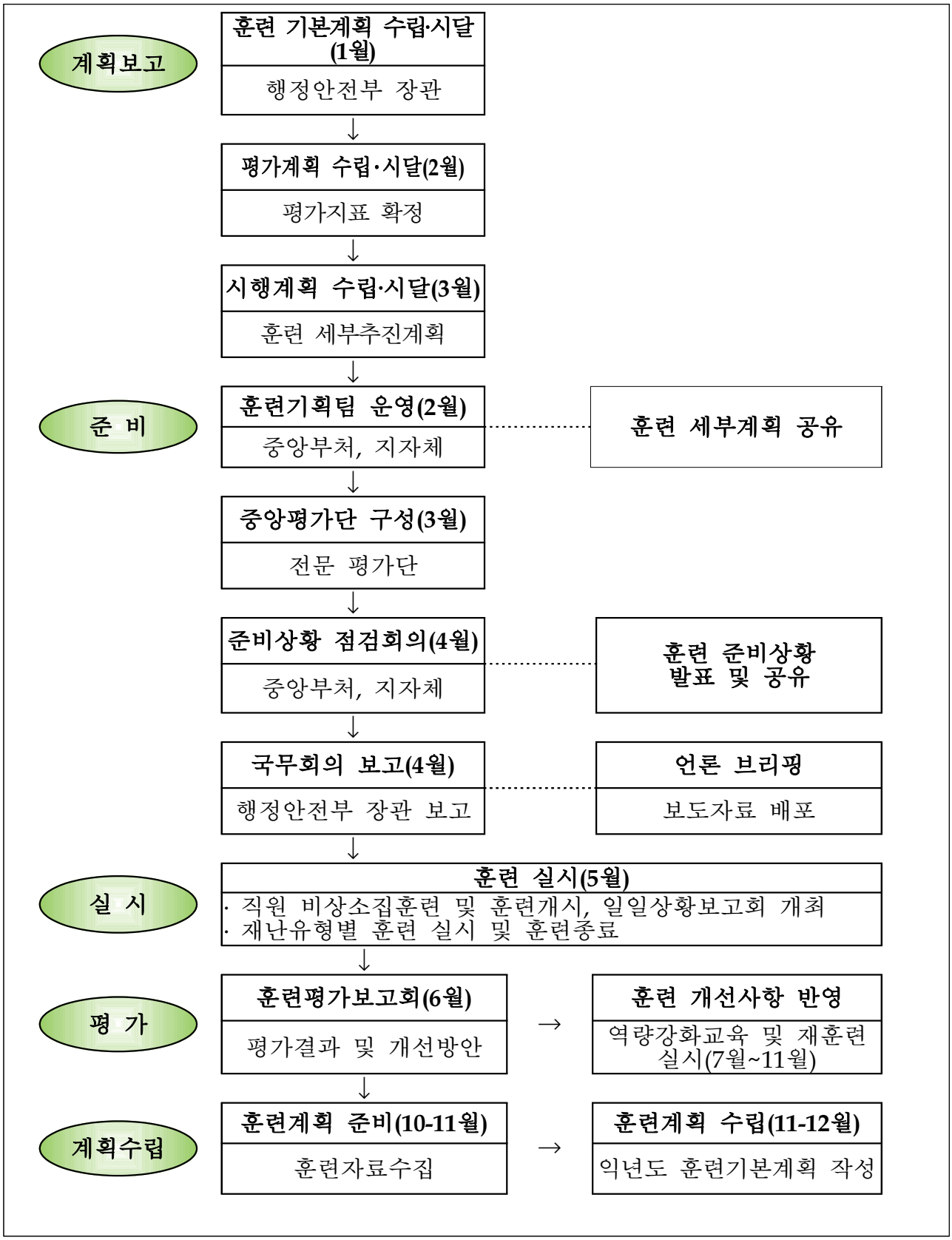
계획보고
훈련 기본계획 수립·시달 (1월)
행정안전부 장관
평가계획 수립·시달(2월)
평가지표 확정
시행계획 수립·시달(3월)
훈련 세부추진계획
준 비
훈련기획팀 운영(2월)
중앙부처, 지자체
훈련 세부계획 공유
중앙평가단 구성(3월)
전문 평가단
준비상황 점검회의(4월)
중앙부처, 지자체
훈련 준비상황 발표 및 공유
국무회의 보고(4월)
행정안전부 장관 보고
언론 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실 시
훈련 실시(5월)
· 직원 비상소집훈련 및 훈련개시, 일일상황보고회 개최
· 재난유형별 훈련 실시 및 훈련종료
평 가
훈련평가보고회(6월)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훈련 개선사항 반영
역량강화교육 및 재훈련 실시(7월~11월)
계획수립
훈련계획 준비(10-11월)
훈련자료수집
훈련계획 수립(11-12월)
익년도 훈련기본계획 작성

사 업 명
8. 재난대책비(보조) (2734-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4	300
명칭	재난관리	재난복구지원	재난대책비(보조)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7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A)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재난대책비(보조)	555,895	36,000	400,000	200,000	200,000	820,000	384,000	8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업목적) 재난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인명·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생계안정지원비) 신속 지원 및 공공시설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국고보조 등)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자연재난 발생 시마다 지자체 피해조사,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중대본 심의 등을 거쳐 사유재산 피해복구비를 재난지원금으로 통합하여 지원('06년 이후)
- 당초 예비비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으나, 예비비 배정 시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피해자 지원 시기가 지연되어 일반회계를 편성하여 조속한 지원 추진('11년~)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1년 ~ 계속
- 사업규모 : 재난 피해자 구호·생계 및 피해복구비 지원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지방자치단체 및 전국민(재난피해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70%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3)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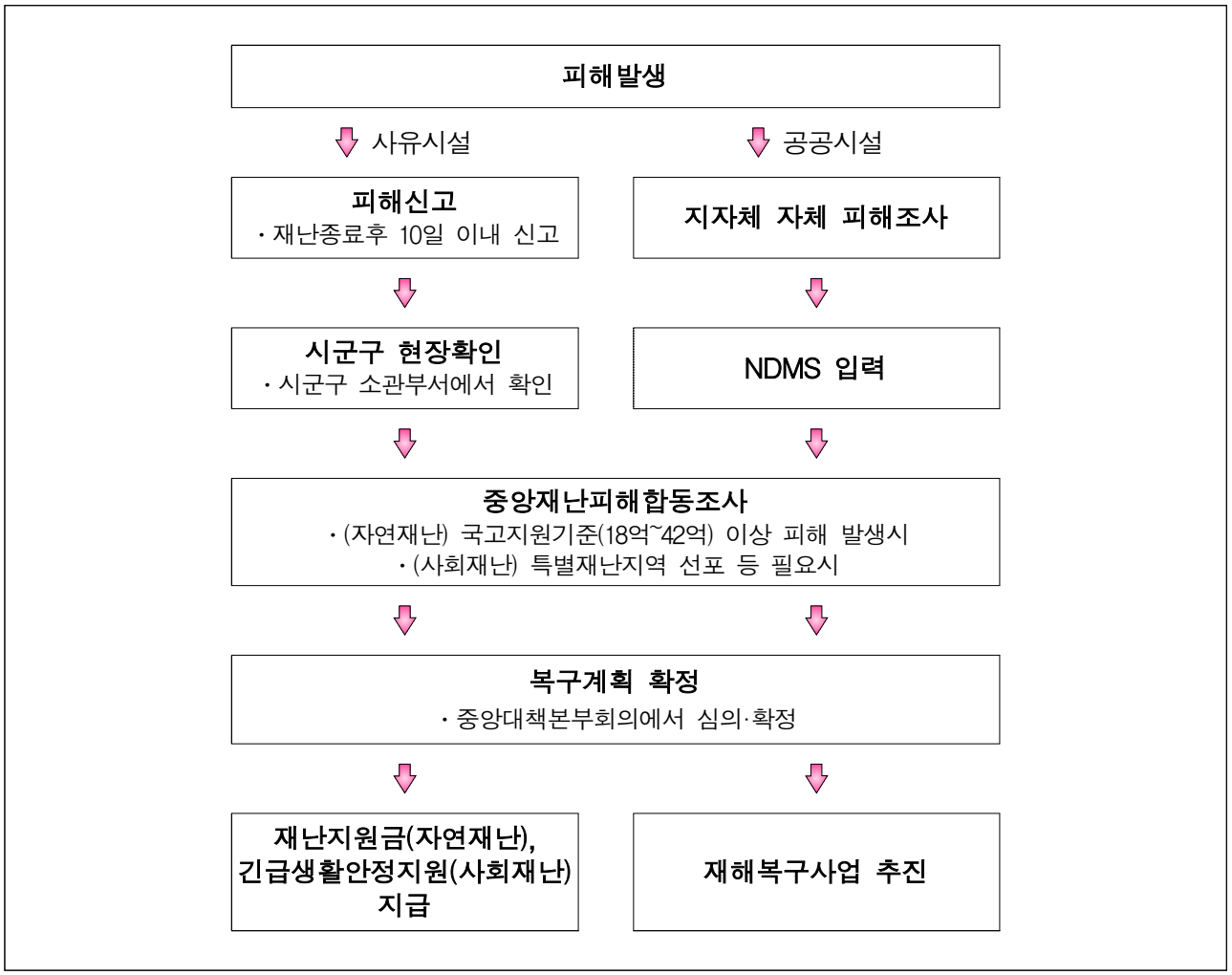
피해발생
사유시설
공공시설
피해신고
· 재난종료후 10일 이내 신고
지자체 자체 피해조사
시군구 현장확인
· 시군구 소관부서에서 확인
NDMS 입력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 (자연재난) 국고지원기준(18억~42억) 이상 피해 발생시
·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필요시
복구계획 확정
·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확정
재난지원금(자연재난),
긴급생활안정지원(사회재난)
지급
재해복구사업 추진

사 업 명
9. 재난구호지원 (2734-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복구정책관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4	301
명칭	재난관리	재난복구지원	재난구호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재난구호지원	3,341	630	630	1,110	1,000	1,000	370	58.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해·재난긴급구호) 재난 시 구호활동 봉사자 동의 급·간식비와 소모용품, 재해구호물품 및 재해구호장비 임차료 및 유류대 등을 지원하여 **신속한 구호로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 도모**

《 사업 필요성 》

○ 관련 법*에 따라, 대규모 재난발생 등으로 구호기관의 신속한 구호활동 및 이재민의 조기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필요**

* 「재해구호법 제6조(재해구호물자의 확보 및 보관 등)」②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행정안전부장관은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 이재민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성금) 등의 지원제도는 갖추고 있으나, **이재민의 구호활동 및 봉사자에 대한 구호지원 사각지대 존재**

※「재해구호법 제4조(구호의 종류)」 ① 임시주거시설 제공 ② 급식이나 식품·의류·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③ 의료서비스의 제공 ④ 재해구호물자 지원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재해구호법」제4조, 제6조, 제13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재해구호법」

제4조(재해구호의 종류)

①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2. 급식이나 식품·의류·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3. 의료서비스의 제공, 4.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5. 위생지도, 6.장사(葬事)의 지원, 7. 심리회복의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재해구호물자의 확보 및 보관 등)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구호활동을 할 때 재해구호물자가 부족하면 시·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지원요청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구호지원기관이 재해구호물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창고를 설치·운영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구호비용의 부담)

② 국가는 구호기관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 등으로 보조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해구호의 종류)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

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에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이하 생략)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5. 1월 재난업무 일원화 방침에 따라 재해구호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소방방재청으로 이관
- '05년~'13년(9년간)까지 복권기금(기획재정부) 재원으로「재해·재난대비긴급구호사업」을 추진
- '14년부터「이재민 구호활동 지원」을 복권기금에서 일반회계로 편성운영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위원회 검토결과 복권기금에서 일반회계로 편성 방침 결정
- 일반회계로 편성된 예산 활용을 위해, "14년 재해·재난대비긴급구호사업 집행계획" 수립
- 예산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15년 사업명칭 변경(재해・재난긴급구호→재난구호지원)

◇ **재난발생 양상과 재난현장 특성 등을 감안한「재난구호지원사업」집행계획을** 2015년 **도부터 수립·시행(계속)**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4년 ~ 계속 ※ '05 ~ '13년까지는 복권기금으로 지원
- 사업규모 : 응급구호 종사자 · 자원봉사자 경비 및 소모품 지원, 응급구호장비 임차료 등
- 사업시행방법 : 지방자치단체보조(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사 업 명
10. 풍수해보험 (2734-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4	302
명칭	재난관리	재난복구지원	풍수해보험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6.5~68.05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풍수해보험	14,832	19,151	16,121	19,151	19,151	19,151	3,030	18.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주택, 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 등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으로 풍수해·지진재해 시 실질적 보상체계 구축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재난관련 보험 등의 개발·보급)** ①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보험·공제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풍수해보험법 제7조(국가 등의 보험료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풍수해보험법 제정·공포 : ‘06. 3. 3
- 풍수해보험법 개정(모든 건축물로 보험대상물 확대) : ‘08. 3.28
- 풍수해보험 사업지역 전국 확대 : ‘08. 4. 1
- 풍수해보험 보상재해 ‘지진’ 추가 : ’12. 10. 22
-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실시(22개 시군구) : ’18. 5. 1
- 풍수해보험법 개정(가입대상에 ‘소상공인 상가·공장’ 명확화) : ’18. 12. 24
-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확대(37개 시군구) : ’19. 1. 1
-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사업지역 전국 확대 : ’19. 11. 25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06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사업비	21,430	19,287	17,357	18,834	16,12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수혜자 : 풍수해보험 가입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법적근거
5개 민간보험사	56.5~68.05	풍수해보험법 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3) 사업 집행절차

【보험료 납입 절차】

① 보험가입 → ② 보험료 납입 → ③ 국비지원 (행정안전부→손해보험사)

④ 지자체 지원액 통보 (행정안전부→지자체) → ⑤ 지방비 지원 (지자체→손해보험사) → ⑥ 잉여금 적립 (손해보험사)

【보험금 지급 절차】

① 피해발생 → ② 피해신고 → ③ 피해접수 (손해보험사)

④ 현지조사 및 손해사정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인) → ⑤ 보험금 확정 및 지급 → ⑥ 보험금 지급내역 통보 (손해보험사→행정안전부)

사 업 명
11. 재난심리회복지원 (2734-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4	303
명칭	재난관리	재난복구지원	재난심리회복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재난심리회복지원	384	913	913	1,067	767	767	△146	△1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난경험자*(재난심리회복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재난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재난현장에서 구호·봉사·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재난으로 인해 심리회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재난피해 지역·개인 피해회복(심리지원 등)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지원 사각지대 발굴, 지원 정책·사업 효과 분석과 개선안 마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5항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2

제73조의2(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활동 지원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상담활동지원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피해 유형별 상담 활동의 세부 지원방안 2.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연락체계 구축 3.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4.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해구호법」제3조, 제4조

제3조(구호의 대상) 이 법에 따른 구호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이재민 2. 일시대피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4조(구호의 종류 등)** ①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심리회복의 지원

② 추진경위

- 소방방재청 연두업무계획「중점과제」및 혁신관리평가「부처자율과제」선정(‘07.2.)
-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정보시스템 구축」(‘07.12 ~ ‘08.9.)
- 재난피해자심리지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기초조사·연구용역 착수(‘08.10.)
-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사례 모음집」발간·배포(‘09.1.)
- 재난심리지원 매뉴얼 발간·보급(‘11.9.)
- 불산유출, 태풍볼라벤, 덴빈 등 풍수해 재난경험자 심리지원(‘12. 총 1,661명)
- 울산·포항 산불, 전남여수 폭발,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탑승객 등 심리상담 활동(‘13. 총2,902명)
- 경주마우나리조트, 세월호, 부산·울산·경남 집중호우, 판교환풍구 붕괴 등 심리지원(‘14. 총 4,350명)
- 메르스 격리 해제자, 추자도 돌고래호 전복사고 등 심리지원(‘15. 총 4,550명)
- 행정안전부, 대한적십자사 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업무협약 체결(’16.2.)
  *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주체를 대한적십자사로 일원화
- 9.12지진, 태풍 차바 등 자연재난 대상자 심리회복지원 및 대구서문시장 화재 등 사회재난 대상자 심리회복지원(‘16 총 7,727건)
- 재난심리회복지원 실무 매뉴얼 개정 발간(‘17.12.)
- ‘18년 포항지진,AI(조류독감) 등 재난피해자 대상 심리회복지원(’17 총 8,644건)
- 재난피해자(’12~’17) 삶의 변화 추적조사 실시(’15~’19 R&D, 누적조사 인원 7,652명)
- 재난피해자(’12~’17) 삶의 변화 추적조사 실시(’15~’19 R&D, 누적조사 인원 7,652명)
- ‘19년 강원 산불 등 재난심리회복 지원 추진(7,521건)
- 중앙 및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20.7.30일 시행)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7 ~ 계속
- 사업규모 : ① 17개 광역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상담활동) 지원
  ② 최근 3년간 전국 자연재난피해자 대상 피해회복 실태조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지자체 경상보조(50%)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광역 시・도)
- 사업 수혜자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복구활동에 참여한 사람,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재난으로 인해 심리회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3) 사업 집행절차

○ 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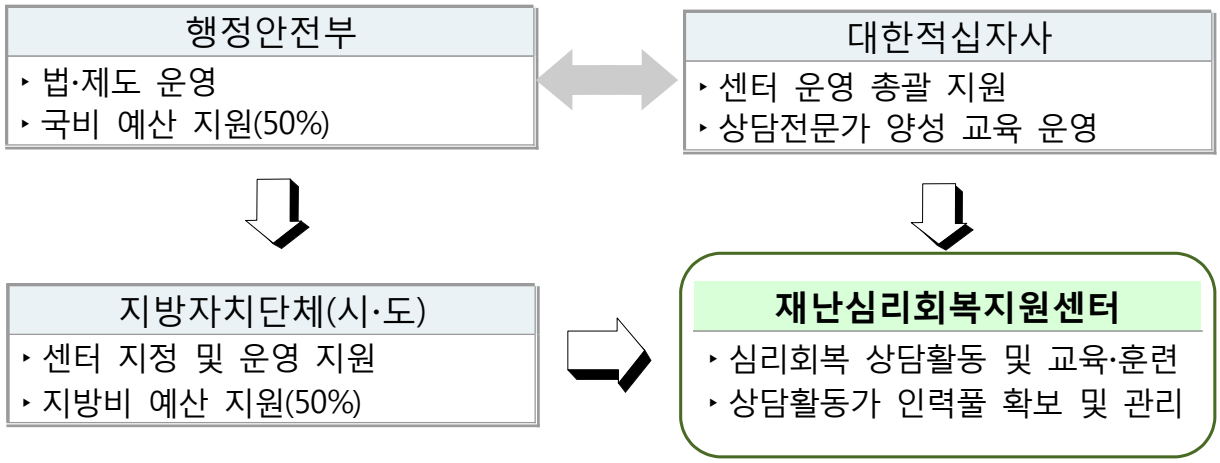

○ 심리상담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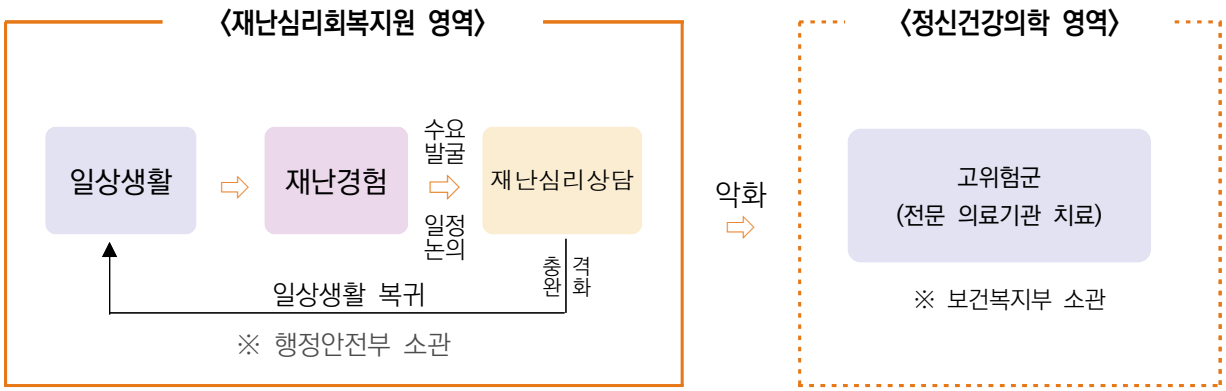

사 업 명
12.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지원 (2734-31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4	314
명칭	재난관리	재난복구지원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7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 (B)		(B-A)/A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지원	342	198	3,954*	15,136	15,136	13,445	9,491	240.0

* '20년 3회 추경 신규사업(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3,756백) 포함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난에 필요한 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정적 동원을 위해 최신 유통·물류 ICT 기술을 도입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 민간의 인력, 보유 장비 등 자원을 재난 발생 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를 통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 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3(중앙민관협력위원회 관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② 추진경위

-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제1기 구성 및 전체 회의 개최 : '13.5월
-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법적 근거 마련 : '19.12월
- 한국판 뉴딜 선정 및 제3차 추경 반영(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20.7월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5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보조(보조율 70%),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국민

3) 사업 집행절차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①지자체 사업계획 수립 ▸ ②중앙→지자체 교부 ▸ ③사업 추진(지자체)

< 교육·훈련 >

①교육·훈련계획 수립 ▸ ②교육·훈련 사전 준비 ▸ ③교육·훈련 실시 및 정산

< 재난안전 논문 공모전 >

①공모전 계획 수립 ▸ ②공고·홍보 및 접수 ▸ ③심사 및 발표

사 업 명
13. 통합지휘무선통신망운영(정보화) (3031-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57)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1	500
명칭	재난안전정보화	재난정보통신관리(정보화)	통합지휘무선통신망운영(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운영(정보화)	2,334	2,460	2,460	2,460	2,460	2,460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서울·경기지역에 구축한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 경찰, 소방, 군, 지자체 등 102개 재난기관에 무선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망용 주파수 관리, 단말기 등록, 기지국 등 시설 유지보수 등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
- 실제 재난현장 및 국가중요행사 신속한 긴급통신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운영)
  ·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장은 재난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정보 통신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2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운영)
  ·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장이 구축·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 수단을 마련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이하 "긴급통신수단"이라 한다)이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긴급통신수단의 보유 현황 등을 조사하고,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재난관리 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운영>

- ´03년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기본계획 확정
- ´04년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기획예산처)
  ※ 편익/비용 : 17.72, 종합평가결과 : 0.789
- ´05년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세부추진계획 수립
- ´05년 ~´06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05년 10월 ~ ´06년 7월 시범사업 추진(서울·경기 12개 시·구)
  * 교환기 2식, 기지국 31식, 보조중계기 51식, 단말기 1,703대 등)
- ´06년 11월 ~ ´07년 12월 확장1차사업 추진(서울·경기 전역 및 신설고속도로)
  * 교환기 3식, 기지국 100식, 보조중계기 110식, 단말기 30대 등)
- ´07년 4월 ~ 6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전국확장사업 중단
  * 특정업체 독점해소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 타당성 분석 등
- ´08년 5월 ~ ´09년 5월 구축사업 타당성재조사 실시(기획재정부)
  ※ 편익/비용 : 0.75, 종합평가결과 : 0.288
- ‘09년 5월 ~ 안전행정부에서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추진(BH 지시)
- ‘14년 5월 ~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추진 본격화

<긴급통신지원 시스템 유지관리>

- ’11년 12월 국무총리실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단위과제로 “재난관리 긴급통신체계 강화” 과제 확정
- ’12년 긴급통신 계획 마련 및 지원체계 정립 연구용역 수행
- ’13년 8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에 근거조항 신설
  * 법 제34조의2(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시행령 제43조의3
- ’13년 긴급통신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긴급통신장비 유관기관 보급
- ’15년 9월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총리 훈령)” 제정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사업규모 :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 시설현황 : 중앙망관리센터, 교환기 4식, 중계국 291식, 이동기지국 5식 등
  * 사용기관 : 소방, 경찰, 군, 지자체 등 102개 기관(단말기 6만여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경찰, 소방, 군,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 관련 102개 기관

3) 사업 집행절차

공공요금 및 임차료 등 지출	공공요금 및 임차료 등 지출 행정안전부 (1월～12월)					
유지보수 용역	① 사업계획수립, 계약의뢰 행정안전부	➜	② 입찰공고, 사업자 선정 조달청	➜	③ 사업 추진 행정안전부	

사 업 명
14.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3031-5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57)	재난관리실		020	025
명칭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1	501
명칭	재난안전정보화	재난정보통신관리(정보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11,237	6,983	6,983	12,503	6,335	6,335	△648	△9.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난관리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수행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 국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속・정확하게 재난상황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예・경보 체계 구축 지원

○ 재난대응기관(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등) 간 재난현장 상황 등을 실시간 공유하고, 공동대응 할 수 있는 협력 체계 구축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제74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운영), 제74조의2(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 제76조(재난 보험등의 가입 등), 시행령 제83조의4(보험등의 가입 관리)
- 『자연재해대책법』
  - ▪ 제34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 제6조(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 제18조(지진·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 『소하천정비법』
  - ▪ 제26조의4(소하천정보체계의 구축)

② 추진경위

- ▪ '95. 8월 : 21C 정보화 사회에 대비 세계화추진위원회 과제로 선정
- ▪ '96. 2월 : 국무총리실에서 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확정
  ※ 16개 부처 안전관리부서가 합동으로 기본계획 작성 ⇒ 행자부과제로 채택
- ▪ '99. 3월 : 정보통신부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중점추진과제로 선정
- ▪ '03. 5월 : 국무조정실, 참여정부「핵심공약」추진사업으로 선정
- ▪ '03. 6월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전자정부로드맵 중점관리과제」선정
- ▪ '08. 2월 :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반복적 수해피해 및 고위험 지역에 대한 집중대책 마련'이 국정과제로 선정
- ▪ '08. 5월 : 중국 쓰촨성 지진을 계기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상태를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대통령 지시
- ▪ '08.12월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5대 분야 추진과제」선정

- ’10.12월 : 안전 대한민국 세부추진과제로「신속한 재난대응체계 수립」선정
- ’13. 5월 :「모바일기반 스마트형 재난관리체계 구축」및「재난안전정보 ’포털 앱’」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로 선정
- ’13.12월 : 제3차 재난안전관리 BPR/ISP 구축
- ’14. 2월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구축
- ’14.12월 :「안전신고 포털」구축
- ’15.10월 : 정부3.0 7대 핵심과제로 선정(통합적 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
- ’16. 1월 : 대통령지시로 안전디딤돌 앱 홍보 강화(지시번호 : 0007870)
- ’16. 4월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구축
- ’17. 4월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확대·고도화
- ‘17. 8월 : 긴급재난문자 발송권한 지자체 이양
- ‘18. 6월 : 지진·지진해일 긴급재난문자 기상청 송출
- ‘19. 5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개정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5~계속

○ 사업규모 :

①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HW, SW 및 HelpDesk)

②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보강(신규 기능개발 및 장비도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3) 사업 집행절차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사업계획 수립	➡	사업발주 및 사업자 선정	➡	사업수행	➡	시범운영 및 서비스 개시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1～2월)		(3～4월)		(5～10월)		(11～12월)

사 업 명
15.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정보화) (3031-5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1	502
명칭	재난안전정보화	재난정보통신관리(정보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정보화)	199,917	154,207	152,819	136,642	103,508	103,508	△49,311	△32.3

나. 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경찰, 소방, 군 등 재난관련 핵심기관 8대분야 333개 재난대응기관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PS-LTE 기술방식의 전국 단일 자가망을 구축하여, 재난현장에서의 일사불란한 현장지휘와 통합대응체계 구축 지원

  * PS-LTE(Public Safety-Long Term Evolution) : 음성, 문자,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서비스가 가능한 재난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기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2(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사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조문 내용 >

제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난관련기관"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련기관은 평상시 또는 재난발생 시를 대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관련기관 간 재난대응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련기관에서 필요한 재난대응 절차를 연구·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세월호 사고 관련 "대통령 대국민 담화" 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의 조속한 구축 약속('14.5.19.)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방향 확정('14.5.27., 국무회의)
- 재난안전통신망 PS-LTE 기술방식 선정('14.7.31., 국가정책조정회의)
-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 선정 통보('14.9.17.)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LG CNS 컨소시엄, '14.10.14.~'15.3.31.)
- 국무총리실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700Mhz 주파수 확정('14.12.10.)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세부 추진계획 확정('15.3.31, 국무회의)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시범사업 추진(평창, 강릉, 정선 '15.11.19.~'16.6.16., 345억원)

* 운영센터 1개소(서울) 및 고정기지국 220개소 구축, 단말기 2,496대 보급 등

- 시범사업 검증 및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검증협의회 구성・운영(‘16.7~10)
- 시범사업 검증결과 및 본 사업 추진방안 기재부 제출(2회/‘16.10.31, ‘16.11.21.)
- 기재부, 재난안전통신망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KDI용역, ’16.11~‘18.1.12.) 결과 등을 토대로 총사업비 수정·확정(‘18.4.18.)
- 평창동계올림픽 재난안전통신망 보강사업 추진(‘17.9~’18.3, 52억원)

* 신설 경기장 및 선수단 수송로 지역 통화권 개선 기지국 55식, 이통사 LTE 상용망 연동 등

- 재난안전통신망 본 사업계획 수립(‘18.5.28.), 조달발주 및 계약·착수(6.20.~12.21.)

* 계약의뢰(6.20.), 사전규격 공개(7.3.～13.), 입찰공고(8.23.～10.5.),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10.17.～18.), 기술협상(10.22.～11.20.), 장기계속계약(’18~‘25년) 체결 및 1단계 착수(12.21.)

- 재난안전통신망 본 사업 1단계(중부권) 완공(’19.10) 및 통신망 서비스 개시(’19.11~)
- 재난안전통신망 본 사업 2단계(남부권) 추진(’19.11)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939,349백만원 (‘19.12.31. 기준)
- 사업기간 : 2015~2025
- 사업규모 : 운영센터 2개소, 기지국 18,131개소, 단말기 24만대 보급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수혜자 : 행정 및 공공기관,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법적근거
한국정보화진흥원	100	국가재정법 제12조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 등

3) 사업 집행절차

준비단계 ('14~'15년)	시범 / 보강 사업 ('15~'17년)	본 사업			보완 및 운영 ('21년~)
		1단계('18~'19년)	2단계('19~'20년)	3단계('21년)	
정보화전략 계획(ISP) 수립	평창 동계 올림픽 지역 평창, 강릉, 정선	중부권 5개 시도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남부권 9개 시도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수도권 3개 시도 서울, 경기, 인천	

사 업 명
16.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구축 (2733-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3	305
명칭	재난관리	재난경감활성화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구축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구축	-	-	-	11,300	11,250	11,250	11,250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목적) 집중호우로 둔치주차장의 차량 대피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차량 침수 예방
- (내용) 차량 침수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둔치주차장에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구축

※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과 연계, 차량번호를 활용하여 차주에게 침수위험 안내 문자를 자동으로 발송하는 시스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5년간('13~'17)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 439건이 발생하여 대통령 지시사항('18.10.8) "똑같은 유형의 인명피해 방지" 이행을 위해 본 시스템 구축

○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 전남 나주시 둔치주차장 시스템 및 시험 운영('20.1.22)

※ 국토교통부의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사용 협의 완료('19.12.9)

- 프로그램 및 보안성 검토 자료 등 전국 지자체 배부 완료('20.2.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20.6.4 시행)
- 차량번호를 활용하여 차주의 휴대 전화번호 취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활용 관련 법령 개정 완료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1~'22
- 사업규모 : 전국 둔치주차장 250개소 중 40대 이상 주차 가능한 180개소를 대상으로 연간 90개소에 시스템 구축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국비 50 : 지방비 50)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둔치주차장을 이용하는 국민과 관리기관 종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제 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3) 사업 시행체계

둔치주차장
<차량 입차>
<차번인식기>
<주차>
① 차량 번호 인식
91어 OOXX
② 차량번호 전송
주차장 관리기관
<시군구 상황실 / 시설관리공단>
③ 차량 소유자 휴대폰번호 조회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④ 문자 발송
차량 소유자
[차량 침수위험 알림]
OOOOO 주차장 침수 우려가 있으니 신속히 차량을 이동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3

사 업 명
17. 공공시설 옥상녹화 (2733-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3	306
명칭	재난관리	재난경감활성화	공공시설 옥상녹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공공시설 옥상녹화	-	-	-	6,834	5,780	2,930	2,930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업목적)** 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피해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선제적 대비 필요

< 올해 여름철 기상전망 >

✓ **(기온)** 평년(23.6℃)보다 0.5~1.5℃, 작년(24.1℃)보다는 0.5~1.0℃ 높겠으며, 일부 내륙지역은 작년 낮최고기온(37.6℃, 의성)보다 높을 것(40℃ 이상)으로 전망

✓ **(폭염)** 폭염일수*는 20~25일(열대야 12~17일)로 평년과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

* (평년) 9.8일, ('18년) 31.4일, ('19년) 13.3일

- 대부분의 공공시설 옥상이 콘크리트로, 건물 온도 상승 등 냉방기 사용에 대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도심 열섬현상이 가중됨

○ **(사업내용)** 공공시설 옥상녹화 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도시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자연재해대책법」제3조 및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폭염대책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24조의2(폭염피해 저감시설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폭염피해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20. 1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등)
- ’20. 6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폭염피해 저감시설 등)
- ‘20. 7월: 열섬 완화를 위한 옥상녹화 등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293억원(국비 146.5원, 지방비 146.5억원)
- 사업기간 : ’21~‘25년
- 사업규모 : 옥상녹화 등 290개소 설치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1

3) 사업 집행절차

○ 공공시설 옥상녹화 지원

사업 추진계획 수립 (행정안전부) → **수요조사 실시** (행정안전부→시·도→시·군·구)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계획 제출** (시·군·구→시·도→행정안전부)

→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배분 조정** (행정안전부) →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행정안전부→시·도→시·군·구) → **국고보조금 자금배정(송금)** (행정안전부→시·도→시·군·구)

→ **예산 집행** (시·도 및 시·군·구) → **집행내역 정산** (시·군·구→시·도→행정안전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예산 교부 및 집행

사 업 명
18.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2734-31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57)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복구정책관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4	317
명칭	재난관리	재난복구지원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81	81	81	81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내역사업명)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ISP

○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대상 수, 미가입자 등 보험가입에 대한 정보 및 재난시설 관련 정보, 재난사고에 대한 통계의 집적·관리를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함

※ 재난안전의무보험 총괄관리를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20.6.10)

○ 현재 14개 부처에서 관리하는 30개의 재난안전의무보험은 대부분 실시간으로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미 구축*

* 30개 의무보험 중 5개 보험(다중이용업소화재·자동차·환경·재난배상·승강기) 시스템 구축

○ 소규모 의무보험의 경우 개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은 비효율적이므로 범부처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활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 ①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를 정할 것
> 2. 법률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의무자를 신속히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4(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리・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공동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재난안전의무보험 총괄관리를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20. 6. 9.)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총 2,881백만원
- 사업기간 : '21년 ~ '23년
- 사업규모 : 총 2,881백만원(ISP 81, 시스템 구축 2,800)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 대상 국민 및 관련 부처(14개 부처)

3)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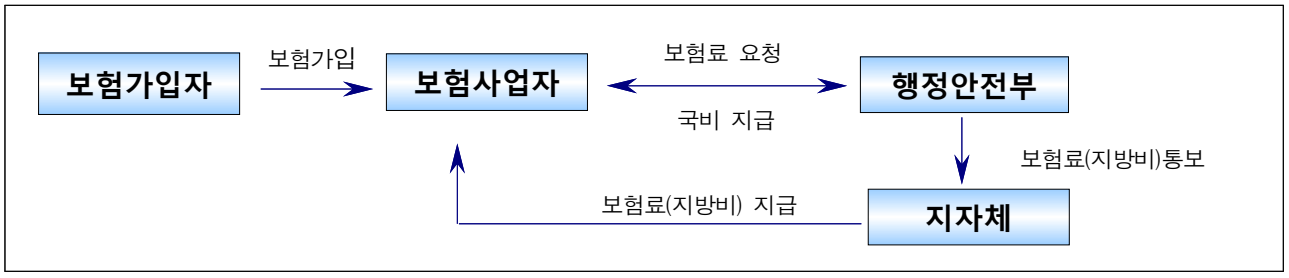

사 업 명
19.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3032-5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2	505
명칭	재난안전정보화	재난행정정보화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	-	-	128	128	128	128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 추진 배경 >

○ 위기관리 매뉴얼 개요

- 위기관리 매뉴얼은 풍수해, 지진 등 41개 재난유형별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주관기관, 유관기관,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 및 필수 협업기능, 재난현장 지휘·협력체계 등을 규정한 문서임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인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56-1)을 위하여 위기관리 매뉴얼 전면 개정* 추진 중

* (개정사항) 청와대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안전취약계층 고려 대피절차 마련, 영상회의를 통한 신속한 상황판단 체계 구축, 외국인 사상자 통보절차 마련 등

○ 매뉴얼 관리시스템 현황

- 매뉴얼의 효율적 활용·관리를 위해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사업('15~'16년)을 통해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내에 매뉴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매뉴얼 작성 기관 : 403개 기관(중앙행정기관 29, 지방자치단체 245, 공공기관 129)

※ 매뉴얼 작성·보유 현황 : 총 9,230개(표준 41, 실무 326, 행동 8,863개, '19.6.30.기준)

- 매뉴얼에 작성된 기관대응수칙과 개인대응수칙을 시스템에 입력

- 재난유형별·작성기관별 계정정보(아이디, 비밀번호)를 통합 관리중

< 매뉴얼 관리시스템의 문제점 >

○ **(매뉴얼 개정등록 불편)** 現매뉴얼 관리시스템은 매뉴얼 작성기관 담당자가 승인받은 매뉴얼 전자파일(hwp, pdf 등)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운영

- 매뉴얼 표준안 개정 시 9천여개의 각 매뉴얼별 담당자가 파일을 수정하고 승인받은 후 개별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행정력 낭비 초래

○ **(시스템을 통한 매뉴얼 승인 불가)** 매뉴얼 관리시스템에 승인하는 기능이 없어 9천여개의 매뉴얼을 공문을 통한 검토·승인 중

- 승인업무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아 이력관리 및 승인 현황 파악 곤란

○ **(NDMS 내 시스템 간 연계 부족)** 매뉴얼을 통합적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NDMS에 구축된 다양한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지만 NDMS 내에 다른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통합적인 재난대응방안 부재

○ **(비상연락망 수동 변경)** 인사이동,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비상연락망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매뉴얼 담당자가 재난유형별·기관별 비상연락망을 개별 확인 후 매뉴얼에 수기로 입력하여 비효율적

○ **(모바일 조회화면 불편)** 모바일 재난관리포털(NDMS)을 통해 매뉴얼을 조회할 수 있으나, 앱설치절차가 복잡하고,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한글파일 전체화면 조회로 인한 가독성 저하 등으로 실제 재난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움

⇨ **기존 NDMS 내에 구축된 매뉴얼 관리시스템에서는 개선이 불가한 한계사항이 있어 업무재설계를 통한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시스템 신규 구축 필요**

□ 주요내용

○ 기간/예산 : '21년(계약일로부터 3개월) / 1.28억

○ 지원형태 : 자체수행(정보화사업)

○ 사업내용 : 매뉴얼 시스템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BPR/ISP) 수립

- HTML 기반 전자매뉴얼 작성, 매뉴얼 승인 체계 및 공유체계 마련, NDMS 시스템 연계 및 비상연락망 자동 현행화, 모바일 매뉴얼 조회 등

<매뉴얼 관리시스템 신규구축을 통한 개선효과>

구분	As-Is	To-Be
매뉴얼 작 성	- 매뉴얼 제·개정시 9천여개 매뉴얼을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개정	- HTML 기반 매뉴얼 편집기로 작성내용을 모듈화하여 일괄반영 가능
매뉴얼 승 인	- 공문을 통한 승인처리로 업무지연 발생	- 시스템에 승인기능을 탑재하여 신속한 승인처리를 통한 업무효율 제고
매뉴얼 공 유	- 시스템을 통한 공유가 불가하여 상위기관 및 타기관 매뉴얼을 공문으로 공유	- 상위기관(표준,실무) 및 타기관(지자체, 공공) 매뉴얼 열람이 가능토록 기능 개선
모바일 활 용	- 모바일 활용을 위한 앱 설치과정이 복잡	- HTML기반으로 매뉴얼이 작성되어 별도 앱 설치 없이 매뉴얼 조회 및 검색 가능
비 상 연락망	- 인사이동, 조직개편시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연락처 업데이트	- 비상연락망을 인사시스템(하모니, 새올)과 연계하여 담당자 변경시 매뉴얼에 자동반영

3) 사업 집행절차

ㅇ위기관리 매뉴얼 관리시스템 신규 구축

재난협력실

2021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1.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 487
2. 여름철물놀이인명피해경감(보조) ····· 496
3. 국가기반체계관리 ····· 499
4. 사회재난교육훈련 및 역량지원강화 ····· 502
5. 재난원인조사 및 미래대형복합재난대비 ····· 505
6. 극한재난대응기반기술개발(R&D) ····· 508
7. 재난안전취약핵심역량도약기술개발 ····· 512
8. 생활안전예방서비스기술개발(R&D) ····· 515
9. 재난안전산업육성지원(R&D) ····· 519
10. 국민수요맞춤형 생활안전연구개발(R&D) ····· 522
11. 지역맞춤형재난안전문제해결기술개발지원(R&D) ····· 526
12. 재난안전부처협력기술개발(R&D) ····· 530
13.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구축(정보화) ····· 536
14. 사회복합재난대응 기술개발(R&D) ····· 539
15. 자연재난 정책 연계형 기술개발(R&D) ····· 544
16. 취약계층·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 기술개발(R&D) ····· 547
17. 지능형 상황관리 기술개발(R&D) ····· 551
18. 재난피해 복구 역량 강화 기술개발(R&D) ····· 554

사 업 명
1.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26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일반	020	025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31	301
명칭	안전관리	안전점검 및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1,258	2,089	2,055	104,059	7,259	7,259	5,204	253.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안전대진단 운영) 국가안전대진단의 추진으로 다양한 안전관리주체의 참여를 통해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개선하여 안전사회 구현
- (안전신문고 및 신고관리단 운영) 안전신문고를 통한 생활 속 안전위험요인 신고·개선하여 국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강화
-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사고확률이 높은 분야에 대한 체계적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 (안전기준심의회 운영 및 안전기준 연구) 안전기준의 체계적·통합적 관리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분야별 안전관리 수준 격차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안전제도 및 유·도선제도 개선) 유·도선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
- (노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지원) 선령 초과 유·도선의 대체 건조 시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융자 금리 일부 지원
- (안전반부패협의회 운영) '18년에 발생된 제천 복합건물 및 밀양 병원 화재사고 등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안전문제를 부패로 규정하고, 범정부적인 감시역량 결집과 반부패환경 조성을 위한 '범정부 안전반부패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안전부패 실태 조사, 분석, 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안전부패 경감을 위한 조사, 연구, 그 밖의 안전부패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함
-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플랫폼) 위험·노후시설이 많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IoT센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위험·노후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재난 신고 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2조(정부합동안전점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2조3(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7(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조사 전담기구 간 협의회 구성·운영 등)
- 국무총리훈령 제696호(안전신고관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전자정부법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 「유·도선법」 제20조(안전검사), 제21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6조(보조금의 지급 등)

② 추진경위

<국가안전대진단 운영>

○ 세월호 사고 이후 총체적 안전점검('14.4.28~5.18, 1,785개소) 실시

○ '15년부터 집중기간(2~4월 중)을 설정하여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 2015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15.2.16～4.30, 74일, 107만개소)
-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16.2.15～4.30, 76일, 49만개소)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17.2.6～3.31, 54일, 36만개소)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18.2.5～4.13, 68일, 34만개소)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19.2.18～4.19, 61일, 16만개소)
-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20.6.10～7.10, 31일, 4만7천개소)

○ 국정과제(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17.7월)

- 국가안전대진단이나 안전신문고를 통한 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

○ 국가안전대진단 지자체 평가 실시

- 지자체별 대진단 평가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공개('18.5.10, 총리 지시사항)
-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후 결과에 대한 지자체 평가등급을 언론에 공개하고 등급을 세분화해서 단체장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19.3.7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 총리 말씀)

<안전신문고 및 안전신고관리단 운영>

- 을지국무회의(대통령 지시, '14.8.19)

< 회의 결과 >

▪ "우리 생활주변에 안전 취약요인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시설 이용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이러한 사항을 신고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 사이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안전문제 신고 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8.19, 을지국무회의)

- 안전신문고 포털 개통('14.12.12), 앱 개통('15.2.6)
- '16년 기능고도화 사업 수행('16.5～10월), 개통('16.11.20)
- 안전신고정보 분석시스템 구축('16.8～'17.3월), 개통('17.3.20)
- 행정안전부 4차산업혁명 재난안전분야 중점과제, 빅데이터 분석과제 및 지능형 정부 구현과제로 선정・추진('17.7월)
- 영어 안전신고 서비스 개시('17.12.12)
- 안전보안관의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신고접수 기능 운영('18.4월~)
- 안전신문고에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19.4월～)
- 생활불편신고를 안전신문고로 통합 추진('20.1월, 장관결재)
- 안전신문고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추진('20.1월 국무회의 대통령 보고 / '20.6월 시행)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 (설치배경) 부산사격장 화재사고('09. 11월)을 계기로 범정부적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제도 개선 및 의식선진화 종합대책」에 따라 출범

○ (설치경위)

-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정부합동점검단 창설 : '10. 1월
- 안전취약분야 발굴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상시적 안전점검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총리훈령으로 운영 : ~ 2013.7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활동근거(제32조) 마련 : 2013.8월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조직 이관(국무총리→국민안전처) : 2014.11월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조직 이관(국민안전처→행정안전부) : 2017.7월

<안전기준심의회 운영, 안전기준 조사・분석 연구>

○ (추진 배경) 안전기준을 각 부처별로 개별 관리함에 따라 안전기준 부재나 상호 간 상충 등의 문제가 있어 안전기준 심의회를 통해 관리 추진

○ (추진 경위)

- 안전기준 심의회 운영 근거 마련('14.8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안전기준 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발령('15.5월) 및 위원 구성('15.6월)
- 안전기준에 대한 전문 분야별 5개* 분과위원회 구성('17.9월)

  * ①환경 ②건축시설·산업·공사장 ③교통 ④에너지·정보통신 ⑤보건·식품·생활·여가 등

- 전 부처 소관 안전기준 조사 및 심의·등록 추진('17.9월~'19.9. / 1,328개)

  * ('17년) 443개 → 제3회 심의회('17.8.29.) 200개, 제4회 심의회('17.12.15.) 243개
  * ('18년) 237개 → 제5회 심의회('18.5.8.) 80개, 제7회 심의회('18.6.8.) 157개
  * ('19년) 648개 → 제8회 심의회('19.4.24.) 430개, 제9회 심의회('19.9.18.) 218개

<안전제도 및 유도선제도 개선>

○ (추진 배경) 유·도선 안전관리 지도·점검, 제도 개선 및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운영

○ (추진 경위)

- 유·도선 안전관리 중앙합동점검(봄・가을철)
- 유·도선 제도 개선, 발굴을 위한 안전혁신 TF회의
-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구성・운영('17.3월~)

<노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 (추진 배경) 유·도선 선령기준 제도 도입으로 2023년 다량의 폐선이 예상됨에 따라 내수면 선박이용자에 대한 차질 없는 편익제공 및 선박 대체 건조 시 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해소대책 수립 추진

○ (추진 경위)
- 노후 유·도선 현대화사업 업무협약('19.5.30)
- 노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침, 후보자 선정기준 등 마련('19.12월)
- 노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침 제정 및 시행 1차 공고('19.12.31.)
-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1차 선정('20.2.18.) - 5개업체 5척
-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2차 선정('20.4.16.) - 2개업체 2척

<안전반부패협의회 운영>

○ (추진 배경) 제천 복합건물 및 밀양 병원화재 사고를 계기로 고질적인 안전문제를 부패의 관점으로 살필 필요성이 제기되어 '안전부패 방지방안'을 수립 추진

*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시도 안전감찰 조직 신설 등 2개 분야 6대 세부 과제를 마련

○ (추진 경위)
- 안전부패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시·도 안전감찰 전담조직 신설* 완료('18.10.1)

* 모든 시·도에 안전감찰팀(3~6명) 구성(총 60명) 및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18.10.4)

- 안전분야 부패방지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13개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출범(2018.10.30.)
  · 대통령 주재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추진성과를 보고('18.11.20)하고, 그 결과 안전부패가 9대 생활 적폐 중의 하나로 지정되어 정부 반부패 과제로 관리
- '19년부터 공기업 재난안전사고 등을 감안하여 범정부 협의회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인 공기업(43개) 분과가 신설되어 참여기관이 확대(30개→73개) 되었으며,
  · 시·도에는 시·군 감사부서와 지방공기업이 참여하는 시도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출범 예정으로 촘촘한 안전감시 체계 구축 기반 마련

< 협의회 추진경과 >

▶ (제1차 협의회_'18.10.30) 안전분야 부패 근절을 위한 범정부 협의회가 13개 중앙부처 감사관과 17개 시·도 재난실장 등을 위원으로 하여 공식 출범

▶ (제2차 협의회_'19.04.17) KTX탈선, 청년근로자 압착사고 등 공공분야의 잦은 사고를 감안, 공공기관(43개)의 상임감사를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

▶ (제3차 협의회_'19.11.05)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중점과제에 대한 안전감찰 성과를 공유하는 등 협의회가 정례적 운영체계로 자리 잡는 계기를 마련

▶ ('20년「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포럼_'20.01.15) '19년도 성과에 대한 정부포상*, '20년도 일정 공유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협의회 정체성 고취

* 정부포상 12점 : 대통령 표창 2점, 국무총리 표창 1점, 장관 표창 9점

▶ (제4차 협의회_'20.06.02)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 중앙부처와 시·도는 중점과제에 대한 안전감찰과 감염병 재난대응 지원(내부통제, 점검 등)을 병행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3) 사업 집행절차

<국가안전대진단 운영>

i) 행정안전부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의견을 들어 당해연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함

ii)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부처는 소관 분야에 대한 점검대상 및 점검방식 등을 포함한 당해연도 해당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자체에 통보함

iii) 지자체는 관계 부처의 해당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및 행정안전부의 대진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수립함

iv) 수립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에 따라 관계 부처 및 지자체는 소관 점검대상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로 통보함

v) 행정안전부는 기관별(부처·지자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등에 보고함

vi) 부처·지자체는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후속조치를 수행하며,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평가, 보수·보강 지원, 개선방안 마련 등을 추진함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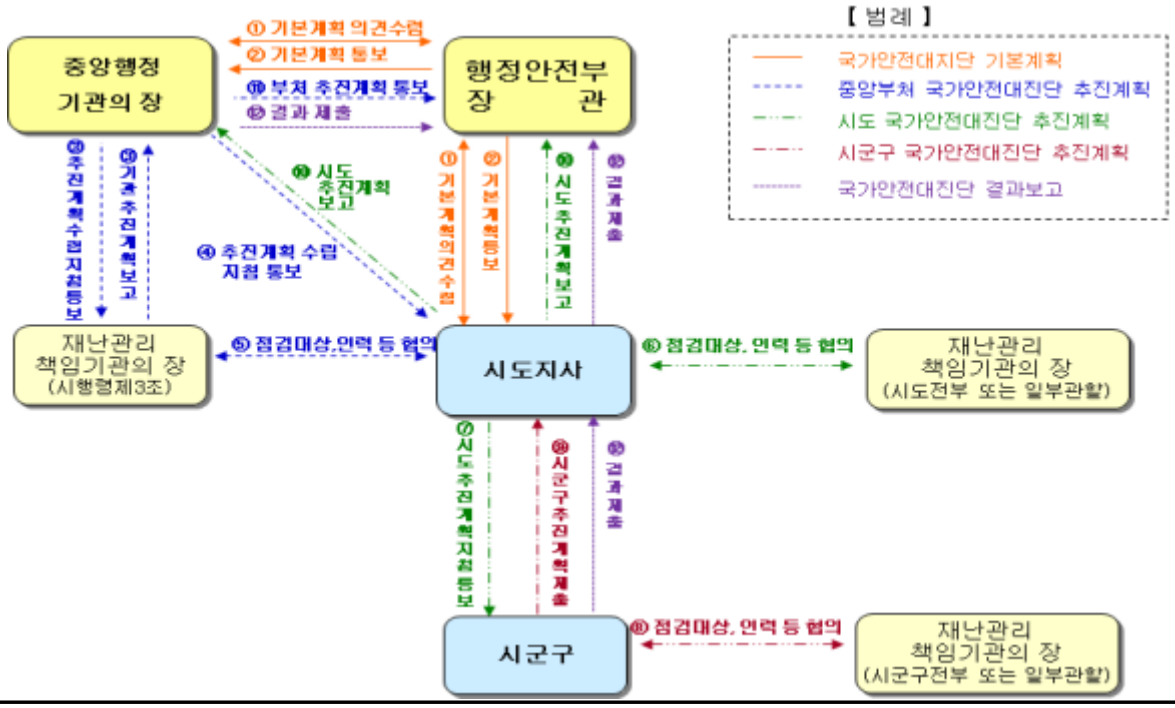

<안전신문고 및 안전신고관리단 운영>

○ 안전신문고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	보안성 검토	⇨	일상감사	⇨	기본계획 보고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조달발주 의뢰	⇨	조달공고	⇨	사업자선정	⇨	사업 수행
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		행정안전부

○ 안전신고 접수・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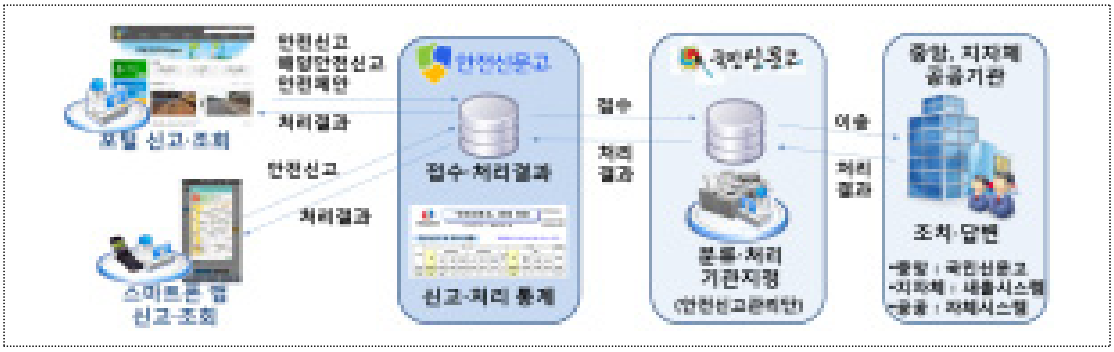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 점검 프로세스

사전 준비	⇨	점검 실시	⇨	결과 분석·보고	⇨	후속조치
▸ 점검 구상 ▸ 안전관리체계 분석		▸ 관계기관, 전문가 참여		▸ 정책적 대안 제시 ▸ 관계기관 통보		▸ 대책 마련(소관 부처) ▸ 이행실태 점검·평가

○ 점검결과 조치

- 관계기관 통보, 보완・개선 조치 요구
- 개선조치 사항은 결과를 제출토록 하여 이행실태를 확인

<안전기준심의회 운영, 안전기준 조사 · 분석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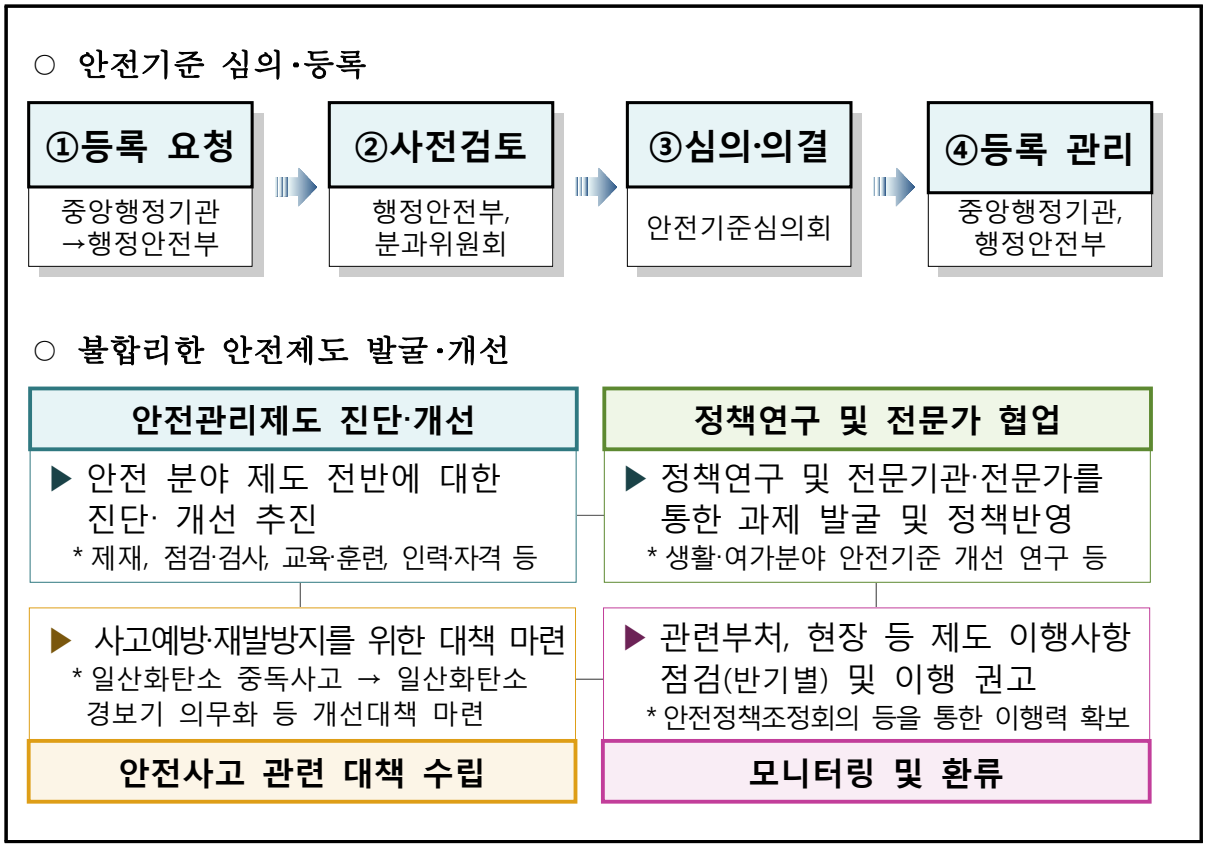

<노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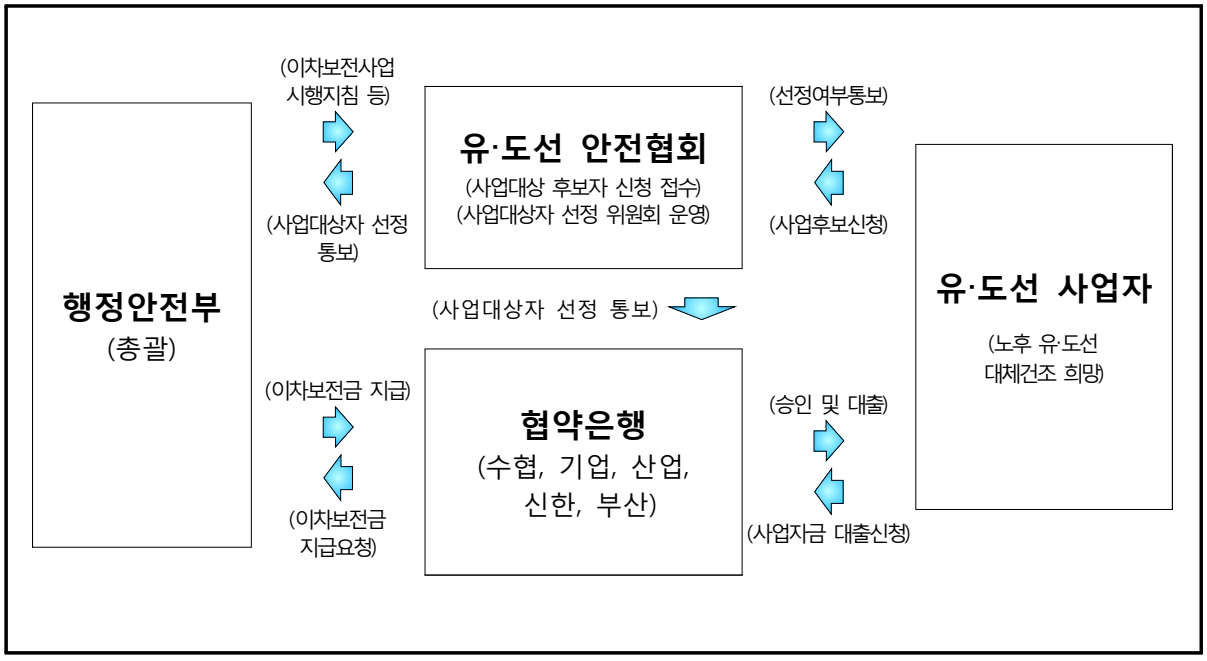

사 업 명
2. 여름철물놀이인명피해경감(보조) (2632-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32	307
명칭	안전정책	생활안전개선추진	여름철물놀이인명피해경감(보조)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여름철물놀이인명 피해경감(보조)	290 (370)	356	356	774	456	100	↑28.1

※ 국민안전의식 선진화(2632-301)에서 이관된 홍보예산액(80백) 포함하여 '( )'로 표기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매년 여름철 물놀이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예산 지원 등 정부차원의 총력 대응 결과 인명피해가 크게 감소('08년 155명 → '20년 25명)
- 하천, 산간계곡 등 물놀이 취약지역에 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구명조끼·구명환·구명로프) 등 안전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인명피해 최소화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② 추진경위

◇ ´09년 이후「물놀이 인명피해 줄이기」추진으로 사망자 대폭 경감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사망자수 (명)	143	155	68	57	52	25	37	24	36	35	37	33	28	25

- 총리실 주관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관계부처 합동 회의개최(´08.9.26)
-「행정안전부(舊, 소방방재청)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추진" 사무 분장('09년~현재)
-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수립·추진('09년~현재)
  · '09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 사전대비(4.15~5.31) 및 대응기간(6.1~8.31) 설정, 중앙·지자체 총력 대응
  · 과거 인명피해 발생장소 등 물놀이 취약지역 집중관리
  · 물놀이 안전시설 확충(국비 지원)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지자체 예산)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홍보 다양화(영화관, 라디오, 전광판, SNS 등)
  · 자치단체장의 물놀이안전 활동 강화(캠페인, 안전관리실태 점검 등)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사업규모 :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시설 설치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국비 50%)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 사업 집행절차

국고보조사업 예산계상신청 (전년도 5월)	→	국고보조사업 가내시 (전년도 10.15한)	→	지자체 예산 확보 (전년도 10~12월)	→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전년도 12월중)	→	국고보조사업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1~2월)	→
보조금의관리에 관한법률 제4조		보조금법 제12조		보조금법 제13조		보조금법 제12조		보조금법 제 16~19조	

→	안전시설 설치 (3~6월) 점검·확충 (7~8월)	→	수시·완료 실적보고	→	물놀이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 및 포상 (9~12월)	→	국고보조사업 결산 (다음년도 3월)	→	국비 잔액 반납 (다음년도 12.31한)
	사업추진지침		보조금법 제27조				보조금법 제28조		보조금법 제31조

사 업 명
3. 국가기반체계관리 (27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3	301
명칭	재난관리	재난경감활성화	국가기반체계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국가기반체계관리	187	402	402	1,592	412	412	10	2.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기반시설 재난관리 평가 등 관리)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반시설 관리기관에 대한 객관적·효율적 평가업무를 수행, 평가 결과의 환류 및 컨설팅을 통해 업무 전문성 제고와 자율·책임행정 강화
- (민간다중이용시설 매뉴얼 작성 및 훈련관리)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대비 매뉴얼 관리 및 훈련 강화를 통한 초기 대응능력 제고,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교육 강화를 통해 안전관리 역량 향상
- (재난현장 현장상황관리반 및 중앙수습지원단 운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 재난 현장과 유기적 협조 및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 재난 수습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수습지원단의 파견 등)

② 추진경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04.3.11) : 국가기반체계 마비를 재난으로 분류 및 관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07.1.26) : 재난관리체계의 평가, 교육, 훈련, 재난관리 표준화 등을 통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17.1.17) :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시행 등
- 행정안전부 조직 개편, 사회재난대응정책관실 및 수습지원과 신설('18.9.18)
- 재난현장 수습지원 운영체계 개선방안 마련('19.1.8.)
- 강원도 동해안 일원 산불피해 현장 중앙수습지원단 가동('19.4.4~4.19)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2년~계속
- 사업규모 : 11개 분야 151개 기관, 340개 국가기반시설, 민간다중이용시설 2,910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평가 실시

평가실시계획 수립·통보 (행정안전부→ 주관부처)	⇒	자체평가 실시 (각 주관부처)	⇒	현장확인평가 실시 (행정안전부,합동평가단)	⇒	평가결과 심의·확정 (평가심의위원회 개최)
8월		9월		10월		11월

○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우수기관 포상 추진

포상계획 수립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	포상 규모협의 (행자부 상훈담당관실)	⇒	포상대상 심의·의결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포상 및 포상금 지급 (행정안전부)
연 초		9월		11월		12월

사 업 명
4. 사회재난교육훈련 및 역량지원강화 (2735-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0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5	300
명칭	재난관리	재난관리지원	사회재난교육훈련및 역량지원강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사회재난교육훈련 및 역량지원강화	508	569	569	661	463	△106	△18.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회재난에 대한 중앙 및 지자체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대응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내부직원의 재난대응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재난 아카데미 실시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직원의 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회재난 교육체계 개편
- 관계기관 간 상시 협의·조정체계인 재난 유형별 사회재난 정책협의회 운영
- 해외 선진사례 분석 등을 통해 사회재난 관리체계 및 법·제도 개선방안 수립·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37조의2(재난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3조의2(재난협력실)

② 추진경위

- ‘14.11.19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신설
- ‘17.07.26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정관 특수재난협력관 신설
  * 특수재난에 대한 재난대응 업무 이관(재난관리실 → 재난안전조정관실 특수재난협력관)
- ‘18.09.18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신설
  * 특수재난에서 사회재난으로 업무범위 확대(재난안전조정관실 특수재난협력관 → 재난협력실)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6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

사회재난 교육 시행계획 수립	⇒	사회재난 교육과정 운영	⇒	교육결과 점검·분석 및 후속조치
연초(2월)		연내(~11월)		하반기(12월)

○ 사회재난 관리제도 마련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사업 수행	⇒	사업 종료 및 제도 개선방안 추진

사 업 명
5. 재난원인조사 및 미래대형복합재난대비 (2735-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5	304
명칭	재난관리	재난관리지원	재난원인조사및 미래대형복합재난대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재난원인조사 및 미래대형복합재난대비	400	303	303	308	303	303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난사고 원인조사 체계 구축 및 조사단 운영) 유사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해 재난안전 분야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재난원인조사단(반) 운영과 주요 재난· 사고의 객관적인 조사 및 후속조치 점검 등을 하는 것임
- (재난원인조사분야 협업체계 구성 및 운영) 재난원인조사분야별 23개 국가재난조사기관 협의회 기관 간 협업 체계 지속 운영을 지원하는 것임
- (미래대형복합재난 연구분야 협업체계 구축) 17개 중앙부처, 17개 광역 시·도가 참여하는 「중앙·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의체」 운영을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재난원인조사),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3 및 시행규칙 19조의 5(재난원인조사 등)

② 추진경위

- 2013.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규정 신설
- 2014. 1.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관련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실시
- 2014.11.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전담조직 및 미래·대형복합재난 대비를 위한 조직(조사분석관실) 신설
- 2017. 1.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관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 2017. 7.「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호)」 제정
- 2018. 12.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69호)」 제정
- 2019. 1. 「국가재난조사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19. 4. 17개 부처, 17개 시·도 참여「중앙-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의체」 신설·운영
- 2020. 1.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관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3)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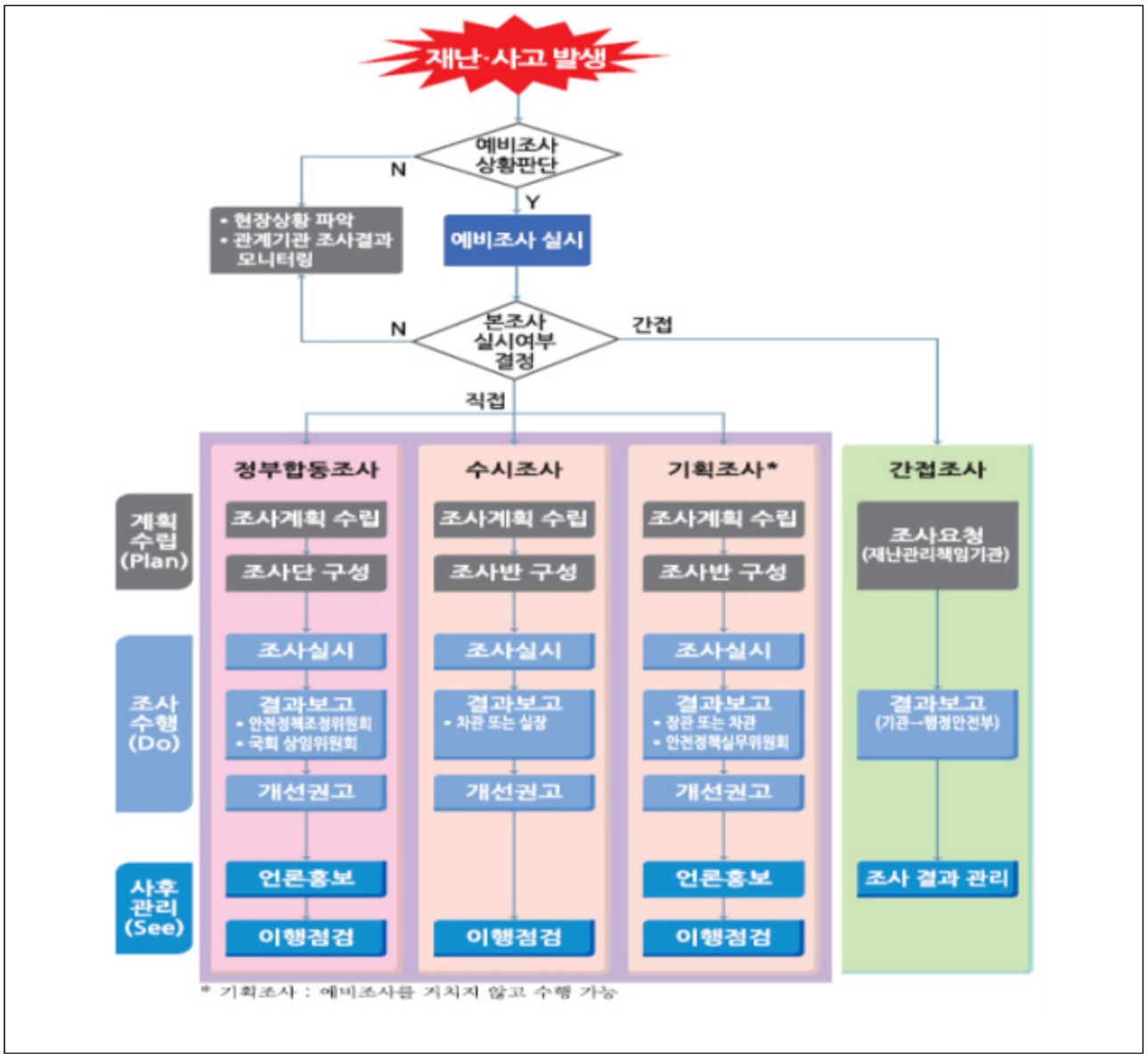

사 업 명
6. 극한재난대응기반기술개발(R&D) (2931-61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재난협력정책관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900	2931	613
명칭	재난안전기술개발	재난안전기술개발	극한재난대응기반기술개발(R&D)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극한재난대응 기반기술개발(R&D)	8,718	9,700	9,700	9,225	8,625	8,625	△1,075	△11.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진, 메가가뭄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극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대응기술 및 상황관리 지원기술 개발 추진
- (대형복합 재난대응 기반기술개발) 최근 경험하지 못한 가뭄, 지진 등 극한·복합 재난 발생의 빈발로 인해 이를 위한 기반기술(시나리오, 위험평가, 저감공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 수행
- (지진대비 안전인프라 기술개발) 활성단층 관련 공동 사업단 지속 추진 및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와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기반 지진피해 복구 기술 개발에 관한 신규 연구 수행 등 지진관련 연구개발 강화
- (대형복합재난대비 상황관리 지원기술)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재난상황관리, 재난정보·자원의 관리 및 공유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 「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 「자연재해대책법」 제29조 (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연구)
-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2 (해일피해경감 조사·연구)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2조(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활용 등)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 보강 추진 등)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3조(단층 조사 · 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

② 추진경위

- ('17.1.) 재난관리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관리지원기술개발' 사업 추진
- ('18.1.) 뚜렷한 사업 목적성 확보·특성화를 위해 '17년'재난관리지원기술개발' → '18년'극한재난대응기반기술개발'로 사업명 변경
- ('18.1.) 과기정통부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 사업과 협업형 R&D 추진
  ※ 대형복합재난대응기반기술개발內 시나리오기반 대형복합재난 확산예측 기술 개발
- ('19.4.) '다부처공동 지진단층조사 R&D(행안부, 원안위, 과기정통부)' 추진
  ※ 지진대비안전인프라기술개발內 한반도 단층구조선의 조사 및 평가기술 개발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7년～‘21년(5년)
- 사업규모 : 2021년 7개 과제(계속) 연구수행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10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대기업	50% 이내	
중견기업	60% 이내	
중소기업	75% 이내	

3)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수행내용	주체
과제 발굴	○ 재난·안전 관련계획, 기획연구 결과, 수요조사 결과 토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업계획 수립·공고	**○ 확정된 예산을 토대로 당해 연도 사업계획 수립·공고** **○ 신규과제 연구기관 선정 공고**	행정안전부
과제 신청·접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주관연구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전검토	○ 신청자격, 제출서류, 과제 중복성 등 검토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선정 평가	○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전문 분야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여 과제 평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산·학·연 전문가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종합결과서 작성 (가·감점 부여)	○ 평가단 평가 결과에 가·감점을 합산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합결과서 작성**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원대상기관 확정·공고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등을 최종 검토, 주관연구기관 확정·공고	행정안전부
협약체결	○ 개별협약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주관연구기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업수행·관리	○ 주관연구기관 책임 하에 사업수행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진도보고 및 점검	○ 진도보고서 제출(주관연구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진도관리(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최종 평가 연차평가 : 2년이상 계속과제 단계평가 : 2+3, 3+4 등 과제 종료평가 : 최종 종료 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전문 분야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여 과제 평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산·학·연 전문가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 ○ 평가단 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종합점수 및 등급을 결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업비 정산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 및 정산처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 기술료 징수 협약체결 등 ○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주관연구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 업 명
7. 재난안전취약핵심역량도약기술개발(R&D) (2931-61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일반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900	2931	617
명칭	재난안전기술개발	재난안전기술개발	재난안전취약핵심역량 도약기술개발(R&D)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재난안전취약핵심역량도약기술개발(R&D)	4,032	4,230	4,230	4,100	3,430	3,430	△800	△18.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난관리 영역 중 기술수준이 취약한 교육·훈련, 긴급대피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기술수준 상향 평준화 추진
- (시뮬레이션 기반 조직단위 재난훈련 기술) 재난 상황 시 정부기능 유지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비상상황에 대비한 시뮬레이션 기반의 재난안전 교육훈련 기술개발
- (도시지역 긴급대피 의사결정 지원기술) 급경사지 재해평가, 승강기 위험상황 확인 기술, 지능형 위기경보 기술 등 도시지역 재난관리 의사결정 지원기술 개발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21조(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등)
- 「비상대비자원관리법」제14조(훈련의 실시)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1조(데이터베이스의 표준지침)

② 추진경위

- ('16.1.) 재난안전분야 기술수준조사 수행
- ('17.4.) 「국민안전처 R&D 중장기 로드맵 및 혁신방안」통해 추진전략 수립
- ('18.1.) 재난관리 모든 영역의 기술수준 상향 위해 신규사업 추진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8년～'22년(5년)
- 사업규모 : 2021년 4개 과제(계속) 연구수행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10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대기업	50% 이내	
중견기업	60% 이내	
중소기업	75% 이내	

3)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수행내용	주체
과제 발굴	○ 재난·안전 관련계획, 기획연구 결과, 수요조사 결과 토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업계획 수립·공고	**○ 확정된 예산을 토대로 당해 연도 사업계획 수립·공고** **○ 신규과제 연구기관 선정 공고**	행정안전부
과제 신청·접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주관연구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전검토	○ 신청자격, 제출서류, 과제 중복성 등 검토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선정 평가	○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전문 분야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여 과제 평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산·학·연 전문가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종합결과서 작성 (가·감점 부여)	○ 평가단 평가 결과에 가·감점을 합산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합결과서 작성**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원대상기관 확정·공고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등을 최종 검토, 주관연구기관 확정·공고	행정안전부
협약체결	○ 개별협약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주관연구기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업수행·관리	○ 주관연구기관 책임 하에 사업수행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진도보고 및 점검	○ 진도보고서 제출(주관연구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진도관리(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최종 평가 연차평가 : 2년이상 계속과제 단계평가 : 2+3, 3+4 등 과제 종료평가 : 최종 종료 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전문 분야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여 과제 평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산·학·연 전문가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 ○ 평가단 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종합점수 및 등급을 결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업비 정산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 및 정산처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 기술료 징수 협약체결 등 ○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주관연구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 업 명
8. 생활안전예방서비스기술개발(R&D) (2931-61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일반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900	2931	618
명칭	재난안전기술개발	재난안전기술개발	생활안전예방서비스기술개발 (R&D)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생활안전예방 서비스기술개발(R&D)	3,670	5,600	5,600	4,900	4,700	4,700	△900	△16.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언제 어디서나 생활 속 안전 확보 및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기술표준, 안전정보를 융합한 지능형 플랫폼, 실감형 재난안전 교육콘텐츠 개발 및 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등 추진
-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기술기준 및 표준화) 국민 맞춤형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기술 및 서비스 표준화, 법·제도 개선 등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
-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플랫폼 기술개발) 국민이 생활안전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보 제공에 참여하는 크라우드 소싱 및 기존 (공공)시스템 안전정보를 수집·분석·판단·예측 기술 개발
- (생활안전 체험교육 콘텐츠 기술개발) 국민 참여형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한 VR/AR기술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및 재난대피 교육 콘텐츠 개발
-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해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지원을 위하여 부처협업기반 긴급대응연구체계(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6(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② 추진경위

- ('17.10.19.)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방안' 마련(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18.2.23.) '제3차 재난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전략 I.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일환으로 신규 사업추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18.3.14.)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에 따른 긴급대응연구 지원체계 검토
- ('18.6.25.)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의 전략 I. '국민이 원하는 문제에 전략적 투자가 가능한 범부처 협력 거버넌스 구축' 사회문제 긴급대응연구 추진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년～‘23년 (5년)
- 사업규모 : 2021년 3개 과제(계속) 연구수행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10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대기업	50% 이내	
중견기업	60% 이내	
중소기업	75% 이내	

3)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수행내용	주체
과제 발굴	○ 재난·안전 관련계획, 기획연구 결과, 수요조사 결과 토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업계획 수립·공고	**○ 확정된 예산을 토대로 당해 연도 사업계획 수립·공고** **○ 신규과제 연구기관 선정 공고**	행정안전부
과제 신청·접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주관연구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전검토	○ 신청자격, 제출서류, 과제 중복성 등 검토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선정 평가	○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전문 분야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여 과제 평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산·학·연 전문가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종합결과서 작성 (가·감점 부여)	○ 평가단 평가 결과에 가·감점을 합산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합결과서 작성**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원대상기관 확정·공고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등을 최종 검토, 주관연구기관 확정·공고	행정안전부
협약체결	○ 개별협약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주관연구기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업수행·관리	○ 주관연구기관 책임 하에 사업수행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진도보고 및 점검	○ 진도보고서 제출(주관연구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진도관리(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최종 평가 연차평가 : 2년이상 계속과제 단계평가 : 2+3, 3+4 등 과제 종료평가 : 최종 종료 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전문 분야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여 과제 평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산·학·연 전문가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 ○ 평가단 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종합점수 및 등급을 결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업비 정산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 및 정산처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 기술료 징수 협약체결 등 ○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주관연구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 업 명
9. 재난안전산업육성지원(R&D) (2931-61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재난협력정책관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900	2931	619
명칭	재난안전기술개발	재난안전기술개발	재난안전산업육성지원(R&D)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재난안전 산업육성지원(R&D)	8,255	4,650	4,650	8,830	4,830	4,830	180	3.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난안전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고 재난안전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고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위하여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재난안전산업 육성 추진
-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 재난안전R&D로 개발된 유망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위한 후속 연구 지원 강화 및 다각화, 공공 R&D의 시장성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2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 「자연재해대책법」제59조(방재기술의 실용화)

② 추진경위

- ('15.5.)「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16년 일몰사업 지정(舊미래부)
- ('17.1.) 일몰형 사업 기간연장 적정성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신규 사업 기획 및 추진
- ('17.4.)「국민안전처 R&D 혁신방안 및 추진전략」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전략 수립
- ('18.1.) '재난안전산업육성지원(R&D, '18.~'22.)' 신규 사업 착수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8년～'22년 (5년)
- 사업규모 : 2021년 21개 과제(계속11, 신규10) 연구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관련 중소기업,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10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대기업	50% 이내	
중견기업	60% 이내	
중소기업	75% 이내	

3)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공고	○ **확정된 예산을 토대로 당해 연도 사업계획 수립·공고** ○ **신규과제 연구기관 선정 공고**	행정안전부
과제 신청·접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주관연구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사전검토 및 후속조치	○ 공모과제에 대한 신청·접수 시 신청기관의 자격, 제출서류 등 **신청기관의 적합성 검토**(적합/부적합/보완)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 서류 보완 요청 - 서류 부적합 및 서류 미보완 시, 접수 취소(탈락) 조치 ○ **과제 중복성 검토**(NTIS 활용)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서류 보완	○ 신청기관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요청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 서류 보완 및 최종** 제출	신청기관
최종 접수 (평가 대상 확정)	○ 기한 내 제출된 **보완 자료 검토 후, 최종 접수**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 무효처리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연구개발과제 서면평가	○ **경쟁률(5배수 초과)에 따라 서면평가 시행** - 최대 5배수까지 대상 선정 ※ '재난안전 기술사업화 지원' 내역사업에 한함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현장실태조사	○ 신청기관 방문하여 **현장실태 확인** ※ '재난안전 기술사업화 지원' 내역사업에 한함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연구개발과제 발표평가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여 **과제 발표 평가 실시**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종합결과서 작성 (가·감점 부여)	○ 평가단 평가 결과에 가·감점을 합산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합결과서 작성**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지원대상기관 확정·공고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등을 최종 검토, 주관연구기관 확정·공고	행정안전부

과제 중복성 검토자료 제공

사 업 명
10. 국민수요맞춤형 생활안전연구개발(R&D) (2931-62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900	2931	621
명칭	재난안전기술개발	재난안전기술개발	국민수요맞춤형 생활안전연구개발(R&D)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R&D)	4,200	7,718	7,718	13,650	10,469	10,469	2,751	35.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일반국민, 연구자 등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재난안전 불안요소를 해결하는 국민 체감형 R&D 사업 발굴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①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5조의 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② 추진경위

- 국민과 지역의 재난 안전 수요와 기존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촉진('21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 ◆ 국민, 현장요원,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와 기존 연구 성과를 연계·활용하는 국민 체감형 R&D 지원 강화
-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국민수요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발굴, 지원
- ('18.5.25.~6.8.) 대국민 설문조사 및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4대 사업추진분야* 선정
  - *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지진발생시 대피안내, 공동주택 등에서 화재발생시 경보 및 대피 유도, 산업현장 등 시설물 안전점검 및 교육훈련, 범죄자 정보 제공 및 성범죄 신고
  - ※ 대국민 설문실시 287명 응모, 아이디어 122건 제출
- ('18.6.12.~6.18.) 국민 체감형 생활 속 문제해결 연구과제 제안공모
  - ※ 대국민 설문실시 43개 연구과제 응모

- ('18.6.20.～6.22.)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 사업 부처 의견 조회
  ※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 등 사업공동기획 참여
- ('18.6.22.)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 사업 열린 토론회 개최
  ※ 서울역 대회의실 / 연구 및 아이디어 제안자, 일반시민, 전문가 등 참석
- ('18.6.~7.) 사업 기획보고서 및 제안요청서 등 작성
- ('19.1.~2.) '19년 연구과제 선정 공고(신규과제 4건)
- ('19.4.19.) 협약체결 및 연구착수(한국지역정보개발원↔연구기관)
- ('19.4.22.~5.17.) 2020년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R&D 아이디어 공모
  ※ 아이디어 공모(194건)→ 전문가 멘토링 → 열린토론회를 통해 '20년 신규과제 발굴
- ('20.4.29.) 신규과제 협약체결(한국지역정보개발원↔연구기관)
- ('20.3.16.~4.29.) 생활안전 아이디어 공모
  ※ 아이디어 공모(119건) → 광화문 1번가 접속 후 국민 투표 실시(6.11~6.19.)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22년(4년)
- 사업규모 : '21년 9개 과제(계속), 3개 과제(신규) 연구수행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총괄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10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대기업	50% 이내	
중견기업	60% 이내	
중소기업	75% 이내	

3)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수행내용	주체
과제 발굴	○ 국민 수요 및 아이디어 공모, 연구과제 도출 및 기획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사업계획 수립·공고	**○ 확정된 예산을 토대로 당해 연도 사업계획 수립·공고** **○ 신규과제 연구기관 선정 공고**	행정안전부
과제 신청·접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주관연구기관→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사전검토	○ 신청자격, 제출서류, 과제 중복성 등 검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선정 평가	○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전문 분야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여 과제 평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산·학·연 전문가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종합결과서 작성 (가·감점 부여)	○ 평가단 평가 결과에 가·감점을 합산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합결과서 작성**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원대상기관 확정·공고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등을 최종 검토, 주관연구기관 확정·공고	행정안전부
협약체결	○ 개별협약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주관연구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사업수행·관리	○ 주관연구기관 책임 하에 사업수행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진도보고 및 점검	○ 진도보고서 제출(주관연구기관→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진도관리(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최종 평가 연차평가 : 2년이상 계속과제 단계평가 : 2+3, 3+4 등 과제 종료평가 : 최종 종료 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전문 분야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여 과제 평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산·학·연 전문가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 ○ 평가단 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종합점수 및 등급을 결정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사업비 정산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 및 정산처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 기술료 징수 협약체결 등 ○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주관연구기관→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사 업 명
11. 지역맞춤형재난안전문제해결기술개발지원(R&D) (2931-62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		020	028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900	2931	625
명칭	재난안전기술개발	재난안전기술개발	지역맞춤형재난안전문제해결기술개발지원(R&D)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R&D)	-	4,923	4,923	11,032	8,587	8,587	3,664	74.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역특화형 재난안전 연구지원) 동 사업은 지역별 주요 재난이슈·현안(중점 연구분야)에 대해 지자체와 연계·검토하여 해당지역이 필요로 하는 재난안전기술을 개발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법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①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 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 정책적 근거

- 「재난·안전 R&D 투자 시스템 혁신방안」 전략2. 'SAFE 투자모델' 구축, '지역별 상대적인 재난·안전 취약도를 기반으로 현안문제해결을 위한 중점 연구분야를 선정하고 R&D 투자와 연계'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지방분권을 위한 지역주도형 R&D 기반 구축, 과학기술자원의 지역편중해소 및 자생적 성장동력 확보 등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8.12월)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기획연구

○ ('19.1월)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 중기사업계획 심의

○ ('19.10~12월) '20년 지원 신규과제 지자체 공모, 전문가 기획컨설팅(12개 과제)

○ ('20.1월) '20년 신규과제 선정·협의(재난안전 연구개발 협의체)

○ 연도별 과제 추진 현황

- '20년8개(신규10, 계속2) / 계속과제의 경우, 재난안전산업육성지원사업내 지역특화형 내역사업 과제 이관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3
- 사업규모 : 1개 내역사업 20개 내외 연구과제
- 사업시행방법 : 출연 (국비 80%, 지방비 20%)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총괄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업 수혜자 : 강원, 광주, 대구, 부산 등 전국의 각 지역 및 지자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 이내	
	-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참여기업이 없는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100% 이내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3) 사업 집행절차

- (지역특화형 재난안전 연구지원) 국비 (80%) 및 지방비 (20%) 예산이 각 해당지역 기술을 개발하는 수행기관에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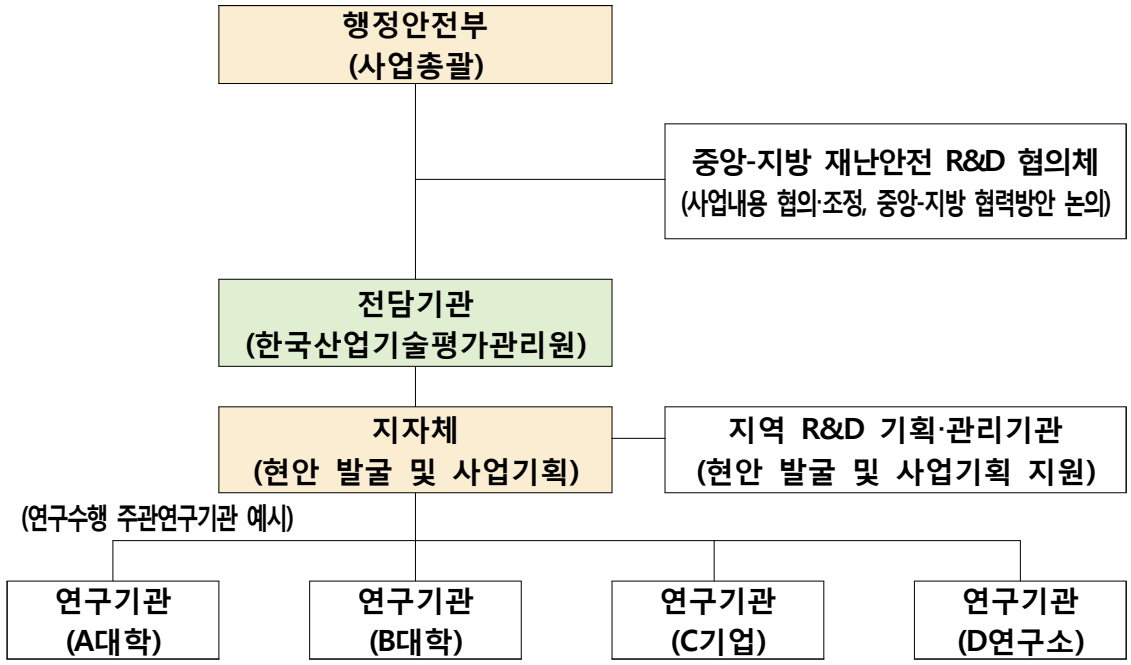

사 업 명
12. 재난안전부처협력기술개발(R&D) (2931-62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		020	028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900	2931	627
명칭	재난안전기술개발	재난안전기술개발	재난안전부처협력기술개발(R&D)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재난안전 부처협력 기술개발(R&D)	-	11,399	11,399	16,430	14,523	15,723	4,324	37.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생물감시체계, 감염병 정보환류 및 소통체계 구축, 감염병 자가 격리자 최적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 신·변종 감염병의 효과적인 대응

-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기술 개발) 안전사고 예방 및 통합적 재난 대응 국가관리체계 마련 등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3차원 공간정보 기반의 실감형 재난관리 및 융복합 활용 서비스 R&D 기술 개발 집중 투자

  * (국정과제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국정과제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연구) 사회재난현장에서 재난안전 상황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도로조명 플랫폼을 활용한 도시재난안전 관리시스템 개발 지원

- (디지털트윈 기반 지하공동구 화재·재난 지원 통합플랫폼 기술개발) 주요 라이프라인이 집중된 지하공간(공동구, 일반구 등)에 대해 재난발생 시 관련 정보를 하나의 공간(디지털트윈)에 통합하고 관리하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재난의 확산예측 및 대응 위한 기술 개발

- (부처협력 사업지원) 재난 현장지원용 소형·운반형 위성중계장비, 위험영상 모니터링, 재난안전 로봇 등 재난현장 지원용 기술개발 및 5G 통신환경에서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역량 확대를 위한 표준화 선점, 방사능 재난 대응 등 부처간 협력을 통한 재난 현안 해결

-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결할 수 있는 연구 개발(실증 포함) 및 적용 지원을 위한 긴급 연구개발자금 및 현안 발굴 및 사전준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법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 진흥)
-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5조
-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6조(예산의 신청 및 배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1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3조(기술개발의 보호·육성) 및 제5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기술개발)
- 자연환경보전법 제36조(기술개발)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8조(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선정('18.1)

○ 정책적 근거

- (국정과제 32번)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 (국정과제 33번) ICT와 공공민간 산업의 전면적 융합
- (국정과제 45번)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복지부)
- (국정과제 45-6-2)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방역현장에서 필요한 감염병 현장 대응기술 개발
- (국정과제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 (국정과제 57번)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과제17.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구현
-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18~'22)」 과제10. 현장중심 협력형 기술개발
- 「재난·안전 R&D 투자 시스템 혁신방안」 전략2. 'SAFE 투자모델' 구축 '재난원별 파급효과를 고려한 복합재난 대응R&D 투자 강화'
- (보건복지부)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17~'21)
- (행정안전부)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18~'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17~'21)
- (보건복지부) 제2차 보건의료육성기본계획('18~'22)법적 근거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국가적 감염병 위기에 대한 장기적인 "국가 감염병 R&D 투자전략" 마련"('15.7)

○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17～'21)"수립('16.4, 국과심)

○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선정('16.5, 다부처특위)

○ 다부처 공동기획연구 추진('16.10~'17.3)

○ 다부처 공동사업 대상사업 선정(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17.3)

○ "국가 감염병 R&D 방역연계 실천방안"('18~'22)」마련('17.4)

○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범부처 협의체 운영계획 수립('18.2)

○ 제천, 밀양 등 대형화재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대통령 대응 지시('18.2)

- 화재안전대책 특별TF 구성('18.2), 정부합동 화재안전특별대책 마련('18.4)

○ "18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전략"신종 감염병 극복을 위한 R&D 지원 확대

○ 재난문자방송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18.7~'19.3)

○ 중앙-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의체('19.4)

- 5G 기반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고도화 협력 사업 협의·조정

○ 중앙-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의체('20.1)

- 방사능재난 주민보호시스템 개발 사업 협의·조정

○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18.3.14,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긴급대응연구 지원체계 도입

○ '제2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18.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계속
- 사업규모 : 6개 내역사업 연 22개 내외 연구과제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출연 100%
- 사업시행주체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 사업 수혜자 : 재난안전 요소기술을 활용할 각 유관 부처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참여 기업이 있는 경우	-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 이내	
	-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참여기업이 없는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100% 이내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3) 사업 집행절차

○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D) 신·변종 감염병에 선제적인 R&D 협력사업을 위하여 7개 부처 공동추진 (전담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메르스 사태 이후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에 따라 방역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범부처 R&D 협력사업 추진

※ 연구성과는 7개 부처 공동성과로 활용하며, 부처별 투자예산 비율로 예산서 작성

※ 부처별 역할 : 복지부(감염병 대응·대비, 사람방역), 과기정통부(기초·기전, 원천연구), 농림부(가축방역), 환경부(야생동물방역) / 행안부(지자체 현장관리, 피해예측) / 식약처(허가/평가) / 산업부(기업생산/제품화)

○ (공간정보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기술 개발) 공간정보와 다른 산업을 융합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의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선도를 위한 다부처 사업 추진 (전담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행안부) 고정밀 공간정보 기술로 실세계 수준의 가상공간(VR)을 구축하고, 소방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감형 재난대응 기술 개발 추진

○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연구) 도로조명에 센서 및 ICT 기술을 접목하여 도로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위험상황을 인지·판단하여 디지털 사인(Digital Sign) 및 I2X연계를 통해 이용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사고 저감에 기여(전담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행안부) 스마트 도로조명 기반의 도시재난안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황인지/분석 및 연계 기술개발

○ (디지털트윈기반 화재재난 지원 통합 플랫폼 개발) 주요 라이프라인이 집중된 지하 공간(공동구, 일반구 등)에 대해 재난발생 시 관련 정보를 하나의 공간(디지털트윈)에 통합하고 관리하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재난의 확산예측 및 대응 위한 기술 개발 (전담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부처협력 사업지원) 여러 부처의 협력이 요구되는 재난에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술 지원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행안부) 재난 현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위성, 무인기, 로봇 등) 및 5G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표준화, 방사능 재난 대비 시스템 등

○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해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지원을 위하여 부처협업기반(과기정통부+행안부) 긴급대응연구체계(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전담기관: 한국연구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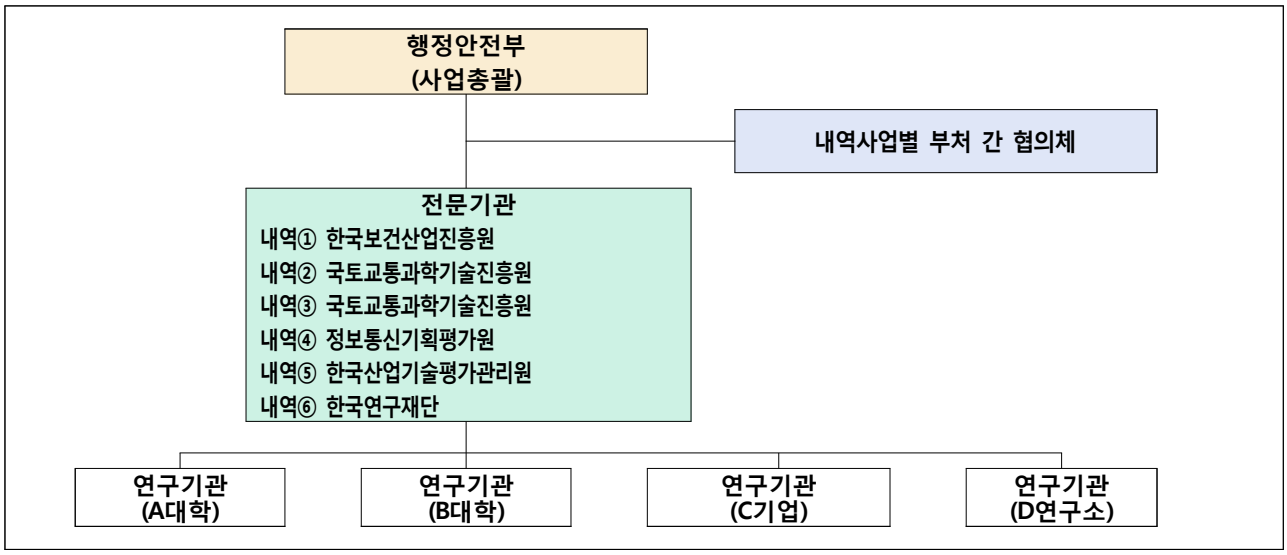
행정안전부
(사업총괄)
내역사업별 부처 간 협의체
전문기관
내역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역②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내역③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내역④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내역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내역⑥ 한국연구재단
연구기관
(A대학)
연구기관
(B대학)
연구기관
(C기업)
연구기관
(D연구소)

사 업 명
13.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구축(정보화) (2631-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31	305
명칭	안전관리	안전점검 및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구축(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국회확정(B)		(B-A)/A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구축(정보화)	-	1,696	1,696	1,544	1,544	△152	△8.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건축물, 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 등을 통합적으로 수집·관리·공개하기 위한 국가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9(안전정보의 구축·활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7(안전정보의 수집·공개·관리)

② 추진경위

- (대통령 지시)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 국민들께 실태를 알리고 다중이용시설을 선택할 때 참고 할 수 있는 방안 추진 검토('18.1.30.)
-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 계획추진('18.8.~12.)
-「재난안전법」제66조의9('19.12.3.),「같은 법」시행령 제73조의7('20.6.2.) 개정

※ 안전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공개

- 행정정보 연계 관계부처 협의* 및 추진상황 점검회의**('19.12.~'20.4.)

* (부처협의) 국토부·산업부 등(7회, '19.6.20, 6.27, 7.12, 12.26/ '20.4.2, 4.21, 4.24.)

** (점검회의) BH위기관리센터장 주재('19.8.28.), 재난협력실장 주재('20.6.8, 6.30.)

-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1차) 사업비 31억 확보 및 사업자 선정*('20.3.)

* 수행업체 : ㈜가온아이('20.3.27.~12.22.)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0 ~ 2023년(4년간)
- 사업규모 : 홈페이지 구축, 건축물·승강기·놀이시설·학교·체육시설 등 33종 안전점검결과 연계 표준안 및 인프라 구축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해당 없음 -		

3) 사업 집행절차

구 분	'20년(1차)	'21년(2차)	'22년(3차)	'23년(4차)
연계대상	14개 (학교, 시장, 승강기 등)	11개 (가스, 소방, 유원시설 등)	8개 (공연장, 어선 등)	추가연계검토
주요내용	·홈페이지 구축 ·연계 표준안 마련 ·인프라 구축	·모바일 지원 ·네이버, 다음 등 연계 제공	·연계정보 확대 ·UI, 사용성 고도화	·재해대비 백업 복구센터 구성

사 업 명
14. 사회복합재난대응 기술개발(R&D) (2931-62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900	2931	628
명칭	재난안전기술개발	재난안전기술개발	사회복합재난 대응 기술개발(R&D)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사회복합재난대응 기술개발(R&D)	-	-	-	8,505	8,117	6,917	6,917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난의 복합화, 시설물의 노후화, 신종 감염병 유행 등에 따른 다양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합재난의 취약성 분석, 피해영향 및 확산예측을 통한 효율적·체계적 대응체계 구축 기술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 ①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 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③ 추진경위

- 대형화재, 노후화된 기반시설 사고, 동물/인체 감염병 등 복잡하고 다양한 재난안전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예상치 못한 요인에 의한 신종 사회재난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사회재난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요구 증대

  ※ 이천 물류창고 화재('20.4월), 신종 코로나 감염병('20.1월), 아프리카돼지열병('19.12), 고양 열수송관 파열('18.12월), KT아현지사 화재('18.11월)

- 사회재난은 안전의식 부족, 초동대처 미흡, 시설노후화, 관리점검 사각지대 발생 등 인적·물적 요인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사전 예측이 곤란하고 대형 복합재난으로 확산되는 위험 상존

⇨ **사전 예측이 어려운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에 취약한 요인을 발굴하고, 재난의 파급영향을 분석·관리하는 체계 구축 필요**

여의도 공동구 화재('00.2월)	아현 통신구 화재('18.11월)	고양 온수관 파열('18.12월)
9개 은행 13개 지점 업무 마비 2천3백여 가구 정전(13시간) 전화 3만3천여 회선 불통	서대문·마포·용산·중·은평구, 경기 고양시 일산 등 통신장애	사망 1명, 부상 22명, 2,800여 세대의 난방 및 온수 중단

- '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09 신종플루, '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19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등 해외에서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사회·경제적 피해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

※ 감염병 피해(국내) : 신종플루(27조원), 메르스(20조원), 코로나19(20조원↑) - KERI, ADB

-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과정에서 자가격리자 앱, 자가격리자 안심밴드, 대규모 다중이용시설(교회·병원·클럽 등) 이용자 동선 및 접촉자 조사, 생활치료센터·임시생활시설 운영과 같은 이전의 감염병 대응과는 다른 새로운 대응체계가 요구되는 상황

⇨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감염병 국내유입을 차단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한정된 재난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및 위기대응 프로세스 구축 시급**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03)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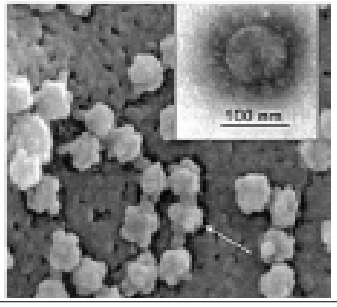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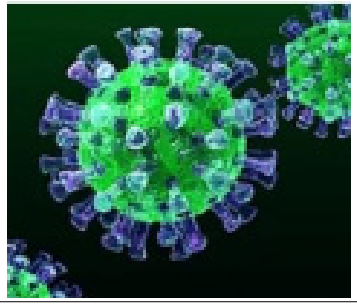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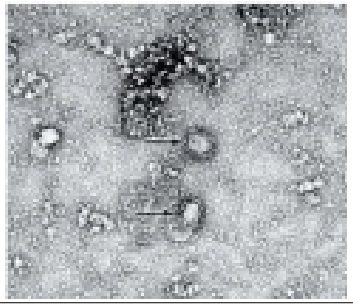
국내 확진자 3명 발생	국내 확진자 186명, 사망자 39명 발생	국내 확진자 10,874명, 사망자 256명 발생('20.5.11. 기준)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24년(4년)

- 사업규모 : 3개 내역사업 6개 연구과제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총괄기관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업 수혜자 : 국민(의료인, 산업근로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10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대기업	50% 이내	
중견기업	60% 이내	
중소기업	75% 이내	

3)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수행내용	주체
과제 발굴	○ 국민 수요 및 아이디어 공모, 연구과제 도출 및 기획	행정안전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계획 수립·공고	**○ 확정된 예산을 토대로 당해 연도 사업계획 수립·공고** **○ 신규과제 연구기관 선정 공고**	행정안전부
과제 신청·접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주관연구기관→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전검토	○ 신청자격, 제출서류, 과제 중복성 등 검토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선정 평가	○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전문 분야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여 과제 평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산·학·연 전문가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종합결과서 작성 (가·감점 부여)	○ 평가단 평가 결과에 가·감점을 합산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합결과서 작성**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지원대상기관 확정·공고	○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등을 최종 검토, 주관연구기관 확정·공고	행정안전부
협약체결	○ 개별협약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연구기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수행·관리	○ 주관연구기관 책임 하에 사업수행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진도보고 및 점검	○ 진도보고서 제출(주관연구기관→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진도관리(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최종 평가 연차평가 : 2년이상 계속과제 단계평가 : 2+3, 3+4 등 과제 종료평가 : 최종 종료 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전문 분야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여 과제 평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산·학·연 전문가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 ○ 평가단 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종합점수 및 등급을 결정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비 정산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 및 정산처리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 기술료 징수 협약체결 등 ○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주관연구기관→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 업 명
15. 자연재난 정책 연계형 기술개발(R&D) (2931-62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일반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900	2931	629
명칭	재난안전기술개발	재난안전기술개발	자연재난 정책 연계형 기술개발(R&D)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자연재난 정책 연계형 기술개발 (R&D)	-	-	-	3,360	2,400	2,400	2,400	순증

※ '폭염 등 기후재난 대응 개발 세부사업'을 본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이관·편성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책과 연계하여 자연재난(풍수해, 지진, 폭염) 대비한 기술개발 및 현장 적용성 강화
- (재난환경변화 대응형 풍수해 평가·관리기술 개발) ICT, 빅데이터 및 첨단장비 등을 활용하여 이상기후로 인한 풍수해를 대비하기 관리하기 위한 기술개발
- (폭염 등 기후재난 대응 기술개발) 쿨루프, 그늘막 등 각종 폭염 저감 요소 기술별 효율성 분석 기술 개발 및 폭염 피해자의 주거환경, 소득수준 등 사회·환경 조사를 통한 원인분석 기술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 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 「자연재해대책법」 제59조(방재기술의 실용화)

② 추진경위

- ('19.6.) 행정안전부 2021년도 재난안전 R&D 수요조사 실시
- ('19.12.) 재난대응력 확보 및 회복력 강화 연구개발 기획
  ※ 침수지역 응급복구 이동형 배수 시스템 개발 등 3개 세부과제
- ('19.12.) 행정안전부 지진방재 R&D 사업 기획연구
  ※ 대도시 지진재해 취약성 분석 등 18개 세부과제
- ('20.3) 과기정통부 '찾아가는 기획 컨설팅' 사업설명자료 제출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1년~'26년(6년)
- 사업규모 : 2021년 4개 과제(신규2, 계속2) 연구수행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10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대기업	50% 이내	
중견기업	60% 이내	
중소기업	75% 이내	

3)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수행내용	주체
과제 발굴	○ 재난·안전 관련계획, 기획연구 결과, 수요조사 결과 토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업계획 수립·공고	**○ 확정된 예산을 토대로 당해 연도 사업계획 수립·공고** **○ 신규과제 연구기관 선정 공고**	행정안전부
과제 신청·접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주관연구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전검토	○ 신청자격, 제출서류, 과제 중복성 등 검토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선정 평가	○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전문 분야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여 과제 평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산·학·연 전문가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종합결과서 작성 (가·감점 부여)	○ 평가단 평가 결과에 가·감점을 합산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합결과서 작성**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원대상기관 확정·공고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등을 최종 검토, 주관연구기관 확정·공고	행정안전부
협약체결	○ 개별협약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주관연구기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업수행·관리	○ 주관연구기관 책임 하에 사업수행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진도보고 및 점검	○ 진도보고서 제출(주관연구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진도관리(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최종 평가 연차평가 : 2년이상 계속과제 단계평가 : 2+3, 3+4 등 과제 종료평가 : 최종 종료 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전문 분야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여 과제 평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산·학·연 전문가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 ○ 평가단 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종합점수 및 등급을 결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업비 정산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 및 정산처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 기술료 징수 협약체결 등 ○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주관연구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 업 명
16. 취약계층·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 기술개발(R&D) (2931-63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900	2931	630
명칭	재난안전기술개발	재난안전기술개발	취약계층·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 기술개발(R&D)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취약계층·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 기술개발(R&D)	-	-	-	3,255	600	600	600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개발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및 고령자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리빙랩 기반 고령자 안전증진 기술 개발·실증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①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 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③ 추진경위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사망사고(민식이, '19. 9.), 통학버스 사망사고(태호·유찬이, '19. 5.)를 계기로 어린이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요구 증가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제도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속 발생**

* '95년 최초 도입, '03년 어린이 안전원년 선포 및 보호구역 개선사업 재정지원 시작

** 최근 5년간('13~'18)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年 평균 55명, 보호구역 내 사망자 年 평균 6명 발생

- 어린이 안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마련 ('20.1월, 관계부처 합동)

*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스마트 보행안전 환경 구축(스마트 보행Route 제공, 보행시설 환경 혁신, DB기반 보행안전 평가 및 예측 등)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연구개발 확대(행안부, 경찰청, 국토부)

< 대통령 말씀 및 지시사항 >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들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19.11.19)
-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라”(‘19.11.20)
-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미리 어린이보호구역을 특별하게 인식하고 예방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19.12.17)

- 초고령 사회의 진입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로 고령자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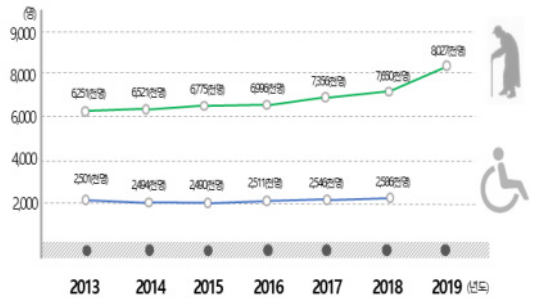

<안전취약계층(노인인구와 장애인) 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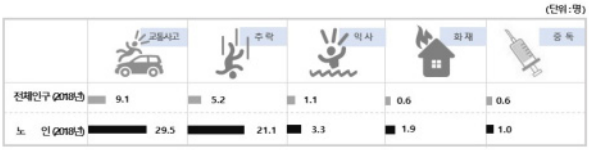

<노인 안전사고 10만명당 사망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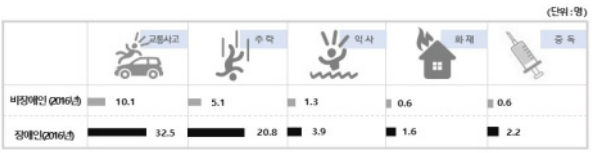

<장애인 안전사고 10만명당 사망자 현황>

- 고령자의 라이프사이클에 기반한 안전체감도 제고 및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첨단기술을 접목한 지역·시민참여의 리빙랩* 운영체계 필요
  * 고령자의 안전서비스 만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IT기술을 직접 활용함과 체감도를 확인하여 문제점 보완·개선 등 기술개발 단계가 환류될 수 있도록 리빙랩 실험 적용
- 취약계층·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 기술개발 신규사업(R&D) 기획(‘19.12월~’20.2월)
  ※ ’20～’24년 중기재정계획 마련 및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20.1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24년(4년)
- 사업규모 : ’21년 1개 과제(신규) 연구지원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총괄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민(어린이, 고령자 등 취약계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10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대기업	50% 이내	
중견기업	60% 이내	
중소기업	75% 이내	

3)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수행내용	주체
과제 발굴	○ 재난·안전 관련계획, 기획연구 결과, 수요조사 결과 토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업계획 수립·공고	**○ 확정된 예산을 토대로 당해 연도 사업계획 수립·공고** **○ 신규과제 연구기관 선정 공고**	행정안전부
과제 신청·접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주관연구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전검토	○ 신청자격, 제출서류, 과제 중복성 등 검토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선정 평가	○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전문 분야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여 과제 평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산·학·연 전문가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종합결과서 작성 (가·감점 부여)	○ 평가단 평가 결과에 가·감점을 합산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합결과서 작성**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원대상기관 확정·공고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등을 최종 검토, 주관연구기관 확정·공고	행정안전부
협약체결	○ 개별협약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주관연구기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업수행·관리	○ 주관연구기관 책임 하에 사업수행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진도보고 및 점검	○ 진도보고서 제출(주관연구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진도관리(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최종 평가 연차평가 : 2년이상 계속과제 단계평가 : 2+3, 3+4 등 과제 종료평가 : 최종 종료 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전문 분야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여 과제 평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산·학·연 전문가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 ○ 평가단 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종합점수 및 등급을 결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업비 정산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 및 정산처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 기술료 징수 협약체결 등 ○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주관연구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 업 명
17. 지능형 상황관리 기술개발(R&D) (2931-63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일반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900	2931	631
명칭	재난안전기술개발	재난안전기술개발	지능형 상황관리 기술개발(R&D)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지능형 상황관리 기술개발(R&D)	-	-	-	4,515	4,200	4,200	4,200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난 상황의 신속대응을 위한 포괄적이고 상시적인 현장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재난 환경 변화를 고려한 상황판단과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상황관리 시스템 및 기술 개발
- (지능형 원격 상황관리 시스템 기술개발) 재난상황 인지 및 재난발생 예측을 위한 요소 기술과 및 지능형 상황관리를 위한 표준시스템 구축방안, 재난데이터 표준 모델 개발
- (스마트 현장 통합지원 시스템개발) 재난 현장정보 분석, 현장대응자원(인력/자원)의 효율적 운영, 수습활동 통합지원을 위한 재난현장 통합지원 시스템 개발
- (국민안전 실용 서비스 강화) 재난상황 및 위험지역에 대해 위치정보 기반의 맞춤형 재난안전 정보서비스 기술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 「자연재해대책법」제58조(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 「재해구호법」제16조의2(재해구호기술 연구·개발 사업 추진)

② 추진경위

- ('19.6.~7.) '21년 재난안전 R&D 신규사업(과제) 발굴 수요조사
- ('19.7.)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전략 3. 현장중심 재난대응, 3-1. 재난 대응체계 혁신
- ('19.11.) "예방 중심 재난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 ('20.1.) 행안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추진(신규 사업 추진 의결)
- ('20.2.) 행안부 추진 신규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 수립
- ('20.3.) 지능형 상황관리 기술개발 연구기획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1년～‘25년 (5년)
- 사업규모 : 2021년 3개 과제(신규) 연구수행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10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대기업	50% 이내	
중견기업	60% 이내	
중소기업	75% 이내	

사 업 명
18. 재난피해 복구 역량 강화 기술개발(R&D) (2931-63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일반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900	2931	632
명칭	재난안전기술개발	재난안전기술개발	재난피해 복구 역량 강화 기술개발(R&D)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재난피해 복구 역량 강화 기술개발(R&D)	-	-	-	3,990	1,300	1,300	1,300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난피해를 효율적 복구하여 이재민의 일상으로 복귀 및 국가기반시설 기능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는 각종 복구 역량 강화 핵심기술 개발
- (구호 역량 강화 기술 개발) 지역·재난 유형 등을 고려한 맞춤형 최적 재난관리자원 구축·운영 기반 구호 서비스 기술 개발
- (국가기반시설 기능 정상화 기술 개발) 재난 발생시에도 국가기반시설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상호 연계성 분석, 피해 복구 및 피해최소화 우회 기술 등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의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 「자연재해대책법」제58조(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 「재해구호법」제16조의2(재해구호기술 연구·개발 사업 추진)

② 추진경위

- ('20.1.) 행안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추진(신규 사업 추진 의결)
- ('20.2.) 행안부 추진 신규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 수립
- ('20.2.) 신규사업 기획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20.3.~4.) 산·학·연 전문가 대상 복구 역량강화 분야 기술수요조사(2회)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1년～'25년 (5년)
- 사업규모 : 2021년 2개 과제(신규) 연구수행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10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대기업	50% 이내	
중견기업	60% 이내	
중소기업	75% 이내	

3)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수행내용	주체
과제 발굴	○ 재난·안전 관련계획, 기획연구 결과, 수요조사 결과 토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업계획 수립·공고	**○ 확정된 예산을 토대로 당해 연도 사업계획 수립·공고** **○ 신규과제 연구기관 선정 공고**	행정안전부
과제 신청·접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주관연구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전검토	○ 신청자격, 제출서류, 과제 중복성 등 검토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선정 평가	○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전문 분야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여 과제 평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산·학·연 전문가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종합결과서 작성 (가·감점 부여)	○ 평가단 평가 결과에 가·감점을 합산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합결과서 작성**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원대상기관 확정·공고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등을 최종 검토, 주관연구기관 확정·공고	행정안전부
협약체결	○ 개별협약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주관연구기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업수행·관리	○ 주관연구기관 책임 하에 사업수행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진도보고 및 점검	○ 진도보고서 제출(주관연구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진도관리(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최종 평가 연차평가 : 2년이상 계속과제 단계평가 : 2+3, 3+4 등 과제 종료평가 : 최종 종료 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전문 분야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여 과제 평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산·학·연 전문가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 ○ 평가단 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종합점수 및 등급을 결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업비 정산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 및 정산처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 기술료 징수 협약체결 등 ○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주관연구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비상대비정책국

2021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1. 비상대비훈련 ····· 559

2. 동원자원관리 ····· 563

3. B-1정부노후시설정비 ····· 568

4.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 ····· 571

5. 비상대비담당자선발 ····· 577

6. 비상대비정보화(정보화) ····· 580

사 업 명
1. 비상대비훈련 (2634-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34	300
명칭	안전관리	비상시대비능력강화	비상대비훈련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비상대비훈련	782	893	893	1,513	1,028	1,028	135	15.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비상대비훈련(을지태극연습·충무훈련) 실시를 통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전시대비계획의 시행가능성을 검증하고, 시행절차를 숙달하여 국민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함
- (을지태극연습)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매년 전국 규모로 한국군 단독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하여 포괄안보 개념의 국가위기관리연습과 국가총력전 차원의 전시대비연습을 도상연습 위주로 실시하는 훈련
- (충무훈련) 지역단위 총력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시·도를 대상으로 주요자원에 대한 실제동원훈련과 중요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훈련 등 실제훈련 위주로 실시하는 지역단위 종합훈련
- (비상대비업무지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 매년 비군사분야의 종합적인 전시대비계획(충무계획)을 수립 지원 등 비상대비정책 개발 및 역량 제고
- (위기대응체계 유지 및 강화) 적의 국지도발로 인한 주민피해 시 긴급 조치, 피해복구·지원, 중앙 및 지역 주민보호대책본부 운영 등의 절차 숙달, 실제훈련에 의한 안보위기 대응태세 확립 및 위기관리포럼 개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4조(훈련의 실시)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21조(훈련실시의 요청), 제34조(정부연습)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국정과제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국민이 안전한 비상대비, 민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기반 구축(56-1-7)
- (행정안전부 주요정책과제) 포괄안보 개념을 적용한 을지태극연습 실시
- 국무회의 말씀자료

- **대통령 을지국무회의('17.8.21.)** 을지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군의 방어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
- **행안부장관 국무회의 후 언론 브리핑('18.7.10.)** 한국군 자체의 태극연습과 연계한 민·관·군이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테러나 대규모 재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을 적용해 합동 훈련모델로 발전시킬 계획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 및 북한군 침투·도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19.12.)에 따른 주민보호 총괄기구(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및 현장기구(지역주민보호대책본부) 근거 마련

<을지연습>

- '68년 북한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1.21.)을 계기로 대통령 지시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주관하에 비정규전 상황을 상정하여 '태극연습' 명칭으로 정부연습 최초 실시(7.5. ~ 7.7.)
- '69년 훈련명칭을 "을지연습"으로 개칭하여 연 1회 실시
- '79년 "을지연습"과 연합사령부 "포커스렌즈연습" 통합('78년 연합사 창설)
- '91~'93년 남북고위급 회담 실시로 "을지연습과 "포커스렌즈연습" 분리
- '94년 이후 북핵문제로 남북관계 경색, 정부·군사연습 통합실시로 환원
- '08년 UFL연습 ⇒ UFG연습으로 명칭 변경(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로 업무 이관
- '18년 조성된 여러 안보정세 및 한·미 연합훈련 유예방침에 따라 계획된 정부 을지연습을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7.10.)
- '19년부터 실시된 "을지태극연습"은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뿐만 아니라 테러, 대규모 재난 등 포함하는 포괄안보 개념을 적용하여 민·관·군 합동 훈련모델로 발전
- '19년 포괄안보 개념을 적용하고 한국군 단독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한 "을지태극연습" 실시(5.27.~30.)

<충무훈련>

- '81년 국방부 주관 동원훈련으로 사업추진
- '92년 "향토방위훈련"은 합참주관 "화랑훈련"에 통합하고, "충무훈련" 명칭으로 비상기획위원회로 동 업무 이관
- '93년 비상기획위원회 주관으로 "충무훈련" 실시

<위기대응체계 유지 및 강화>

- 국지도발로 인한 주민피해 발생 시 피해복구·지원 등이 필요한 조치에 대한 주민보호업무 총괄, 지자체 대응체계 구비 등을 위하여 관련 매뉴얼을 개정('19.12.)하였으나, 매뉴얼 개정 이후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행정안전부) 및 지역주민보호대책본부(시·도) 운영 점검훈련 미실시
-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의 공격, 소행에 의한 주민피해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복구 조치 등의 훈련을 통한 주민보호 조치 절실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68년 ~ 계속
- 사업규모 :

(을지태극연습)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전국 4,000여개 기관, 48만 여명이 참가하는 전국단위의 비상대비훈련

(충무훈련) 연 5~6개 시·도를 대상으로 동원훈련(기술인력·차량·건설기계) 및 피해복구훈련 등을 실시하는 지역단위의 비상대비훈련

(위기대응훈련) 적의 국지도발로 인한 주민피해 시 긴급조치, 복구, 지원활동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대응훈련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지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1월	▪을지태극연습 NSC 실무조정회의 ▪충무기본지침 작성 및 승인(대통령) ▪충무훈련 지침 통보	2월	▪을지태극연습지시서 총리 및 대통령 재가 ▪을지태극연습 최초계획회의	3월	▪을지태극연습 중간계획회의 ▪전국 통제부장회의(장관)
4월	▪을지태극연습 최종계획회의 ▪을지태극연습 준비보고회의(총리) ▪충무기본계획 작성 및 승인(대통령)	5월	▪을지태극연습 실시 ▪을지태극 국가안전보장회의 ▪을지태극 국무회의 ▪주민보호훈련 실시	6월	▪을지태극연습 중앙종합강평회의(총리) ▪충무훈련 실시 및 현지강평회의 ▪주민보호훈련 실시
7월	▪충무집행계획 작성 및 승인(총리)	8월	▪충무시행계획 작성기관 통합교육	9월	▪충무훈련 실시 및 현지강평회의 ▪충무시행계획 작성 ▪주민보호훈련 실시
10월	▪충무훈련 실시 및 현지강평회의 ▪을지태극연습 개선방안 관련 토의	11월	▪충무실시계획 작성 ▪위기관리포럼 개최 및 간행물 발간 ▪주민보호훈련 실시	12월	▪비상대비훈련 유공 정부 포상 ▪을지태극연습 종합보고서 발간 ▪충무훈련 종합보고서 발간 ▪자체충무계획 작성 ▪북한군 침투·도발 실무매뉴얼 개정

사 업 명
2. 동원자원관리 (2634-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34	301
명칭	안전관리	비상시대비능력강화	동원자원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 확정(B)		
동원자원관리	620	654	654	816	657	657	3	0.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동원자원조사 및 관리) 전시에 소요되는 동원자원 관련 임무(생산, 관리 등)를 수행할 업체에 대한 동원능력을 파악하고자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최적의 국가비상대비계획(동원계획) 수립
- (기술인력 동원훈련) 유사시 군사작전지원, 정부기능유지 등을 위해 기술인력 동원훈련을 시·도 주관으로 실시(매년 2회, 총 1,900명 대상)함으로써 전시대비 동원계획의 실행력을 제고
- (비상대비역량 강화) 공직자 비상대비의식을 고취하고 정부의 전시 대비업무 및 국민 행동요령을 홍보하여 국가 비상대비태세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의5, 제14조,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39조 등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0조(자원조사 등)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1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관리)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3조의5(비상대비교육)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4조(훈련의 실시)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22조(실비변상)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9조(자원조사의 방법 등)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여비 등)

② 추진경위

≪동원자원조사 및 관리≫

- 1974년 처음 전국적인 자원조사 실시
- 1984년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주무부・처의 부령 정비

  ※ 정부는 유사시를 대비한 자원동원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훈련 참가자에 대한 실비를 보상하도록 명문화
- 1987년 전 동원업체에 대한 국가단위의 총체적인 자원조사 실시

  ※ 국가비상기획위원회 및 자원 주무부・처 합동으로 조사반 편성

- 2001 ~ 2003년까지 전체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해 현지방문조사 실시
- 2004 ~ 현재: 서면신고조사(가변성이 적은 업체)와 현지방문조사(신규업체, 군수물자 생산업체 등) 병행

※ 조사결과 자료는 비상대비자원관리시스템 D/B화, 자원관리 부처 및 시·도 등 관련 기관간 공유

≪기술인력 동원훈련≫

- 1984년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주무부·처의 부령 정비
- 1989년 ~ 현재: 매년 인력동원 훈련실시

≪비상대비역량 강화≫

- 2001년 이후: 미국 9.11 테러 계기, 정부 테러대비대책 및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대국민 홍보
- 2007년 이후: 전쟁기념관 협약, 어린이·청소년 대상 비상대비 체험교육을 위해 비상대비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용역
- 2006년 이후: 북한 1차 핵실험(10.9),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비상대비역량 강화 교육홍보물 제작·배부
- 2008년 이후: 비상대비 현안 인지도 조사 및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리플릿·소책자 제작·배부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1 ~ 계속 * 기술인력동원훈련('89~계속)
- 사업규모 : 지자체 보조사업/기술인력동원 훈련보상금(1,900명*7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보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공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100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4조, 제22조

3) 사업 집행절차

【 동원자원(물자) 관리 】

구 분	20.12월	21.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12월
○동원자원조사 기본계획수립	—											
○동원자원조사 순회교육실시		—										
○ 동원소요제기(물자)			—									
○1차 동원자원 조사 실시			—	—								
○동원자원 확인점검(분기별)				—			—		—			—
○ 자원조사 결과 DB화					—							
○ 동원소요심의회(1~4차)				—	—	—						
○2차 동원자원 조사 실시						—	—					
○ 충무계획* 작성·배부								—	—	—	—	

* ①산업물자 및 업체 동원계획, ②중점관리대상업체 현황

【동원소요심의】

구 분	20.12월	21.2월	3월	5월	6월	7월
○ 동원소요심의 기본계획 수립	—					
○ 동원소요제기		—				
○ 동원소요심의 실무회의(1~4차)			—	—		
○ 동원 소요심의 조정결과 통보					—	—

【기술인력 관리 및 동원훈련】

구 분	3월	5월	6월	7월	10월
○인력자원 소요제기					
○전국기술인력 일제조사					
○상반기 기술인력 동원 훈련					
○기술인력자원 배분회의 개최 ○충무계획* 작성·배부					
○하반기 기술인력 동원 훈련					

* 행정안전부 집행계획 부록(전시 인력동원계획)

【 비상대비 역량 강화 】

○ 국가위기관리훈련 안보영상 홍보물 제작・배부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영상 제작 계획 수립					
○조달 계약의뢰(체결)					
○영상구성 등 시나리오 작성					
○영상촬영・편집 및 제작					
○영상물 CD 배부 및 활용					

○ 비상대비역량 강화 콘텐츠 제작・배부(8월 ~ 12월말)

- 계획수립→계약→제작・배부(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등)

○ 비상대비분야 인지도 조사(8월 ~ 12월)

- 계획수립→계약→설문문항 보완→면접원 교육 등 사전준비→전화면접조사 →결과분석 및 보고→언론보도, 비상대비 정책발전 및 참고자료 활용

○ 비상대비체험관 운영 관리용역(전년도 10월 ~ 당해연도 12월말)

- 계획수립→일상감사→업체계약 관리용역 운영→운영점검 및 용역검사

○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콘텐츠 제작·배부(연중)

- 계획수립→자료수집 및 보완→계약→제작・보급(시·도 및 각급 교육기관 등)

○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이벤트(연중)

- 비상대비체험관 운영 계기성 홍보이벤트 실시(을지태극연습, 국민안전의 날 등)

사 업 명
3. B-1정부노후시설정비 (2634-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34	303
명칭	안전관리	비상시대비능력강화	B-1정부노후시설정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B-1정부노후시설정비	822	332	332	284	284	284	△48	△14.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부시설 유지관리) 전쟁 등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역량을 조직적으로 통할하고 정부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전시 정부종합상황실 등 B-1 정부소산시설을 언제라도 운영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
- (정부시설 개선) 정부시설·장비 노후화에 따른 지속적 개선 및 교체
- (정부시설 관계기관 협의) B-1 시설관리 및 통신운용 관계기관과의 상호협조체계유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전쟁지도지침(대통령훈령)
- 전시 정부종합상황실 운영규정(총리훈령)

② 추진경위

- ’77년 : VIP집무실, 정부종합상황실, 국무회의실 등 B-1 정부시설 본관 준공
- ’07~’09년 : B-1 국방부(합참) 사용시설 현대화 및 확장
- ’11년 : B-1 정부노후시설 개선사업 기본계획 장관보고
- ’11~’12년 : B-1 정부노후시설 개선사업 추진(완료)
- ’13년~ : B-1 정부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관계자협의회 운영
- ’18년~’19년 : B-1 정부종합상황실 추가확보 공간 시설보수 추진(완료)
- ’20년~ : 노후시설 개선 및 노후 상황관리장비 교체(계속)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1년~계속
- 사업규모 : 전시 정부종합상황실 등 37개 호실(2,837㎡)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정부기관

3)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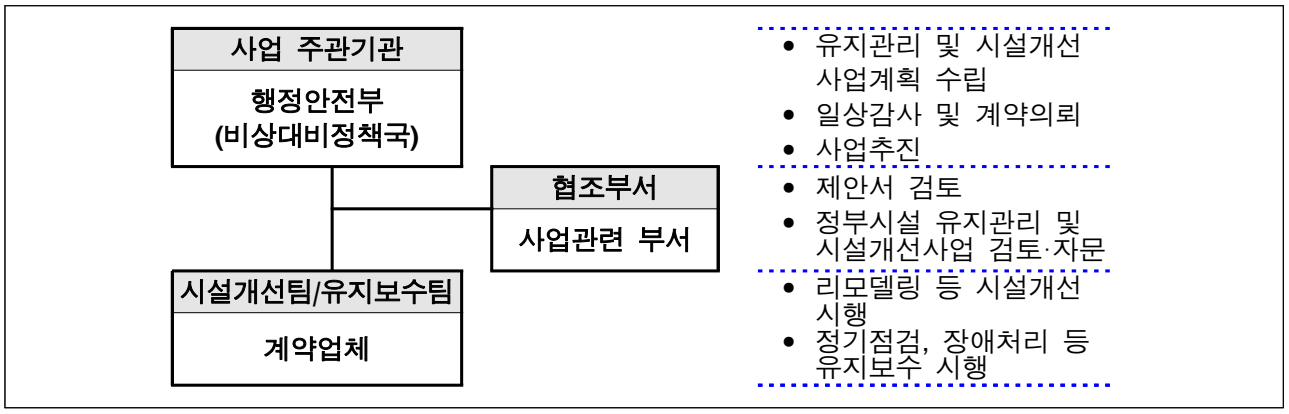
사업 주관기관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협조부서
사업관련 부서
시설개선팀/유지보수팀
계약업체
•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사업계획 수립
• 일상감사 및 계약의뢰
• 사업추진
• 제안서 검토
• 정부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사업 검토·자문
• 리모델링 등 시설개선 시행
• 정기점검, 장애처리 등 유지보수 시행

사 업 명
4.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2634-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민방위심의관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34	304
명칭	안전관리	비상대비능력강화	민방위교육훈련및시설장비확충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0, 50, 8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	10,635	8,734	8,734	9,052	7,894	9,148	414	4.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사태시 민방위대원이 현장에서 수습・복구활동에 필요한 실전체험 및 전문교육 등 맞춤형 교육훈련으로 현장대응 능력 강화
-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적의 침공 또는 대형 재난에 대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대피시설·경보시설 및 화생방 방독면 등 주민 안전시설 확충과 민방위대원의 장비 보급
-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 경보사각지역 해소·보강, 노후 경보장비 교체, 경보시설의 유지관리를 통해 신속한 경보발령태세 확립 및 안정적인 경보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민방위기본법 : 제4조(재정상의 조치),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15조(민방위준비), 제15조의2(점검 등), 제25조(민방위 훈련), 제30조(실비변상 등), 제33조(민방위경보)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 제2조(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상 지원), 제15조(민방위 물자·시설 등), 제30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제32조(교육훈련담당교관수당), 제33조(민방위대 요원의 위탁 및 전지교육), 제45조(실비변상 등), 제55조(민방위경보)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제9조(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장비·물자), 제32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계획), 제60조(교육훈련 및 동원 실비 지급 등)
- 제9차 민방위 기본계획, 민방위 집행계획, 민방위 교육훈련 지침, 민방위 시설장비 지침
- 접경지역지원특별법 : 제18조(사업비의 지원 등)
-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 제20조(국고보조율)
- 서해5도지원특별법 : 제8조(사업비의 지원 등), 제10조(주민안전시설 우선지원)
- 서해5도지원특별법 시행령 : 제4조(국고보조율)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민방위교육훈련>

- ‘77년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사업 시작
- ‘04년 서울시 태릉 민방위교육장을 재난체험장으로 시설보강
- ‘05.12 민방위 혁신대책에 민방위교육장을 체험교육장 활용 포함
- ‘06. 3 당정협의 및 국회행자위에서 체험실습장 설치 합의
- ‘07~‘14년 체험실습장(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리모델링 사업 26개소 지원
- ‘16년 제22차 총회 참석(5월), 국제민방위기구 회원국 가입서 기탁(12월)
- ‘17.1.2. 국제민방위기구 정회원국 가입
- ’18년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 강화 : 연 2회 → 연 4회
- ’18. 3. 국제민방위기구 제23차 총회 참석
- ‘19. 12. 국제민방위기구 주관 제4차 민방위 훈련·교육기관 회의 참석
- ‘20. 6 코로나19로 인해 전 민방위대원 집합교육에서 사이버교육으로 전환 실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설치>

- ‘10년 연평도 포격사태 발생으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추진
- ‘16년부터 일시대피형에서 단기체류형(1~2일) 대피시설로 구축(화장실, 주방, 냉·난방 등 편의시설 설치)
- 신규 주민대피시설은 복합시설로 구축하여 평시 주민편의시설(체육시설, 교육장, 무더위쉼터 등)로 활용 권장
- ‘11~’15년 168개소→‘16년 22개소→’17년 13개소→‘18년 13개소→’19년 11개소 설치 →‘20년 7개소 설치

<비상급수시설 확충>

- 초창기(‘76～‘81) : 6대도시에 10톤 정도의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
- 2~4차 5개년계획(‘82～‘96) : 1일 200톤 규모로 수도권 확대설치
- 5차 5개년계획(‘97～‘01) : 1일 1인 급수량 기준 변경(80 → 25ℓ)
- 6~7차 5개년계획(‘02～‘11) : 시설 상시개방, 수질검사 강화(연 4회)
- 8차 5개년계획(‘12~‘16) : 시설 상시개방, 수질검사 강화(연 4회)
- ‘11~’20년 6개소씩(117백만원)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 ‘86년부터 민방위대원 “일반 방독면” 보급

· (‘86~’96) 1차, 2차 5개년 보급계획, (‘98~’07) 10개년 계획

· 지하철역 국민방독면 보급(‘04~’05)

▪ 민방위대원 일반 방독면 보급(‘06년 이후 일반 방독면 보급, ’07~‘11년 보급사업 중단)

▪ ‘12~’13년 총 19만개(2,055백만원), ‘14~’17년 10만개씩(각 1,110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의 KS 규격에 의해 제조된 화생방 “일반 방독면”으로 일원화 보급

▪ ‘18~’19년 10만개(1,260백만원)

▪ ‘18~’20년 10만개씩(1,260백만원)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정화통 성능검사>

▪ ‘20년부터 사업비(일반용역) 편성(16백만원), 유효기간 경과 방독면 사용기간 연장 검토

  * ’19년까지 안전정책실 일반수용비로 사용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및 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

▪ 경보현대화사업(‘97～‘01) : 중앙 및 16개 시·도 경보장비 설치

▪ 경보시설 확충사업(‘02～‘04) : 사이렌 82개소 확충

▪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11～’19) : 16개 시도 340개소 설치

▪ 연평도 포격사태 발생으로 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 추진

  · 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사업(‘11～‘18) : 3개 시도 226개소 설치

▪ ‘19년 민방위 경보사각지역 해소 등 경보단말(사이렌) 지속 확충(경보단말 61개소, 서해안 다목적 경보시설 경보단말 1식 등 / 총수량: ’18년 2,425개소 → ’19년 2,531개소)

▪ ’20년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등 경보단말(사이렌) 지속 확충(경보단말 65개소, 서해안 다목적 경보시설 구축 1식, 다중이용 건물용 민방위경보 통제시스템 구축

<민방위경보시설운영>

▪ ‘51. 1 민방공총본부 설치(민방위경보 운영)

▪ ‘87～92 경보시설 자동화사업 추진(중앙 및 시·도 무선 자동화장비 설치)

▪ ‘97～‘98 경보시설 현대화 용역사업 추진(경보 SW 및 시험장비 개발)

▪ ‘98～‘99 경보시설 현대화 시범사업 추진(중앙통제소 현대화장비 설치)

▪ ‘99～‘01 경보시설 현대화 확장사업 추진(시·도 현대화장비 설치)

▪ ‘06～‘07 동·남해안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구축(7개 시·도, 157개소)

- ‘10~‘13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노후 일제지령 교체 및 고도화 사업 추진
- ‘11~‘13 대구 공군 남부전투사령부 내 제2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구축
- ‘13~’15 정부주요기관 및 중앙방송사 연결장비 교체(25개소 / 방송사8, 주요기관 17)
- ‘14~’16 제1·2경보통제소 다중채널 위성 송출장비 보강 및 노후 위성장비 교체
- ’17~’19 민방위경보방송 TV자막 송출대상 확대(3개→10개 방송사), 표출형태 개선 및 TV자막 수신서버 이중화
- ’20.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연계를 통한 민방위경보방송 전파 대상 확대, 군 실시간 방공경보체계와 민방위경보체제 간 시스템 연계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77~계속(교육훈련), ‘76~계속(시설장비확충), ‘02~계속(경보시설운영)
- 사업규모 : 민방위 교육훈련 경비지원, 주민대피시설(7개소), 비상급수시설(6개소),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10만개 보급,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65개소),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32개소), 다중이용 건물용 민방위 경보통제시스템 구축(17개소), 공공요금·시설장비유지비 등 제1.2경보통제소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민방위 대원 및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지원 법적근거
지자체 보조 (민방위 교육훈련)	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지급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별표 1의 3호]
지자체 보조 (접경지역대피시설)	50(접경지역) 80(서해5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지급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별표 1의 3호]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18조 및 서해5도지원특별법 제8조
지자체 보조 (비상급수)	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지급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별표 1의 3호]
지자체 보조 (방독면)	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지급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별표 1의 3호]
지자체 보조 (민방위경보시설)	30(일반지역) 50(접경지역) 80(서해5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지급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별표 1의 3호]

3) 사업 집행절차

○ 민방위교육훈련

민방위대 편성 (민방위기본법 제20조)	⇒	민방위교육·훈련 계획 통보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2조)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민방위기본법 제4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민방위교육·훈련 운영 (기본·보충·비상소집·훈련등)
행정안전부 (매년1월1일)		행정안전부→ 자치단체(1월)		행정안전부→지자체 (1~2월)		자치단체 (연중)

⇒	민방위교육 및 훈련점검 (민방위기본법 제22조)	⇒	민방위교육·훈련결과 결산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40조)	⇒	국고보조사업 결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비 잔액 반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행정안전부→자치단체 (연중)		자치단체→ 행정안전부 (12월)		행정안전부, 지자체 (익년도 2월)		지자체 (익년도 12.31한)

○ 민방위시설장비확충

지자체 수요조사 (민방위기본법 제15조의2)	⇒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	지자체 예산 확보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민방위기본법 제4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행정안전부 (전년도 4월)		행정안전부 (전년도 5~12월)		지자체 (전년도 5~12월)		행정안전부→지자체 (1~2월)	

사업추진	⇒	지자체 사업추진상황 점검 (민방위기본법 제22조)	⇒	국고보조사업 결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비 잔액 반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자체 (1~12월)		행정안전부 (수시)		행정안전부, 지자체 (익년도 2월)		지자체 (익년도 12.31한)

○ 민방위경보시설운영

관계기관 협의 및 기본계획 수립	→	사업발주 및 계약	→	사업추진	→	준공
1~2월		3~4월		3~12월		12월

사 업 명
5. 비상대비담당자선발 (2634-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020	025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34	305
명칭	안전관리	비상시대비능력강화	비상대비담당자선발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국회확정(B)		
비상대비담당자선발	149	151	151	151	151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우수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을 위한 시험출제 및 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2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 제12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 2.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도 교육청
> ②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생략)
> ④ **비상대비업무담당자(제1항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 ⑤ (생략)
> ⑥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선발시험 및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4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 제14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 ①~④ (생략)
> ⑤ 법 제12조의2 제4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군인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장교 중 대위 이상의 계급으로 현역에 복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할 당시 전역 후 3년이 지난 사람
> 나.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비상대비 관련 업무 종사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⑥ 법 제12조의2 제4항에 따른 시험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⑦~⑧ (생략)

② 추진경위

- 정부기관 및 민간 주요업체의 비상대비업무 수행을 위해 '70년대초부터 비상대비 업무담당자를 선발 및 임용하여 왔음
- '14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舊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던 시험을 업무소관 변경에 따라 국민안전처로 이관
- '17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舊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던 시험을 업무소관 변경에 따라 행정안전부로 이관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연 2회 선발시험 실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행정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3) 사업 집행절차

① 선발협의	② 선발시험	③ 후보자 임용추천	④대상자결정 및 임용
• 공석조사 • 각 기관 인사과 협의	• 임용 후보자 선발	• 각 기관(업체)에 임용 추천	• 임용결과 통보
중앙부처	행정안전부 국가고시센터	행정안전부	중앙부처

사 업 명
6. 비상대비정보화(정보화) (3032-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2	500
명칭	재난안전정보화	재난행정정보화(정보화)	비상대비정보화(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비상대비정보화 (정보화)	4,527	4,545	4,545	5,879	4,902	4,902	357	7.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비상대비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관리 및 국가주요자원과 비축물자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전쟁지휘본부의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 (e시스템 통합 운영·관리)
  비밀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비밀문서 생산 · 관리 · 유통의 전자적 보호체계 확립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전쟁지도지침(대통령훈령 제320호)
- 전자정부법 제56조의2, 제72조
- 보안업무규정 제21조(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국가정보원, '13.7월) "국가기밀 보호대책 강구"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5년 : 비상대비업무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06년～'08년 : "비상대비정보시스템" 개발 추진
- '09년 : 비상대비 자원관리체계 개선방안(BPR/ISP) 수립
- '10년 :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비상대비자원관리시스템 구축
- '15년 : 통합비밀관리시스템 구축
- '16년 : 비상대비상황관리시스템 고도화
- '17년 : 비밀관리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통합비밀관리시스템 보안장비 증설
- '18년 : 비상대비 상시가동체계 확립, 비상대비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 '19년 : 비밀유통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비축물자관리DB구축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5년 ~ 계속
- 사업규모 :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비밀문서업무담당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 부처, 시도, 시군구 등 행정기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 11개 국가안보기관 및 40개 중앙행정기관 비밀업무담당자

3) 사업 집행절차

- 사업계획 수립 → 제안요청서 작성 및 입찰공고 → 제안업체 기술평가 및 가격입찰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사업수행계획 및 착수보고 → 과업수행 및 감리 → 시험운영 및 문제점 보완 → 사용자교육 및 검사 → 사업완료 및 정보시스템 운영

- 사업추진체계

※ 지원근거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0조의 2(비상대비자원 관리의 전자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1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기본경비 ····· 585

2.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환경개선유지 ····· 587

3.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운영 ····· 589

4. 외국지방공무원교육운영(ODA) ····· 592

5. 지방자치인재개발원사이버교육센터운영(정보화) ····· 595

6. 지방자치인재개발원전산운영(정보화) ····· 598

7. 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 600

사 업 명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기본경비 (7018-25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52
명칭	행정안전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지방자치인재개발원기본경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	국회확정(B)		
지방자치인재개발원기본경비	686	704	704	725	697	697	△7	△0.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본경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관운영 활성화 및 효율적인 교육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

② 추진경위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조직 및 기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지원 경비
- 1978. 1. 지방행정연수원 신축 이전(경기 수원시 파장동)
- 2006. 1.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개편
- 2008. 2. 지방행정연수원 개편
- 2013. 8. 지방행정연수원 이전(전북 완주군)
- 2017. 7.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개편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교육운영 지원 및 도서관 운영, 인재개발원 홍보 비용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소속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지출요인 발생시 수시집행

사 업 명
2.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환경개선유지 (14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지방재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1	300
명칭	지방자치인재개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운영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환경개선유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환경개선유지	3,573	3,904	3,904	4,325	3,950	3,950	46	1.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청사 시설관리 및 운영) 시설관리 공무직의 안정적 관리(공무직 상용임금·복리후생비, 교육비·간담회 등 지원)와 청사 시설(승강기·통신시설 등) 전문위탁관리
- (교육운영 지원을 위한 공사 및 유지관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공사, 청사 사용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원활한 교육운영 지원
- (시설관리용 물품구입 및 관사) 시설관리용 장비·노후 물품 교체 및 기관장 관사 임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

② 추진경위

- 노후·낙후된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및 교체계획 수립(‘04.3)
-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본관 리모델링 추진(‘06)
- 교육부대시설(건강증진센터, 국제교육협력센터 등) 개선공사(‘07~’08)
- 시설물 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옥상방수 등 내·외부 시설개선(‘09~’11)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행정연수원 전주·완주 혁신도시 이전(‘13)
- 이전 후 직원·교육생의 안정적 정착과 원활한 교육운영 지원을 위한 시설 유지관리(‘14)
- 전문적·체계적 시설관리 및 시설개방·상생협력을 위한 숲 조성 등 조경개선공사(‘16~)
- 시설관리 직원의 공무직 전환으로 안정적 인력고용 및 시설관리(‘18~)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건물(49,368㎡), 부지(180,383㎡)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외국공무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3) 사업 집행절차

- 사업 추진계획 작성 → 계약추진(일상감사, 계약의뢰, 계약체결) → 사업수행(착수, 완료) → 완성검사 실시 → 사업대가 지급

사 업 명
3.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운영 (14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1	301
명칭	지방자치인재개발	지방자치인재개발운영	지방자치인재개발교육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	국회확정(B)	(B-A)	(B-A)/A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운영	341	354	354	358	328	328	△26	△7.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교육프로그램 개발) 포스트코로나 및 자치분권 확대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자체의 중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지방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최신교육 기법을 적용한 교육과정 연구·개발
- (국정시책 교육 및 워크숍) 정부의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를 공유·확산하여 국정성과 창출을 지원하고자 주요 정책현안(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자치분권, 균형발전 등)을 지자체 핵심간부·실무자 대상으로 교육(워크숍)을 실시하는 사업
-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국제회의, 한중세미나 등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행정 한류를 전파하기 위한 사업
- (자치인재원 교육운영 지원) 인재원 연보, 소식지, 홍보동영상 및 홍보책자(한·영) 제작, 시·도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 컨설팅 등을 운영하는 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의5

② 추진경위

- 1978. 1. 지방행정연수원 신축 이전(경기 수원시 파장동)
- 2006. 1.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출범
- 2008. 3. 지방행정연수원 개편
- 2013. 8. 지방행정연수원 이전(전북 완주군)
- 2017. 7.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개편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지원 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생(공무원 등) 및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프로그램 과제 확정 → 사업자 선정 → 연구과제 수행(교육 프로그램 개발) → 사업완료 및 교육운영 - **(교육운영 지원)** 교육운영계획 수립(국정시책교육, 국제교육과정 등) → 교육생 선발 → 교육실시 → 교육운영 결과 평가 - **(한·중 세미나)** 개최 시기 및 장소 협의 → 주제 선정 → 관련기관 방문 및 현지시찰 → 한·중 세미나 개최(매년 양국 교대 개최) → 결과보고

사 업 명
4. 외국지방공무원교육운영(ODA) (14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1	302
명칭	지방자치인재개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운영	외국지방공무원교육운영(ODA)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 (B)		
외국지방공무원 교육운영(ODA)	277	305	305	277	248	248	△57	△18.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개도국지방공무원 초청연수)
  · (1기) 지자체와 국제교류중인 개도국의 지방공무원 중 지자체에서 추천한 공무원 대상 교육 운영을 통해 지자체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역량강화 지원
  · (2기) ODA 중점협력국 및 인재원 MOU 국가 중심 교육훈련기관장 대상으로 교육훈련기관 역량강화 및 공무원 교육시스템 구축 지원
- (몽골 군수 및 NAOG 교수단 역량강화과정)
  · 몽골 지방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몽골 군수 및 몽골 최고의 교육기관인 NAOG 교수단 대상 한국의 선진 사례 공유 등 연수 추진을 통해 몽골의 행정역량강화 및 포용적 상생·협력 강화, 신북방 정책 지원 적극 기여
- (현지방문교육)
  · 개도국 현지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원국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강의 및 정책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 제고, 개도국 현지에서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함에 따라 대규모 교육 실현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② 추진경위

- ’01. 10. 행자부장관 초청 몽골 도지사 연수 실시
- ‘02. 7. 몽골 NAOG 교수단 양성과정 운영(몽골 NAOG와 교류협력 약정체결)
- ‘03~’20. 몽골 NAOG 교수단 양성과정 19회 249명 연수
- ‘10~’19. 이집트, 몽골, 탄자니아, 인도네시아, 태국, 페루, 캄보디아, 베트남 등 현지 방문교육 2,227명

- ’12~’19. 개도국지방행정과정 8회 111명 연수 * ’00년~‘11년 동 과정 KOICA위탁 운영(12과정 195명)
- ‘19. 6. 2019 LOGODI 글로벌 포럼 최초 개최, 12명
- ‘13~’19. 몽골 군수 역량강화과정 6회 81명 연수
- ‘96~’19. 총 89개국 185개 과정 5,260명 교육(KOICA 위탁 포함)

*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연 160명(’19.12.31. 기준 89개국 185개 과정 5,260명 교육)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외국 중앙 및 지방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국제협력 분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절차내용	
① 준비	수요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수요국과 사전협의를 통해 차년도 교육수요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예산편성	차년도 예산 편성, 제출 및 기재부 승인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	시행계획 제출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		
② 심사	차년도 교육계획안 작성 및 심사	내부검토 및 협의를 거쳐 차년도 교육계획안 확정
⇩		
③ 승인	세부 운영계획 보고	강의, 현장학습 등 종합적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부검토 및 승인
⇩		
④ 시행	연수 시행	강의, 세미나, 현장견학 및 문화체험 등 계획된 연수과정 시행
	결과 보고	교육운영 결과보고서 작성 및 내부 결재
⇩		
⑤ 사후관리	평가 및 피드백	교육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 평가 및 차기 교육과정에 피드백
	동창생 관리	동창생 DB 관리, e-뉴스레터 발송, SNS (Facebook)로 정보제공 등 사후관리

사 업 명
5. 지방자치인재개발원사이버교육센터운영(정보화) (1432-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2	500
명칭	지방자치인재개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정보화(정보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운영(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운영(정보화)	206	210	210	760	210	210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국정시책 교육 및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지방공무원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상시학습체계 지원

○ 사이버교육 콘텐츠의 공동활용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사이버교육 활성화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및 동법 시행령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운영지침(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예규)

② 추진경위

-「사이버교육센터 중장기 기본계획」수립 ('04. 9.)
-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중・장기 발전전략('07. 6.)
- 지방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구축 및 확충
- 지방공무원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09. 9.)
- 자치인재원 「마이크로러닝」 서비스 시범운영('18.10.~), 본격운영('19.3.~)
- 양방향 학습을 지원하는「자치인재원 K-MOOC」 시범운영('19.8.~), 전면확대('20.2.~)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종합 개선 계획 수립('19.10.)
- 사이버교육용 콘텐츠(101개) 개발 ('05 ~ '20)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 ~ 계속
- 사업규모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이용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사이버교육용 콘텐츠 개발사업

- 신규개발 콘텐츠 수요조사 → 개발콘텐츠 선정위원회 개최 → 개발콘텐츠 중복여부 확인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 → 개발사업 계획 수립 → 계약추진(조달청) → 착수보고 및 개발사업 추진 → 검수 및 사업완료

□ 사이버교육 운영

- 사이버교육 운영계획 수립 → 교육운영 안내 및 교육과정 개설 → 교육신청 및 승인 → 사이버교육 실시 및 평가 → 교육운영 결과 보고 및 수료자 통보 → 강사 수당 지급

사 업 명
6. 지방자치인재개발원전산운영(정보화) (1432-5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2	501
명칭	지방자치인재개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정보화(정보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전산운영(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전산운영(정보화)	423	369	369	367	350	350	△19	△5.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온라인 교육환경 제공으로 교육운영 효율성 제고 및 교육편의 제공
- 자치인재원 내 정보시스템 개선·유지관리 및 보안체계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3조(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7조(정보시스템 장애의 복구)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 국가정보화기본법시행령 제41조(초고속국가망의 구축・관리)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행정안전부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공무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정보시스템 구축·개선 사업

- 기본계획 수립 → 내부 일상감사 →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실시(필요시) → 계약추진(조달청) → 착수보고 및 사업 추진 → 사업 완료 및 시스템 시험운영 실시 → 시스템 정상운영 개시 및 안정화 등

사 업 명
7. 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1433-6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원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3	650
명칭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	국회확정((B)	(B-A)	(B-A)/A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수입대체경비	7,971	7,238	7,238	8,006	7,238	7,238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지방 공무원 대상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역 핵심인재 육성을 지원

※ 장기교육과정(고위, 고급, 중견, 여성, 글로벌), 기본교육과정(5급 승진리더)전문 및 시책교육과정, 외국공무원과정 등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재정법 제53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6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② 추진경위

○ 공무원 교육훈련경비의 유료화 방침에 따라 수입대체경비 운영(1999년)

- 수입대체경비의 효율적 운영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향상 및 교육생 만족도 제고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장기·기본, 시책·전문 등 총 67과정 102회 8,387명 교육('20년 계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가·지방자치단체공무원 및 외국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수입대체경비 집행계획 수립 → 품의 요구 → 교육운영, 물품 구매 등 → 대가 지급

▶ 초과수입액 정산 → 초과수입액 사용승인 → 결산

국가기록원

2021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1. 국가기록물정리 ····· 605

2. 기록물보존복원 ····· 608

3. 국가기록서비스정보화추진(정보화) ····· 611

4. 전자기록관리체계구축(정보화) ····· 615

5. 대통령기록관리체계구축(정보화) ····· 618

6. 기록관리정책 및 교육 ····· 621

7. 기록정보서비스 ····· 624

8. 기록관보존시설관리 ····· 627

9. 국가기록관리 활용기술 연구개발(R&D) ····· 630

10. 대통령기록관리 ····· 633

사 업 명
1. 국가기록물정리 (23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1	303
명칭	기록물관리	기록물효율적관리	국가기록물정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국가기록물정리	9,544	11,240	11,207	13,682	12,242	12,242	1,035	9.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각급 공공기관, 민간·해외분야 중요기록물의 체계적 수집·관리 및 양질의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일제의 강제동원을 증명하는 명부의 수집・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
- 기록정보의 전자적 관리로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체계 확립 및 기록정보 자원화를 통한 지식정보화 사회 구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같은 법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같은 법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② 추진경위

- 1998년 8월 : 정부시책(실업대책) 일환 국가기록물관리 공공근로사업 시작
- 1999년 1월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00. 1월 시행)
- 2003년 1월 : 일반사업인 '국가기록물 정리사업'으로 전환
- 2008년 1월 : 중앙행정기관 보유 미이관기록물「수집종합계획」수립
- 2008년 10월 : 기록물 정리사업을 국가기록물정리 외주 위탁사업으로 추진
- 2008년 ~ 계속 : 중요 정부기록물(보존기간 30년 이상) 337만권 등 수집
- 2015년 ~ 계속 : 전자기록물 이관·검수(1,744만건 이관)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69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사업 수혜자 : 공공 및 민간 기관, 국민(취업취약계층 포함)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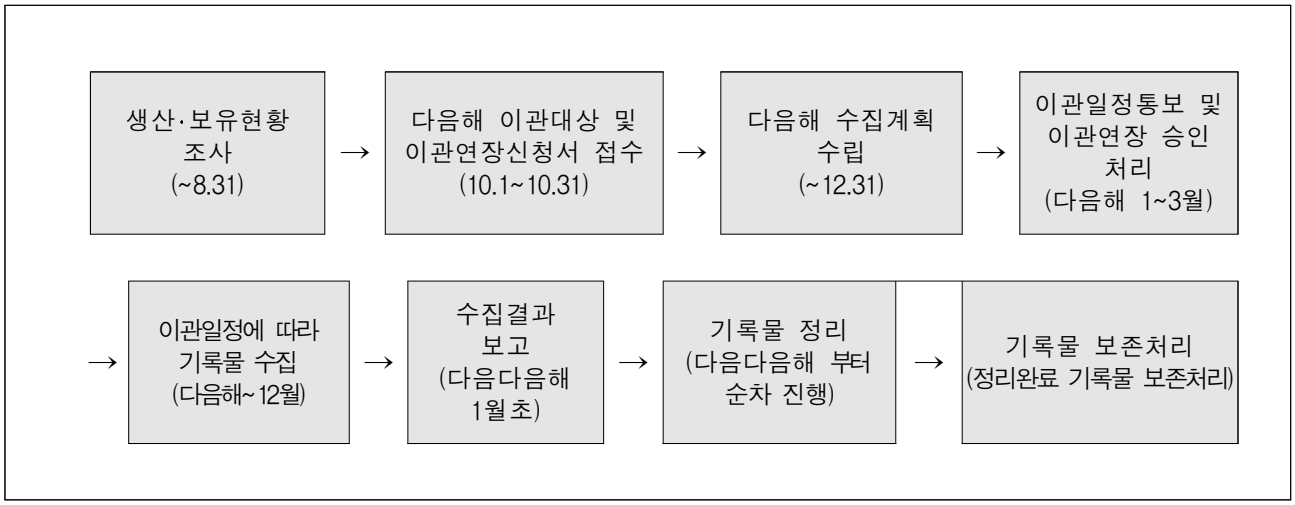
생산·보유현황 조사 (~8.31)
다음해 이관대상 및 이관연장신청서 접수 (10.1~10.31)
다음해 수집계획 수립 (~12.31)
이관일정통보 및 이관연장 승인 처리 (다음해 1~3월)
이관일정에 따라 기록물 수집 (다음해~12월)
수집결과 보고 (다음다음해 1월초)
기록물 정리 (다음다음해 부터 순차 진행)
기록물 보존처리 (정리완료 기록물 보존처리)

사 업 명
2. 기록물보존복원(2331-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1	306
명칭	기록물관리	기록물효율적관리	기록물보존복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기록물보존복원	3,343	3,779	3,779	10,831	3,798	3,798	19	0.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록물 보존) 수집된 국가 중요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 체계적·효율적 관리로 기록유산의 온전한 전승 및 대국민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 (기록물 복원) 중요 원본 기록물의 훼손에 대한 복원 및 보존처리를 수행하여 원본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대국민 정보 자산 활용을 원활히 지원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1969년 8월 :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설치
- 1998년 2월 : 행정자치부로 소속 변경
- 1999년 1월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정('00. 1월 시행)
- 2004년 5월 : 국가기록원으로 명칭 변경
- 2004년 7월 : 기록물 관리체계 전면적 검토 지시(대통령)
- 2004년 9월 : 기록물관리혁신기획단 행정자치부내 구성 지시(대통령)
- 2004년 10월 : 국가기록관리체계개선기획단 발족
- 2005년 10월 :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 국무회의 보고
- 2006년 2월 : 기록관리혁신 종합실천계획 국무회의 보고
- 2006년 10월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 2007년 4월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 2009년 6월 :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 수립
- 2012년 8월 : 대전기록관 준공
- 2013년 9월 : 대전기록관 개관
- 2015년 1월 : 국가기록원 직제 개편(권역별 기록관리 시행)
- 2015년 12월 : 기록보존복원센터 출범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69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사업 수혜자 : 공공 및 민간 기관, 학계, 언론, 일반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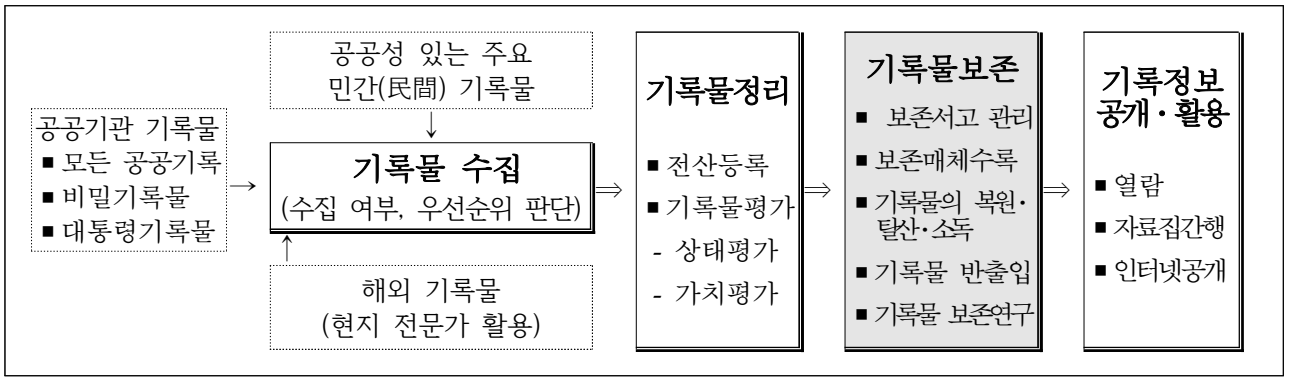
공공기관 기록물
■ 모든 공공기록
■ 비밀기록물
■ 대통령기록물
공공성 있는 주요
민간(民間) 기록물
기록물 수집
(수집 여부, 우선순위 판단)
해외 기록물
(현지 전문가 활용)
기록물정리
■ 전산등록
■ 기록물평가
- 상태평가
- 가치평가
기록물보존
■ 보존서고 관리
■ 보존매체수록
■ 기록물의 복원·탈산·소독
■ 기록물 반출입
■ 기록물 보존연구
기록정보 공개·활용
■ 열람
■ 자료집간행
■ 인터넷공개

사 업 명
3. 국가기록서비스정보화추진(정보화) (2332-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2	500
명칭	기록물관리	기록관리정보화	국가기록서비스정보화추진(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국가기록서비스 정보화추진(정보화)	489	382	382	790	790	790	408	106.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기록물 온라인 기록정보 콘텐츠 구축)
  - ▪ 국가기록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록정보 콘텐츠의 신규·확대 및 DB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시의성 있는 기록물을 주제로 선정하여 국민에게 콘텐츠로 제공함
- (기록정보 온라인 시스템 운영)
  - ▪ 국가기록포털의 스토리지 증설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국가기록원 보유 기록물의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고객만족도 강화
  - ▪ 국가기록포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요구 사업으로서 정보화용역사업의 기술평가 수당 및 기록물 보유 협력기관 출장을 위함
- (중앙행정기관 웹 아카이빙 체계 구축)
  - ▪ 매년 수집하는 웹 기록물 저장을 위한 스토리지 추가 증설 및 웹 기록물 백신 라이선스 갱신하는 사업으로써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의 웹 기록물을 수집·보존하고자 함
- (기록관리평가시스템 고도화)
  - ▪ 기록관리 기관평가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기관의 기록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 및 후속조치를 통해 기록관리 역량강화 및 업무개선을 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 제4조(공무원의 의무) 제2항,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제2항 제7호,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제1항 제2호, 제38조의2(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활용),
-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제2호 및 제10호, 제63조(기록관리 평가)

< 국가정보화기본법 >

- 제18조(지식・정보의 공유・유통)

< 전자정부법 >

- 제18조(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활용) 제1항

② 추진경위

- 1996년 : 국가기록물관리 전산화・광화일화 기본계획 수립
- 1997년 : 문서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 1999년 : 기록물분류기준표 전산시스템 구축
- 2000년 : 전산장비 증설 및 각종 기록물 S/W개발
- 2001년 : 간행물 전자출판파일 등록관리 S/W 개발 등 시스템 확대 구축
- 2002년 : 기록물관리법 체제로의 S/W 개발
- 2003년 : 대통령 통치사료 통합관리 S/W 개발
- 2004년 : 기록물열람 민원처리 S/W 개발
- 2005년 : 기록물열람민원 인터넷연계 및 문서보안시스템 구축
- 2006년 : 기록정보 콘텐츠 개발 및「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포
- 2007년 :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 신규·확대 13편 구축 및 나라기록포털 서비스 개시
- 2008년 :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 신규·확대 11편 구축 및 기록정보통합검색 서비스 개시 등
- 2009년 :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 신규·확대 7편 구축, 웹기록물 시범서비스 체계 개발 등
- 2010년 :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 신규·확대 10편 구축, 나라기록포털 검색 기능통합 및 연계 확대(민간포털, 대통령기록포털) 등
- 2011년 :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 신규·확대 10편 구축, 콘텐츠 5편 웹접근성 개선, 스마트폰 기반 기록정보서비스 개시 등
- 2012년 :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 신규·확대 12편 구축, 콘텐츠 5편 웹접근성 개선, 나라기록포털 내 콘텐츠 내용 검색 기능 개발 등
- 2013년 : 온라인·모바일 기록정보콘텐츠 신규·확대 구축, 콘텐츠 5편 웹접근성 개선, 홈페이지 메인화면 UI 및 외국인 홈페이지 개선 등
- 2014년 :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 신규·확대 7편 구축, 콘텐츠 5편 웹접근성 개선, 검색 색인항목(관리번호 등) 추가 등 국가기록 포털(홈페이지) 검색 서비스 강화 등
- 2015년 :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 신규·확대 6편 구축, 콘텐츠 5편 웹접근성 개선, 기록물 생산기관 변천정보 사이트 확대·개편 등
- 2016년 :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 신규·확대 6편 구축, 콘텐츠 4편 웹접근성 개선, 통합원문서비스 페이지 구축 및 원문뷰어 ActiveX 제거 등
- 2017년 :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 신규·확대 8편 구축, 콘텐츠 5편 웹접근성 개선, 웹기록물 수집시스템 기능 고도화 등
- 2018년 :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 신규·확대 6편 구축, 콘텐츠 7편 웹접근성 개선, 국가기록포털 대용량 원문뷰어 개발 및 웹페이지 검색기능 개선 등
- 2019년 :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 신규·확대 5편 구축, 국가기록포털 UI/UX 개선, 사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한 반응형 웹페이지 구현 등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6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사업수혜자 : 대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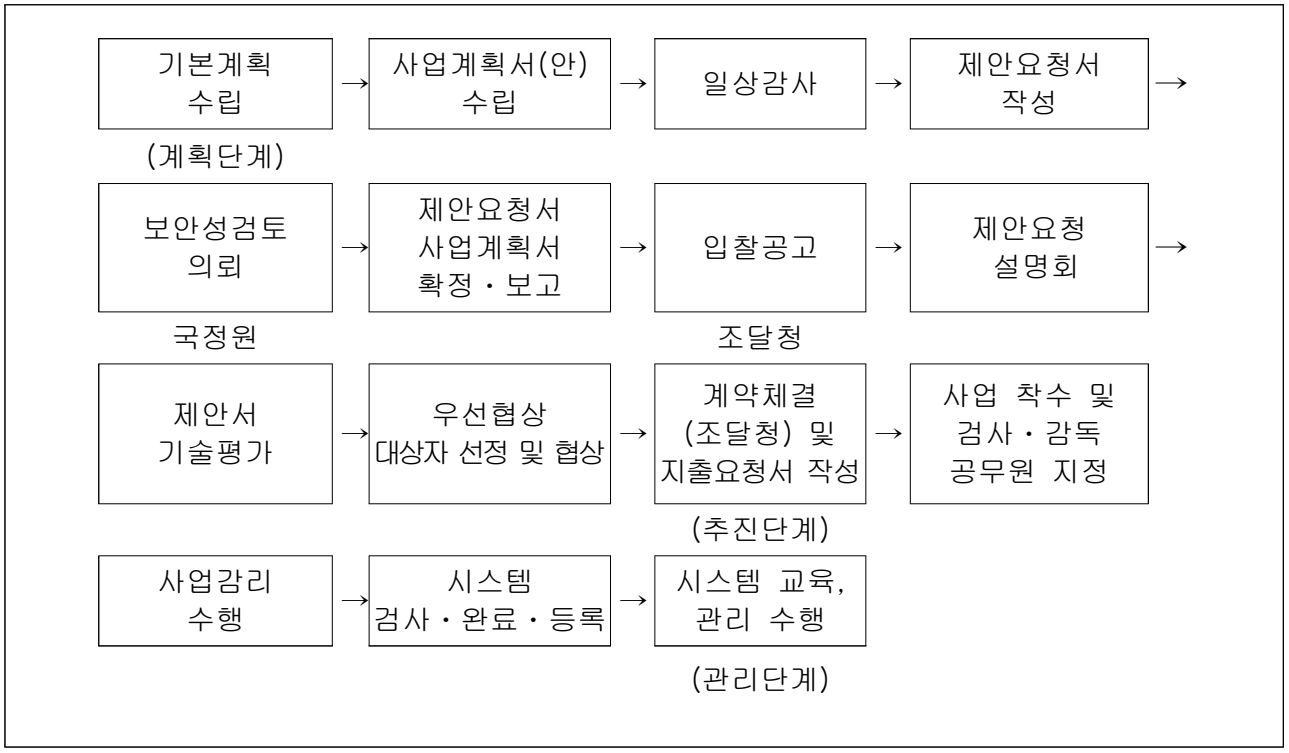

사 업 명
4. 전자기록관리체계구축(정보화) (2332-5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2	501
명칭	기록물관리	기록관리정보화	전자기록관리체계구축(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정보화)	4,056	4,366	4,366	4,359	4,043	4,043	△323	△7.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종이기록에서 전자기록으로 기록관리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적 수행 및 전자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 · 국가기록원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 기능 고도화
  - ·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S/W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 · 전자기록물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체계 구축
-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보존포맷 변환, 전자서명 장기검증 등 보존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 같은 법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 같은 법 제30조(기록물 보안 및 재난 대책)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및 관리)
-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② 추진경위

- 2004년 이후 전자정부, 지식정부로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기록관리 패러다임도 전자기록 중심, 활용 위주, 적극적 공개 지향으로의 변화를 요구 받음
- 2005. 9 ~ 2006. 2월까지 기록관리 전 과정 프로세스·시스템 혁신 ISP 수립
- 2006년 10월「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전면 개정을 법·제도적 기반 마련
- ISP 결과를 반영한 기록관리시스템 표준모델 구축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 추진 필요
- 2005년부터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과 온-나라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이 구축·확산되어, 이들 포괄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재구축하여 보급·확산 필요
- 상기 필요성에 따라 2006년부터 전자기록관리체계구축(정보화) 사업을 추진함
  - ▪ 기록물관리 S/W 고도화 (2006. 5-12)
  - ▪ 전자기록물 장기검증 시스템 구축 (2007. 4-10)
  - ▪ 전자기록물 분배·통합 및 시스템 기능개발사업(2008. 9-12)
  - ▪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확대사업(2009. 8-12)
  - ▪ 2010년도 기록정보화사업(2010. 6-12)
  - ▪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정보화 사업(2011-2012년)

▪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개편사업(2013-2014년)
▪ 국가기록원 통합보안관제체계 구축사업(2016. 7-12)
▪ 기록물관리시스템 고도화 통합사업(2015-2019년)
▪ 전자기록 기술정보 수집 및 활용체계 구축사업(2017-2020년)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체계 구축사업(2019-2020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6 ~ 계속
- 사업규모 : 790여개 기관에 기록물관리시스템 보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기록물관리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안) 수립	→	일상감사 및 기술평가	→	제안요청서 작성	→	
(계획단계)								
보안성검토 의뢰	→	사업계획서 확정·보고	→	입찰공고	→	제안요청 설명회(필요시)	→	
국정원				조달청				
제안서 기술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약체결 (조달청) 및 지출요청서 작성	→	사업 착수 및 검사·감독 공무원 지정		
				(추진단계)				
사업감리 수행	→	시스템 검사·완료·등록	→	시스템 교육, 관리 수행				
				(관리단계)				

- 전체 단계 적용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전자정부법(시행령,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시행규칙)
- 추진 단계 적용 규정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등
- 관리 단계 적용 규정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소프트웨어 사업관리 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등

사 업 명
5. 대통령기록관리체계구축(정보화) (2332-5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2	502
명칭	기록물관리	기록관리 정보화	대통령기록관리체계구축(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기록원기본경비(총액)	3,688	6,242	6,242	9,535	7,792	7,792	1,550	24.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대통령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현 및 기록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관련 시스템(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 대통령기록 포털, 시청각기록물 관리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HW/SW 유지보수 등을 통한 안정적 운영
-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 기반인프라 구축운영)**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를 통한 이중 보존으로 중요 기록물의 훼손 등에 대비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존기반 마련
- **(대통령기록 정보시스템 고도화)**
  - 대통령기록 생산환경의 변화*에 따른 차세대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PAMS)** 구축을 통해 제19대 대통령기록물의 차질없는 이관 수행

    * 대통령비서실에서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 신규 구축('18년) 후 운영 중이며, '청와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19년)에 따른 메타데이터, 이관방식 및 보존포맷 규격 등 전면 개편

    ** ('20년) 일반기록물시스템 구축 ('21년)지정·비밀기록물시스템, 웹기록(SNS 등)시스템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생산·관리원칙), 제8조(전자적 생산·관리)

-법 제11조(이관) 및 시행령 제5조(이관시기)

-법 제15조(보안 및 재난대책) 및 시행령 제8조(보안 및 재난대책의 수립·시행)

-법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및 시행령 제9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절차 등)

-법 제18조(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및 시행령 제10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 제10조의2(전직 대통령의 방문 열람), 제10조의 3(전직 대통령의 온라인 열람)

-법 제20조(비밀기록물의 재분류) 및 시행령 제11조(비밀기록물의 해제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

② 추진경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07.4.27.)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 1차 구축사업 완료('07.11.28)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설치('07.11.30.)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웹서비스시스템 구축사업 완료('08.12.20.)

-대통령기록포털 콘텐츠 등 구축사업 추진('09.10.22. ~ 계속)

-전직대통령(제17대)온라인열람시스템 구축('12.12.31.)

-제18대 웹기록물 이관 및 보존·서비스체계 구축('17.8.31.)
-대통령기록포털 노후장비 교체 및 시스템 고도화('17.11.26.)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 고도화 ISP 추진('19.8.)
-차세대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 추진('20.4.~)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8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대통령기록관리체계 사업추진절차(정보화) >

사 업 명
6. 기록관리정책 및 교육 (23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3	300
명칭	기록물관리	기록관리정책및교육	기록관리정책및교육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민간 100%, 지자체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기록관리정책및교육	1,391	1,914	1,914	2,636	1,657	1,657	△257	△13.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제도개선 및 정책홍보 추진으로 국가기록관리 체계 구축 및 내실화
- 기록관리 표준화 정책 수립, 기록관리 평가 및 국내외 교류협력
- 기록관리 교육훈련 실시로 기록관리 전문성 강화 및 기록문화 의식 함양
-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운영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국가위상 제고
- 합동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중앙·시도 간 유대 협력 강화
- 지방기록물 이관사업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1969년 8월 :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설치
- 1998년 2월 : 행정자치부로 소속 변경
- 1999년 1월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정('00. 1월 시행)
- 2004년 5월 : 국가기록원으로 명칭 변경
- 2004년 7월 : 기록물 관리체계 전면적 검토 지시(대통령)
- 2004년 9월 : 기록물관리혁신기획단 행정자치부내 구성 지시(대통령)
- 2007년 7월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2007년 9월 : 기록관리 전문교육훈련기관 지정(행안부 인력개발기획과)
- 2011년 2,5월 :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78조, 시행규칙 제42조 개정에 따른 전문요원 시험제도 도입
- 2011년 11월 : ICA 본회의(스페인)에서 2016년 ICA 개최지(서울) 확정
- 2016년 9월 : ICA 서울총회 개최(114개국, 2,059여명 참가)
- 2017년 11월 :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국내 유치 확정(제39차 유네스코 총회)
- 2019년 12월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개정('19.12.3. 공포)에 따른 국제기록유산센터 특수법인 설립 근거 마련 및 '기록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69년 ~ 계속
- 사업규모 : 기록관리 정책기획, 표준·평가·교류협력, 기록관리교육,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운영, 지방기록물 이관사업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민간 100%, 지자체 50%)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사업 수혜자 : 공공 및 민간기관, 학계, 언론, 일반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10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
지자체 보조	5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3)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기록물 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총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기록물관리체계의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 기록물관리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정비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 • 기록물관리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방안 마련
② 기록물관리 표준화 및 유관기관 교류 협력 증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개정 및 표준인증제도의 기반 마련 • 기록물관리 표준 이행 적합성 평가 및 지도 지원 • 기록물관리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증진
③ 기록물관리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기록물관리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 기록물관리 신규과정 및 맞춤형 교육과정의 개설 • 사이버 기록물관리교육 콘텐츠 개발 및 기록물 관리 관련 교육훈련기관 간 협력
④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ICDH) 운영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 센터	• 센터의 법률,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 마련 및 운영 추진 • 국내외 관련기관(유네스코, 외교부, 청주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협력 추진 • 개도국 기록유산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국제기록유산센터 전략연구(정책 개발 및 연구용역 수행)
⑤ 기록물합동전시회 개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전시회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력 증진 • 전시회 연계 워크숍 및 초청견학 추진
⑥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및 운영지원	경상남도	• 국가기록원 보존 경남기록물 이관 목록 협의 • 정수점검, 포장·이송, 서고 입고, 시스템 정리 • 사업결과 알림(경남→국가기록원)

사 업 명
7. 기록정보서비스(2334-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010	10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4	300
명칭	기록물관리	기록정보서비스	기록정보서비스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기록정보서비스	1,742	1,732	1,732	1,286	1,286	1,286	△446	△25.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소장기록물을 활용한 편찬·콘텐츠 구축 및 기록물 열람·공개 재분류 등 대국민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1969년 8월 :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설치
- 1998년 2월 : 행정자치부로 소속 변경
- 1999년 1월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정('00. 1월 시행)
- 2004년 5월 : 국가기록원으로 명칭 변경
- 2004년 10월 : 국가기록관리체계개선기획단 발족
- 2005년 10월 :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 국무회의 보고
- 2006년 2월 : 기록관리혁신 종합실천계획 국무회의 보고
- 2006년 10월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 2007년 4월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 2009년 6월 :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 수립
- 2013년 6월 : 국가기록관리 3.0 기본계획 수립
- 2019년 1월 : 콘텐츠기획과→공개서비스과 개편(콘텐츠과 → 팀으로 기능 축소)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69 ~ 계속
- 사업규모 : 소장기록물을 활용한 편찬·콘텐츠 구축 및 열람서비스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록원
- 사업 수혜자 : 공공 및 민간 기관, 학계, 언론, 일반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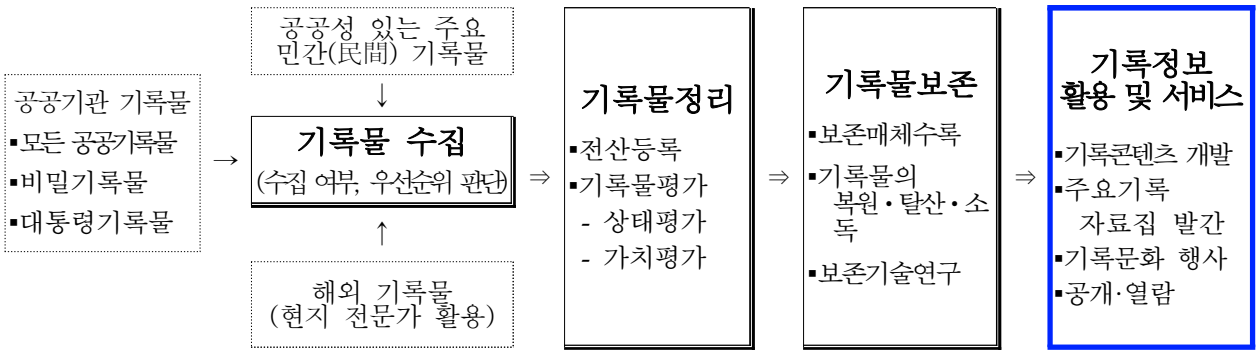
공공기관 기록물
▪모든 공공기록물
▪비밀기록물
▪대통령기록물
→
공공성 있는 주요 민간(民間) 기록물
↓
기록물 수집
(수집 여부, 우선순위 판단)
↑
해외 기록물
(현지 전문가 활용)
⇒
기록물정리
▪전산등록
▪기록물평가
- 상태평가
- 가치평가
⇒
기록물보존
▪보존매체수록
▪기록물의 복원·탈산·소독
▪보존기술연구
⇒
기록정보 활용 및 서비스
▪기록콘텐츠 개발
▪주요기록 자료집 발간
▪기록문화 행사
▪공개·열람

사 업 명
8. 기록관보존시설관리 (2335-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5	302
명칭	기록물관리	기록물보전시설관리	기록관보존시설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기록관보존시설관리	7,158	7,690	7,690	8,181	6,941	6,941	△749	△9.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록관 청사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운용 및 보안체계 확립을 통한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환경 제공
- 기록물의 소독·탈산처리 및 보존서고 종합점검 등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및 보존환경 유지
- 소관 권역 기록물의 수집·정리·등록 및 체계적 관리
- 신속한 대국민 기록열람서비스 제공과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친화형 기록문화 사업 및 전시관 운영
- 기획전시실 구축으로 시의성 있는 주제 전시를 통해 일반, 기관·단체, 학계 및 연구자들에게 "공공정보의 개방·공유"를 목표로 하는 개방형 기록정보 문화서비스 제공 확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 「통합방위법」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2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 국가보안목표시설(국정원) 및 국가중요시설(국방부) 관련 지침 등

② 추진경위

- '84.11. :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 개소
- '05. 9. : 국가기록 보존분담체계 및 시설장비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 '07.12. : 나라기록관(현 서울기록관) 준공
- '10. 4. : 부산기록관 리모델링
- '13. 9. : 대전기록관 준공, 개관 운영
- '15. 1. :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으로 직제 개정
- '19. 1.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역사기록관, 행정기록관으로 직제 개정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사업 수혜자 : 공공 및 민간 기관, 국민(취업취약계층 포함)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구매, 계약의뢰	계약체결	설치, 수행	설치·검수	완료
• 사업계획보고 • 구매, 계약 체결의뢰 (조달청)	• 발주공고 • 적격심사 등 • 계약체결	• 물품 설치 • 시설 공사 • 용역 수행	• 설치물품 검수 및 수행결과 검사	• 완료결과보고 • 물품 등 운용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통합방위법 등 적용

사 업 명
9. 국가기록관리 활용기술 연구개발(R&D) (2336-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6	301
명칭	기록물관리	기록물보존기술연구	국가기록관리 활용기술 연구개발(R&D)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국가기록관리 활용기술 연구개발(R&D)	726	800	800	1,000	1,000	1,000	200	2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 중요기록물*(대통령기록물, 국무회의록 등)의 안전한 후대전승을 위한 과학적 기반의 기록관리기술 연구개발 중요성 증대

  * (기록원 소장기록물) 조선왕조실록, 공공기록 1억만건(국무회의록, 총독부문서, 세계기록유산, 지적원도, 판결문 등), 대통령기록 3천만건 등 총 1억 3천만건

- 디지털혁신 등 전자정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기록관리를 위해 전자기록물 생산-이관-장기보존 및 디지털 콘텐츠 활용·개방 등 관련 기술 연구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30조의2(보존・복원기술의 연구개발)
-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② 추진경위

- ‘07. 05. :「기록물 보존기술 R&D사업」기본계획 수립
- ’07. 08.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R&D사업 심의 및 타당성 인정
- ’08 ~ ’17 :「기록물 보존기술 R&D사업」5대 분야*, 87개 연구과제 수행

  * 5대 분야 : 종이기록, 전자기록, 시청각물, 행정박물, 보존환경

- ‘16. 12. ~ ‘17. 04. :「기록보존기술 R&D사업」일몰 적용에 따른 재기획 추진
- ‘17. 04. :「국가기록관리·활용기술 R&D사업」기본계획 수립
- ‘17. 05. ~ ‘17. 07.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R&D사업 심의 및 신규사업(‘18) 확정
- ‘18. 01. ~ ‘19. 12. :「국가기록관리·활용기술 R&D사업」17개 연구과제 수행
- ‘20. 01. ~ :「국가기록관리·활용기술 R&D사업」8개 연구과제 수행 중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8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사업 수혜자 : 대학, 전문연구기관, 기업부설 연구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구 분	추진 절차	수행 주체
사업기획	① 연구과제 내외부 공모	국가기록원
	② 연구과제 기획 * 주관부서 제안요청서 작성	국가기록원
	③ 연구과제 예비검토회의	국가기록원
	④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사업자문위원
	⑤ 부내 일상감사	행정안전부
	⑥ 사업계획 보고 및 확정	국가기록원
사업공고	⑦ 주관기관 공모 조달공고	조달청
계획평가	⑧ 제안서(연구계획서) 평가	외부평가위원
연구협약	⑨ 추가협상 및 계약체결	주관연구기관/국가기록원
	⑩ 착수보고회	주관연구기관
진도관리	⑪ 중간진도보고, 기술세미나 등	주관연구기관
	⑫ 연구과제 중간평가	외부평가위원
결과평가	⑬ 연구과제 최종평가	외부평가위원
정산 및 완료보고	⑭ 용역 검사 및 연구비 정산	국가기록원
	⑮ 최종완료보고회	주관연구기관/국가기록원
성과활용	⑯ 연구성과 업무 적용 등 활용	국가기록원/주관연구기관/공공기관/민간

사 업 명
10. 대통령기록관리 (2337-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7	304
명칭	기록물관리	대통령기록관리	대통령기록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대통령기록관리	7,308	7,133	7,133	10,803	10,511	10,511	3,378	47.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대통령기록물 관리 지원)**
  - 일반 · 전산 물품 구입, 차량 유지 및 업무협의 등 대통령기록관 운영을 위한 지원
- **(대통령기록관리 법·제도의 전문적 운영)**
  - 대통령기록물법 제정('07년) 이후, 제도 운영상 발생한 문제점, 입법미비 사항 등을 개선하여 독립성·전문성 강화 및 대통령기록관리 체계 혁신(국정과제 8-1, 혁신적인 열린정부) 추진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대통령기록관리 거버넌스 강화
- **(대통령기록물 공개 및 지정기록물 관리)**
  -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을 주기적·지속적으로 재분류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
- **(대통령기록물 수집 강화)**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한 기록관리 지원 및 컨설팅을 통해 국정운영의 핵심결과인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인 생산 · 관리, 누락 없는 이관 추진
  - 대통령기록물 분류 및 평가체계 개선을 통한 중요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 민간 소장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조사 · 발굴하여 국가의 기록유산 관리
- **(대통령기록물 정리·기술 평가)**
  - 대통령기록관 소장기록물의 체계적 분석을 통한 대통령기록물 활용성 강화
- **(대통령기록물 활용 대국민 서비스)**
  - 소장 기록물 소개 및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구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대통령기록물 서비스 추진
  - 중요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가치 제고를 위한 대통령기록물의 전시 및 견학·체험프로그램 운영
  -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대통령기록물 열람서비스 강화
- **(대통령기록물 보존·복원)**
  - 대통령기록물의 상태검사·소독·탈산 등 기초 보존처리 및 훼손기록물 복원처리를 통해 중요기록물에 대한 보존안정성 강화
  - 대통령기록물의 생물학적 피해 예방을 위해 보존서고 주기적 환경점검 및 무단 반출·입 통제를 위한 RFID 태그 부착으로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운영)**
  - 대통령기록관 시설 관리, 공무직 운영 등을 통한 청사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4. 10월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관리체계개선기획단’ 구성・운영
- ’06. 2월 : 기록관리혁신 종합실천계획 수립 국무회의 보고
- ’05. 10월 : ‘대통령기록관리 혁신TF’ 운영(총 13차례, 제정안 등 협의)
- ’06. 12월 : 국가기록원 조직 개편에 따라 대통령기록관리팀 신설
- ’07. 4월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07.7 시행)
- ’07. 11월 : 대통령기록관 직제 신설(11.30)
- ’07. 12월 : 나라기록관(성남) 준공, 대통령기록관 설치
- ’10. 7월 : 대통령기록관 건립 재개 요청(행복도시건설청)
- ’11. 6월 ~ ’12. 8월 : 대통령기록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13년 4월: 세종시 문화시설지구 내 대통령기록관 건립공사 착공
- ’15년 5월: 대통령기록관 건립공사 준공
- ’15년 11월: 대통령기록관 신청사 이전
- ’16년 1월: 대통령기록관 신청사 개관식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8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전직대통령 기념사업회, 역사학·기록학 등 유관분야 연구자 및 공공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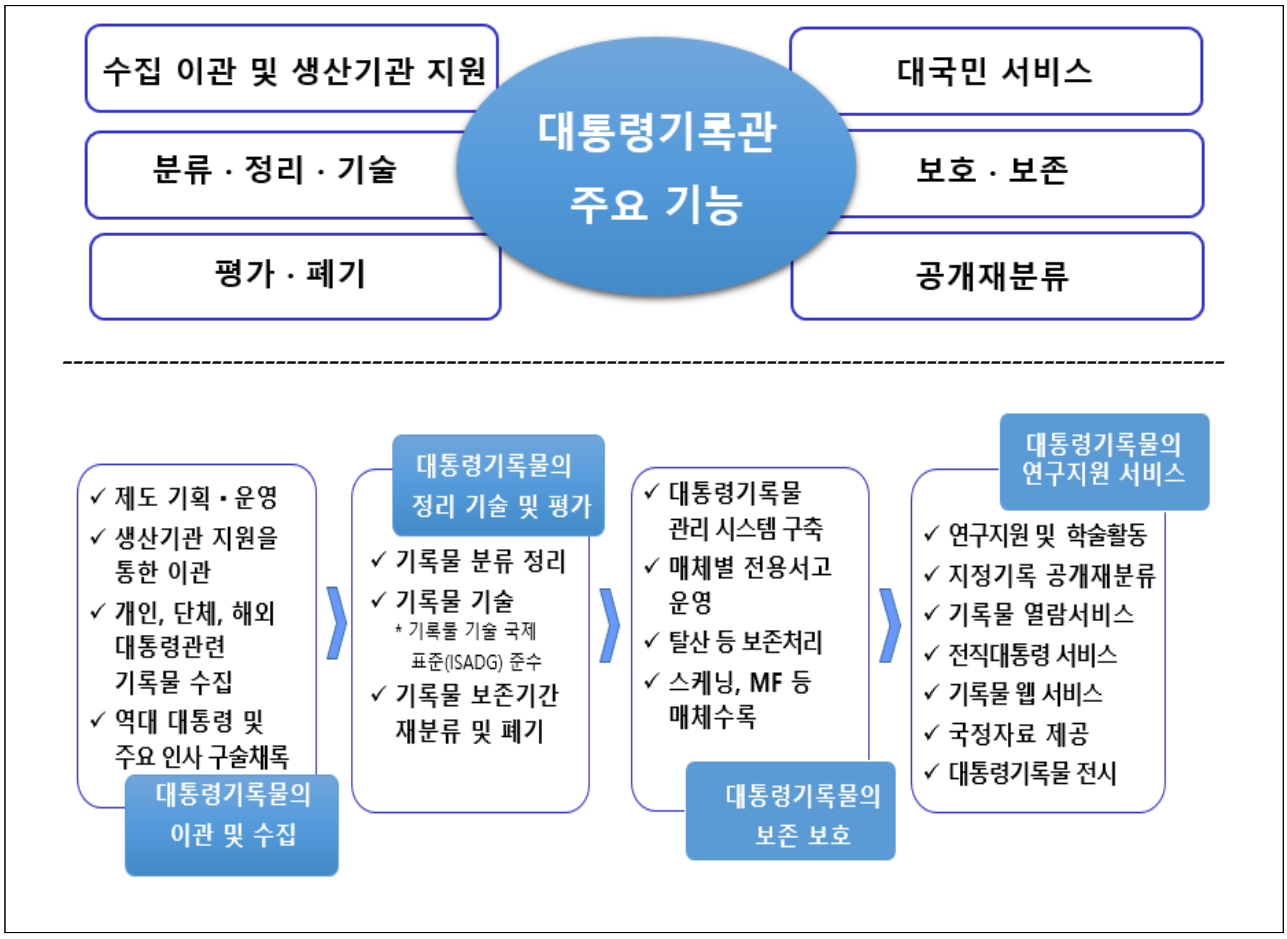
수집 이관 및 생산기관 지원
분류 · 정리 · 기술
평가 · 폐기
대통령기록관
주요 기능
대국민 서비스
보호 · 보존
공개재분류
✓ 제도 기획 · 운영
✓ 생산기관 지원을 통한 이관
✓ 개인, 단체, 해외 대통령관련 기록물 수집
✓ 역대 대통령 및 주요 인사 구술채록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및 수집
대통령기록물의 정리 기술 및 평가
✓ 기록물 분류 정리
✓ 기록물 기술
* 기록물 기술 국제 표준(ISADG) 준수
✓ 기록물 보존기간 재분류 및 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 시스템 구축
✓ 매체별 전용서고 운영
✓ 탈산 등 보존처리
✓ 스케닝, MF 등 매체수록
대통령기록물의 보존 보호
대통령기록물의 연구지원 서비스
✓ 연구지원 및 학술활동
✓ 지정기록 공개재분류
✓ 기록물 열람서비스
✓ 전직대통령 서비스
✓ 기록물 웹 서비스
✓ 국정자료 제공
✓ 대통령기록물 전시

정부청사관리본부

2021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1. 청사시설유지보수 ····· 639

2.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 642

3.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 645

4.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재건축 ····· 648

5. 공무원통근버스운행 ····· 651

사 업 명
1. 청사시설유지보수 (22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1	300
명칭	청사관리	정부청사시설관리	청사시설유지보수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청사시설유지보수	46,009	47,842	47,705	47,630	47,603	47,603	△102	△0.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부청사의 상시적 유지·관리를 통한 시설 안전성과 내구성 제고
-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 기여 및 고객편의 도모
  * 기계, 전기, 건축, 통신장비의 유지·보수, 안전관리, 후생·공용시설 관리
  * 전기·수도 등 청사 유지를 위한 공공요금, 부담금·보험 등 각종 제세 소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제3조(청사의 수급 및 관리)

② 추진경위: 정부청사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청사 개청 이래 지속 추진

※ 청사 준공: 세종('14년), 서울('70년), 과천('82년), 대전('97년), 춘천('03년), 제주('06년), 광주('08년), 대구('12년), 경남('13년), 고양('13년), 인천('19년), 충남('20년), 경북('20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사업기간: 계속
- 사업규모
  · 세종, 서울, 과천, 대전, 광주, 제주, 대구, 경남, 인천, 고양, 춘천, 충남, 경북청사의 상시 유지·관리
  · 청사시설 유지와 운영을 위한 전기, 수도, 냉난방 등 공공요금
  · 기계, 전기, 건축, 통신장비의 안정적인 유지·보수
  · 의무실, 회의실, 주차장, 편의시설 등 후생·공용시설 관리, 조경관리 등
  · 지방합동청사 관사 운영, 입주부처 후생복지 프로그램 등 운영 서비스 지원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 사업 수혜자: 청사방문고객(민원인), 정부청사 입주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유지·보수 수요 발생	➡	설계서 작성	➡	계약 의뢰	➡	
업체선정 및 공사 시행	➡	유지·보수 완료				

사 업 명
2.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22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1	301
명칭	청사관리	정부청사시설관리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11,663	21,041	18,271	63,572	35,609	**35,609**	17,338	94.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장기간 사용으로 성능과 안전이 저하된 시설물을 교체 및 개·보수하여 성능과 효율, 내구연한 증대 및 안전사고 예방
- 고효율 시설 및 신·재생 에너지 이용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도모
- 노후청사 창호, 단열재 등 보강으로 공공건물을 '따뜻하고 쾌적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그린리모델링 추진
- 미세먼지 저감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미세먼지 차단 숲, 울타리숲, 다중 이용공간 공기정화 식물 조석으로 도심녹지를 조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제3조 청사의 수급 및 관리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제7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 석면안전관리법 제7조 및 제8조
-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 및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0-30호)」

② 추진경위

- 내용연수가 경과되거나 노후된 청사 시설물의 보수 및 연차적 교체
- 저비용·고효율 시스템(에너지 설비) 도입
- 그린 공공청사 구현을 위한 뉴딜사업 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 세종, 서울, 과천, 대전, 광주, 제주, 대구, 경남, 춘천, 고양, 인천청사의 노후시설 정비 및 안전진단 등 법정 수요
  - · 정부청사 시설 확충 및 뉴딜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 사업 수혜자 : 청사방문고객(민원인), 정부청사 입주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업구상 및 계획 수립	➡	설계자 선정	➡	기본 및 실시설계	➡	
업체선정 및 공사 시행	➡	준공				

사 업 명
3.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22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정부청사 관리본부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1	302
명칭	청사관리	정부청사시설관리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애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111,646	116,079	116,079	124,041	119,657	119,657	3,578	3.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종, 서울, 과천, 대전 등 13개 정부청사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관리, 청소, 조경, 통신, 승강기, 안내, 경비(청원경찰), 운동지도 등 8개 분야의 직접고용 및 전문분야 위탁용역을 통한 정부청사 유지기능 수행
- 정부 청사 내 보육시설(어린이집)의 전문기관 위탁운영을 통한 직장 내 공무원 자녀 등 보육서비스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제3조 청사의 수급 및 관리 "청사의 수급 및 관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정·총괄한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17.7.20)
- 정부청사 정규직 전환기준(정부청사관리본부, '17.12.1)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5조 사업주의 비용부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시설, 청소, 통신관리 등의 위탁용역사업은 정부청사 기능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정부청사 개청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 안내 위탁용역은 정부청사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98년 7월부터 서울청사 시범 시행 후 전 청사로 확대되었고,
- 조경 위탁용역은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의 민간위탁 결정에 따라 '00년부터 시행하였음
- '17년 5월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에 발맞춰 정부청사에 근무하는 위탁용역을 직접고용 형태의 공무직으로 전환 추진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17.7.20)에 의거 '18.1월 부터 기존 위탁용역을 단계적으로 직접고용으로 전환
- 청사 어린이집 운영은 '96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던 것을 '06년부터 정부청사관리소로 업무 이관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71~계속
- 사업규모 : 13개 정부청사(세종, 서울, 과천, 대전, 광주, 제주, 대구, 경남, 춘천, 고양, 인천, 충남, 경북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및 10개 정부청사(춘천, 충남, 경북 제외) 25개소 어린이집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 사업 수혜자 : 정부청사 입주직원 및 방문고객(민원인)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10개 청사 25개소 어린이집 운영자(선정원, 우송대, 킨더슐레, 건양대, 침신대, 모아맘, 대덕대, 서원대, 백석대, 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 덕성여대, 중앙대, 푸르니보육지원재단, 한남대, 광주대, 대구과학대, 핸즈영유아지원센터 등)	50% 이상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5조 사업주의 비용부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사업 집행절차

공무직 운영계획 수립 ➡ 단체(임금) 교섭 추진 및 체결 ➡ 공무직 운영 및 예산 집행

사 업 명
4.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재건축 (22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1	303
명칭	청사관리	정부청사시설관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재건축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재건축	1,184	4,629	4,629	1,002	1,002	1,002	△3,627	△78.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창성동 별관 재건축) 노후된 재난 취약시설 개선을 통해 청사의 안전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여 근무환경 개선
- (어린이집 리모델링) 청사 근무직원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업무환경 조성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제3조 청사의 수급 및 관리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기존 시설 내진보강계획 수립대상)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관련법에 따라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계획 수립 및 추진

※ 정부서울청사 본관 및 과천청사(3,4동)에 대하여는 기 추진('13~'16년)

· 경주지진('16.9.), 포항지진('17.11.) 등 내진성능 미비시설에 대하여 조속한 사업추진 필요성 대두

· 창성동별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17.4.~6.)결과 안전성은 'D등급*', 내진성능은 '붕괴위험**'으로 평가

* 안전등급 :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 성능수준(4단계) : 거주가능(IO), 인명안전(LS), 붕괴방지(CP), 붕괴위험(CO)

· 건물 노후화가 심하여 개·보수보다는 철거 후 신축이 경제적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29,976백만원(어린이집 리모델링 4245백 제외)
- 사업기간 : 2018년 ~ 2023년
- 사업규모
  · 기존 시설 철거
  · 창성동별관 신축 : 연면적(10,594㎡) / 지하 1층, 지상 4층
  · 어린이집 이전·설치 : 연면적(2,415㎡) / 3층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 사업 수혜자 : 정부청사 입주공무원 및 청사 직장어린이집 입소아동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업구상 및 계획 수립	➡	설계자 선정	➡	기본 및 실시설계	➡	
시공사 선정	➡	공사 시행 철거 후 문화재조사	➡	준공		

사 업 명
5. 공무원통근버스운행 (2232-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2	305
명칭	청사관리	공무원통근버스운행	공무원통근버스운행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공무원통근버스운행	10,184	9,501	9,501	9,025	9,025	9,025	△476	△5.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대중교통이 불편한 원거리 거주 공무원에게 교통편의 제공으로 업무능률 향상
- 자가용 이용 자제를 통한 에너지 절약, 교통난 및 주차난 완화
- 정부부처 세종청사 단계별 이전('12~'19)에 따른 출퇴근 편의 제공 등 단계별 정착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추진경위

- 1972년 11월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공무원 사기진작 차원)
- 1997년 7월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자동차 1,000만대 시대의 교통수요 대처 방안으로 자가용 이용 자제 및 대주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
- 2008년 7월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강화(국무총리 특별지시)
- 2012년 9월 부처 이전에 따라 단계별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73 ~계속
- 사업규모
  - · 서울, 과천, 대전청사 : 총 87대 운행(서울 41대, 과천 22대, 대전 24대)
  - · 세종청사 : 총 51대 운행(수도권 33대, 세종권 18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 사업 수혜자 : 정부청사 입주 공무원 및 근무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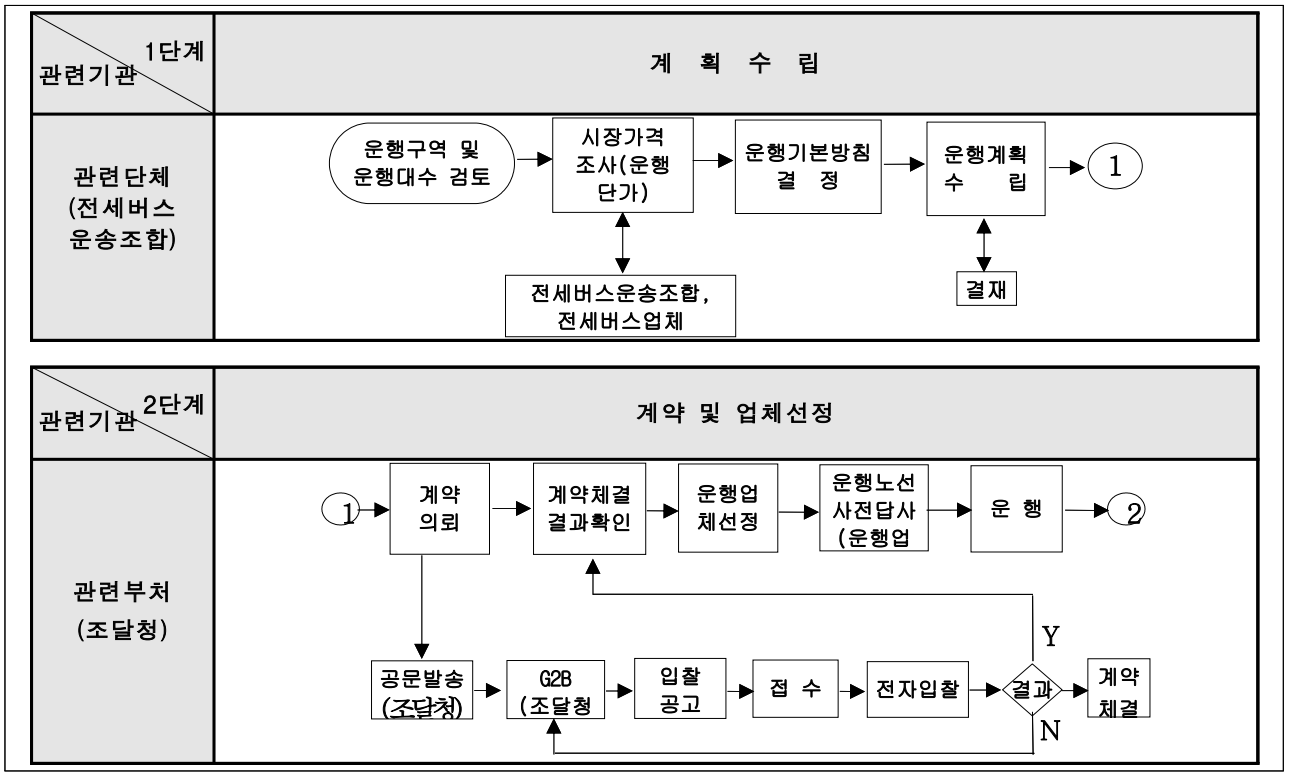
1단계
관련기관
계 획 수 립
관련단체
(전세버스
운송조합)
운행구역 및
운행대수 검토
시장가격
조사(운행
단가)
운행기본방침
결 정
운행계획
수 립
1
전세버스운송조합,
전세버스업체
결재
2단계
관련기관
계약 및 업체선정
관련부처
(조달청)
1
계약
의뢰
계약체결
결과확인
운행업
체선정
운행노선
사전답사
(운행업
운 행
2
공문발송
(조달청)
G2B
(조달청
입찰
공고
접 수
전자입찰
결과
Y
N
계약
체결

이북5도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1.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 657

2. 이북5도청사 시설 개·보수 ····· 661

3. 이북도민 관련단체 및 행사지원 ····· 664

사 업 명
1.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15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1	300
명칭	이북5도	이북도민관련지원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507	532	532	806	527	△5	△0.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업목적

-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사회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 기반 마련
- 북한이탈주민에게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와 정서적 안정화 지원 확대
- 남한의 경쟁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 사례 최소화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신적 · 재정력 자립능력 지원

○ 사업내용

- **(남북이음교육과정)**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이해와 적응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단순한 정보 전달, 지식교육 뿐 아니라 음지의 북한이탈주민을 양지로 끌어내 이북도민 사회 편입 지원 통해 남한사회의 안정적 정착 지원
- **(가족결연사업)** 이북도민과의 가족결연을 통해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 하고 이북도민사회 일원으로 편입 유도하여 지역사회 적응 활동 지원
- **(기업체 연수 운영)** 기업체와 북한이탈주민을 연계한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확보와 남한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
  * 현재 이북도민이 운영하는 기업체 통해 연수교육 운영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일반 중소기업 참여 확대 추진
- **(나눔한마당 행사)** 전국에 거주하는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고 자연스러운 이북도민사회 편입 유도
  * 코로나19 확산 등 축제성 사업 제한으로 '21년 예산안에 미반영 ('20년 20백)
- **(이북도민 행사지원 등)**
  · (이북도민행사 참가지원) 이북도민 단체에서 추진하는 문화·체육행사 개최시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북도민과의 유대관계
  · (이북도민화합협의회 운영)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간의 지속적 교류확대 및 화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대표와 이북도민 대표 협의회를 통해 서로의 다양한 의견 교환
- **(북한이탈주민 상담도우미)** 수요자(북한이탈주민의)와의 친밀감을 높이고 정서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직으로 채용하여 상담도우미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② 추진경위

- ‘03.12월 대통령지시사항(탈북자의 한국 적응을 위해 도민과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
- ‘04.12월 이북도민과 가족결연식 개최(‘04년 69쌍 → ‘15년 1,334쌍)
- ‘05.03월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북한이탈주민업무 추가)
- ‘05.05월 북한이탈주민 통일학교 개교(매월 1회)
- ‘06.02월 북한이탈주민 전문과정 운영(’06년 2과정 → ‘15년 25과정)
- ’11.03월 북한이탈주민 이북도민 기업체 연수교육 실시
- ’12.04월 북한이탈주민지원 전담조직(북한이탈주민지원단) 신설
- ’13.06월 통일학교 교육관 설치 및 이북무형문화교육과정 신설
- ‘15.03월 북한사투리 언어교정반 신규 개설
- ‘16.09월 라인댄스 및 퉁소연주반 신규 개설
- ‘17.03월 국선도 및 실생활과정반(법률,경제,한자) 신규 개설
- ’17.08월 난타반 및 실생활과정반(법률,경제,표준어) 신규 개설
- ’18.03월 교육생 특성(고령)을 고려한 수지침과정 신규 개설
- ’18.07월 이북도민지원과 명칭변경 (「이북5도위원회 직제규정」 제정)
- ’19.04월 건강요리강좌, 웃음상담치료반 신규 개설(교육생 신청)
- ’20.02월 평화강사단 구성, 실생활 중심 교육과정 개편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05 ~ 계속
- 사업규모 : 3만 3천명(‘19.6월 기준) 북한이탈주민 및 850만(추정) 이북도민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이북5도위원회
- 사업 수혜자 :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주요사업 방침 결정	▶	위원회 결정 사항 집행	▶	관련 기관 협조
이북5도위원회		총무과, 이북도민지원과		지자체, 이북5도 시도사무소

- 이북5도위원회에서 주요사업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고 이북5도위원회 총무과와 이북도민지원과에서 지자체, 16개 시.도사무소 등과 협조하여 사업 추진
  * 이북5도위원회 총무과 공무원은 이북5도 사무국 업무 겸임
- 법적 근거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북5도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사 업 명
2. 이북5도청사 시설 개·보수 (15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1	301
명칭	이북5도	이북도민관련지원	이북5도청사시설개보수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이북5도청사시설 개·보수	474	545	545	1,168	768	223	40.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업목적

-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에게 제2의 고향으로 불리는 이북5도청 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의 편리한 이용 시설 등을 위한 시설 관리

○ 사업필요성

- 이북5도청사는 '93년도 준공된 건물로, 주요 시설물이 내구연수가 초과, 내구성 및 안전성 증대 필요
- 연간 4만명 방문하는 이북도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시설 제공 필요

○ 사업내용

- **(건축분야 구조물 보수공사)** 청사 내외부 보수(83백), 주차장 보수(290백), 중강당 의자교체(135백) 등 내진보강사업 결과에 따른 보수
- **(기계 · 전기분야)** 열원장비 세관 및 정비(15백), 노후 냉온수배관 교체(40백), 노후 방송 음향장비 교체(85백), 저수조 보강공사(20백) 등 노후 기계장비 정비 및 교체
- **(전산분야 시스템 개선)** 홈페이지 리뉴얼(100백) 노후화('13년 구축) 된 이북5도위원회 기능 개선을 통해 업무 홍보와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② 추진경위

- 1993.09월 준공(지하 1, 지상 5층, 대지 8,515㎡, 건축연면적 13,861㎡)
- 2005년 : 청사 정밀안전진단, 승강기 보수공사(80백만원)
- 2006년 : 옥상 방수공사(70백만원)
- 2007년 : 대강당 냉난방공사(205백만원)
- 2008년 : 청사시설물 보수, 지하 다목적 시설, 화장실 개선(378백만원)
- 2009년 : 지하변전실 보수, 노후 위생설비 교체, 열원장비 정비(192백만원)
- 2010년 : 노후 위생 및 냉난방 시설교체, 열원장비 세관, 방충망설치 등(176백만원)

- 2011년 : 냉온수기 교체, 열원장비 세관, 외벽 방수공사 등(176백만원)
- 2012년 : 열원장비 세관 및 노후 냉반방 시설 설비 교체공사(254백만원)
- 2013년 : 열원장비 세관 및 노후된 전원설비 교체공사(189백만원)
- 2014년 : 고효율 변압기 교체 및 노후된 정문 경비실 보수공사(153백만원)
- 2015년 : 고효율 조명등 교체, 소강당 및 노후 팬코일 유니트 교체공사(137백만원)
- 2016년 : 옥상방수공사 및 네트워크 접근제어 장비교체(114백만원)
- 2017년 : 노후 소방설비, 공기조화기 및 고효율 조명등 교체(111백만원)
- 2018년 : 노후 오수관로, 냉난방 교체, 내외부 보수 공사 등(111백만원)
- 2019년 : 방송음향장비 교체, 지하주차장 상부 보수, 내진성능평가 등(474백만원)
- 2020년 : 청사 중앙홀 보수공사,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등(545백만원)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04 ~ 계속
- 사업규모 : 건물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연면적 13,861㎡)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이북5도위원회
- 사업 수혜자 :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 연간 4만명 청사 방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계약의뢰(사업부서)		계약체결 (경리팀)		설치·수행		검수·완료
▸ 사업계획 보고 ▸ 계약체결 요청(경리팀)	▶	▸ 입찰공고/적격심사 ▸ 계약체결	▶	▸ 건축·기계 공사 ▸ 용역 수행	▶	▸ 설치·용역 검수 ▸ 완료 보고 ※ 경리팀 서류 제출

※ 완료보고 후 감독·검수 결과 경리팀 제출 → 업체 대금 청구

사 업 명
3. 이북도민 관련단체 및 행사지원 (15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1	302
명칭	이북5도	이북도민관련지원	이북도민관련단체및행사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이북도민관련단체 및 행사지원	1,092	1,294	1,256	1,629	925	△331	△26.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업목적

- 한국전쟁을 통해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 한(恨)을 간직한 이북도민(실향민) 및 관련 단체, 후세대 등을 지원함으로써 실향의 아픔과 애환을 위로
- 이북도민(실향민)이 보유한 각종 무형문화재와 역사문화 보존 및 전승
-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간 결연·교류·융화 등의 정서적 연대를 기반으로 사회통합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
- 이북도민 후세대 지원을 통해 남북 평화번영 시대 대비한 지지 기반층 육성

○ 사업내용

-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이북도민 체육대회는 2020년 기준 38년간 지속되어 온 대통령 주재 대규모 행사로 본 대회의 취지는 전쟁으로 인한 이북도민(실향민)의 애환과 아픔을 위로하고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북도민이 한자리에 모여 동향(同鄕)의 정을 나누도록 하는 정부행사 (전국 거주 북한이탈주민 포함)
- **(이북도민 및 북한이탈주민 통일미술대전)** 전국에 거주하는 있는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예술적 소질 계발 및 정서적·문화적 정서 함양 및 여가활동 지원
  * '19년 대회 훈격 행안부·통일부 장관상에서 국무총리상으로 상향 조정 시상
- **(이북도민 및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이북도민 및 북한이탈주민 후계세대에게 분단·전쟁·실향의 아픔에 대해 되새겨볼 기회 제공함으로써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공동체 의식 함양
  * 대회 훈격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서울시교육감상 시상
- **(이북도민단체 민간경상보조)** 이북도민 관련단체 및 청년회, 체육회 등 도민단체 재정지원 통하여 이북도민 사회 화합 분위기 조성하고 북한이탈주민과의 정서적 연계 지원 등 사회통합과 남북 평화시대 대비 기반 마련에 기여
  * (사)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소속 7도 중앙도민회 재정지원 등 (보조율 100%)
- **(이북5도 무형문화재 단체 민간경상보조)** 이북5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19개(2020년 기준) 단체의 활동 (보조율 100%)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② 추진경위

-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등**
  - · 1983년: 제1회 대통령기쟁탈 이북5도 청년체육대회 개최(~현재까지 매년)
    - ※ 1999～2001, 2017: 대통령 참석 (그 외 국무총리 참석)
  - · 2008년: 제1회 통일 미술·서예대전, 통일 백일장·사생대회 개최(~현재까지 매년)
  - · 2019년: 제37회 대통령기 이북도민체육대회 개최(10.20.)
  - · 2019년: 통일미술대전 훈격 장관상에서 국무총리상 훈격 상향 조정
  - · 2020년: 제13회 통일미술대전 및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 · 2020년: 제38회 대통령기 이북도민체육대회 코로나19로 인해 개최 취소
- **(사)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등 도민단체 지원**
  - · 2001년 ~ 현재 : (사)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지원('00.06월 사단법인 설립)
  - · 2005년 ~ 현재 :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존사업 지원
- **속초시 실향민 역사문화 축제 지원 (지자체 보조)**
  - · 2019년 ~ 2020년 : 강원도 속초시.속초 문화재단 지원 ('19년 180백→ '20년 380백)
    - ※ 2020년도 속초 실향민 역사문화 축제 코로나19로 인해 개최 취소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83 ~ 계속
- 사업규모 : 850만(추정) 이북도민 및 3만3천명('19.6월 기준) 북한이탈주민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민간/지자체)
- 사업시행주체 : 이북5도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이북도민 및 북한이탈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이북7도 중앙도민회	국비 100%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호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국비 100%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호
지자체보조 (속초시 실향민 역사·문화축제)	국비 100%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호

3) 사업 집행절차

○ 직접수행사업(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통일 미술대전 등)
- 이북5도위원회 : 주요방침 결정
- 이북5도 총무과 : 주요행사 집행
- 이북도민 관련단체 : 도민 참여 등 협조

○ 민간경상보조사업(이북7도민회 지원, 이북5도 무형문화재 단체)
- 이북5도위원회 : 주요 방침 결정, 보조계획 검토, 교부 및 결산
- 이북7도민회 : 각 도별 직접수행 및 도민관련 직능단체 보조
- 이북5도 무형문화재 : 각 단체별 직접수행 (2020.12월 기준 19개 단체)

○ 지자체보조사업(실향민 역사.문화축제 지원)
- 이북5도위원회 : 주요 방침 결정, 보조계획 검토, 교부 및 결산
- 속초시 및 속초시 문화재단 : 직접수행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2021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1. 재난안전교육원운영 ····· 671

사 업 명
1. 재난안전교육원운영 (26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33	300
명칭	안전관리	민방위재난안전교육	재난안전교육원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재난안전교육원운영	2,720	4,337	4,298	4,076	3,011	3,011	△1,287	△29.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난안전 및 민방위·비상대비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관련 직무능력과 재난대응 역량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의5(비상대비교육)
- 국정과제「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등

② 추진경위

-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재난안전·안보의식 실천과 전문인력 양성 및 재난대비 전문 연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 국립방재교육연구원 개원('06. 3. 6)
- 소방방재청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으로 명칭 변경('11.10.25)
- 국민안전처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으로 명칭 변경('14.11.19)
-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으로 편제('17.7.26)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계속
- 사업규모 : '19년 재난안전·민방위·비상대비 교육 129개 과정 46,837명 교육생 수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3) 사업 집행절차

- 동 사업은 교육운영 지원사업의 경상적경비의 성격으로서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일상적 회계절차에 의하여 집행함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의견수렴	⇒	교육과정 수요조사
⇒ 교육훈련계획 수립	⇒	교육과정 운영	⇒	교육훈련 성과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1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1. 과학수사감정지원 ····· 677

2. 과학수사감정장비현대화 ····· 681

3. 과학수사정보화시스템구축(정보화) ····· 684

4. 중장기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사업(R&D) ····· 688

사 업 명
1. 과학수사감정지원 (25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020	023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500	2531	303
명칭	과학수사	과학수사활동지원	과학수사감정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과학수사감정지원	8,982	9,541	9,501	10,454	10,454	10,454	953	1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감정용재료비지원) 감정에 필요한 헬륨 등 가스13종과 마약류 검색용 카트시약 등구매
- (국제감정 신뢰성시험 지원) KOLAS*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장비교정, 안전관리비용

  *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국가제도
- (디지털분야 원격감정 및 인증서비스 지원) 디지털 증거물의 접수부터 결과통보까지 원격으로 처리하는 사업으로, 이에 필요한 장비구매 및 유지보수사업
- (현장검안시스템 운영) 변사사건 발생시 법의학전문가가 투입되는 24시간 현장검안사업
- (비상근법의관 부검촉탁비) 외부전문의에게 일정수수료를 지급하고 부검을 촉탁
- (지역법의관사무소 시설임차료) 부검의 지역분산 측면에서 4개 지역(수도권3, 제주1)에 설치한 지역법의관 사무소의 임차료
- (임상연구 지원) 의무·약무 분야의 최신감정기법 개발과 다양한 사건사고에서 축적된 임상의학적 진단을 감정에 적용하기 위한 임상연구비
- (방사선 안전관리) 원자력 안전법에 의거, 방사선 장치 사용기관으로서 안전관리, 피폭교육, 장비교정 등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사업
- (감정인 안전보호장구 등 지원) 부검의 등 원내 감정인 및 현장 감정인(교통, 법안전) 들의 안전보호 장구 지원사업
- (특수감정활동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수사·감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 충당
- (감정 및 연구협력 사업추진) 감정업무 수행에 따른 사업추진비
- (과학수사기법 교육과정) 증거물 채취나 보존방법 등 현장수사관 대상으로 올바른 감정물 취급법 교육
- (자유학기제 과학수사 프로그램)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공무직 관리운영) 시설관리·환경미화·청사방호·부검지원 4개분야 공무직대상 인건비 등
- (특수시설 유지관리) 실험시설 내 급·배기시설, 항온항습기 등 기초시설 유지관리
- (감정기반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 청사환경개선, 시설정비 등 감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정비 및 개선사업
- (청사 시설관리 일반용역) 실험폐수·감정피복세탁·감정폐기물 등 3개분야 위탁처리 용역
- (청사 시설관리 관리용역) 청사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위탁사업
- (지방근무자 근무환경 개선) 지방근무자 거주지원을 위한 관사 임차보증금
- (제주청사임차비) 신설된 제주출장소(임차사용)의 건물 임차료 및 관리비 지원

- (현장감정지원 공용차량)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의거 운행연한과 운행거리를 모두 초과한 노후 감정출장차량 교체비용
- (민간장비 및 기술지원) 특정차종(외제, 특대형)의 전문감정을 위한 민간 정비업체의 장비사용료와 해당차종 정비전문가의 기술자문 지원비
- (법의학 CT촬영용 데이터 서버 구입) 서울연구소 법의분야에서 사용중인 CT용 저장 시스템의 용량 과부하로 추가서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직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별표 1 : 연구형기관)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동법시행령」제16조 (시험·검사기관의 인정)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② 추진경위

- ‘55. 03. 25.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발족
- ‘93. 03. 16. : 국과수 남부분소 개소(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소재)
- ‘97. 06. 27. : 국과수 서부분소 개소(전남 장성군 서삼면 소재)
- ‘00. 09. 05. : 국과수 중부분소 개소(대전 유성구 화암동 소재)
- ‘05. 11. 22. : 국과수 동부분소 개소(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소재)
- ’06. 01. 01. :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 ‘10. 08. 13.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승격
- ‘13. 11. 18.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 원주 이전
- ‘17. 11. 2. : 국과수 광주과학수사연구소 확장 이전(전남 장성 소재)
- ‘19. 07. 03. : 국과수 제주출장소 개소(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소재)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55 ~ 계속
- 사업규모 : 1 본원, 5 지방과학수사연구소, 1 출장소 (정원 454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감정수요 및 실적 분석 ⇒ 사업계획 수립 ⇒ 당해연도 예산 확보 ⇒ 본원·지방과학수사연구소 예산배정 ⇒ 사업시행 ⇒ 성과분석 ⇒ 차년도 사업에 결과반영

사 업 명
2. 과학수사감정장비현대화 (25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020	023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500	2531	304
명칭	과학수사	과학수사활동지원	과학수사감정장비현대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과학수사감정장비현대화	7,717	7,578	7,578	8,133	7,878	7,878	300	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노후장비 보강 및 신규장비 교체) 노후감정장비* 교체와 첨단신규장비** 도입에 필요한 감정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 내구연한이 지나 감도가 떨어지거나 고장이 났으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지방연구소 감정분야 확대, 최신감정기법적용, 감정량증가로 새롭게 장비가 필요한 경우 등

- (장비유지보수) 감정장비의 고장 및 오류에 대응하고 장비교정 등을 통해 장비의 정상적인 활용을 위한 유지보수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직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별표 1 : 연구형기관)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동법시행령」제16조 (시험·검사기관의 인정)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② 추진경위

- ‘55. 03. 25.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발족
- ‘93. 03. 16. : 국과수 남부분소 개소(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소재)
- ‘97. 06. 27. : 국과수 서부분소 개소(전남 장성군 서삼면 소재)
- ‘00. 09. 05. : 국과수 중부분소 개소(대전 유성구 화암동 소재)
- ‘05. 11. 22. : 국과수 동부분소 개소(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소재)
- ’06. 01. 01. :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 ‘10. 08. 13.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승격
- ‘13. 11. 18.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 원주 이전
- ‘17. 11. 2. : 국과수 광주과학수사연구소 확장 이전(전남 장성 소재)
- ‘19. 07. 03. : 국과수 제주출장소 개소(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소재)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55 ~ 계속
- 사업규모 : 1 본원, 5 지방과학수사연구소, 1 출장소 (정원 454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감정장비관리심의위원회 개최 ⇒ 구입대상 장비 최종결정 ⇒ 본원·지방과학수사연구소 예산재배정 ⇒ 사업 시행(장비구입)

사 업 명
3. 과학수사정보화시스템구축(정보화) (2532-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020	023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500	2532	500
명칭	과학수사	과학수사정보화(정보화)	과학수사정보화시스템구축(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과학수사정보화 시스템구축(정보화)	901	968	968	1,968	1,249	1,249	281	29.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반정보화 및 정보보안 강화)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과 지방연구소의 기반정보화 장비구입·운영 및 사이버침입 차단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청사 정보보안 강화
- (과학수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 국제화·지능화·다양화되는 범죄사건·사고에 대응하여 신속·정확한 감정업무 처리를 위한 과학수사정보시스템의 통합유지관리 수행
  · 과학수사감정지원시스템(NFIS) 고도화 ISP 사업 수행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에 입주해 있는 과학수사정보시스템 연계 AP(응용프로그램)들의 신규 자원통합 시스템으로의 이관
- (사고현장관제지원시스템 구축)
  · 드론과 바디캠으로 사고현장과 상황실 간의 실시간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그룹과 현장 감정 요원 간의 유기적 협업 기반 마련
    ※ 영상과 음성이 고화질(Full HD급)로 전송됨에 따라 기존의 음성 통신으로는 전달할 수 없었던 현장의 중요 정보 공유를 지원
  · '19 ~ '20년 동안 본원 및 전체 지방연구소에 사고현장관제지원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고 '21년 부터는 감정관들의 드론 운영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통신요금 편성
- (전산실 공무직 임금)
  · 「'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17, '18년에 걸쳐 연구원 외주 용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였음.
  · 전산실 외주 용역 인력 3인의 직접고용 전환('19.1.1.)에 따른 공무직 임금에 대한 내역사업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직무)
- 책임운영기관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행정형 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의2(연구기획과)제2항제8호
- 전자정부법 제25조(전자문서의 작성 등), 제30조(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3조(업무관리 시스템 등과 행정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운영)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55. 3. 25.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발족
- ‘93. 3. 16. : 국과수 남부분소 개소(現 부산과학수사연구소)
- ‘97. 6. 27. : 국과수 서부분소 개소(現 광주과학수사연구소)
- ‘00. 9. 5. : 국과수 중부분소 개소(現 대전과학수사연구소)
- ‘05. 11. 22. : 국과수 동부분소 개소
- ’08. 11. 24. : 기초데이터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 ’09. 12. 26. : 마약류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 ’10. 1. 4. : 감정정보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개선사업 완료
- ’10. 8. 13.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승격
- ’10. 11. 9. : 디지털문서영상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 ’10. 11. 16. : 국과수 네트워크 분리사업 완료(現 서울과학수사연구소)
- ’11. 10. 19. : 약독물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 ’11. 10. 20. : 남부분원 이전(부산→양산)
- ’12. 12. 31. : 대량재해희생자신원확인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 ’13. 11. 18.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전(서울→원주, 동부분원 폐지)
- ’13. 12. 15. : 화학물질DB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 ’14. 1. 16. :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개소
- ’14. 11. 17. : 감정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완료
- ’15. 12. 15. : 감정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부검사진관리) 완료
- ’16. 12. 19. : 무선침입방지시스템(WIPS) 시범운영 개시(본원)
- ’17. 11. 23.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완료
- ’18. 9. 20. :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망분리 사업 완료
- ’19. 6. 20. :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망분리 사업 완료
- ’20. 5. 28.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출장소 망분리 사업 완료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4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당없음
- 사업 수혜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감정·해석 의뢰 행정기관

3) 사업 집행절차

○ 과학수사 정보화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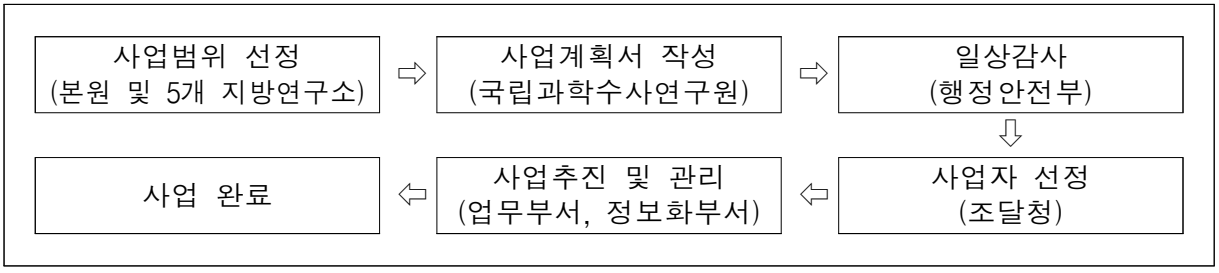

사 업 명
4. 중장기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사업(R&D) (25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020	023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500	2533	300
명칭	과학수사	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	중장기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R&D)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중장기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R&D)	6,086	5,474	5,474	5,480	5,480	5,480	6	0.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법과학연구개발사업)
  - 동 사업의 목표는 법과학 연구 분야를 선도하는 최첨단 과학수사 기술 개발 및 연구를 통한 한국 법과학 감정기술의 고도화 및 선진화 실현하는 것임
  - 감정 결과의 법정 증거채택 확대 및 초기 범죄수사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인권보호 및 대형재해시의 재산권 보장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는 것임
  - 선진국 수준의 법과학 선도국가 실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401호) 제53조(직무)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법화학·이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과학기술기본법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국가기술표준법 및 ISO/IEC 17025 등 시험검사기관 국제 표준
-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법과학연구개발사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편성 추진('08년)
- 차세대 핵심 과학수사 감정기법 개발 과제 선정 추진('10년)
- 행정안전부 4대 중점 재정투자 관련 사업으로 선정('12년)
- 연구분야별 세부사업을 법과학연구개발사업으로 단일 개편('13년)
- 성범죄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공동사업 추진('14년~'16년)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 「1 - 4 -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 · 「3 - 3 - 57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8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사업 수혜자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구 분	추진 절차	수행 주체 (법령 및 규정·지침)
수요조사	① 연구분야별 주요 이슈 도출 및 공유(연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연구부서 및 연구기획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 등)
	② 부서별 연구사업 중기사업계획(1월)	
	③ 부서별 신규과제 수요조사(3월)	
	④ 외부기관 대상 기술수요조사(4월)	
연구기획	⑤ 연구사업 중장기계획 수립(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획과 (과학기술기본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등)
	⑥ 중기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대응(연중)	
	⑦ 신규과제 선정평가 계획안 확정(4월)	
	⑧ 신규과제제안서(RFP) 작성(~8월)	
	⑨ 신규과제 연구계획서 평가(11월)	
	⑩ 전문위원회 및 연구심의위원회 개최(연중)	
	⑪ 차년도 추진 연구과제 확정(12월)	
수행관리	⑫ 연구과제 수행(1월 ~ 12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연구부서/연구기획과/외부평가위원 등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등)
	⑬ 연구과제 분기별 집행내역 점검(연중)	
	⑭ 연구과제 중간보고서 제출(7월)	
	⑮ 연구과제 최종평가(11월 말~12월 초)	
	⑯ 계속과제 차년도 연구비 조정(12월)	
성과·확산	⑰ 과제정보 및 성과정보 NTIS 등록(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연구부서/민간기업 등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⑱ 연차/최종보고서 원문등록(4월)	
	⑲ 연구성과 추적관리(연중)	
	⑳ 보유특허 민간 기술이전 지원(상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021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1.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정보화) ····· 693

2.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정보화) ····· 697

3. 국가정보관리원대구센터신축(정보화) ····· 703

4. 국가융합망 구축 및 운영(정보화) ····· 706

사 업 명
1.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정보화) (2036-5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6	503
명칭	전자정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	18,523	20,133	20,133	76,357	24,114	24,114	3,981	19.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 '21년 관리원에 설치 예정인 각 부처 신규 전산장비를 클라우드 기술기반의 인프라 환경으로 일괄 통합구축함으로써 중복투자 방지, 정보자원의 도입·운영 효율성 증대
- (기존구축 전산장비 임차료) '17~'20년까지 각 부처 신규 전산장비 도입 시 임차사업으로 관리원에 도입된 전산장비의 잔여 임차료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 수요를 조사하고 정보자원의 통합기준 및 원칙 등을 수립하여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관리할 수 있다

- 국회 예결위 지적사항('07)

· 정부통합전산센터내의 HW 자원 활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등 통합운영을 위한 제도가 미흡하여 부처간 정보자원의 중복 또는 과대 구축이 우려되고 있는 바, 전산장비 수요부처가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제출하도록 하여 동 센터 관련 예산을 통합·편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는 시스템으로 예산편성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정보자원, 전산장비 통합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08)

· 중앙 간, 중앙-지자체 간, 지자체 간 동일한 정보시스템 사용 및 정보자원 등의 통합으로 효율성 제고 및 예산 절감할 것('08.3)
· 전산장비 구축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한 전산장비 통합 등은 조속히 추진('08.7)

- 2021년도 예산 편성 세부지침('20.5. 기획재정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이전된(될) 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신규 구축, 기존 정보시스템의 증설 및 고도화에 소요되는 예산 중 HW 및 시스템 SW** 구입 예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중앙관서와 협의 후 자체 예산에 계상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신규 HW에 탑재되는 개발SW를 이관하기 위한 예산, 기타 SW*** 구입 및 AP개발 예산은 해당 중앙관서에서 요구

* 노후장비 : 조달청에서 고시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장비
** 시스템 SW : DBMS, Web서버, WAS, 서버보안, DB보안, DB접근제어, DB 모니터링, 백업SW, 관제 SW, WAS모니터링, HA용 SW
*** 기타 SW : 시스템 SW이외의 모든 SW

○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HW 및 시스템 SW 구입예산을 해당 중앙관서에서 요구 가능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 정보화사업
2.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관서가 HW구축과 AP 개발을 총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중앙관서의 장이 협의한 경우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예산 요구 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기존 장비 활용 가능성, 클라우드 기술의 우선 적용 가능성, 각 중앙관서의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등에 따른 장비 증설 소요 등을 종합 고려

② 추진경위

- ’09년도 전산자원 구축예산 429억원 관리원에 일괄 편성(’08.8)
-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계획” 국무회의 보고(‘08.10.7)
- “전산자원의 통합원칙과 기준” 정보화추진실무위 보고(‘08.10.13)
- 연도별 통합계획 수립을 위한 부처 현장방문(‘08.11)
- “범정부 정보자원 연도별 통합계획” 차관회의 보고(’08.12)
-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계획」국무회의 보고(’09.1)
- ’09년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35개 부처, 79개 사업) 추진(’09.1~12)
- ’10년 전산자원 구축예산 299억원 관리원으로 일괄 편성(’09.8)
- 부처 자원 수요조사 및 통합구축사업 추진계획 수립(’09.11)
- 중앙부처 정보자원 통합관련 법적 근거(전자정부법 제54조 정보자원 통합관리) 마련(’10.5)
- 중앙부처 정보화예산 편성·집행지침 개정(’10.5)
  「전 부처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HW 및 시스템SW의 구입예산은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일괄편성・집행」
- “범정부 전산자원 통합 사업 추진현황” 장관 보고(’10.8.31)
-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 추진(‘09년~계속)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사업 수혜자 : 45개 중앙행정기관,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진행 과정	설명	관련규정 및 근거
(1) 신규구축 수요조사 및 기재부 제출	부처별 신규 구축 전산장비(HW 및 시스템SW)수요를 파악하여 기재부 제출	* 예산 작성 세부지침
⇩		
(2) 부처별 정보화사업 예산 검토	기획재정부에서 부처별 예산 검토 (관리원 제출 요구안 + 개별부처 예산 요구서 병행 검토)	* 예산 작성 세부지침
⇩		
(3) 전산장비 구축예산 통합 편성	HW 및 시스템SW 취득 비용을 관리원으로 편성	* 예산 작성 세부지침
⇩		
(4) 부처별 상세 수요조사 및 협의	부처별 요청시기, 규모, 상세내역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협의	
⇩		
(5)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각 차수별로 필요시기에 따라 부처 수요를 취합하여 사업내용 결정	* 국가계약법 * 정보자원 통합사업 지침 (국정자원훈령)
⇩		
(6)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조달청 패키지서비스를 활용한 공개 경쟁입찰로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추진	* 국가계약법
⇩		
(7) 전산자원 통합구축	선정된 사업자를 통해 전산자원(HW 및 시스템SW) 구축	
⇩		
(8) 부처 수요에 따라 적합한 자원할당	부처가 요청한 시기에 자원할당	
⇩		
(9) 시스템 구축 및 설치	부처는 국정자원이 제공한 자원을 활용하여 업무시스템 구성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설치지침
⇩		
(10) 시스템 운영	담당 운영부서로 시스템 인수인계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이전 및 운영 규정

※ 예산 편성(1～3번), 사업추진(4～9번), 운영(10번)

사 업 명
2.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정보화) (2036-5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6	507
명칭	전자정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	76,275	80,349	80,349	533,651	137,769	134,769	54,420	67.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클라우드 기반 노후장비 통합구축) 행정·공공기관 등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장비를 클라우드 및 고성능서버 기반으로 통합 구축함으로써 부처 간 정보자원 공동활용 기반강화 및 구축·운영예산 절감
- (클라우드 전환용역) 노후장비 교체 시 클라우드 기술적용에 따른 신규 장비로의 업무이관을 위한 각종 기술지원
-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 관리원에 설치되는 모든 장비를 대상으로 장비 성능 실측 및 주요 기능 검증 등을 통해 우수제품 도입 기반 마련
- (국정자원 노후 백본장비 교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진입하는 모든 서비스의 관문역할을 하는 백본 통신장비의 노후교체를 통해 안정적인 대국민 및 행정업무 서비스 제공
- (국정자원 노후 백업장비 교체) 45개 국가기관의 중요 데이터 손실예방 및 안정적인 백업을 위해 노후화된 백업장비(PTL, VTL) 교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및 제16조(전자정부서비스 개발·제공)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23조의 4(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클라우드컴퓨팅법 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 정보자원, 전산장비 통합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08)

· 중앙 간, 중앙-지자체 간, 지자체 간 동일한 정보시스템 사용 및 정보자원 등의 통합으로 효율성 제고 및 예산 절감할 것('08.3)
· 전산장비 구축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한 전산장비 통합 등은 조속히 추진('08.7)

- 2021년도 예산 편성 세부지침('20.5. 기획재정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이전된(될) 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신규 구축, 기존 정보시스템의 증설 및 고도화에 소요되는 예산 중 HW 및 시스템 SW** 구입 예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중앙관서와 협의 후 자체 예산에 계상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신규 HW에 탑재되는 개발SW를 이관하기 위한 예산, 기타 SW*** 구입 및 AP개발 예산은 해당 중앙관서에서 요구

* 노후장비 : 조달청에서 고시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장비

** 시스템 SW : DBMS, Web서버, WAS, 서버보안, DB보안, DB접근제어, DB 모니터링, 백업SW, 관제 SW, WAS모니터링, HA용 SW

*** 기타 SW : 시스템 SW이외의 모든 SW

○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HW 및 시스템 SW 구입예산을 해당 중앙관서에서 요구 가능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 정보화사업
2.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관서가 HW구축과 AP 개발을 총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중앙관서의 장이 협의한 경우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예산 요구 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기존 장비 활용 가능성, 클라우드 기술의 우선 적용 가능성, 각 중앙관서의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등에 따른 장비 증설 소요 등을 종합 고려

② 추진경위

-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계획" 국무회의 보고('08.10.7)
- "전산자원의 통합원칙과 기준" 정보화추진실무위 보고('08.10.13)
- 연도별 통합계획 수립을 위한 부처 현장방문('08.11)
- "범정부 정보자원 연도별 통합계획" 차관회의 보고('08.12)
-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계획」 국무회의 보고('09.1)
- '10년 노후서버 367대 및 관련장비 통합구축 예산 806억원 편성('09.8)
- 「범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 행안부, 지경부, 방통위 공동수립('09.12)
- '10년 노후장비 통합구축 사업 추진('10.1～12)
- 클라우드 컴퓨팅 시범센터 구축 및 개소('11.1)
- '11년 노후서버 306대 및 관련장비 통합 구축 예산 644억원 편성('10.8)
- '11년 노후장비 통합구축 사업 추진('11.1～12)
- 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추진계획 수립('11.3)
-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 전략」('11.5, 경제정책조정회의)
- 클라우드 컴퓨팅 관리환경 및 긴급자원 풀 환경 구축('11.3～12)
-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 추진('10년~계속)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0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위탁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정보화진흥원(출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위탁)
- 사업 수혜자 : 정부, 공공, 민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정보화진흥원	100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클라우드컴퓨팅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0조

3) 사업 집행절차

① 직접수행 사업

단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부처
중기사업 계획수립 및 수요조사 (~1월)	(1) 노후장비 대·개체 전환기준 및 중기재정 반영 부처 안내 (2) 노후장비 대·개체 대상장비 수요조사 (3) HW, 시스템SW 대상장비 중기사업계획에 반영 및 기재부 제출	· 교체가 필요한 업무 AP, 기타 SW 이관비용 중기사업계획에 반영
⇩		
기재부 예산요구서 제출(~5월)	(4) HW, 시스템SW 도입비용 본예산 편성 및 기재부 제출	· AP, 기타SW 이관비용 예산 편성 및 기재부 제출
⇩		
예산요구·심의 (6~8월)	(5) 노후 통합사업 예산요구·대응	· 예산요구·대응
⇩		
국회심사 (9~12월)	(6) 예산 설명 등 대응	· 예산 설명 등 대응
⇩		
수요조사 (11월)	(7) 부처별 상세 수요조사 및 협의	· 자원필요시기, 규모, 성능 요건 등 상세 요구사항 제출
⇩		
사업계획수립 (~1월)	(8)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		
사업추진 (당해연도)	(9) 차수별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 자원 필요시기에 따라 사업 차수 결정됨
	(10) 정보자원 통합 구축 · 인프라 환경 구성 후 자원 할당, 안정화 등 지원	· 할당자원 활용 AP이관 및 테스트, 서비스 오픈
⇩		
시스템 운영 (사업 종료 후)	(11) 자원 사용 추이 분석 자료 제공	· 업무 예측을 통한 자원 추가 할당·회수 요청

② 출연 및 위탁사업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계획 수립 및 출연협약	행정안전부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출연협약 추진
⇩		
②사업 세부추진 계획 수립	한국정보화 진흥원	출연·위탁기관에서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검토 승인 후 발주
⇩		
③사업시행	한국정보화 진흥원	출연기관 주관으로 사업시행 및 산출물 검토
⇩		
④사업 추진실적 보고	한국정보화 진흥원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사업추진을 통해 도출된 사업 산출물 보고

사 업 명
3.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신축(정보화) (2042-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2	500
명칭	전자정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신축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신축(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국가정보관리원 대구센터신축(정보화)	35,041	48,936	48,936	189,770	140,372	140,372	91,436	186.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개별기관에서 운영되는 정보자원을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운영관리의 효율성과 보안성 극대화 및 유관기관·민관기관 활용성 증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② 추진경위

- '10. 9. 감사원 특정감사(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점검) 감사결과 처분요구
- '12.06.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운영 계획 보고(국가정보화전략위)
  ※ 대전정부통합전산센터('05.11.),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07.11.) 출범
- '13.07.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 추진방안 수립(장관 보고)
- '13.12. 제5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에 제3센터 구축계획 반영
- '15.03.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부지로 대구광역시 선정
- '15.11.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예비타당성 조사
  ※ 조사결과 : B/C 1.13, AHP 0.508, 총사업비 4,609억원
- '16.05.17.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추진단 발족(대통령령 제27169호)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4,417억원
- 사업기간 : 2016 ~ 2021년 (※2022년 연장 예정)
- 사업규모 : (부지) 연면적 81,367㎡ (건축*) 연면적 35,396㎡
  * 전산동 지하 3층, 행정동 지상 3층·지하 1층, 방문자센터 지상 2층
  · 입주장비 : 행정 · 공공기관 전산장비 초기입주 7,852대(최대 5만여대 입주)
  * 대전센터(2005년 개원, 34,465㎡), 광주(2007년 개원, 33,562㎡)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행정·공공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 · 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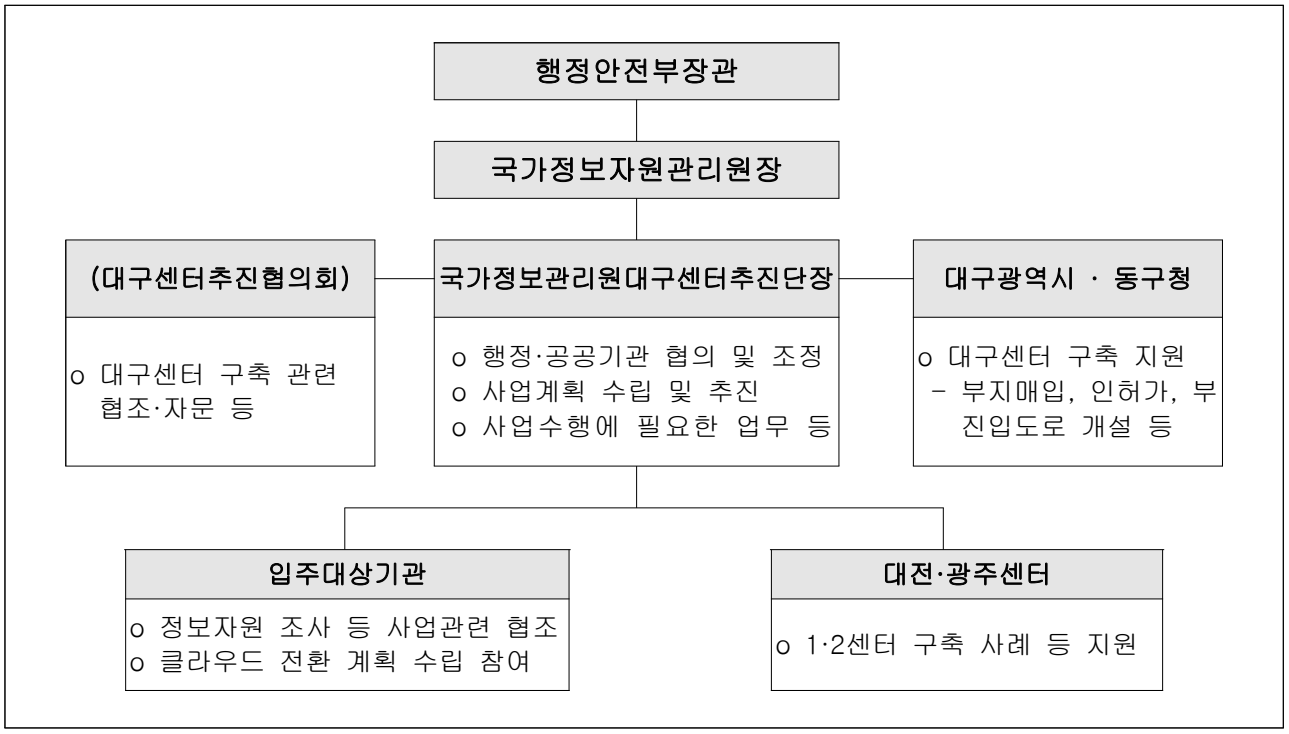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대구센터추진협의회)
o 대구센터 구축 관련 협조·자문 등
국가정보관리원대구센터추진단장
o 행정·공공기관 협의 및 조정
o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 등
대구광역시 · 동구청
o 대구센터 구축 지원
- 부지매입, 인허가, 부진입도로 개설 등
입주대상기관
o 정보자원 조사 등 사업관련 협조
o 클라우드 전환 계획 수립 참여
대전·광주센터
o 1·2센터 구축 사례 등 지원

사 업 명
4. 국가융합망 구축 및 운영(정보화) (2045-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5	500
명칭	전자정부	국가융합망 구축 및 운영	국가융합망 구축 및 운영(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국가융합망 구축 및 운영(정보화)	-	9,090	9,090	3,676	2,320	2,320	△6,770	△74.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각 기관별로 운영중인 개별통신망의 동일구간 중복 회선 통합으로 국가 통신비 예산 효율적 절감과 통신환경 변화 및 신규수요 급증에 따른 유연한 확장성 제공

○ 백본통신망 등 기반환경 구축, 국가정보통신망(K-net)과 48개 국가 개별통신망을 국가융합망으로 단계적 수용 및 운영

- (국가융합망 운영) ’21년 수용될 33개* 이용기관 안정적 운영(장애상황 모니터링 및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한 위탁운영비 * 상반기 22개, 하반기 11개
- (보안장비 확충) 국가기관 통신회선 수용으로 외부 인터넷 대역폭이 증가되어 외부 침입방지 등 공통보안영역 보안장비 증설
- (국가융합망 백본회선비) ’21년 상반기 수용될 22개 기관에 대한 6개월(7~12월) 백본 회선비 (공공요금)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52조(정보통신망의 구축)

제52조(정보통신망의 구축)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기관등을 통합·연계하는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다양한 행정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등의 정보통신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융합망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771호, ’20.10.08.)

② 추진경위

- ’15.10~’16.5 : 국가정보통신망에 대한 재정사업 심층평가(기재부)
- ’16.05. : 제18차 재정전략협의회에 “국가융합망 구축 및 효율화 방안” 안건 상정 및 의결
- ’16.10 : 국가융합망 구축 실무추진단 설치・운영
- ’16.12~’17.6 : 국가융합망 구축・운영 정보화전략계획(ISP) 용역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년 ~ 계속
- 사업규모
  - ・전국 주요지역 통신회선 집선 거점노드 구축·운영
  - ・국가융합망 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노드 간 백본통신망 구축 및 48개 국가기관 통신망 단계적 수용·운영
  - ・통신대역폭 증가 대비 보안장비 용량 확충 및 노후장비 교체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주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참여) 48개 중앙행정기관
- 사업 수혜자 : 48개 국가기관 공무원, 국민

3) 사업 집행절차

- 사업추진 프로세스 : 사업계획 수립 → 조달계약 의뢰 → 입찰공고 → 평가 및 협상 → 계약체결 → 사업 추진 → 검사·검수 → 사업비 집행
- 사업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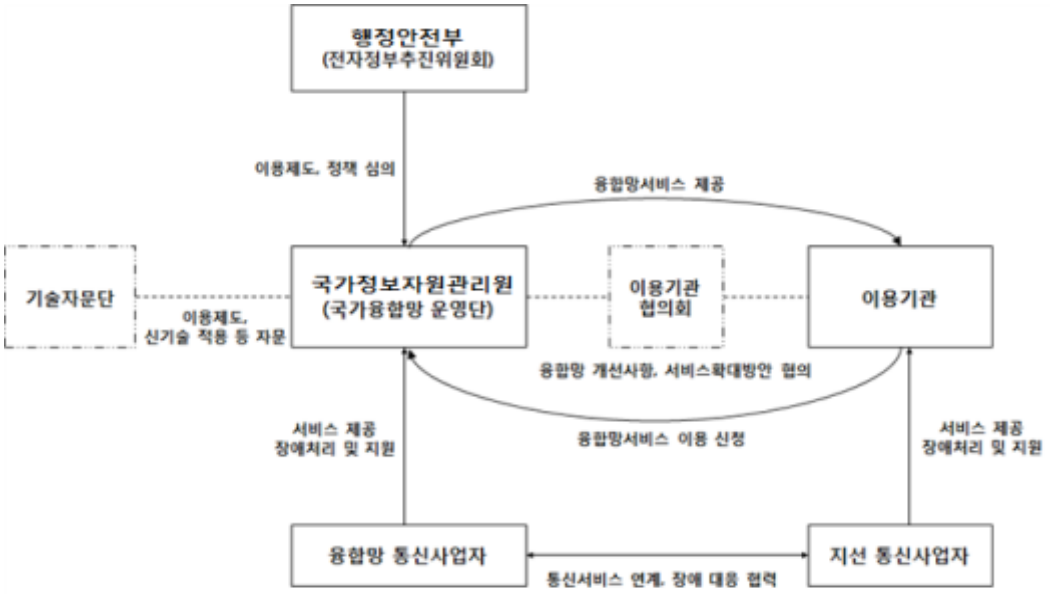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1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1. 재난안전관리업무지원기술개발(R&D) ····· 713

2. 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관리(R&D) ····· 716

3. 재난안전신기술해외보급(ODA) ····· 719

4. 재난안전연구원운영 ····· 722

5. 국립재난안전연구원전산운영 ····· 725

사 업 명
1. 재난안전관리업무지원기술개발(R&D) (2931-6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900	2931	610
명칭	재난안전기술개발	재난안전기술개발	재난안전관리업무지원기술개발(R&D)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재난안전관리업무지원기술개발(R&D)	13,434	14,823	14,823	17,541	15,081	15,081	258	1.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과학기술 기반으로 지원하는 기술개발 사업
  * 재난원인과학조사, 대형실험시설 활용 등 고유업무 지원연구 포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 제69조(재난원인조사)
-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운영),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제25조의2(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제29조(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연구), 제33조(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제58조(방재기술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소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붕괴위험지역의 계측관리 등), 제20조(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제의 구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3조(지질·지반조사 자료 축적·관리 등)

② 추진경위

- ('17) '재난관리핵심기술개발' 신규 편성
  ※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舊 국민안전처)의 재난관리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

- ('18) '재난안전관리업무지원기술개발'로 사업명칭 변경
  ※ 부처 소속 국립연구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명 변경
  * '국정과제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포함, '국정과제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연구내용 포함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7~계속(기관지원형 주요사업)
- 사업규모 : 6개 연구분야 23개 과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사업 수혜자 : 정부, 지자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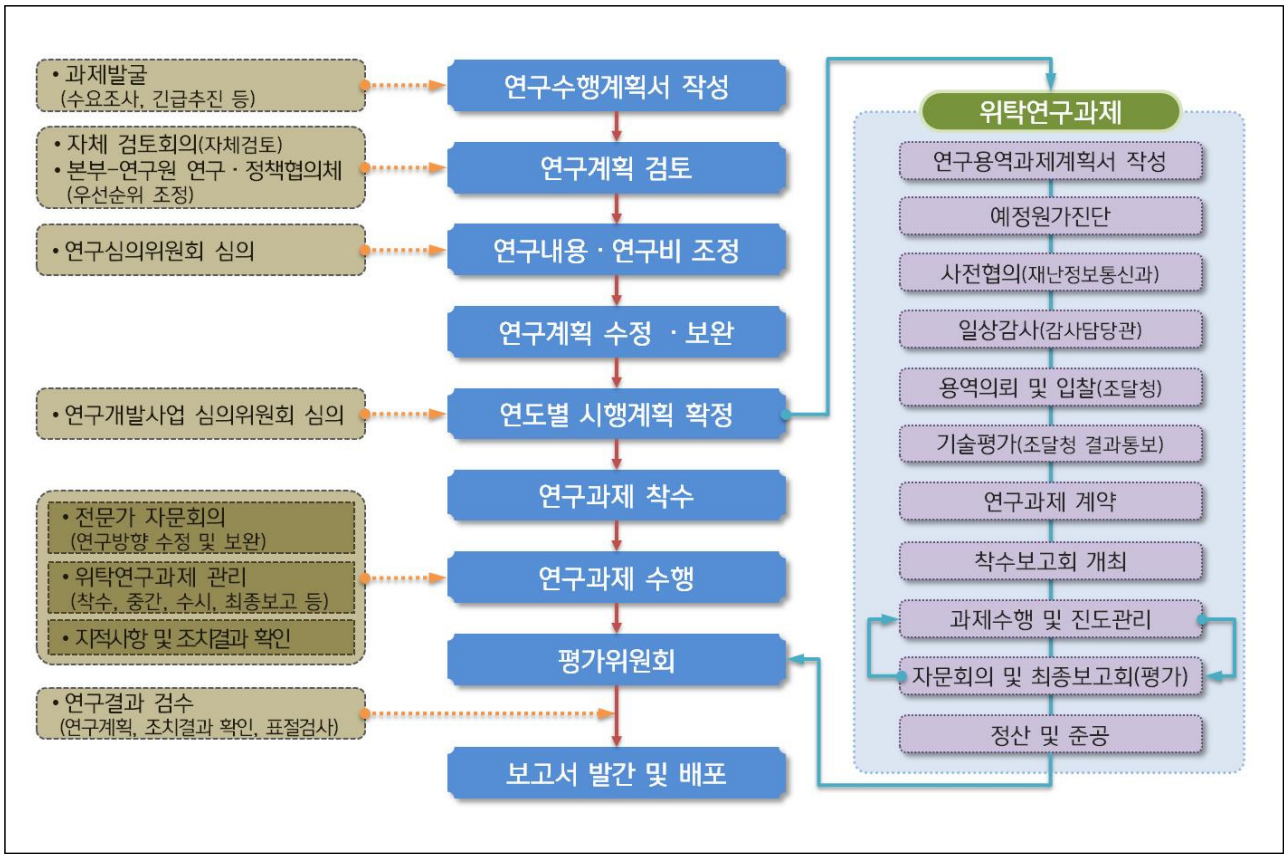
• 과제발굴
(수요조사, 긴급추진 등)
• 자체 검토회의(자체검토)
• 본부-연구원 연구 · 정책협의체
(우선순위 조정)
• 연구심의위원회 심의
•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방향 수정 및 보완)
• 위탁연구과제 관리
(착수, 중간, 수시, 최종보고 등)
•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
• 연구결과 검수
(연구계획, 조치결과 확인, 표절검사)
연구수행계획서 작성
연구계획 검토
연구내용 · 연구비 조정
연구계획 수정 · 보완
연도별 시행계획 확정
연구과제 착수
연구과제 수행
평가위원회
보고서 발간 및 배포
위탁연구과제
연구용역과제계획서 작성
예정원가진단
사전협의(재난정보통신과)
일상감사(감사담당관)
용역의뢰 및 입찰(조달청)
기술평가(조달청 결과통보)
연구과제 계약
착수보고회 개최
과제수행 및 진도관리
자문회의 및 최종보고회(평가)
정산 및 준공

사 업 명
2. 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관리(R&D) (2931-61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900	2931	614
명칭	재난안전기술개발	재난안전기술개발	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관리 (R&D)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재난안전연구개발 사업관리(R&D)	979	1,103	1,103	1,105	1,105	1,105	2	0.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 R&D 관리 정책의 능동적 대응,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2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연구관리전문기관의 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평가예산의 확보)
- 「성과평가법」 제14조(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 「고용정책기본법」제13조 (고용영향평가)

② 추진경위

- ('16.5.) 행안부 재난안전 R&D 예산투자 효율화에 대한 기대 상승으로, 사업기획·관리·평가 및 성과확산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요구

  ※ 사업단의 잦은 변경(3년 단위) 등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 해소를 위해 「'17년 R&D 예산 심의시」 신규 사업 관리를 위한 총괄 기관으로 연구원으로 지정·운영 제시(舊미래부)

- ('16.7.) 사업관리 전문성·연속성 요구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內 R&D기획·평가센터 신설, 연구개발사업 직접관리 체계 확보
- ('16.1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R&D사업 총괄기관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정
- ('19.4.)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국가 R&D관리 정책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관리' 추진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접수행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①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업무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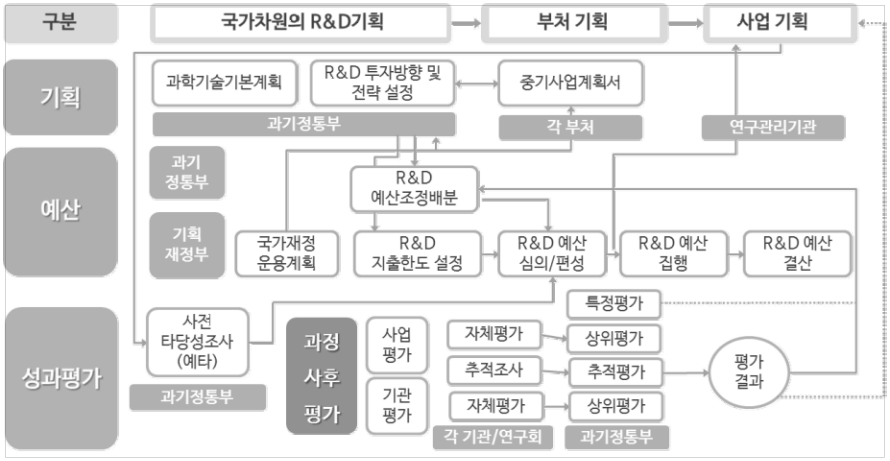

② 연구개발사업 관리업무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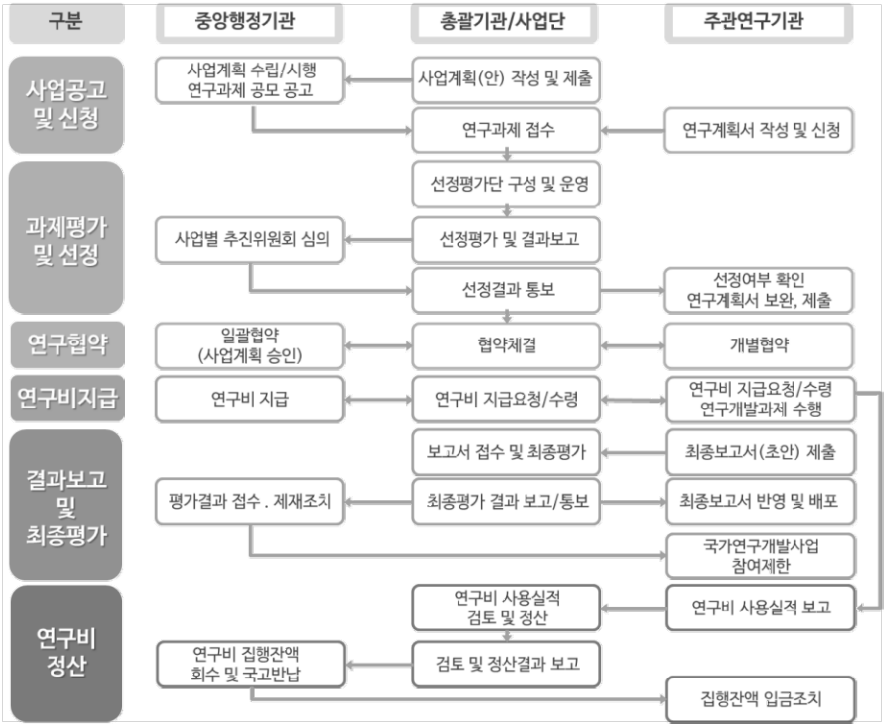

사 업 명
3. 재난안전신기술해외보급(ODA) (29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900	2932	300
명칭	재난안전기술개발	재난안전연구지원	재난안전신기술해외보급(ODA)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재난안전신기술해외보급(ODA)	989	123	123	1,941	1,048	1,048	925	75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행정안전부가 보유하고 있는 재난안전분야 기술의 이전, 교육을 통하여 협력대상국의 실질적인 재난위험 경감을 도모
-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ODA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재난안전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의 1(기본정신 및 목표)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의 2(국가등의 책무)

② 추진경위

- '05년 이후 우리나라는 총1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UNESCAP/WMO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의장직(의장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수행
- '12년 2월 제44차 태풍위원회 연례총회에서 태풍 와시('11.12.)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필리핀 민다나오섬 현장조사를 방재분과에 요청
- '13~'15년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오로시 홍수 예·경보시스템 및 자동우량 경보시설 구축
- '15년, 베트남, 라오스대상 ODA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 '16년, 베트남(라오까이성), 라오스(방비엥) 대상 홍수 예·경보시스템 시범구축
- '17년, 베트남(라오까이성), 라오스(우돔싸이주) 대상 홍수 예·경보시스템 확대구축
- '17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ODA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 '18년, 베트남(옌바이성), 라오스(우돔싸이주) 대상 홍수 예·경보시스템 확대구축
- '18년, 우즈벡, 미얀마 대상 ODA사업 확대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 '19년, 베트남(응이아로), 라오스(볼리캄싸이) 대상 홍수 예·경보시스템 확대구축
- '19년, 키르기스스탄 대상 ODA사업 확대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 '20년 현재, '13년~'15년 필리핀 기 구축 시스템 사후관리 및 방글라데시·필리핀 대상 ODA사업 확대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수행 중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3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사업 수혜자 : 라오스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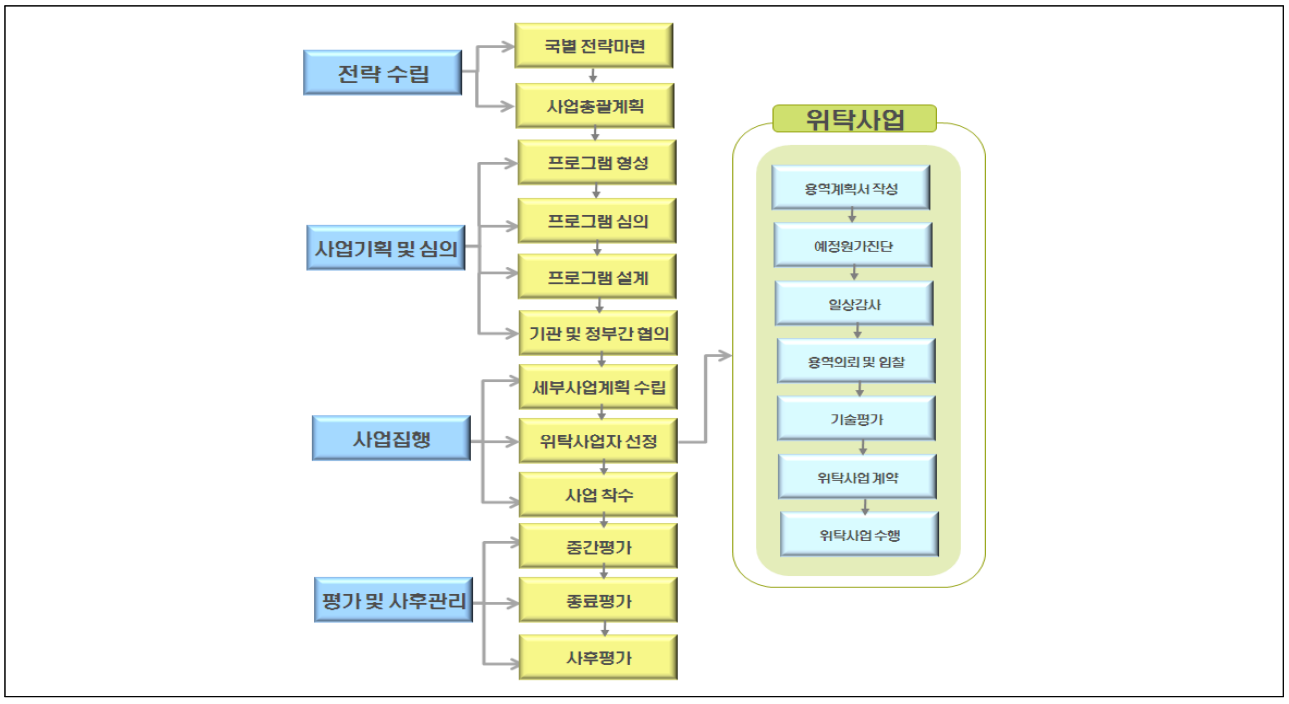

사 업 명
4. 재난안전연구원운영 (29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코드	일반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020	025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900	2932	301
명칭	재난안전기술개발	재난안전연구지원	재난안전연구원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0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재난안전연구원운영	1,263	1,348	1,348	1,558	1,467	1,467	119	8.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청사관리 공무직 운영) 청사를 관리하기 위해 청사관리 공무직(19명)에 대상으로 상용임금, 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 피복비 지원
- (청사 시설·장비 운영) 기본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및 실험시설의 상시적인 점검·보수 등 유지 및 관리
- (청사 시설·장비 확충)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사무가구·사무기기·공용차량 등 교체, 경비초소 개축 등 시설·장비 구축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8조제4항(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7조(직무)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제11조제2항제10호(청사 및 방재실험시설의 유지·관리 및 방호)

② 추진경위

- 청사 및 실험시설 준공('15.12.)
- 청사 이전완료('15.12.21.)
- 18명(환경미화11·시설관리6·안내1) 정규직 전환('18.1.1.)
- 11명(특수경비11) 정규직(청원경찰10, 일반경비1) 전환('19.1.1.)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 ~ 계속
- 사업규모 : 2개 부지 內 3개 건물 관리·운용
  · 부 지: 청사동 부지(19,931.9㎡), 실험시설부지(13,871.5㎡) ※ 부지 간 이격 거리 1.5km정도

· 건 물: 청사동(4,240㎡), 정보동(2,372㎡), 도시홍수실험동(5,466㎡)

· 내 용: 청사관리 공무직(19명) 인건비, 건물 유지·보수사업, 시설·장비 구매 등 확충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사업 수혜자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원 및 관련 업무 종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청사관리 공무직 운영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청사관리 공무직(19명) 대상자 확인 ➡ 급여, 맞춤형 복지포인트, 4대보험 등 산출 ➡ 급여, 맞춤형 복지포인트, 4대보험 등 지급

○ 청사 시설·장비 운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제11조제2항제10호

유지·보수 수요 발생 ➡ 설계서 작성 ➡ 계약 의뢰 ➡

업체선정 및 공사 시행 ➡ 유지·보수 완료

○ 청사 시설·장비 확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7조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제11조제2항제10호

사업구상 및 계획 수립 ➡ 설계서 작성 ➡ 입찰 진행 ➡

업체선정 및 용역 수행 ➡ 검수

사 업 명
5. 국립재난안전연구원전산운영 (3032-5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2	502
명칭	재난안전정보화	재난행정정보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전산운영(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운영	1,564	1,419	1,419	2,515	1,911	1,911	492	34.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연구원 행정 전산운영 및 유지관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행정정보시스템 및 사무용 전산장비 유지관리를 통한 행정·연구 업무 안정적 지원
-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국민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되는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장애요소 최소화 및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지관리

* 각종 사고에 관한 통계, 지리정보, 안전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연구원 행정 전산운영 및 유지관리 >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9(안전정보의 구축활용), 시행령 제73조의7(안전정보의 수집·관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 시행령 제73조의8(안전지수의 조사·공표 등)
- 전자정부법 제5조의2(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② 추진경위

< 연구원 행정 전산운영 및 유지관리 >

- 1997. 9.: 국립방재연구소 개소(내무부 소속)
- 1998. 2.: 행정자치부 소속 전환
- 2004. 6.: 소방방재청 소속 전환
- 2011.10.: 행정안전부 소속 전환, 국립방재연구원 승격
- 2014.11.: 국민안전처 소속 전환
- 2015.12.: 연구원 울산 이전 및 전산실 구축

- 2016. 1.: 신청사 전산실, 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운영 유지관리 시작
- 2017. 7.: 행정안전부 소속 전환

<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

- 2013년: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및 지도구축 기본계획 수립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전자정부지원사업)
- 2014년: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전자정부지원사업)
- 2014. 5.: 지역안전지수 지자체 1단계 운용·검증
- 2014. 9.: 생활안전지도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PC·모바일) 공개
  ※ 4대분야(재난·교통·치안·맞춤안전) 15개 시군구 시범서비스
- 2014.11.: 지역안전진단시스템 운영·서비스 및 안전지수 검증
- 2015년: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3단계 사업(전자정부지원사업)
- 2015. 1.: 생활안전지도 확대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공개
  ※ 4대분야 115개 시군구 및 추가4대분야(시설·산업·보건·사고안전) 15개 시군구 공개
- 2015. 3.: 안전모니터봉사단 '생활안전지도 기반 신고서비스' 공개
- 2015. 7.: 지역안전지수 2개 분야 및 안전신고정보 대국민 공개 서비스
- 2015.11.: 지역안전지수 7개 전 분야 대국민 공개
  ※ 지역안전지수 7개분야 : 화재, 교통,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 2016년: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4단계 사업(전자정부지원사업)
- 2016.12.: 229개 지자체 대상 지역안전지수 공표 및 서비스
- 2017. 1.: 생활안전지도 DB현행화 및 신규서비스 확대 시행
- 2017년: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5단계 사업(전자정부지원사업)
- 2017.12.: 229개 지자체 대상 지역안전지수 공표 및 서비스
- 2018. 1.: 생활안전지도 DB현행화 및 추가4대분야 전국 구축 서비스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관련 행정·연구기관

3) 사업 집행절차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운영 업무수행 절차도

○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사업

사업계획 수립	➡	정보화 사전협의	➡	일상감사	➡	
계약 의뢰 (조달발주 의뢰)	➡	계약체결 및 사업수행	➡	운영·유지관리 완료		

○ 정보시스템, 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사업

사업계획 수립	➡	정보화 사전협의	➡	일상감사	➡	
계약 의뢰 (조달발주 의뢰)	➡	계약체결 및 물품납품	➡	검수		

□ 단계별 적용 법률규정

○ 정보화 사전협의

-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사전협의 대상사업)
-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7조(정보화시행계획 수립 및 예산요구)
-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제5조(사전협의 신청)

○ 일상감사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일상감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일상감사)

○ 계약의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민주화 지원 및 과거사 정리

2021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운영〉
1.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 731
2. 과거사관련사업지원 ····· 737
3. 제주4.3평화재단지원 ····· 742
4.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단위위령시설조성 ····· 746

〈강제동원 진상규명〉
5.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 ····· 749
6.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보상금) ····· 752

〈민주화관련자 명예회복〉
7.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지원 ····· 755
8. 인건비(부마민주항쟁위) ····· 75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 760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지원〉
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 763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11.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 770

〈진실화해위원회 지원〉
12. 인건비(진실화해위원회) ····· 773
13. 진실화해위원회 지원 ····· 775

사 업 명
1.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24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341	300
명칭	민주화지원및과거사정리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정확정(B)		(B-A)/A
과거사관련업무 지원단운영	1,320	1,325	1,325	1,465	1,125	1,125	△200	△15.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운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위원회 권고사항의 원활한 마무리와 과거사 관련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 화합에 이바지
- (임시유해안치시설 운영)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전 민간인 유해발굴 임시 안치시설 운영・관리

2) 사업개요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

① 법령상 근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정부는 제주4・3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제례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정부는 희생자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치료와 개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0. 1.12. : 제주4·3특별법 제정공포(법률 제6117호)
- ‘00. 3. 3. :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 설치(행정안전부 산하)
- ‘00. 8.28.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발족
- ‘01. 1.17.～’03.10.31. : 제주4·3진상보고서 기획단 운영
- ‘07. 1.24. : 제주4·3특별법 개정(법률 제8264호)
- ‘14. 3.24.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 공포
  - “4·3희생자 추념일” 국가기념일(매년 4.3.) 지정,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
-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
  - 1차 : ‘00. 6. 8.～’01. 1. 4.
  - 2차 : ‘01. 3. 2.～’01. 5. 30.
  - 3차 : ‘04. 1. 1.～’04. 3. 31.
  - 4차 : ‘07. 6. 1.～’07. 11. 30.
  - 5차 : ‘12. 12. 1.～’13. 2. 28.
  - 6차 : ‘18. 1. 1.～’18. 12. 31.
- 4·3위원회(전체) 운영 : 23회(‘02.3.14.～’19.3.26.)
- 4·3소위원회 운영 : 87회(‘01.10.11.～’19.8.22.)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

① 법령상 근거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정부는 노근리사건 희생자를 위한 위령탑건립 등 위령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4. 3. 5.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 ’04. 6.29. : 노근리사건 특별법 시행령 제정
- ’04. 8.25.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중앙위) 구성
- ’05. 5.23. :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제2차 중앙위)

  ※ 희생자 218명(사망150, 행불13, 후유장애55), 유족 2,170명
- ’07. 3.22. : 평화공원조성 기본계획 확정(제4차 중앙위)
- ’08. 6.11. : 노근리 평화공원 착공
- ’08.12.12. : 노근리사건 추가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제6차 중앙위)

  ※ 희생자(후유장애) 8명, 유족 70명
- ’11.10.27. : 노근리 평화공원 준공
- ‘11.～현재 :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희생자 위령사업 실시

< 거창사건등 관련자 명예회복위원회 >

① 법령상 근거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정부는 유족의 합동묘역 관리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96. 1. 5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
- ’96. 4.19 : 거창사건등 처리지원단(위원회 간사조직) 설치
- ‘96. 5.11～7. 4 : 유족등록 신청・접수
- ‘98. 2.17 : 명예회복심의위원회 개최(사망자 934명, 유족 1,517명)
- ’98. 8. ～’04. 4. 2 : 거창 합동묘역 조성(162,140㎡, 193억원)
- ’99. 2. ～’04.10.12 : 산청・함양 합동묘역 조성(84,780㎡, 136억원)
- ‘05 ～ 현재 : 조성된 합동묘역 관리 운영, 희생자 위령사업 실시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 >

① 법령상 근거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조(목적)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추진경위

- ’00.1.12.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정
- ’00.4.22. : 사무지원기구「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설치
- ’00. 8. 9.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구성(9인)
- ’04.3.27. : 동법 개정
- ’05.4.15. : 동법 시행령 개정(생활지원금 지급 근거규정 등 신설)
- ’07.1.26. : 동법 개정(민주화운동의 시기변경, 기지급치료비 등 신설)
- ’07.10.31. : 동법 시행령 개정
  - ·생활지원금, 기지급 치료비 신청접수 : ‘07.10.31 ~ ‘08.4.30
- ‘15.12. : 민주공원 조성사업 완료
- ’16. 6.30. : 접수 13,369건에 대한 심의완료
- ‘16. 6.~ : 민주화운동기념공원 관리·운영

< 진실화해지원과 운영 >

① 법령상 근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법률 7542호)

② 추진경위

- ‘05. 5.3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정
- ’05.12. 1. : 위원장·위원 임명 및 위원회 업무 개시
- ‘06. 4.25. : 진실규명 신청사건 최초 조사개시
- ‘10. 6.30. : 진실규명 사건조사 종료

※ 진실규명 사건처리 결과(조사대상 11,175건 처리 완료)

총계	진실규명	진실규명불능	각하	취하	이송	중지
11,175	8,450	528	1,729	351	97	20

- ‘10.12. :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발간
- ‘10.12.31. : 위원회 활동 종료
- ‘11. 4. 1. :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내 ’진실화해지원과‘ 신설, 행안부 소관 후속조치 (임시유해안치시설 관리,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등)

< 이행·송무관리과 운영 >

① 법령상 근거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법률 11494호)

▪ 과거사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② 추진경위

- '04. 3.22.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
- '05. 5.31. :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발족 및 업무 개시
- '06.12. 6. : 제1차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해당자 106명 발표
- '07. 8.27. : 과거사관련위원회 권고사항 처리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 '07. 8.27. : 과거사관련 권고사항 처리기획단 출범
- '07.12. 7. : 제2차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해당자 195명 발표
- '08. 1. 8. : 과거사관련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
- '08. 5.29. : 과거사관련 권고사항 정부이행 기본계획 조정
- '09.11.27. : 제3차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해당자 705명 발표
- '09.11. :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발간
- '09.11.30. : 일제강점하 관련 위원회 활동 종료
- '10. 3. 1. : 과거사권고사항처리기획단 내 '송무관리과' 신설, 행안부로 이관된 쟁송업무 계속 수행
- '16. 3. 7. : 송무관리과+이행관리과→이행·송무관리과로 통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8년~계속
- 사업규모 : 제주4.3위원회,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등 과거사관련위원회 운영지원, 진화위 권고사항 이행관리, 위원회 결정 관련 소송사건 처리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세종특별자치시
- 사업 수혜자 : 제주4.3사건, 민주화운동 등 희생자 및 유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100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3) 사업 집행절차

사업시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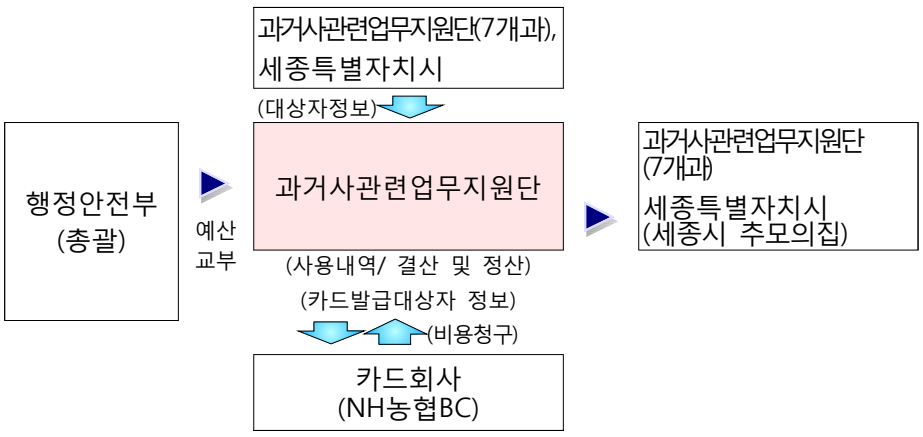

- 보조금 교부신청(세종시) ⇒ 보조금·출연금 교부결정 ⇒ 보조금·출연금 집행 ⇒ 보조금 정산 및 점검

사 업 명
2. 과거사관련사업지원 (24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1	301
명칭	민주화지원및과거사정리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과거사관련사업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과거사관련사업지원	5,023	3,974	3,974	5,975	5,142	5,142	1,168	29.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제주4.3실무위원회운영)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실무위원회 운영 및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자에 대한 지원, "4·3희생자 추념식" 개최, 제7차 추가신고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심의에 따른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국민화합에 이바지
- (노근리평화공원관리운영)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위령제 개최 및 추모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며, 이를 주관하는 유족회에 대한 예산지원
- (거창사건등추모공원관리운영) 거창 및 산청·함양 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위령제 개최 및 추모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며, 이를 주관하는 유족회에 대한 예산지원
- (민주공원관리운영)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이천시에 조성된 민주공원(묘역)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도모
- (유해매장추정지관리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위원회 권고사항의 원활한 마무리와 향후 추가발굴 대비 유해매장 추정지의 관리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제주4 · 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

① 법령상 근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위령사업)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② 추진경위

- '00. 1. 12 : 제주4·3특별법 제정공포(법률 제6117호)
- '00. 3. 3 :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 설치(행정자치부 산하)
- '00. 8. 28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발족
- '00. 9. 7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실무위원회 발족
- '01. 1. 17～ '03. 10. 31 : 제주4·3진상보고서 기획단 운영
- '01. 7 : 희생자 신고에 따른 사실조사 및 심의기준 제정
- '03. 3. 29 : 제주4·3관련사업 등 대정부 건의 (7개항)
- '07. 1. 24 : 제주4·3특별법 개정(법률 제8264호)

- ‘14. 3. 24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 공포
  · “4·3희생자 추념일” 국가기념일(매년 4.3.) 지정
-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

○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시행령 제8조제2항)
- 1차 : ‘00. 6. 8.～’01. 1. 4.
- 2차 : ‘01. 3. 2.～’01. 5. 30.
- 3차 : ‘04. 1. 1.～’04. 3. 31.
- 4차 : ‘07. 6. 1.～’07. 11. 30.
- 5차 : ‘12. 12. 1.～’13. 2. 28.
- 6차 : ‘18. 1. 1.～’18. 12. 31.

○ 4·3위원회(전체) 운영 : 26회(‘02.3.14.～’20.6.29.)

○ 4·3소위원회 운영 : 90회(‘01.10.11.～’20.6.5.)

○ 심의결과 : 94,985명 인정(희생자 14,533, 유족 80,452)
- 불인정 : 832명(희생자 101, 유족 731) / 결정취소 : 38명(희생자 26, 유족 12)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

① 법령상 근거
-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위령사업)

② 추진경위
- ’04. 3. 5.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 ’04. 6.29. : 노근리사건 특별법 시행령 제정
- ’04. 8.25.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중앙위) 구성
- ’05. 5.23. :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제2차 중앙위)
  ※ 희생자 218명(사망150, 행불13, 후유장애55), 유족 2,170명
- ’07. 3.22. : 평화공원조성 기본계획 확정(제4차 중앙위)
- ’08. 6.11. : 노근리 평화공원 착공
- ’08.12.12. : 노근리사건 추가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제6차 중앙위)
  ※ 희생자(후유장애) 8명, 유족 70명
- ’11.10.27. : 노근리 평화공원 준공
- ‘11.～현재 :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희생자 위령사업 실시

< 거창사건등 관련자 명예회복위원회 >

① 법령상 근거
-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위령사업)

② 추진경위
- ’96. 1. 5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
- ’96. 4.19 : 거창사건등 처리지원단(위원회 간사조직) 설치
- ‘96. 5.11～7. 4 : 유족등록 신청・접수
- ‘98. 2.17 : 명예회복심의위원회 개최(사망자 934명, 유족 1,517명)
- ’98. 8.～’04. 4. 2 : 거창 합동묘역 조성(162,140㎡, 193억원)

- ’99. 2.～’04.10.12 : 산청・함양 합동묘역 조성(84,780㎡, 136억원)
- ‘05～현재 : 조성된 합동묘역 관리 운영, 희생자 위령사업 실시

< 민주공원 관리운영 >

① 법령상 근거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3조(기념사업)

② 추진경위

- ‘01.7 : 민주공원(묘역) 조성사업 결정(제24차 민주화본위원회)
- ‘07.12 : 민주공원(묘역) 조성사업 부지확정
- ‘11.10 : 민주공원 기공식
- ‘15. 12. : 민주공원 완공
- ‘16. 6. : 민주공원 개원식

< 유해매장 추정지 관리 등 >

① 법령상 근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② 추진경위

- ‘05. 5.3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정
- ’05.12. 1. : 위원장・위원 임명 및 위원회 업무 개시
- ‘06. 4.25. : 진실규명 신청사건 최초 조사개시
- ‘10. 6.30. : 진실규명 사건조사 종료

※ 진실규명 사건처리 결과(조사대상 11,175건 처리 완료)

총계	진실규명	진실규명불능	각하	취하	이송	중지
11,175	8,450	528	1,729	351	97	20

- ‘10.12. :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발간
- ‘10.12.31. : 위원회 활동 종료
- ‘11.4.1.~현재 :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내 ’진실화해지원과‘ 신설, 행안부 소관 후속조치 등 추진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유해 발굴 지원, 임시 유해 안치시설 관리 등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8년~계속
- 사업규모 : 제주4·3실무위원회 운영(수시), 4·3희생자 추념식 행사(1회), 7차 추가신고, 노근리 평화공원(132,240㎡) 관리운영, 거창사건 추모공원(162,140㎡) 관리운영,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84,780㎡) 관리 운영, 민주공원(150,128㎡) 관리운영, 진화위 권고사항 이행관리 등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국비 100%)
- 사업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기도,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등
- 사업 수혜자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 거창사건등(거창사건,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및 유족,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및 유족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100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9조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3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2조, 제34조

3) 사업 집행절차

-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예산요청 ⇒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예산반영 ⇒ 국회 예산확정 ⇒ 행정안전부 예산배정 ⇒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지자체 사업집행 ⇒ 지자체 보조금 정산
- 모든 내역사업 집행절차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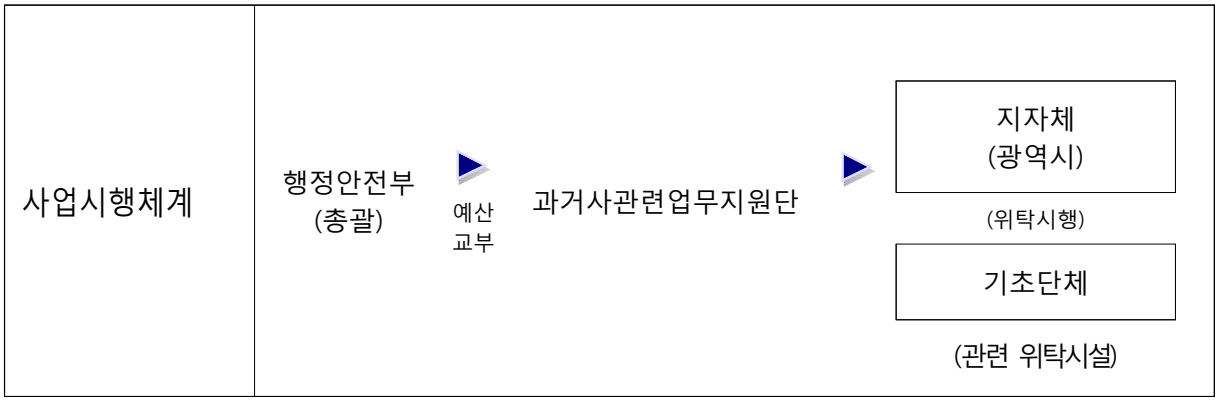

사 업 명
3. 제주4.3평화재단지원 (24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1	303
명칭	민주화지원및과거사정리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제주4.3평화재단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제주4.3평화재단지원	4,640	4,875	4,875	8,217	5,620	6,120	1,245	25.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제주4·3평화재단출연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제주4·3평화재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함
- (제주4·3유적보존사업) 4.3희생자 위령을 위한 4.3유적지 보존을 통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해원하여 화해와 상생, 미래지향적 국민통합 도모
- (4.3전국민 바로알리기 사업) 제주 4.3의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을 전국민이 공유하기 위하여 4.3전국민 바로 알리기 사업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제주4 · 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2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2

② 추진경위

- '02.3.14. 제주4·3평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의결(4·3위 제4차 전체회의)
- '01~'03년 제주4·3평화공원 1단계사업 추진 * 112억원, 부지매입 · 위령제단 등
- '04~'08년 제주4·3평화공원 2단계사업 추진 * 480억원, 평화기념관·위패봉안관 등
- '06~'08년 4·3희생자 유해발굴사업 1단계 추진 * 10억원, 유해 11구·유품 380점 발굴
- '07.1.24. 제주4.3특별법 개정 · 공포(법률 제8264호) * 재단설립 및 정부의 기금출연 근거 조항 신설
- '07.10.8. 평화재단 설립관련 4·3위원회 심의(제14차 위원회)
- '07.10. 평화공원 3단계 기본계획 제주4 · 3위원회 논의
- '07.11. (가칭) 제주4·3평화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 '07~'10년 4·3희생자 유해발굴사업 2단계1차사업 추진 * 12억원, 유해 123구·유품 659점 발굴
- '08.10. 제주4·3평화재단 설립
- '08~'10년 4·3희생자 유해발굴사업 2단계 2차사업 추진 * 16억원, 유해 261구·유품 1,311점 발굴
- '09.2. 평화공원 3단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 완료

- ‘10~’11년 4·3희생자 유해발굴사업 3단계 추진 * 1억원, 유해 1구·유품 7점 발굴
- ’11.1.26. 제주4·3위원회 심의·의결(주재 : 국무총리)
- ’08~‘16년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 239억원 확보·지원
- ’13~‘16년 평화공원 3단계사업비 120억원 확보·지원
  * ’13년 30억원, ‘14년 40억원, ’15년 34억원, ‘16년 16억원
- ‘14.4.1.~11.10. 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 실시설계용역
- ‘14.12.~’17.7월 평화교육센터, 평화의 숲 및 어린이체험관 완공
- ‘18년 70주년 기념사업(광화문문화제 등 6개사업), 유해발굴(제주공항외 3개소, 5구발굴) 및 유전자 감식(신원확인29구)
- ‘18.8~’19.9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연구용역 완료
- ‘19년 발굴유해 신원확인(12구,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 수립,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Ⅰ) 발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8 ~ 계속
- 사업규모 :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 제주4·3유적보존 및 유전자감식 사업 1식, 4.3전국민 바로 알리기 사업 1식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재단
- 사업 수혜자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등 제주도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제주특별자치도	50~10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9조
제주4.3평화재단	10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2

3) 사업 집행절차

예산신청(제주특별자치도→행정안전부) ⇒ 예산심의(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 예산확정(국회) ⇒ 예산배정(행정안전부→제주4·3사건처리과) ⇒ 보조금・출연금 교부신청 ⇒ 보조금・출연금 교부결정 ⇒ 보조금・출연금 집행 ⇒ 보조금・출연금 정산

사 업 명
4.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단위위령시설조성 (24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1	304
명칭	민주화지원과거사정리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단위위령시설조성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	국회 확정(B)		(B-A)/A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단위위령시설조성	1,878	3,122	3,122	3,709	3,709	3,709	587	18.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 진실화해위원회('10.12 활동종료)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유해발굴과 안장을 대통령과 국회에 건의하고 정부에 이행권고('10.12)한 사항 이행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조성을 통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함으로써 국민통합과 화해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32조 제5항, 제36조
  * (제32조 5항)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6조)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및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진실화해위원회 정책권고(대통령, 국회, '10.12.28.)

② 추진경위

- 진화위 정책 권고사항 이행방안 결정(5차 과거사심의위) : '11. 12.
  * 위령시설 조성사업 우선 추진 → 추가 유해 발굴은 안장시설 건립 후 추진
- 희생자 위령시설 조성방안 용역결과, 사업비 518억원 산정 : '12. 8.
- 위령시설 조성계획(안) 마련(자문위원회) : '16. 8.
  * 사업부지(대전 동구 낭월동 집단희생지 일원)후보 선정, 295억 수준으로 사업규모 조정
- 위령시설 조성계획 확정(8차 과거사심의위) : '16. 10.
  * 후보지 확정 후 기본계획용역을 통한 사업규모 적정성 구체적 검증 필요(기재부 의견)
- 기본 계획수립 용역결과, 총 사업비 406억원 산정 : '17. 7.
  * 295억원 : 공원조성, 도로이설, 보상 등 / 111억원 : 추모관 등
- 위령시설조성 사업비 28.78억원 예산편성 및 집행 : '18 ~'19
  * '18년 : 설계비 10억원 / '19년 : 우선협의 토지매입비등 18.78억원
- 위령시설 공원부분 설계용역 추진 : '18. 9. ~현재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따른 용역 일시정지('19. 3.) 중

- 사업비 등 계획 변경(295억원 → 406억원) 결정(14차 과거사심의위) : ‘18. 12.
  *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해당, 관련부서와 협의 필요 의견(기재부 행정예산과)
- 총사업비 신규등록 신청 및 등록(295억원) : ‘19. 1. ~ 3.
- 총사업비 조정 신청(→406억원) 및 적정성 재검토(KDI) : ‘19. 3. ~ ’19. 12.
- ‘19.12. 총사업비 조정 등록(401.75억원, 기재부)
- ‘20. 5.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 착수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401.75억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4년
- 사업규모 : 역사공원 조성 108,524㎡, 추모·전시시설 3,805㎡ 등
- 사업시행방법 : 사업시행위탁(지분취득비)
- 사업시행주체 : (주관) 행정안전부 / (시행) 대전광역시 동구청
- 사업수혜자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 지역 주민 등

3)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편입토지 보상	⇒	공사 추진
- 총사업비 등록	⇒	- GB관리계획변경 - 도시관리계획 변경 - 공원조성계획 수립·결정	⇒	- 환경영향평가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문화재지표조사 - 공원조성계획 결정	⇒	- 사업시행계획 고시 - 협의 매수 또는 강제 수용	⇒	- 공사 및 감리용역 발주

사 업 명
5.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 (24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2	300
명칭	민주화지원및과거사정리	강제동원진상규명	대일항쟁기강제동원 조사지원 및 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대일항쟁기강제동원 조사지원 및 운영	7,227	6,633	6,572	8,603	5,613	5,702	△870	△13.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대일항쟁기에 강제동원된 군인·군무원·노무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 및 피해조사를 통해 역사의 진실규명과 올바른 역사의식 제고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운영) 일제강제동원 피해의 역사적 의미와 실상을 교육하기 위한 기록보존 및 정보교류, 연구 공간의 장으로 활용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지원) 일제강제동원 피해 · 희생자 및 유족 복지지원사업, 피해 · 희생자 추념사업, 문화 · 학술 · 조사 · 연구사업을 통해 국민통합에 이바지
-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 대일항쟁기('38~'45년)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현지에서 사망한 한국인의 유해를 지속적으로 국내로 봉환하여, 희생자의 영혼과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등 국가의 책임성 강화

  * 일본, 러시아(사할린), 중국(해남도), 키리바시공화국(타라와)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

② 추진경위

- 1965년 체결된『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후속조치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04.03.05.)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발족('04.11.10.)
-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정('07.12.10.)
-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발족('08.06.18.)
-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접수('08.09.01.~)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10.03.22.~)
-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유골봉환, 해외추도, 역사관건립, 재단설립지원사업을 통해 강제동원희생자와 그 유족의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화합 도모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4 ~ 계속
- 사업규모 : 강제동원 피해진상 조사·연구 및 해외 추도사업 추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운영,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위탁운영 등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및 유족 지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 및 유전자검사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사업 수혜자 :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및 그 유족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10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3) 사업 집행절차

• **(유해봉환 절차)**

봉환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 예비대상 선정 ⇨ 정부간 실무협의 ⇨ 봉환대상 확정 ⇨ 용역계약

사전답사 ⇨ 유해 발굴 및 수습 ⇨ 국외 환송 추도식(국외현지) ⇨ 국내 추도 봉안식 (망향의 동산)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운영 지원)**

예산 신청 (재단) ⇨ 예산 심의 및 반영 (행안부, 기재부) ⇨ 국회 심의 및 승인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신청(재단)

심의·승인 (행안부) ⇨ 예산배정 및 보조금 교부 ⇨ 예산집행 (재단) ⇨ 결산보고(재단)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운영 지원)**

예산 신청 (재단) ⇨ 예산 심의 및 반영 (행안부, 기재부) ⇨ 국회 심의 및 승인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신청(재단)

심의·승인 (행안부) ⇨ 예산배정 및 위탁사업비 교부 ⇨ 예산집행 (재단) ⇨ 결산보고(재단)

사 업 명
6.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보상금) (243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2	302
명칭	민주화지원및과거사정리	강제동원진상규명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보상금)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증액(B)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보상금)	3,571	3,478	3,478	3,130	3,130	3,130	Δ348	Δ1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자 의료지원금)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게 위로금 등의 지원을 통해 이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화합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② 추진경위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1965)』의 후속조치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04.03.05.)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발족('04.11.10.)
-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정('07.12.10.)
-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발족('08.06.18.)
-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접수('08.09.01.～)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10.03.22.)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존속기간 만료, 소관사무 행안부 승계('16.01.01.~)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 ~ 계속
- 사업규모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 등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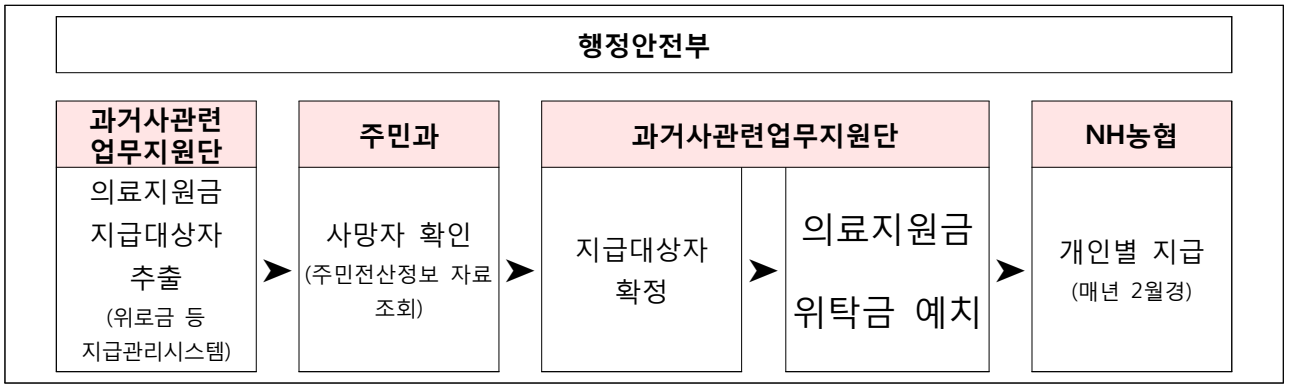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자 추출
(위로금 등 지급관리시스템)
주민과
사망자 확인
(주민전산정보 자료 조회)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지급대상자 확정
의료지원금 위탁금 예치
NH농협
개인별 지급
(매년 2월경)

사 업 명
7.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지원 (24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부마민주항쟁 보상지원단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3	300
명칭	민주화지원 및 과거사정리	민주화관련자명예회복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지원	4,311	3,460	3,460	4,896	4,479	4,479	1,019	29.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위원회 운영)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
- (보상금 등 지급)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 상이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 1년 이상 해직자 등 그간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
- (부마재단 지원) 부마재단 지원 및 부마항쟁 42주년 기념식·문화행사 개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13.6.4.제정, '13.12.5.시행)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소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3.12.5. 시행)

② 추진경위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의원발의

* 조경태 의원안('12.10.18), 이진복의원안('12.11.2), 설훈의원안('12.11.12), 행정안전위원회 대안('13.2.27)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ㆍ시행('13.12)
- 2014.10.6.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위촉, 2014.10.13. 출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4년~계속
- 사업규모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부마민주항쟁재단
- 사업 수혜자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부마민주항쟁재단	100	부마법 제16조 제1항

3) 사업 집행절차

① 부마민주항쟁 피해자 명예회복·보상 절차

1. 부마민주항쟁 사실·피해 신고접수 ➡ 2. 관련자및유족여부 심사실무위원회 심의 ➡ 3. 본위원회 관련자·유족 여부 최종 심의·의결

➡ 4. 관련자·유족 인정자 중 보상금등 지급신청접수* ➡ 5. 장해등급판정 실무위원회 심의 (상이자만 해당) ➡ 6. 보상금등 지급 여부 심의·의결

* 보상금 지급신청은 관련자로 인정된 후 6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법률 제21조(보상금), 제22조(생활지원금), 제23조(의료지원금), 제24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제25조(심의와 결정), 제26조(결정서 송달)

②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조사 | 진상조사및보고서작성 실무위원회 | 진상규명보고서 작성 (관련자 명단 포함) | 본위원회 관보게재 및 공고

◦ 법률 제6조(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 제10조(진상보고서 작성)
- 법 제6조에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이내 자료수집 분석 완료”, 법 제10조에 “법 제6조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월 이내 보고서 작성 완료” 규정

사 업 명
8. 인건비(부마민주항쟁위) (7002-15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부마민주항쟁 보상지원단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2	156
명칭	행정안전행정지원	소관기관인건비	인건비(부마민주항쟁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인건비 (부마민주항쟁위)	209	231	231	247	228	228	△3	△1.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13.6.4.제정, '13.12.5.시행)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소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3.12.5. 시행)

② 추진경위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의원발의

* 조경태 의원안('12.10.18), 이진복의원안('12.11.2), 설훈의원안('12.11.12), 행정안전위원회 대안('13.2.27)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시행('13.12)
- 2014.10.6.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위촉, 2014.10.13. 출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4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사업 수혜자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인사발령 등 기초자료 수집 → 보수 지급대상 확정 → 지급액 결정 → 개인별 지급

사 업 명
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2434-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4	300
명칭	민주화지원및과거사정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지원	7,828	13,395	13,395	22,210	20,031	20,431	7,036	52.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14조(보조금 및 출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23조(기념사업)

② 추진경위

- ’01. 6.2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정
- ‘01.10.24 박형규 이사장 임명(초대)
- ‘01.10.2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 시행
- ‘07. 6.10 제20주년 「6·10민주항쟁」기념식 및 기념행사 개최(국가기념일 제정)
- ‘17. 6.05 최형술(지선 스님) 이사장 취임(6기)
- ‘17.10.17 제6기 이사회 출범(지선 이사장 임명)
- ’20. 6.24 최형술(지선스님) 이사장 임명(7기)
- ’20.10.23 제7기 이사회 출범(지선이사장 임명)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2 ~ 계속
- 사업규모 :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포함한 전국민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기념관 건립(직접)
- 사업시행주체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사업 수혜자 :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포함한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0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4조

- 총사업비 대상사업 : 310억, (가칭)민주인권기념관 건립

3) 사업 집행절차

- 예산신청(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예산심의 및 반영(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 국회심의 및 승인 ⇒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신청(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행정안전부 심의 승인 ⇒ 예산배정 및 교부(행정안전부) ⇒ 예산집행(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결산보고(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 업 명
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2435-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5	300
명칭	민주화지원및과거사정리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40, 50,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민주화운동기념 사업 지원	2,914	11,493	11,443	7,213	7,213	9,284	7,036	52.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1) 사업목적

< 2.28민주운동기념사업 >

-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최초의 민주운동인 2·28민주화운동 정신을 범국민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홍보 및 기념사업을 지속 추진

<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 지원>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5 · 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등 추진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을 통해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자 추진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 >

- 부산지역 민주화운동의 민주정신을 기념하고, 계승발전사업 추진
- 부산지역 민주화운동 정신의 보편적 담론 형성을 위한 연구·토론기반 형성

<5.18자유공원 및 자유관 전시시설 개선사업>

- 광주시 5.18자유공원은 국비120억, 시비8억으로 조성('99.4.)된 노후 시설물로 전시 시설 개선 및 시설개보수를 통해 미래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5.18교육현장 조성

<5.18피해자 실태조사 용역 사업>

- 5.18 국가폭력 피해자의 실태(주거환경, 가계소득 등)를 파악하여 향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5.18Street Museum 시스템 구축>

- 첨단기술(AR)과 위치기반 기술(VR)을 활용하여 5.18민주광장 및 금남로 일원에 가상박물관 시스템 구축(어플리케이션 제작 등)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통합DB 구축>

- 분산·보관되어 있는 5.18기록물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전자적 방식으로 영구보존

<부산 민주공원 부속건물 건립 >

- 부산민주공원 개관('99.10.)이 20여년이 지나 시설노후화 및 사료보존공간 부족으로 공간 개선과 새로운 활용 방안 모색 필요

<대전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 3.8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지정에 따른 위상강화와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포함한 중부권민주화운동 역사의 재조명 및 정신계승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건립>

- 창원은 3.15민주의거를 통한 민주화운동의 발원지로 민주화이념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기념시설 건립 필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2·28민주운동기념사업≫

① 법령상 근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정의)(민주화운동 종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4조(보조금 및 출연)(재정지원)

② 추진경위

- 2000년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설립
- 2005년 12월 대구시 2・28민주운동기념조례 제정
- 2010년 2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으로 제2조 민주운동 정의에 2・28민주운동이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운동임을 반영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

① 법령상 근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기념사업)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정지원)
-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재분류 신체검사)

② 추진경위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제정 : '90.8.6.
-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정 : '95.12.21.
- 5·18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 '11.5.25.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개정 및 보상추진(7차) : '14.12.~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

① 법령상 근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② 추진경위

- '06년도 국회 예결위 소위('06.12)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및 5.18기념재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업비 예산을 '07년도에 신규 증액 반영

□ 주요내용

< 2.28민주운동기념사업지원 >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 사업내용 : 민주화운동기념사업, 기념사업회 활성화사업, 교육·문화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지방자치단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대구광역시,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 사업 수혜자 : 학생, 시민, 기념사업회 회원 등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지자체보조	10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4조

<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지원>
- 사업기간 : 2005년 ~ 계속
- 사업내용 : 기념사업, 국제연대사업, 교육문화사업, 진실조사사업 등
- 사업시행방법 : 지방자치단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광주광역시, 5・18기념재단
- 사업 수혜자 : 5・18민주화운동 유족 및 당사자, 국민 전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지자체보조	100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지원 >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사업내용 : 기념사업, 기념사업회활성화사업, 학술사료사업, 교육문화사업 등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지자체 보조	100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5.18 자유공원 및 자유관 전시시설 개선 >
- 사업기간 : 2021년
- 사업내용 : 공원 내 자유관 노후 설비시설 교체, 조형물 설치 및 환경정비 등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광주광역시
- 사업 수혜자 : 5·18민주화운동 유족 및 당사자, 국민 전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지자체 보조	100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5.18 피해자 실태조사 용역사업 >
- 사업기간 : 2021년
- 사업내용 : 피해자 및 유가족 실태조사(소득, 의료, 주거환경 등)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광주광역시
- 사업 수혜자 : 5·18국가폭력 피해자 및 유가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지자체 보조	100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통합DB구축 >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
- 사업내용 : 분산·보관되어 있는 5.18 기록물 통합 관리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광주광역시
- 사업 대상 : 5.18 기록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지자체 보조	100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5.18 Street Mueusm 구축 사업 >
- 사업기간 : 2021년
- 사업내용 :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금남로 일원에 가상박물관 시스템 구축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광주광역시

- 사업 수혜자 : 5·18민주화운동 유족 및 당사자, 국민 전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지자체 보조	100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부산민주공원 부속건물 건립 >
- 사업기간 : 2020~2022
- 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3,024㎡, 총사업비 138억(국비 69억, 지방비 69억)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대전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
- 사업기간 : 2020~2023
- 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3,280㎡, 총사업비 116억(국비 58억, 지방비 58억)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대전광역시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건립 >
- 사업기간 : 2020~2024
- 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8,300㎡, 총사업비 303억(국비 120억, 지방비 183억)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창원시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지자체 보조	4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 사업 집행절차

< 2.28민주운동기념사업 > 예산신청(대구광역시) ⇒ 예산심의 및 반영(행정안전부, 기재부) ⇒ 국회심의 및 승인 ⇒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대구광역시,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 행정안전부 심의 승인 ⇒ 사업비 교부(행정안전부) ⇒ 예산집행(대구광역시,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 결산 보고(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 국고보조금 정산검사(대구광역시) ⇒ 결산 보고(대구광역시)
<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 > ○ 5·18기념재단 지원 예산신청(광주광역시) ⇒ 예산심의 및 반영(행정안전부, 기재부) ⇒ 국회심의 및 승인 ⇒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광주광역시, 5.18기념재단) ⇒ 행정안전부 심의 승인 ⇒ 사업비 교부(행정안전부) ⇒ 예산집행(광주광역시, 5·18기념재단) ⇒ 결산 보고(5・18기념재단) ⇒ 국고보조금 정산검사(광주광역시) ⇒ 결산 보고(광주광역시)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 > 예산신청(부산광역시) ⇒ 예산심의 및 반영(행정안전부, 기재부) ⇒ 국회심의 및 승인 ⇒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부산광역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행정안전부 심의 승인 ⇒ 사업비 교부(행정안전부) ⇒ 예산집행(부산광역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결산 보고(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국고보조금 정산검사(부산광역시) ⇒ 결산 보고(부산광역시)

사 업 명
11.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2436-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6	300
명칭	민주화지원 및 과거사정리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	943	943	1,252	1,139	1,580	637	67.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위탁사업 (광주)** 광주지역에서 과거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직접피해자, 유가족, 목격자 등 포함)를 대상으로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전문적인 트라우마 치유활동(심리상담, 신체치유 등)을 수행
-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위탁사업 (제주)** 제주지역에서 과거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직접피해자, 유가족, 목격자 등 포함)를 대상으로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전문적인 트라우마 치유활동(심리상담, 신체치유 등)을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2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종합권고('10.12월)

국가는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의 피해자 및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 중에서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의료·상담 치료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피해 및 명예회복)

② 추진경위

- '17년 대선, 광주지역 공약사항으로 '국립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제시

<트라우마 치유·지원 관련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 국정과제: 3「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행안부)」
· 과제목표: 5·18광주민주화운동, 제주4·3등 완전한 해결 추진, 국가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과거사 청산 및 사회통합 지원 추진
· 주요내용: (과거사재단 설립) 위령사업 및 연구·조사 등 과거사 후속조치 지원
* 지역공약: 광주광역시- '국립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제시

- '18년 제70주년 4·3희생자 대통령 추념식 중 '유족들과 생존희생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배·보상과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 행안부 소관사업으로 최종 조정('17.12월)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방안 연구」용역 완료('18.7~'19.1월)

※ 수행기관: 성공회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 한홍구 교수)

<연구용역 주요결과>

• (설립필요성) '국가폭력'(민간인 희생 사건, 인권침해 사건 등)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치유 및 관리가 필요

• (설립 기본방향)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치유활동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는 독립성 확보 필요

• (설립형태) 개별법에 근거한 '특수법인-공공기관'형태 제안

- 고령의 피해자 등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활동 위탁사업 우선수행('20.1.~)
-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위탁사업 운영안내 작성·배포('20.3.)
- 제주4·3트라우마센터 개소 및 운영('20.5.~)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년~
- 사업규모 : 국가폭력 직접당사자 및 그 가족, 사건의 목격자 등 피해자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보조(광주), 출연(제주)
- 사업시행주체 : 광주광역시(現광주트라우마센터), 제주4.3평화재단
- 사업 수혜자 : 국가폭력 직접당사자 및 그 유가족, 사건 목격자 등 피해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제32조 제5항, 제34조 및 제36조제1항
제주4.3평화재단	5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8조의2(제주4・3 관련 재단에의 출연)

3) 사업 집행절차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위탁사업(광주)>

예산신청(광주광역시) ⇒ 예산심의 및 반영(행정안전부, 기재부) ⇒ 국회심의 및 승인 ⇒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광주광역시, 광주트라우마센터) ⇒ 행정안전부 심의 승인 ⇒ 사업비 교부(행정안전부) ⇒ 예산집행(광주광역시, 광주트라우마센터) ⇒ 결산 보고(광주트라우마센터) ⇒ 국고보조금 정산검사(광주광역시) ⇒ 결산 보고(광주광역시)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위탁사업(제주)>

예산확정(국회) ⇒ 예산배정(행정안전부) ⇒ 출연금 교부신청(제주4.3평화재단) ⇒ 출연금 교부결정 ⇒ 출연금 집행 ⇒ 출연금 정산

사 업 명
12. 인건비(진실화해위원회) (7002-15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2	157
명칭	행정안전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인건비(진실화해위원회)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인건비(진실화해위원회)	-	-	-	-	-	4,780	4,780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인건비(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② 추진경위 :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원들의 보수(법적경비) 지급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0.12.10.~위원회 종료시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진실화해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진실화해위원회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o 보수 - 인사발령사항 등 보수 지급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 보수 지급대상 확정 → 개인별 보수지급액 결정 → 개인별 지급 o 연가보상비 - 개인별 근무상황 확정 →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확정 → 개인별 연가보상비 결정 → 개인별 지급

사 업 명
13. 진실화해위원회 지원(2431-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1	305
명칭	민주화지원및과거사정리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진실화해위원회 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진실화해위원회 지원	-	-	-	-	-	6,668	6,668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법률 제17392호)

② 추진경위

- ‘05. 5.3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정
- ’05.12. 1. : 위원장・위원 임명 및 위원회 업무 개시
- ‘06. 4.25. : 진실규명 신청사건 최초 조사개시
- ‘10. 6.30. : 진실규명 사건조사 종료

※ 진실규명 사건처리 결과(조사대상 11,175건 처리 완료)

총계	진실규명	진실규명불능	각하	취하	이송	중지
11,175	8,450	528	1,729	351	97	20

- ‘10.12. :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발간
- ‘10.12.31. : 위원회 활동 종료
- ‘20. 6. 9.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 ’20.12.10.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설치 및 업무 개시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0.12.10. ~ 위원회 종료시
- 사업규모 : 위원회 운영지원 및 진실규명조사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인권침해사건 등 희생자 및 유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진실규명 신청(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 등) ⇒ 각하 또는 진실규명 조사개시(위원회) ⇒ 진실규명 조사(위원회) ⇒ 진실규명 결정 또는 불능결정(위원회)

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 세　　입

기타재산수입(지역자율계정)
54-545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	국회확정(B)		
기타재산수입 (지역자율계정)	27	-	-	20	20	20	20	순증

가.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20조(정부보관금 국고귀속조서의 송부 등)**

① 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라 국고에 귀속될 보관금이나 이자가 있을 때에는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보관금을 환급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통지해야 한다.

1. 보관금명, 보관금액 등 국고귀속 대상 보관금에 관한 사항
2. 국고귀속 예정일
3. 환급절차 등 환급에 대한 안내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기한이 경과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관금과 그 이자를 국고에 귀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분을 정리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속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28.]

나. 세입 개요

○ 국고보조금 예치 이자수입 등 세입·세출금의 금융기관 예치 이자수입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17	-	-	-	-	-	-	-	-	-
'18	-	-	-	-	-	-	-	-	-
'19	-	-	-	27	27	-	100	-	-
'20	-	-	-	-	-	-	-	-	-
'21(안)	20	-	-	-	-	-	-	-	-

기타경상이전수입(지역자율계정)
59-596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	국회확정(B)	(B-A)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지역자율계정)	1,300	1,678	1,678	1,728	1,800	1,800	122	7.3

가.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 **국고금 관리법 제29조(지출금의 반납)**

① 지출된 금액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지출한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4.]

나. 세입 개요

○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17	-	-	-	-	-	-	-	-	
'18	-	-	-	2,175	1,678	-	77.1	497	
'19	-	-	-	1,420	1,300	-	91.5	120	
'20	1,678	1,678	1,678	120	-	-	-	120	
'21(안)	1,800	-	-	-	-	-	-	-	-

기타재산수입(지역지원계정)
54-545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	국회확정(B)		
기타재산수입 (지역지원계정)	179	26	26	27	27	27	1	3.8

가.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20조(정부보관금 국고귀속조서의 송부 등)**

① 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라 국고에 귀속될 보관금이나 이자가 있을 때에는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보관금을 환급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통지해야 한다.

1. 보관금명, 보관금액 등 국고귀속 대상 보관금에 관한 사항
2. 국고귀속 예정일
3. 환급절차 등 환급에 대한 안내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기한이 경과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관금과 그 이자를 국고에 귀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분을 정리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속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28.]

나. 세입 개요

○ 국고보조금 예치 이자수입 등 세입·세출금의 금융기관 예치 이자수입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17	-	-	-	1	1	-	100	-	-
'18	10	10	10	20	20	200	100	-	-
'19	26	26	26	207	179	688	100	-	-
'20	26	26	26	71	64	246	90.1	7	-
'21(안)	27	-	-	-	-	-	-	-	-

기타경상이전수입(지역지원계정)
59-596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	국회확정(B)		
기타경상이전수입 (지역지원계정)	2,323	580	580	597	597	597	17	2.9

가.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 **국고금 관리법 제29조(지출금의 반납)**

① 지출된 금액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지출한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4.]

나. 세입 개요

○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17	-	-	-	724	501	-	69.2	223	-
'18	200	200	200	384	149	74.4	38.8	235	-
'19	580	580	580	3,419	2,323	400.5	67.9	1,096	-
'20	580	580	580	1,806	1,490	256.8	82.5	316	-
'21(안)	597	-	-	-	-	-	-	-	-

2. 세　　출

지방자치분권실

2021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1.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 793

2. 지방자치단체자율통합지원금 ····· 796

3. 자원봉사활성화지원(제주) ····· 798

4.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제주) ····· 800

5. 지방이양사무 지원 ····· 803

사 업 명
1.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31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역자율계정	080	082
명칭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1	301
명칭	일자리지원	지역일자리창출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7,650	12,821	12,821	43,040	43,040	43,040	30,219	235.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저출산·고령화, 원도심 침체 등으로 인한 유휴·저활용 공간을 지역문제 해결 주체인 주민 주도 커뮤니티 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공유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활력 제고
- (지역사회 역량강화 및 조사연구) 지역발전 도모, 사회적 약자 기회제공 등 지역에 특화된 사회적 가치 실현영역을 발굴, 역량강화 방법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별표1)

② ‘17.9.~10. 사회혁신추진단(9월) 및 민관협의회 출범(10월)

‘17.12.~’18.4. 지역별 사회혁신가 간담회 개최

* ‘17년-광주(12.22), ’18년-대구(1.12.), 부산(1.26.), 대전(1.31.), 전북(3.2.), 강원(3.12.), 전남(4.13.)

‘18.2. 사회혁신 지원사업 8개 시·도 순회설명회 및 의견수렴

* 대전(2.8.), 대구(2.12.), 부산(2.13.), 서울(2.20.), 수원(2.21.), 광주(2.22.), 제주(2.23.), 춘천(2.26.)

‘18.3. 사회혁신가 포럼* 참석 및 지역혁신가 자문회의* 개최

* 3.23.~3.24.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국 사회혁신가 의견수렴

** 3.31. 대전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지역 사회혁신가 의견수렴

‘18.9.~11. 공공 유휴공간 민간활용 방안 의견수렴 등

* 9.12.~9.13. 부산 이바구캠프 및 이바구공작소에서 지자체 공무원 43명 참석

** 11.3.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 관계자 의견수렴

‘18.12. 예산확보 및 사업계획 보완

‘19.1.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추진(17개 시·도, 25개 사업)

‘20.1.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추진(15개 시·도, 24개 사업)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9 ~ 계속
- 사업규모 : 시·도별 자율신청(시·도별 연 1~5개)

- 사업시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활동 공간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과 해당 지자체에서 활동하는 청년, 마을기업, 사회적경제조직 등 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별표1)

3) 사업 집행절차

①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신청	→	②검토 및 예산요구	→	③예산·사업 계획 확정	→	④사업시행	→	⑤사업준공
시·도지사→행안부		행안부→기재부		기재부·국회		지자체 (시·도, 시·군·구)		지자체 (시·도, 시·군·구)

①~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지침(기재부)

사 업 명
2. 지방자치단체자율통합지원금 (11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39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역지원계정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0
명칭	지방자치분권	지자체자율통합지원	지방자치단체자율통합지원금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16,685	16,685	16,685	9,353	9,353	9,353	△7,332	△43.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시·군·구 간 통합의 모범사례인 창원시와 청주시의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시·군·구 통합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추동력 확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자율통합 지자체(창원시·청주시) 재정 지원

※ 통합 자치단체에 대하여 통합 직전년도의 폐지되는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6/100을 10년간 지원{국고보조(자율통합지원금) 50% 특별교부세 50%}

② 추진경위

- '09.08.26. : 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계획 발표(통합지자체 재정지원)
- '10.03.02. : 경남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 → '10. 7. 1. 창원시 출범
- '10.10.01. :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
- '13.01.23. : 충북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 → '14. 7. 1. 청주시 출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1 ~ 2024년(창원시 : 2011 ~ 2020년, 청주시 : 2015 ~ 2024년)
- 사업규모 : 16,685백만원 × 10년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경상남도 창원시, 충청북도 청주시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경상남도 창원시, 충청북도 청주시)	정액 보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3) 사업 집행절차

- 청주·창원시 교부신청서 접수 → 사업계획 검토 → 교부결정 통지(교부)

사 업 명
3. 자원봉사활성화지원(제주) (11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4
명칭	지방자치분권	자원봉사활성화지원(제주)	자원봉사활성화지원(제주)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자원봉사활성화지원(제주)	30	30	30	30	30	30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자원봉사 활성화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진흥 및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0조

② 추진경위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참여인원 증가 촉진 등 기반 구축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05.8) 및 '국가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 추진
- 자원봉사센터 역량 강화 및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 다변화 등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사업규모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6월
사업비(백만원)	30	30	30	30	30
자원봉사자 실인원(천명)	84	79	72	54	-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 수혜자 : 지역내 자원봉사자 다수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122번

3) 사업 집행절차

○ 자치단체 경상보조

-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국고보조 (50%)	⇨	조달공고 (50% 추가)	⇨	입찰응찰	⇨	낙찰, 계약, 보험료지급	⇨	사고 시 보험보상
행안부		**운영협의체 (全 지자체·센터)**		**보험사**		**지자체 (운영협의체)**		**대표 보험사**

사 업 명
4.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제주) (31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080	082
명칭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1	301
명칭	일자리지원	지역일자리창출(제주)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제주)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7,650	12,821	12,821	43,040	43,040	43,040	30,219	235.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저출산·고령화, 원도심 침체 등으로 인한 유휴·저활용 공간을 지역문제 해결 주체인 주민 주도 커뮤니티 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공유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활력 제고
- (지역사회 역량강화 및 조사연구) 지역발전 도모, 사회적 약자 기회제공 등 지역에 특화된 사회적 가치 실현영역을 발굴, 역량강화 방법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별표1)

② '17.9.~10. 사회혁신추진단(9월) 및 민관협의회 출범(10월)

'17.12.~'18.4. 지역별 사회혁신가 간담회 개최

* '17년-광주(12.22), '18년-대구(1.12.), 부산(1.26.), 대전(1.31.), 전북(3.2.), 강원(3.12.), 전남(4.13.)

'18.2. 사회혁신 지원사업 8개 시·도 순회설명회 및 의견수렴

* 대전(2.8.), 대구(2.12.), 부산(2.13.), 서울(2.20.), 수원(2.21.), 광주(2.22.), 제주(2.23.), 춘천(2.26.)

'18.3. 사회혁신가 포럼* 참석 및 지역혁신가 자문회의* 개최

* 3.23.~3.24.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국 사회혁신가 의견수렴

** 3.31. 대전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지역 사회혁신가 의견수렴

'18.9.~11. 공공 유휴공간 민간활용 방안 의견수렴 등

* 9.12.~9.13. 부산 이바구캠프 및 이바구공작소에서 지자체 공무원 43명 참석

** 11.3.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 관계자 의견수렴

'18.12. 예산확보 및 사업계획 보완

'19.1.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추진(17개 시·도, 25개 사업)

'20.1.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추진(15개 시·도, 24개 사업)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9 ~ 계속
- 사업규모 : 시·도별 자율신청(시·도별 연 1~5개)

- 사업시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활동 공간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과 해당 지자체에서 활동하는 청년, 마을기업, 사회적경제조직 등 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별표1)

3) 사업 집행절차

①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신청	→	②검토 및 예산요구	→	③예산·사업 계획 확정	→	④사업시행	→	⑤사업준공
시·도지사→행안부		행안부→기재부		기재부·국회		지자체 (시·도, 시·군·구)		지자체 (시·도, 시·군·구)

①~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지침(기재부)

사 업 명
5. 지방이양사무 지원 (1159-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역자율 계정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 ·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59	301
명칭	지방자치분권	지방이양사무지원	지방이양사무 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국회확정(B)		
지방이양사무 지원	-	-	-	-	5,647	+5,647	1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동 내역사업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20.2.)따라 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신규이양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 및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소요 재정(인건비·경상비·사업비)을 병행 이전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방일괄이양법」 부칙 제2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1조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1.29. : 「지방분권특별법」 개정*
  * 지방이양비용 산정을 위해 자치분권위의 이양비용 심의·의결 기능 추가
- '20.2.18.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 자치단체로 이양이 필요한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 일괄 이양 및 이양에 따른 인력·재정 소요 비용 병행 이전 조치 마련
- '20.5.4. : 「지방분권특별법」 시행령 개정*
  * 중앙-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방이양비용평가전문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 '20.7.29. :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이양비용평가전문위원회' 구성
- '20.10.23. : 이양사무 비용산정 및 재정지원방안에 대한 자치분권위원회 의결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1 ~ 계속
- 사업규모 : 5,647백만원 × 별도 지방이양비용 이전 방안 마련시 까지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시·도, 시·도 교육청
- 사업 수혜자 : 지역주민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시·도, 시·도 교육청)	100	「지방일괄이양법」 부칙 제2조 「지방분권특별법」 제11조

3) 사업 집행절차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이양되는 신규이양사무 수행을 위한 인력·재정 소요사항에 대해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에 따라 '21년 보조금으로 자치단체에 교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예정

자치단체별 보조금액 확정	→	사업계획 수립·제출	→	보조금 운영
(자치분권위)		*(자치단체→행안부)*		*(자치단체)*

※ **(참고지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지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21년도 자치단체 이양사무 비용지원 안내서('20.12월 배포 예정)

지방자치분권실-
지역발전정책관

2021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1. 특수상황지역개발 ····· 809

2. 지역균형발전추진지원 ····· 811

3. 접경권발전지원 ····· 813

4.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 816

5. 위험도로구조개선 ····· 819

6.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 822

7. 위험도로구조개선(제주) ····· 824

사 업 명
1. 특수상황지역개발 (12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균형발전 특별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자율계정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300
명칭	지역발전	특수상황지역개발	특수상황지역개발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8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특수상황지역개발	195,102	202,121	202,121	217,463	208,862	208,862	6,741	3.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남북분단 및 도서지역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 도모
- 지역의 부존자원, 관광자원 등을 발굴하고 특화된 개발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 제2항 제1호

② 추진경위

- 각 부처에서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에 대해 '10년부터 통합사업 추진
  · 대상 : 접경지역 15개 시·군, 도서지역 18개 시·군·구 186개 개발대상 도서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0~계속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8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사업규모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접경지역 15개 및 도서지역 18개 시·군·구
- 사업 수혜자 : 15개 접경지역 거주 주민 및 186개 개발대상 도서 지역 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3) 사업 집행절차

기획재정부	→ ←	행정안전부	→ ←	시・도	→ ←	시・군
○ 예산편성지침 송부 ○ 예산확정		○ 가이드라인 시달 ○ 예산신청내용 검토		○ 예산신청 ○ 사업관리		○ 예산신청 ○ 사업집행

사 업 명
2. 지역균형발전추진지원 (12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균형발전특별회계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	지역지원계정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302
명칭	지역발전	광역경제권추진지원	지역균형발전추진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 (B)		
지역균형발전 추진지원	172	163	163	163	155	155	△8	△4.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행정안전부(지역발전과) 소관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사업관리·평가 및 전문가 컨설팅, 우수사례 전파 등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추진경위 : 대통령 지시사항('06. 3. 28 살기좋은 국토공간 만들기 국정과제회의)

-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종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균형발전 일반에 관한 집행적 지원을 할 것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8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지자체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3. 접경권발전지원 (12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지원계정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 · 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0
명칭	지역발전	접경권 발전지원	접경권발전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7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접경권 발전지원	30,013	39,912	36,125	62,955	62,955	64,455	28,330	78.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평화누리길 조성)** DMZ 인근의 평화, 안보, 생태, 역사관광지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조성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 및 접경지역 이미지 제고
-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동서를 잇는 자동차도로(지방도) 정비를 통해 횡적 중심 교통축 확충 및 접경지역 접근성 개선
-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한탄강 주변 협곡과 주상절리 비경 등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 **(DMZ 평화의 길 조성)** DMZ가 가지고 있는 생태・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보 여행길' 조성을 통해 접경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DMZ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통한 DMZ・접경지역 일원에 대한 체계화된 정보 제공
-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에서 옹진군 북도면 신도간 도로 연결을 통해 열악한 접경・도서지역의 접근성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민통선 출입간소화 시스템 설치)** 민통선 내에 소재하는 관광지, 생태자원, 역사유적지, DMZ 등 출입 통제 절차 간소화를 통한 안보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8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② 추진경위

- '09.12.30., 연두업무 대통령 보고

  ※ DMZ 생태·평화벨트 육성 적극 추진

- '10.1월~3월, 접경지역 "시·도발전계획(안)" 작성·제출
- '10.4월~'11.6월,「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안)」수립 및 관계부처 협의
- '11.5.19.,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개정
- '11.7.27.,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심의·확정
- '19.1.23.,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심의·확정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11~2030년
- 사업규모 : 접경지역 3개 시·도 및 15개 시·군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 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3개 시·도 및 15개 시·군
- 사업 수혜자 : 접경지역 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7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3) 사업 집행절차

단계별	사업 수행 절차	비고(참고사항)
계 획	지자체 사업 계획 수립	‣ 지자체 → 행안부
	⇩	
	행안부 사업 계획 확정	‣ 관계부처 협의 → 위원회 심의·확정
	⇩	
집 행	지자체 사업 수행	‣ 지자체 (설계 → 착공 → 준공)
	⇩	
	지자체 추진상황 점검	‣ 행안부 : 보조사업 감독 및 점검
	⇩	
환 류	지자체 실적 보고	‣ 지자체 → 보조사업 실적보고
	⇩	
	결 산(평가 및 환류)	‣ 결산보고서 작성(평가 및 환류)

사 업 명
4.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124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역지원 계정	010	013
명칭					일반공공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41	300
명칭	지역발전	섬발전협력사업추진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2,700	2,865	2,865	665	665	665	△2,200	△76.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연료운반선 건조지원) 일반선박으로 운송할 수 없는 섬에 가스, 석유 등의 생필품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송·공급할 수 있는 연료운반선을 건조 지원하여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
- (섬의 날 행사 추진) '섬의 날'(8.8.) 제정과 관련하여 '섬의 날' 행사를 추진하여 섬에 대한 가치제고 및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섬 발전·연구 진흥원 기본계획 수립용역) 섬 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지원을 위한 '섬 발전·연구 진흥원' 설립 관련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의 2, 제6조

② 추진경위

- '17.7.19 : 100대 국정과제 발표

※ 3-3-62. 해양영토수호와 해양안전강화(섬 관리 강화) : '18년부터 매년 연료운반선을 2척씩 건조 지원하여 생필품 운송지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수혜대상을 매년 10%씩 확대

- '18.4월 :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수립(연료운반선 건조지원 사업 포함)
- '18.6월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섬 발전 추진대책' 보고(섬의 날 행사개최 포함)
- '19.8.8.~10. : '제1회 섬의 날' 행사 개최(전남도 목포시 삼학도 일원)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8년~
- 사업규모 : '19년 기준, 연료운반선 건조지원 2척, '섬의 날' 행사개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시도 및 시군구
- 사업 수혜자 : 유인도서 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3) 사업 집행절차

< 도서종합개발10개년계획 수립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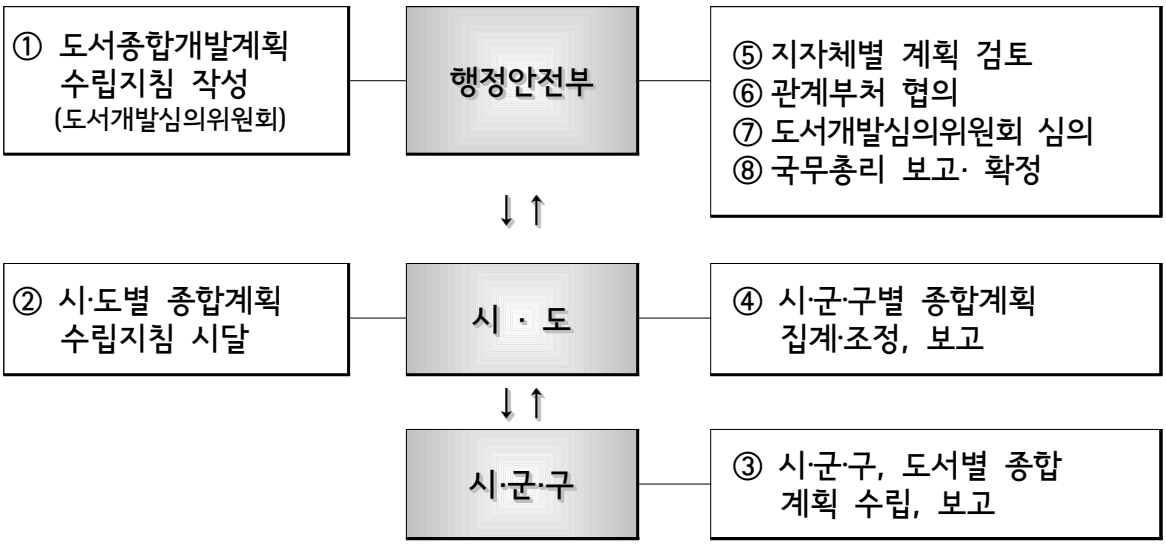

사 업 명
5. 위험도로구조개선 (32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지원 계정	120	121
명칭					교통및물류	도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31	301
명칭	지방도구조개선	위험도로구조개선	위험도로구조개선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위험도로구조개선	31,962	34,331	34,331	31,904	29,764	30,164	△4,167	△12.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방도로의 급커브, 급경사, 노폭 협소구간 등 위험구간 구조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 및 통행불편 해소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② 추진경위

- ’03. 5. 29. :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개정
  ※ 자동차특별회계를 지방도로 개선 사업에 지원 : 세입원의 25/100이상
- ’04. 3. :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업무이관(경찰청→행안부)
- ’04. 4. : 제1차 중장기계획(’04~’13) 수립·시행
- ’06. 12. 30. : ’07사업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추진
- ’14. 1. : 제2차 중장기 사업계획(´14~´23) 수립·시행 중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4 ~ 2023
- 사업규모 : 14개 시·도 662개소, 6,535억원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시·도 및 시·군·구
- 사업 수혜자 : 시·도 및 시·군·구 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별표1)

3) 사업 집행절차

단계별	사업 수행 절차	비고(참고사항)
계 획	지자체 사업 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 → 행안부 ※ 전문기관(도로교통공단) 대상지 분석
	⇩	
	행안부 사업 계획 확정	‣ 적정성 검토 및 조정 → 교부결정 → 지자체 사업수행(용도외 사용 금지)
	⇩	
집 행	지자체 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 (설계 → 입찰 → 착공 → 준공)
	⇩	
	지자체 추진상황 점검	‣ 지자체 : 사업 추진 실적 보고 ‣ 행안부 : 현장점검 및 평가
	⇩	
환 류	지자체 실적 보고	‣ 지자체 → 보조사업 실적보고
	⇩	
	결 산(평가 및 환류)	‣ 결산보고서 작성(평가 및 환류)

사 업 명
6.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12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균형발전 특별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역발전정책관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301
명칭	지역발전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8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2,288	4,319	4,319	3,274	3,274	3,274	△1,045	△24.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도서지역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 도모
- 지역의 부존자원, 관광자원 등을 발굴, 특화된 개발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5조의2 제2항 제1호

② 추진경

- 각 부처에서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에 대해 '10년부터 통합사업 추진

·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서귀포시) 8개 개발대상 도서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0~계속
- 사업규모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서귀포시)
- 사업 수혜자 : 제주특별자치도 8개 도서지역 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8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3) 사업 집행절차

기획재정부	→ ←	행정안전부	→ ←	시·도	→ ←	시·군
○ 예산편성지침 송부 ○ 예산확정		○ 가이드라인 시달 ○ 예산신청내용 검토		○ 예산신청 ○ 사업관리		○ 예산신청 ○ 사업집행

사 업 명
7. 위험도로구조개선(제주) (3231-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역발전정책관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120	121
명칭					교통및물류	도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31	306
명칭	지방도구조개선	위험도로구조개선(제주)	위험도로구조개선(제주)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위험도로 구조개선(제주)	534	2,247	2,247	2,135	1,885	1,885	△362	△16.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방도로의 급커브, 급경사, 노폭 협소구간 등 위험구간 구조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 및 통행불편 해소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의2

② 추진경위

- ’03. 5. 29. :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개정
  ※ 자동차특별회계를 지방도로 개선 사업에 지원 : 세입원의 25/100이상
- ’04. 3. :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업무이관(경찰청→행안부)
- ’04. 4. : 제1차 중장기계획(’04~’13) 수립·시행
- ’06. 12. 30. : ’07사업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추진
- ’14. 1. : 제2차 중장기 사업계획(´14~´23) 수립·시행 중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4 ~ 2023
- 사업규모 : 제주특별자치도 49개소, 352억원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 수혜자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별표1)

3) 사업 집행절차

단계별	사업 수행 절차	비고(참고사항)
계 획	지자체 사업 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 → 행안부 ※ 전문기관(도로교통공단) 대상지 분석
	⇩	
	행안부 사업 계획 확정	‣ 적정성 검토 및 조정 → 교부결정 → 지자체 사업수행(용도외 사용 금지)
	⇩	
집 행	지자체 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 (설계 → 입찰 → 착공 → 준공)
	⇩	
	지자체 추진상황 점검	‣ 지자체 : 사업 추진 실적 보고 ‣ 행안부 : 현장점검 및 평가
	⇩	
환 류	지자체 실적 보고	‣ 지자체 → 보조사업 실적보고
	⇩	
	결 산(평가 및 환류)	‣ 결산보고서 작성(평가 및 환류)

지방재정경제실

2021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1. 지역공동체일자리 ····· 829

사 업 명
1. 지역공동체일자리 (31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균형발전 특별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자치분권실	지역지원 계정	080	082
명칭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1	300
명칭	일자리지원	지역일자리창출	지역공동체일자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지역공동체일자리	58,420	51,772	51,772	93,126	93,126	74,323	18,803	36.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소득·일자리 창출
-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일자리를 운영하여, 지역 방역을 강화하고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고용 및 생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② 추진경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2009~2010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악화된 국내 고용사정 완화 및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코자 희망근로사업 실시
- (2011년) 희망근로사업 종료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 (2011~2019년) : 취업취약계층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20.81만명)

<마을기업 육성사업>

- (2010년)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시범 추진(184개 선정지원)
- (2011년) '마을기업'으로 명칭 변경(483개 마을기업 선정 지원)
- (2012년)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 지원(누계 788개)
- (2019년)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 지원(누계 1,556개)

<지역방역일자리사업>

-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역 방역사업 지원 필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
- 사업규모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9,500명 지원, 마을기업 303개 육성, 지역방역일자리사업 8,620명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역 주민 주도로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마을 단위 기업가
  -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저소득층, 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3) 사업 집행절차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업 기준(지침) 제시 (행안부 → 지자체) → 사업 신청 (지자체 → 행안부) → 사업심사 및 선정 (행안부 → 지자체) → 예산교부 및 사업추진 (행안부 → 지자체)

○ 마을기업 육성사업

설립 전 교육 / 마을주민 ➡ (이수) 사업계획 수립 / 교육이수자 ➡ (신청) 적격검토 / 시·군·구 ➡ (추천) 1차 심사 / 시·도 ➡ (추천) 최종 심사 및 마을기업 지정 / 행정안전부

○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사업 기준(지침) 제시 (행안부 → 지자체) → 사업 신청 (지자체 → 행안부) → 사업심사 및 선정 (행안부 → 지자체) → 예산교부 및 사업추진 (행안부 → 지자체)

안전정책실

2021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1.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 835

2.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제주) ····· 840

3. 재해위험지역정비(세종) ····· 845

4.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세종) ····· 848

사 업 명
1.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32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지역지원계정	120	121
명칭					교통 및 물류	도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32	300
명칭	지방도구조개선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	56,502	173,409	173,409	244,988	244,988	246,438	73,029	42.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1) 사업목적·내용

-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 예방, 불필요하게 신호대기 시간이 길고, 법규위반 사례가 많아 교통사고가 빈번한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사고감소, 소통원활, 녹색교통 활성화 유도
-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휀스, 방지턱,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 (노인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안전휀스, 미끄럼방지포장, 방지턱,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 (안전한보행환경조성)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5조

제35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협력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出捐)·보조 또는 융자 2.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3.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4.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5. 공공기관·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6.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육성, 지역고유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선양,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7. 지역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8.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10. 광역협력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속 재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13.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4.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15.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16.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 「도로교통법」제 12조(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 「도로교통법」제138조의2(국고 보조)

제138조의2(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특별시장등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 ‘87년 국무총리실 「교통안전종합대책」 제1과제로 선정, ’88년부터 추진,
- ‘09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핵심과제로 선정·추진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 ‘95년 안전한 통학로 건설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
- ‘03년 「어린이 안전원년」 선포 및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마련, ’03년부터 추진
- ’20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마련,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의무화

○ 노인보호구역 개선
- ‘07년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
- ’18년 「교통안전 종합대책」 마련, ‘19년부터 추진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08년 100대 국정과제 선정(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대책 적극 추진), ‘09년부터 추진
- ’12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 제정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3 ~ 계속
- 사업규모 :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437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8,622개소(시설개선 528, 무인교통단속장비 3,554, 신호등 4,540)
  ◦ 노인보호구역 개선 136개소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56개소(보행환경개선지구 25, 보행자우선도로 30, 보행환경 특화지구 1)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시·도 및 시·군·구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 회전교차로 :정액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3) 사업 집행절차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

교통사고 조사·분석	사업확정 및 추진지침 시달	사업시행	점검·평가 효과분석
도로교통공단	행정안전부	지자체	행안부·교통공단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

회전교차로 수요 제출	사업확정 및 추진지침 시달	사업추진 (설계자문 必)	점검·평가 효과분석
지자체	행정안전부	지자체	행안부·교통연구원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 >

보호구역 지정	▸ 시설의 장이 해당 시장 등에게 지정신청 ▸ 시장 등은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을 시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지정
⇓	
개선사업대상 선정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교통안전 확보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개선사업 대상 선정(행정안전부)
⇓	
예산의 배정	▸ 확보된 예산(국비)으로 시도별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비 배정(행정안전부)
⇓	
설계 및 공사	▸ 발주청에서는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자문운영 위원회 운영 ▸ 설계·공사에 대한 점검·컨설팅·평가(행정안전부)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보행환경 개선지구,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공모 ⇨	▸ 지자체별 보행환경 개선지구, 보행자 우선도로 대상지 기본계획 수립 ▸ 시·도별 자체 평가 후 우수 대상지 공모신청
⇩	
사업대상지 공모 선정 및 자문 ⇨	▸ 보행환경 개선사업 기본계획을 토대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 (서면, 현장, 발표)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지 선정 ▸ 공모 선정 지구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겨쳐 수정·보완(행정안전부)
⇩	
예산의 배정 ⇨	▸ 시·도별 공모사업 대상지역에 사업비 보조(행정안전부) ※ 사업비는 국비(50%), 지방비(50%)
⇩	
설계 및 공사 ⇨	▸ 발주청(도로관리청)에서는 실시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설계 및 공사추진 ▸ 설계·공사에 대한 점검·컨설팅·평가(행정안전부)

사 업 명
2.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제주) (32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제주계정	120	121
명칭					교통 및 물류	도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32	301
명칭	지방도구조개선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제주)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제주)	500	1,902	1,902	2,879	2,879	2,879	977	51.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1) 사업목적·내용

-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 예방, 불필요하게 신호대기 시간이 길고, 법규위반 사례가 많아 교통사고가 빈번한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사고감소, 소통원활, 녹색교통 활성화 유도
-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휀스, 방지턱,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 (노인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안전휀스, 미끄럼방지포장, 방지턱,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 (안전한보행환경조성)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5조의 2

제35조(제주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광역발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가. 제34조제2항제1호(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ㆍ보조ㆍ융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移替)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5.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 「도로교통법」제 12조(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 「도로교통법」제138조의2(국고 보조)

제138조의2(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특별시장등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 ‘87년 국무총리실 「교통안전종합대책」 제1과제로 선정, ’88년부터 추진,
- ‘09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핵심과제로 선정·추진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 ‘95년 안전한 통학로 건설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
- ‘03년 「어린이 안전원년」 선포 및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마련, ’03년부터 추진
- ’20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마련,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의무화

○ 노인보호구역 개선
- ‘07년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
- ’18년 「교통안전 종합대책」 마련, ‘19년부터 추진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08년 100대 국정과제 선정(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대책 적극 추진), ‘09년부터 추진
- ’12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 제정

□ 주요내용

- 사업규모 :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5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87개소(시설개선 5, 무인교통단속장비 33, 신호등 49)
  - ◦노인보호구역 개선 2개소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개소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시·도 및 시·군·구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 회전교차로 :정액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3) 사업 집행절차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

교통사고 조사·분석	사업확정 및 추진지침 시달	사업시행	점검·평가 효과분석
도로교통공단	행정안전부	지자체	행안부·교통공단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

회전교차로 수요 제출	사업확정 및 추진지침 시달	사업추진 (설계자문 必)	점검·평가 효과분석
지자체	행정안전부	지자체	행안부·교통연구원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 >

보호구역 지정	▸ 시설의 장이 해당 시장 등에게 지정신청 ▸ 시장 등은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을 시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지정
⇓	
개선사업대상 선정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교통안전 확보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개선사업 대상 선정(행정안전부)
⇓	
예산의 배정	▸ 확보된 예산(국비)으로 시도별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비 배정(행정안전부)
⇓	
설계 및 공사	▸ 발주청에서는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자문운영 위원회 운영 ▸ 설계·공사에 대한 점검·컨설팅·평가(행정안전부)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보행환경 개선지구,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공모 ⇨	▸ 지자체별 보행환경 개선지구, 보행자 우선도로 대상지 기본계획 수립 ▸ 시·도별 자체 평가 후 우수 대상지 공모신청
⇩	
사업대상지 공모 선정 및 자문 ⇨	▸ 보행환경 개선사업 기본계획을 토대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 (서면, 현장, 발표)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지 선정 ▸ 공모 선정 지구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겨쳐 수정·보완(행정안전부)
⇩	
예산의 배정 ⇨	▸ 시·도별 공모사업 대상지역에 사업비 보조(행정안전부) ※ 사업비는 국비(50%), 지방비(50%)
⇩	
설계 및 공사 ⇨	▸ 발주청(도로관리청)에서는 실시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설계 및 공사추진 ▸ 설계·공사에 대한 점검·컨설팅·평가(행정안전부)

사 업 명
3. 재해위험지역정비(세종) (2638-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새종특별 자치시계정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38	302
명칭	안전관리	재난예방지원	재해위험지역정비(세종)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재해위험지역정비(세종)	3,270	1,437	1,437	1,437	1,437	1,437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각종 재해취약 요인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자연재해대책법」제3조(국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등)

· 국가는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기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제70조(국고보조)

· 태풍·홍수·호우·해일 등 자연재해 발생우려가 있는 재해취약 지역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 국가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의 자연재해예방대책, 자연재해복구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3조(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자연재해대책법」제70조에 따라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음

② 추진경위

- 사업시작년도 : '15년 * '14년까지 일반회계로 추진되다 '15년부터 지특(세종) 추진
- 추진배경

·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적시에 정비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98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년부터 계속
- 사업규모 : 재해위험지역 32개소('19년까지 26개소 해소)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50%
- 사업시행주체 : 자치단체 보조
- 사업 수혜자 : 지역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3)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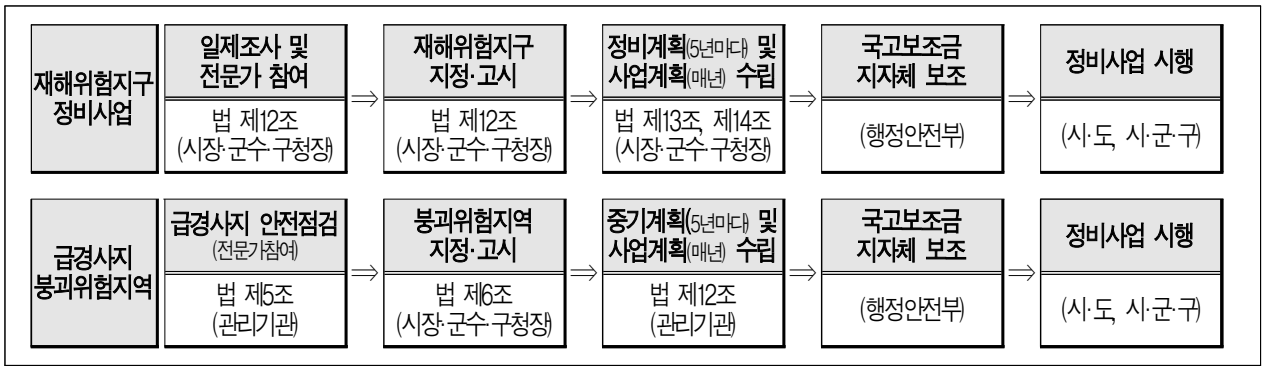

사 업 명
4.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세종) (32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세종계정	120	121
명칭					교통 및 물류	도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32	301
명칭	지방도구조개선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세종)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제주)	458	1,462	1,462	1,776	1,776	1,776	314	21.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1) 사업목적·내용

-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 예방, 불필요하게 신호대기 시간이 길고, 법규위반 사례가 많아 교통사고가 빈번한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사고감소, 소통원활, 녹색교통 활성화 유도
-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휀스, 방지턱,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 (노인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안전휀스, 미끄럼방지포장, 방지턱,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 (안전한보행환경조성)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5조의 3

제35조(세종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광역발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가. 제34조제2항제1호(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ㆍ보조ㆍ융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도로교통법」제 12조(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 「도로교통법」제138조의2(국고 보조)

제138조의2(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특별시장등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 ‘87년 국무총리실 「교통안전종합대책」 제1과제로 선정, ’88년부터 추진, - ‘09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핵심과제로 선정·추진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 ‘95년 안전한 통학로 건설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 - ‘03년 「어린이 안전원년」 선포 및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마련, ’03년부터 추진 - ’20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마련,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의무화 ○ 노인보호구역 개선 - ‘07년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 - ’18년 「교통안전 종합대책」 마련, ‘19년부터 추진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08년 100대 국정과제 선정(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대책 적극 추진), ‘09년부터 추진 - ’12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 제정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3 ~ 계속
- 사업규모 :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3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56개소(시설개선 5, 무인교통단속장비 37, 신호등 14)
  ◦ 노인보호구역 개선 2개소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시·도 및 시·군·구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 회전교차로 :정액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3) 사업 집행절차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

교통사고 조사·분석	사업확정 및 추진지침 시달	사업시행	점검·평가 효과분석
도로교통공단	행정안전부	지자체	행안부·교통공단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

회전교차로 수요 제출	사업확정 및 추진지침 시달	사업추진 (설계자문 必)	점검·평가 효과분석
지자체	행정안전부	지자체	행안부·교통연구원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 >

보호구역 지정	▸ 시설의 장이 해당 시장 등에게 지정신청 ▸ 시장 등은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을 시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지정
⇓	
개선사업대상 선정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교통안전 확보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개선사업 대상 선정(행정안전부)
⇓	
예산의 배정	▸ 확보된 예산(국비)으로 시도별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비 배정(행정안전부)
⇓	
설계 및 공사	▸ 발주청에서는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자문운영 위원회 운영 ▸ 설계·공사에 대한 점검·컨설팅·평가(행정안전부)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보행환경 개선지구,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공모 ⇨	▸ 지자체별 보행환경 개선지구, 보행자 우선도로 대상지 기본계획 수립 ▸ 시·도별 자체 평가 후 우수 대상지 공모신청
⇩	
사업대상지 공모 선정 및 자문 ⇨	▸ 보행환경 개선사업 기본계획을 토대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 (서면, 현장, 발표)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지 선정 ▸ 공모 선정 지구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겨쳐 수정·보완(행정안전부)
⇩	
예산의 배정 ⇨	▸ 시·도별 공모사업 대상지역에 사업비 보조(행정안전부) ※ 사업비는 국비(50%), 지방비(50%)
⇩	
설계 및 공사 ⇨	▸ 발주청(도로관리청)에서는 실시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설계 및 공사추진 ▸ 설계·공사에 대한 점검·컨설팅·평가(행정안전부)